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김지연 | 공동연구원 : 김성언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성언(경남대학교·교수)

위촉연구원 : 최은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국내·외의 비행청소년 멘토링 사례 및 다기관 협력적 개입사례와 우리나라 보호관찰소 및 소년보호기관의 멘토링 및 네트워크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도출하는 것임
- 두 번째 목적은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을 개발하여 소년사법체계 내의 청소년을 멘티로 포함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질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임

2. 연구내용

-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비행청소년 멘토링 현황과 재범예방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도출하였음. 이를 위하여 전국 16개 소년보호기관과 51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포함한 서비스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였음
- 국내에서 비행 및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의 효과성 연구가 극히 제한적임으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단면담(FGI)을 실시하고 멘토, 멘티를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병행하였음. 이를 통해 멘토링의 효과와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비행청소년 멘토링이 멘티, 멘토의 자존감, 성공경험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멘티는 비동일통제집단비교설계, 멘토는 단일집단비교설계를 통해 효과 검증을 시도하였음. 또한, 조사시점 현재 멘티의 재범률을 함께 파악하여 재범억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멘토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멘토 양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공공과 민간에서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멘토 교육 자료와 서식(work sheet)을 함께 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법적 기반은 소년심판규칙 제33조에 근거한 자원보호자제도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의 범죄예방위원제도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다기관 협조체계 구축은 소년법 제6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음. 소년사법체계 내의 자원봉사자를 통합 관리하고 멘토 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선도효과를 도모하며, 다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주체, 예산 편성,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보호관찰소 및 소년보호기관은 직업훈련, 진로 및 학업지도, 경제적 지원과 취업알선 등 복합적인 처우 욕구가 높고, 조사대상자 10명 중 6명은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러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연계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멘토링과 다기관 협조체계 구축 업무가 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예산이 부재하며, 멘토의 질 관리가 운영상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 7개월간의 비행청소년 멘토링시범사업 효과분석 결과 재범률은 2%에 불과하며, 총 97명의 멘티 가운데 학업중단자 25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음. 멘토링에 참여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존감,

자신감, 성공경험이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2주일에 1회 멘토와 일대일 만남을 가진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멘토는 멘티의 성장과 변화에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자신감, 성공경험,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멘토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통해 소진(burn out)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비행청소년 멘토링운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함. 또한, 멘토링과 다기관 협조체계 운영과 관련한 업무가 성과 및 기관평가에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이와 함께 범죄예방기금 등 일선 기관에서 협조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함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은 멘티·멘토 선정단계, 결연 및 활동단계, 통합지원 단계, 평가단계로 체계화된 운영이 요구되며, 멘토는 월 1회 상담통보서를 일선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통합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다양한 처우가 제공될 때 실제적인 사회복지를 도모할 수 있음
-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티는 위험(risk)과 욕구(need)에 대한 사정이 요구되며 고위험, 고욕구 청소년의 경우 다른 처우와 함께 멘토링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특히, 소년법원의 판사가 심리 및 처분 시 보호자 및 지지체계가 취약한 경우 멘토링을 병과 처분하도록 해야 함. 또한, 소년원, 대안교육센터, 보호관찰소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소 차별화된 멘토링 운영 체계가 요구됨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을 개발하고, 멘토 활동 및 교육 자료와 서식을 함께 제시하였음

4. 정책제언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내에 (가칭)지역자원협력과와 같은 허브(Hub)로서의 멘토링 전담부서의 설치가 요구됨
- 전담부서 산하에 관·학·민 협의체인 (가칭)비행청소년 멘토링운영협회를 두고 실제적인 다기관 협력을 도모하며, 비행청소년 멘토링운영지침, 멘토 활동지침 등을 개발하고 멘토링 운영기관에 보급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협의회는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 일선 보호관찰소 및 소년보호기관은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주체로서 업무협약(MOU)을 포함한 공식적인 연계와 사례회의, 공동사업 추진, 자원 연계 및 조정을 담당하는 등 역할 변화가 요구되며 성과 및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소년법원의 판사는 심리 및 처분 과정에서 보호자 등 지지체계가 취약한 경우 멘토링을 병과 처분하도록 하여 각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소년원의 경우 만기퇴원 전과 만기퇴원 후로 구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만기퇴원 후에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를 통해 대상 청소년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대안교육센터와 보호관찰소는 각급 학교 및 교육청의 Wee project와 연계하여 멘토를 공급받고 중도탈락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현재, 대학생, 일반성인 멘토는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사실상 ‘소년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따라서 멘토가 제도권 내에서 공식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갖춰져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1호 감호위탁처분의 자원보호자(법원), 4·5호 등 보호관찰처분의 (특별)범죄예방위원(법무부), 8·9·10호의 특별소년보호위원(법무부)의 역할은 일부 ‘멘토’의 역할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소년사법체계내의 자원봉사자를 일원화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들의 교육 내용에 멘토로서의 자질 및 멘토링 실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제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처분 및 처우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교정멘토링의 효과 및 청소년에 대한 발달적 관점에서의 의미를 감안할 때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실제적인 재범예방과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1) 비행청소년 멘토링 및 다기관 협력 사례 분석	6
2) 비행청소년 관련 기관 서비스 네트워크 현황 파악	6
3)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 분석	6
4)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 지침 개발	7
5)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협력체제 제안	7
3. 연구방법	7
1) 문헌연구	7
2) 실증적 조사	8
3) 전문가 워크숍	8
4) 전문가 자문 및 정책협의회	8
5)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운영협의회	8

II. 이론적 배경

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개요	13
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개념과 근거	13
2) 비행청소년 멘토링 관련 법적 기반	18
3)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이론적 기반	32
4)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구성요소	38
2. 비행청소년 멘토링 및 다기관 협력사례	44
1) 국내 현황	44
2) 해외 현황	55
3) 요약 및 시사점	106
3.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	112

III. 조사방법	121
1. 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121
1) 조사대상	121
2) 측정도구	121
3) 분석방법	122
2. 면담조사	122
1) 전문가 집단면담(FGI)	122
2) 멘티 및 멘토 면담조사	123
3. 준실험조사	124
1) 조사개요	124
2) 측정변인	124
3) 분석방법	125
IV. 조사결과 분석	
1. 비행청소년 관련기관의 서비스 네트워크 현황	129
1) 일반적 특성	129
2) 멘토링 관련 현황	133
3) 자원연계 및 협력 현황	138
4) 다기관 협력체계 구조 및 특성	145
2. 멘토링 운영방안	169
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이해	169
2) 멘토, 멘티 조건 및 운영방안	170
3) 관리 및 지원	174
4) 전달체계	175
3.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분석	178
1) 멘토 및 멘티 면담조사 분석	178
2) 실험조사 분석 결과	196
4. 소결	207
1) 요약	207
2) 결론	210

V.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방안

1. 전담부서 및 전달체계 구축	219
1) 전담부서의 역할	219
2) 전달체계의 구축	220
3) 평가체계 개선	222
4) 예산지원과 지도감독	223
2. 운영단계의 체계화	224
1) 멘토링 운영단계	224
2) 멘티 선정 및 관리과정	225
3) 운영기관의 역할	226
3. 목표 및 내용의 구체화	227
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모형	227
2) 기관유형별 멘토링 운영체계 마련	228
 참고문헌	 231
 부록 ■ 부록 1. 비행청소년 관련기관 서비스 네트워크 현황 조사.....	 241
■ 부록 2. 면담조사(전문가) 질문내용	250
■ 부록 3. 면담조사(멘티,멘토) 질문내용	251
■ 부록 4. 멘토링 시범사업 효과 측정도구	253
■ 부록 5. 전문가 의견 요약	265

표 목차

<표 II-1> 자원보호자 위탁처분 현황	20
<표 II-2> 지역별 자원보호자감호위탁 현황	21
<표 II-5> 선도유예 소년의 재범률	25
<표 II-3> 보호처분 요약표	27
<표 II-4>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29
<표 II-6>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구성요소	44
<표 II-7> 지역사회 내 범죄소년 관련 프로그램 현황	46
<표 II-8>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50
<표 II-9> 연령별 멘토 분포(2005년도)	67
<표 II-10> 공식적인 멘토들과 연계된 조직 현황	68
<표 II-11> 멘토 및 멘토 희망 인구 규모	69
<표 II-12> 멘토링 미참여 사유	71
<표 II-13> 멘토링의 주요 자원	73
<표 II-14> 부문별 멘토링 활동 지침	73
<표 II-15> 다기관 협력 업무체결 현황	105
<표 III-1> 서비스 연계망 분석 측정도구	121
<표 III-2> 면담대상(멘티, 멘토) 현황	123
<표 III-3> 멘티, 멘토 사전사후 측정도구	125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29
<표 IV-2> 기관유형별 상담건수 평균비교	130
<표 IV-3> 기관 유형별 제공되는 서비스 수 비교	131
<표 IV-4> 서비스 제공 현황 및 필요 서비스 (중복응답)	131
<표 IV-5> 자원봉사자 현황	132
<표 IV-6> 기관별 사례관리계획 및 개입의 자율성 정도	133
<표 IV-7> 멘토링 운영 경험	133
<표 IV-8> 멘토링 운영상 장애요인(중복응답)	134
<표 IV-9> 멘토링 운영 효과	135
<표 IV-10> 기관유형별 멘토링효과	135

<표 IV-1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필요성	136
<표 IV-12>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여부에 따른 필요성 평가 ·	136
<표 IV-13> 기관 유형별 멘토링 필요성 및 도움정도 평가 ·	137
<표 IV-14> 멘토링 운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중복응답)	137
<표 IV-15> 외부 인적·물적자원 확보 경로 (중복응답)	138
<표 IV-16> 기관유형별 교육여부	139
<표 IV-17>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연계 관련 교육 횟수 ·	139
<표 IV-18> 기관유형별 교육 횟수 및 시간 비교	140
<표 IV-19> 기관유형별 타 기관 자원 연계 인식 비교	141
<표 IV-20> 기관유형별 타 기관과 협력 경험	141
<표 IV-21> 담당 사례 중 협력사례 비중	142
<표 IV-22> 타 기관과의 연계 내용	142
<표 IV-23> 타 기관과의 연계 정도	143
<표 IV-24> 연계가 안 되는 이유	144
<표 IV-25> 서비스 네트워크의 연결정도중심성 지수	146
<표 IV-26> 서비스 네트워크의 근접 중심성 지수	147
<표 IV-27> 서비스 네트워크의 매개중심성 지수	149
<표 IV-28> 소년원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 ·	152
<표 IV-29> 소년원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근접성 지수 ·	154
<표 IV-30> 소년원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매개성 지수	155
<표 IV-31> 대안교육센터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지수 ·	157
<표 IV-32> 대안교육센터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근접성 지수 ·	158
<표 IV-33> 대안교육센터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매개성 지수 ·	159
<표 IV-34> 보호관찰소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지수 ·	162
<표 IV-35> 보호관찰소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근접성 지수 ·	163
<표 IV-36> 보호관찰소의 서비스 네트워크 매개성 지수	164
<표 IV-37> 기관 유형별 서비스 의뢰 횟수 비교	167
<표 IV-38> 기관유형별 연계지속성(중복응답)	167
<표 IV-39> 기관유형별 연계방향(중복응답)	168
<표 IV-40> 기관유형별 친밀성 정도(중복응답)	168
<표 IV-41> 전문가 면담조사 결과 요약	177
<표 IV-42> 멘토 및 멘티 면담조사 결과 요약	194

<표 IV-43> 사후 자존감 점수 비교	197
<표 IV-44> 사후 자신감 점수 비교	197
<표 IV-45> 사후 성공경험 점수 비교	197
<표 IV-46> 사후 자율성 점수 비교	198
<표 IV-47> 소년원, 보호관찰 청소년 사후점수 비교	198
<표 IV-48> 면담 빈도와 멘티 만족도 비교	199
<표 IV-49> 멘티의 멘토링 만족·만족불만족이유	200
<표 IV-50> 멘티의 현재 상황	200
<표 IV-51> 멘토링에 대한 멘티 의견	201
<표 IV-52> 멘토의 참여동기	202
<표 IV-53> 멘토의 사전사후 점수 비교	203
<표 IV-55> 멘토의 멘토링 불만족 이유	205
<표 IV-56> 멘토링에 대한 멘토 의견	205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과정 및 절차	9
[그림 II-1] 청소년 멘토링 모형	14
[그림 II-2] 사회통제시스템의 비교	16
[그림 II-3] 보호관찰실시 절차도	23
[그림 II-4] 자원보호자와 범죄예방위원의 역할 비교	24
[그림 II-5] 자극통제이론	37
[그림 II-6]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인적구성 모형	41
[그림 II-7] 멘토링 진행과정의 예	43
[그림 II-8] 위프로젝트 구축도 및 위센터 체계도	52
[그림 II-9] 위센터 지원 흐름도	53
[그림 II-10]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개요	54
[그림 IV-1] 서비스 네트워크의 근접중심성	148
[그림 IV-2] 서비스 네트워크의 연계현황	150
[그림 IV-3] 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조적 등위성	151
[그림 IV-4] 소년원 수신연결망 연결정도	153
[그림 IV-5] 소년원 발신연결망 연결정도	153
[그림 IV-6] 소년원 수신연결망 근접성	154
[그림 IV-7] 소년원 발신연결망 근접성	154
[그림 IV-8] 소년원 수신연결망의 구조적 등위성	156
[그림 IV-9] 소년원 발신연결망의 구조적 등위성	156
[그림 IV-10] 대안교육센터 수신연결망 근접성	159
[그림 IV-11] 대안교육센터 발신연결망 근접성	159
[그림 IV-12] 대안교육센터 수신연결망 매개성	160
[그림 IV-13] 대안교육센터 발신연결망 매개성	160
[그림 IV-14] 대안교육센터 수신연결망의 구조적 등위성	161
[그림 IV-15] 대안교육센터 발신연결망의 구조적 등위성	161
[그림 IV-16] 보호관찰소 수신연결망 연결정도	162
[그림 IV-17] 보호관찰소 발신연결망 연결정도	162

[그림 IV-18] 보호관찰소 수신연결망 근접성	164
[그림 IV-19] 보호관찰소 발신연결망 근접성	164
[그림 IV-20] 보호관찰소 수신연결망 매개성	165
[그림 IV-21] 보호관찰소 발신연결망 매개성	165
[그림 IV-22] 보호관찰소 수신연결망의 구조적 등위성	166
[그림 IV-23] 보호관찰소 발신연결망의 구조적 등위성	166
[그림 V-1] 전담부서의 기능과 역할	220
[그림 V-2] 비행청소년 멘토링 전달체계	222
[그림 V-3]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운영단계	224
[그림 V-4] 운영기관 결연관리자의 역할	226
[그림 V-5] 비행청소년 멘토링 모형의 예	227
[그림 V-6] 소년원의 멘토링 운영체계	228
[그림 V-7] 대안교육센터, 보호관찰소의 멘토링 운영체계	229
[그림 V-8] 보호관찰소(학업중단)의 멘토링 운영체계	23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청소년비행은 강력범죄화,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학생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전체 범죄자 대비 소년범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3.8%에서 2008년에는 5.5%를 점하고 있고, 고위험군 소년범의 재범률은 40%에 달하고 있어(경찰청, 2008: 75-8) 국가차원의 조기개입과 새로운 전략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국친사상(parent patriae)을 기반으로 한 소년사법운동의 영향으로 ‘비행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므로 처벌보다는 개별화된 처우(treatment)와 사회복귀(rehabilitation)를 유도하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¹⁾ 우리나라도 처벌·사후교육 중심에서 선도·예방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회 내 처우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 개정된 소년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소년법에서는 검찰 및 법원단계에서 더욱 다양한 다이버전²⁾ 처우를 제도화하고 있다. 즉, 범죄소년을 공식적인 사법절차로부터 조기 이탈시키는 대신 대안적 처우를 활용하는 소년사건의 처리방법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

1)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절차는 성인범죄자의 그것과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Hess(2000)는 이를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 전환처우(diversion), 적법절차(due process),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등 네 가지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2) 전환처우(diversion) 즉, 다이버전은 성인범이나 소년범을 정식공판이나 유죄판결 이전에 비행사적인 선도프로그램에 배치하는 초기 법원절차를 의미한다. 다이버전은 각국의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나, 공통적인 특징은 종래의 실무관행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의 극소화를 꾀하였다는 점이다. 다이버전은 소년범에 대한 사건부담수를 줄여 소년사법체계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소년프로그램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수용시설에 비해 1인당 보호비용이 훨씬 적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명우·신효정·김태선 외, 2005: 15).

표적으로, 검찰단계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교육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한 개별지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었고, 법원단계에서는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서 3개월 미만의 대안교육 및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시설수용 인원의 감소와 맞물려 전국 15개 소년원 중 3곳, 분류심사원 3곳 총 6개소는 비행예방센터(이후, 대안교육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비행예방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 처우를 받는 3천 명 정도를 제외하면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 등 각 처리단계에서 다이버전으로 사회로 방면되는 청소년은 연간 6만 명에 이르고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참여를 확대·지속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미비한 상황이며(이명숙, 2008: 91-92),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해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예방위원)과 자원보호자제도로 제한된다. 범죄예방위원은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일정한 직업과 시간적 여유가 있고 소년비행의 예방과 교정에 관심을 가진 자’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3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이다. 이들은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에 대한 선도활동을 주로 담당한다. 그러나 실무봉사형 보다는 지역유지형 자원봉사자가 주축을 이루는 등 비행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5천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경찰청 주관의 ‘사랑의 교실’ 역시 재범방지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³⁾ 자원보호자는 소년심판규칙(제33조)에 의거하여 법원에서 위촉하며 소년을 직접 ‘감호’

3) 예방위원과 대상 청소년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방위원 가운데 30% 정도는 결연 대상 청소년과 접촉에 실패하였고 대다수는 활동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예방위원을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이동원, 1995; 정진수, 2001: 108). 예방위원 중 과반수가 4-50대 남성 자영업자이며 예방위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등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청소년 선도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강의식의 집단지도가 주를 이루는 사랑의 교실 역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입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서울신문, 2009.2.11. 001면).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점은 차이가 있으나 활동 내용은 범죄예방위원과 다르지 않다.

결연을 통한 실제적인 원조관계 형성을 시도한 기존의 예방위원 제도가 미흡한 효과와 한계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던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시행된 멘토링은 멘티의 특성에 따라 요보호청소년 멘토링과 범죄소년 멘토링으로 구분되는데, 후자의 경우 재범감소 및 사회복귀라는 선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김지선, 2002: 155), 비행과 학교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재비행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의 촉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혼기, 1999; 채형일, 2000; 하성민, 2001).

비행청소년의 상당수는 한부모, 결손가정 등 가정 내 역할모델이 부재하며, 멘토링은 일대일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문제 예방적 개입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⁴⁾ 그러나,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민간단체 주관의 한시적 사업에 그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제도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지선, 2002; 김성언, 2004; 이명숙, 2008).

개정소년법에서도 ‘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제67조의2)’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비행청소년 정책이 예방중심의 개입전략과 사회 내 처우를 지향하는 주요국에서는 이미 멘토링을 처우의 핵심요소로 활용하고 있고 다양한 평가를 통한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행청소년 멘토링에 관한 연구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목적을 가진다. 첫째, 비행청소년 멘

4)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사업과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 사업 등은 아동청소년의 건전성장 및 비행예방과 역량개발의 주요 방법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토링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협력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기관 네트워크를 비행예방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비행청소년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연계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공공·민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멘티, 멘토를 대상으로 효과를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 및 멘티, 멘토를 대상으로 집단면담(FGI)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소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제도적 시행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2. 연구내용

1) 비행청소년 멘토링 및 다기관 협력 사례 분석

국내·외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현황과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멘토링의 제도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비행청소년 관련 기관 서비스 네트워크 현황 파악

전국 16개少年보호기관 및 51개 少年관찰소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포함한 다기관 서비스 네트워크 실태 및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멘토링 운영체제를 제안하였다.

3)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 분석

국내에서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의 효과검증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2009년 3월 현재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멘티, 멘토 대상 면접조사와 사전사후 비교 측정을 통해 멘토

링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사전조사는 4월, 사후조사는 11월에 각각 실시하여 멘토링 기간은 총 7개월 정도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멘티의 자존감, 성공경험 등의 변화 여부와 함께 멘토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파악하여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와 운영상의 시사점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4)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 지침 개발

운영 지침의 부재는 서비스의 편차와 질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운영사례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을 개발하였다. 운영지침은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인적·내용적 구성요소, 멘토·멘티 모집, 결연, 활동, 평가 등 멘토링의 실제와 서식(work sheet)을 포함하였다.

5)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협력체제 제안

선행연구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실천적 과제와 제언을 중심으로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제도적 운영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연구목적에 따라 첫째,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법적기반 및 여건 분석을 위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둘째,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현황 및 다기관 협력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보고서 및 관련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 및 운영을 위한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논문과 자료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실증적 조사

실증적 조사는 보호관찰소를 비롯하여 소년원, 분류심사원, 대안교육센터 등 소년보호기관의 멘토링 실시 현황 및 서비스 연계망 분석과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효과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는 사회연계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며 비행청소년 관련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기관의 특성과 서비스 연계망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후자는 비교집단설계를 활용하여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멘티, 멘토의 변화정도를 측정하였고, 멘티, 멘토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대한 집단면접(FGI)을 각각 실시하였다.

3) 전문가 워크숍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학계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09. 06. 26)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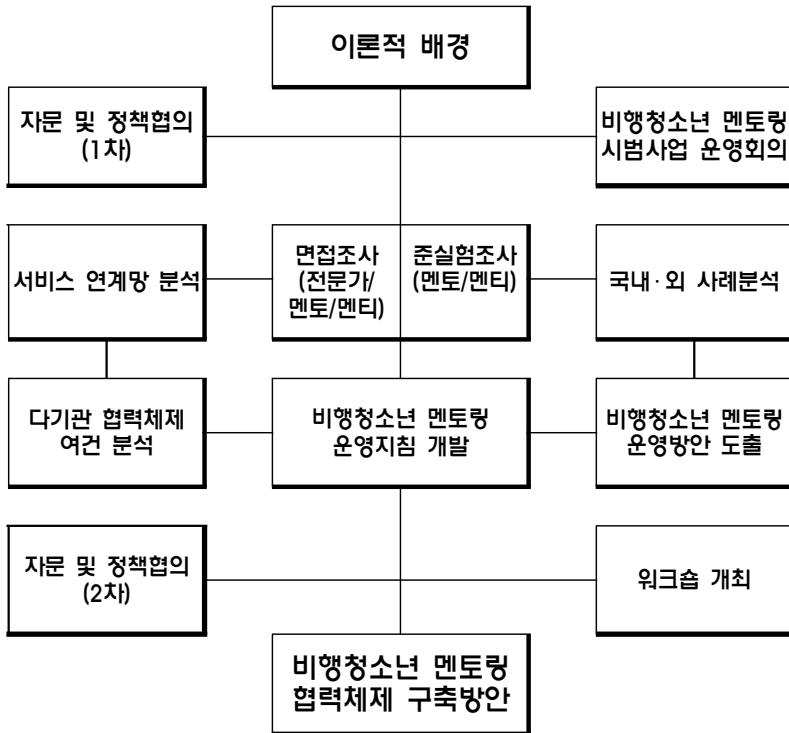
4) 전문가 자문 및 정책협의회

학계 전문가와 관련 부처 공무원,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1회는 연구내용 및 문항 개발을 중심으로, 2회는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시사점과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총 2회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5)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운영협의회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및 소년보호기관 담당자와 민간단체 실무자가 참석하는 운영협의회에 월 1회 참석하였다. 시범사업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3년간 실시되며 연구자는 2009년 1월부터 운영협의회에 참여하였으며, 시범사업 운영과정 전반을 관찰하고 제도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과정

및 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연구과정 및 절차

Ⅱ. 이론적 배경

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개요
2. 비행청소년 멘토링 및 다기관 협력사례
3.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

II. 이론적 배경

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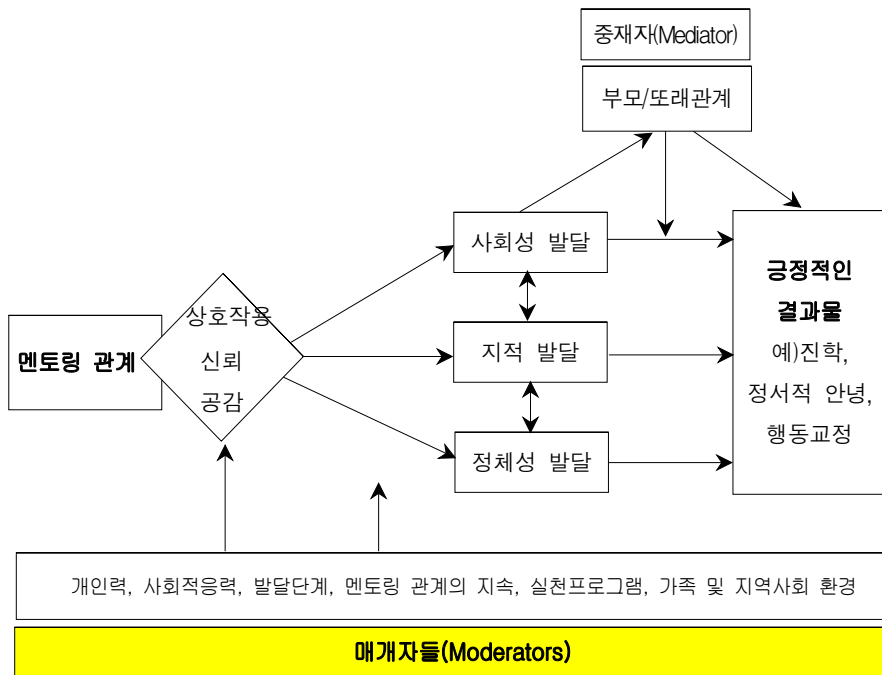
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개념과 근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멘토링(mentoring)⁵⁾은 오늘날 ‘한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삶의 목표 실현을 돕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인간의 성장과 지도(teaching)를 목적으로 사회의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은 건전한 역할 모델과 친밀하고 상호적인 일 대 일 관계를 통해 청소년에게 정서적·사회적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산물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정의된다(박현선, 2000: 150; 이해연 외, 2005: 10). 이러한 맥락에서 비행청소년 멘토링은 소년사법체계 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행동과 태도의 교화를 중간적 산물로 하는 멘토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멘토링은 일반적으로 문제의 변화 혹은 치료보다는 환경적 혹은 개인적 요소로 인해 발달상의 문제가 가능성이 있는 위기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에 특히 효과적인 예방적 실천전략으로 알려져 있다(DuBois, Holloway, Valentine, and Cooper, 2002). 따라서 그 동안 국내의 멘토링 연구는 일반학생(신윤희 외, 2007), 한부모가정 청소년(한정우, 2002; 최경일, 2008), 빈곤아동·청소년(김순규·이재경, 2007; 김예성·배정현, 2007; 방진희, 2004), 학교 부적응 청소년(배현옥, 2005; 신현정 외, 2007), 장애학생(장명희, 2006), 실직 가정 아동(박현선, 2000), 조손가정아동(배진희·정정숙, 2009) 등 다양한 대상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일대일의 정서적 결연관계를 기반으로

5) BC 1250년경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의 친구인 멘토르(Mentor)에게 아들 텔레마커스의 양육을 위임하였고 이후 멘토는 충실하고 현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 교사, 친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Dondero, 1997: 881).

한 멘토링이 일반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가정 및 학교에서 역할모델을 갖지 못하는 고위험 아동·청소년의 일탈 및 비행을 감소하고 보호요인을 증진하여 역량개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출처: Dubois et al., 2005: 32 참조.

[그림 II-1] 청소년 멘토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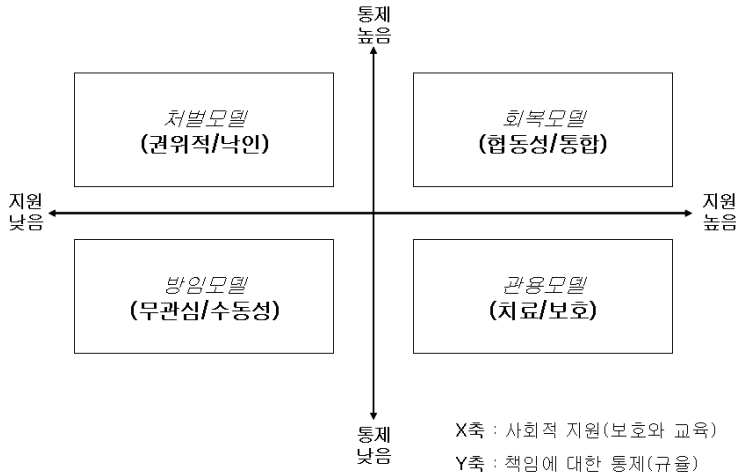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멘토링은 초기비행 이전 단계의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과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하성민, 2001; 채형일, 2001; 한동주, 2007) 소년보호기관의 보호소년 및 범죄소년은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멘토링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이야말로 긍정적인 역할모델과 지지적 관계가 취약하고 성인범죄자로서의 전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멘토링이 요구되는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 소년법, 소년원법이 개정되면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대안교육명령,

상담명령, 교육명령, 그리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사회내 처우의 적극적 활용이 강조되어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소년원 수용인원의 감소에 따라 소년원 3개소와 분류심사원 3개소가 대안교육 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였다.

Wachel과 McCold(2001)는 어느 사회에서든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행위규제 시스템을 <그림 II-2>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모델은 법 위반자 즉, 범죄소년이 스스로 책임을 자각하도록 유도한다는데 있어서는 처벌모델과 비슷하지만 높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관용모델과 유사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은 범죄소년의 성행 교정을 위해 ‘환경 조성’ 및 ‘위기개입과 관리’ 라는 보호이념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상태에서 소년을 단순히 보호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조치없이 관대하게 다루거나 혹은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양극단의 처리가 구조화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처리방식은 소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행동을 개선하도록 강제하고 유도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김은경, 2009: 121). 이에 반해 회복적 보호는 범죄소년의 책임에 대한 통제 수준은 높으나 처벌 대신 보호의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다기관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을 근간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Zhang과 Zhang(2005)의 연구에서는 통제강화형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재범감소 효과가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준의 통제와 낮은 수준의 처우가 주어진 소년의 경우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처우가 제공된 경우에 비해 재범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처우가 없는 통제는 보호기간의 종결과 함께 재범억제효과가 사라지거나 심지어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MacKenzie, 2000). 이러한 측면에서 멘토링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처우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범죄소년에 대한 정확한 문제 사정(assessment)에 탁월하다는 점에서 범죄소년 선도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회복적 보호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OJJDP, 1997).⁶⁾ 따라

서, 멘토링이 기존의 보호처분과 병과되어 처우의 일환으로 제공된다면 교정 프로그램의 충실성(fidelity)과 완전성(integrity)에 보다 근접하는데 기여할 것이다.⁷⁾



출처: Wachtel and McCold, 2001; 김은경, 2009: 120.

[그림 II-2] 사회통제시스템의 비교

우리나라 역시 회복적 보호지원의 필요성과 소년원 수용인원의 감소에 따라 소년원과 분류심사원 일부가 대안교육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였다. 중·고등학교가 의뢰한 징계대상 및 복교 전 학생, 검찰에서 특별교육조정부 기소 유예처분을 받은 청소년, 법원에서 대안교육이수명령을 받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대상 청소년, 기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보호자가 위탁한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

- 6) 멘토링이 회복적 사법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존재하며 지역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 사법(community justice)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멘토링이 넓은 의미의 다이버전에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기술하였다.
- 7) Schwartz(2009)는 소년사법과 사회복지의 상반된 개입이 적용될 때는 고위험(most at risk)군과 고욕구(most at need)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약 지역 내 자원이 허락한다면 이러한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며 모든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적·재활적 전략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을 통하여 1주 및 2주간의 선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6개소 가운데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현재 1개소에 불과하다(김지연, 2009: 41). 소년원 역시 시설 내 교육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개방중심 교육으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가족관계 회복 및 사회복귀에 목표를 두고 있다(법무부, 2009). 이 과정에서 멘토링이 방법론으로 활용되고는 있으나 개별기관의 의지에 따라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10개소 가운데 4곳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와 같이 멘토링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최근 소년법의 개정 취지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개정소년법에서는 ‘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제67조 제2항)’고 명시하고 있어 공공-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는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제50조)과 최근의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안제36조~41조)에서도 ‘비행청소년의 비행·범죄 예방과 사회복귀·재통합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적 선도를 벗어나 교육훈련 및 치료재활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멘토링이 보호처분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련법 내에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멘토링 프로그램이 민간차원의 활동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1992년 청소년 범죄 및 비행방지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이 개정되면서 멘토링 파트(part G)가 법에 포함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청소년 비행 예방 사무국(OJJDP)에서 관리하는 미 연방 전체의 멘토링 프로그램인 JUMP(Juvenile Mentoring Program)를 가동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은 청소년 범죄 및 비행방지를 위한 개입전략으로 멘토링의 잠재적인 효과를 확신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고 있고, 멘토링은 청소년의 일탈 감소와 행동 및 태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그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Ramsey, 2001; 김지선, 2002: 59). 이후 미국을 포함하여 비행청소년 정책이 예방중심의 개입전략과 사회 내 처우를 지향하는 주요국에서는 이미 멘토링을 교정 처우의 핵심요소로 활용하고 있고 다양한 평가를 통한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멘토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보호관찰 대상소년 및 소년보호기관의 보호소년은 긍정적 역할모델과 지지체계가 빈약한 고위험군 위기아동·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멘토링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비행청소년 멘토링 관련 법적 기반

(1) 자원보호자제도

현재 멘토링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 조항에서 제도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일부 발견할 수 있는데 소년심판규칙⁸⁾ 제33조에 근거를 둔 자원보호자제도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위원제도가 그 예이다. 먼저, 자원보호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을 의미한다. 자원보호자제도는 1985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자원보호자 및 수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소년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감호인)’로 인정된 후 1989년 전면개정된 소년심판규칙에서 위촉과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된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는 1호 처분 외에 보호관찰처분(4·5호),⁹⁾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호), 병원·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7호), 소년원에 송치(8·9·10호)

8)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호처분의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9) 보호관찰은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및 범죄예방위원의 원조를 받게 하여 교화·개선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등이 있으며 1호와 6호 처분에 대해서만 ‘감호를 위탁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보호처분상의 1호, 6호, 7호처분은 집행기관이 개인이거나 아동복지시설, 병원·요양소로 이들의 위탁기관은 법원이며, 소년부는 그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소년법 제41조). 반면 보호관찰처분과 소년원송치처분의 집행기관은 법무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1·6·7호처분의 집행기관을 수탁자라고 하고 보호관찰관, 소년원을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고, 감호는 친권의 일부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처분은 ‘감호’와는 무관하다는 차이가 있다.¹⁰⁾

그러나, 자원보호자제도는 원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소년에 한해 위탁(foster care), 그룹홈(group home), 시설보호(institution)를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자원보호자는 ‘감호인’¹¹⁾이라기보다는 멘토에 가깝다(이동진, 2002: 179). 또한, 보호소년을 면접 관찰하여 보호, 지도, 원호한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처분과 유사하다. 단, 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이나 자원보호자의 면접 관찰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자원보호자는 감독기관이 법원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자원보호자 처분율은 판사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자원보호자 위촉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또한, 2008년 현재 전체 보호사건 가운데 자원보호자 위탁처분율은 8%를 넘지 않고 있으나 1호 처분(1·2호, 1·3호 병합처분 포함)의 70% 정도가 자원보호자 위탁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감호는 친권의 일부라는 점에서 보호처분은 친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후견주의 즉, 국친사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11) 자원보호자 중 소년의 감호인을 실무에서는 ‘신병인수자원보호자’, 그렇지 않은 경우 ‘신병불인수자원보호자’라고 한다. 후자의 경우 소년의 원래 보호자가 감호인이 되며 자원보호자는 면접 관찰과 지도를 행한다. 자원보호자감호위탁처분인 경우 보호자감호위탁처분과 달리 보호관찰처분이 병과 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이동진, 2002: 23).

<표 II-1> 자원보호자 위탁처분 현황

(단위: 명·건, %)

구분	전체보호 사건(A)	1호처분 (B)	자원보호자 위탁처분 (C) ¹⁾	B/A* 100	C/A* 100	C/B* 100	자원 보호자 현황1)
1997	42,104	6,892	1,129	16.4	2.7	16.4	120
1998	39,910	6,708	1,059	16.8	2.7	15.8	113
1999	36,777	6,688	1,777	18.2	4.8	26.6	113
2000	35,342	7,385	2,031	20.9	5.7	27.5	115
2001	27,314	6,057	2,212	22.2	8.1	36.5	180
2002	24,048	4,487	2,591	18.7	10.8	57.7	176
2003	22,569	4,806	2,354	21.3	10.4	49.0	174
2004	19,958	3,353	1,500	16.8	7.5	44.7	182
2005	21,135	4,166	2,656	19.7	12.6	63.8	191
2006	20,241	4,596	2,590	22.7	12.8	56.4	199
2007	26,874	6,536	2,056	24.3	7.7	31.5	199
2008	30,222	3,214	2,149	10.6	7.1	66.9	200

주 1)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내부자료(2009).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참조.

이와 함께 <표 II-2>를 보면 자원보호자감호위탁 현황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판사의 영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 교육안에 따르면 자원보호자는 한 달에 4회 이상의 상담을 권장하고 있고,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¹²⁾의 경우 월 1회 이상의 지도를 권고하고 있어 대상소년과의 접촉강도는 자원보호자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자원보호자는 소년감호일지를 3개월에 1회 작성하여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사무국을 통하여 소년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범죄예방위원은 상담통보호서를 월 1회 작성하여 해당 보호관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차이가 있다. 소년자원보호자는 보통 기존 자원보호자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원보호자협의회에

12) 범죄예방위원은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와 관련되는 선도위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특별범죄자원봉사위원, 갱생보호와 관련되는 갱생위원을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보호관찰에 중점을 두며 범죄예방위원연합회는 범죄예방자원봉사자 기본규정(법무부 훈령 제570조 제3조)에 의거하고 있다(법무부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 <http://www.bumbang.or.kr>).

서 이력서, 각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의 서류 평가를 실시하며 법원에서 2차 서류 평가를 거쳐 법원에서 위촉한다. 별도의 교육 및 연수과정을 두지 않고 있고 정기총회 및 연 1회의 세미나를 통해 기초교육과 전문가의 강의 를 제공하고 있다(서울가정법원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내부자료, 2009).

<표 II-2> 지역별 자원보호자감호위탁 현황

(단위: 명·건, %)

법원	활동시작 연도	자원보호자감호위탁현황					
		1997			2008		
		A	B	B/A	A	B	B/A
서울	1985	150	773	5.2	170	197	1.2
인천	1992	24	9	0.4	28	134	4.8
수원	1992	76	25	0.3	99	177	1.8
춘천(속초)	1996	88	115	1.3	110	62	0.6
대전	1998	-	-	-	134	274	2.0
대구	1997	70	72	1.0	140	265	1.9
부산	1997	-	-	-	77	512	6.6
창원	1997	26	53	2.0	149	195	1.3
광주	1992	83	34	0.4	133	210	1.6
전주(군산)	1997	32	24	0.8	74	120	1.6
계		549	1,105	2.0	1,114	2,146	1.9

주 1) A는 자원보호자의 수 B는 자원보호자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임. 2) <표II-1>의 자원보호자 수에 비해 감호위탁 사례 수가 현저히 많은 것은 자원보호자 1명 당 다수의 사례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자료: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내부자료(2009).

(2) 범죄예방위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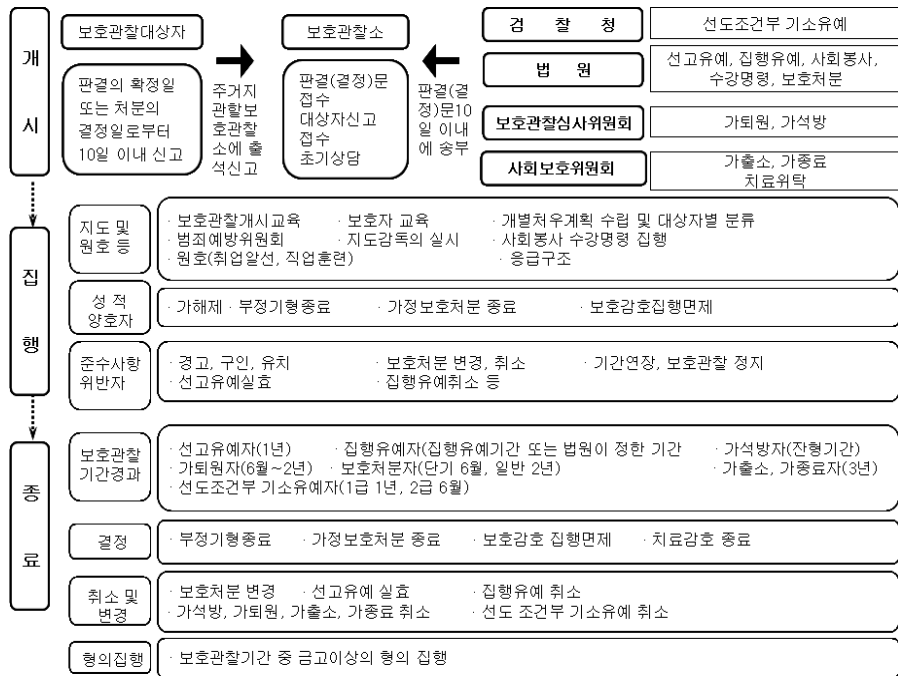
범죄예방위원은 시·군·구별 상황을 감안하여 인구 1천 명 당 1인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이들은 소년 및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감독 보조,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감독 보조, 수강명령 강사 참여 등 대상자 교육, 소년원 및 교정시설 수용자 가정 환경조사 보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원호 활동을 수행한다. 이 외에

도 법무부 훈령(제570조 3조)을 보면 범죄예방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과 학교폭력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의료 및 약품지원, 기타 지역 내 범죄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은 지도·감독과 원호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하여금 그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구체적으로는 대상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행동과 환경 관찰,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적절한 지시와 사회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후자는 대상자의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숙소나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 기회제공, 환경개선이 주요내용을 이룬다.¹³⁾ 만약 지도·감독만 강조된다면 사회내처우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적인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 내 자원 활용과 범죄예방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범죄예방위원은 월 1회 이상의 대면 접촉, 통신, 동태탐문을 실시하고 활동에 대한 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보다는 대상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지도와 원호에 중점을 둔다. 이들은 연 1회 총 15시간의 보호관찰전문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80%(12시간) 이상 참여한 경우 수료로 인정하고 법무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있다(보호국 관찰과 내부자료, 2006. 11). 범죄예방위원은 <그림 II-3>의 보호관찰 절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단계의 지도 및 원호를 제공하고, 성적이 양호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해제가 가능한데 이 단계에서 범죄예방위원의 원조와 적극적인 지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13) 보호관찰은 범죄통제(crime control), 지역사회재통합(community reintegration), 재활(rehabilitation), 처벌(punishment), 억제(deterrence)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김일수, 2009: 158-159). 교정멘토링은 지역사회재통합과 재활의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교정멘토링을 보호처분과 병용하는 것은 보호관찰의 기본적인 취지와 기능을 유지 혹은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http://www.bumbang.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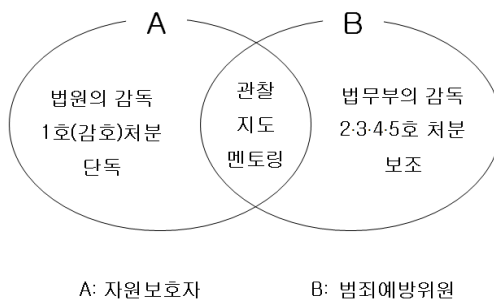
[그림 II-3] 보호관찰실시 절차도

그러나, 범죄예방위원은 정서적 결연자라기 보다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개별 감독자의 역할이 강하며, 관계형성의 형성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거나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김양화, 2002; 변순희, 2006: 26 재인용).¹⁴⁾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II-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원보호자와 범죄예방위원은 관리기관과 보호처분의 종류 및 역할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원보호자와 범죄예방위원의 가장 큰 공통점은 대상자에 대한 관찰과 지도를 포함하는 멘토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14) 전담검사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대상 소년이 선도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을 경우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선도보호 조치를 해제한다. 단, 선도경과가 미흡한 경우 선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위원은 경과통보서(상담통보서)에 해제 혹은 연장 필요성 유무를 기재하여 월 1회 보고하여야 한다.

것이라 하겠다. 단, 선도방법과 범죄예방위원의 교육내용을 보면 멘토로서의 자질함양 보다는 대상 청소년에 대한 조사와 보호처분의 이해 및 집행 실무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청소년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멘토링과는 접근방법이 다소 상이하다.¹⁵⁾ 따라서 실질적인 범죄예방과 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보호자와 범죄예방위원의 양성과정, 관리 및 접근방법에 근원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그림 II-4] 자원보호자와 범죄예방위원의 역할 비교

(3) 수사절차에서의 다이버전 확대

개정소년법 이전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훈방,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들 수 있다. 훈방과 단순기소유예를 단순 다이버전이라고 한다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개입형 다이버전으로, 전자는 범죄소년을 아무런 감독이나 원호대책 없이 사회에 그대로 복귀시킨다는 것은 범죄환경으로의 귀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재범방지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고 경찰단계의 다이버전인 훈방

15) 선도유예 운용지침에는 범죄예방위원이 대상소년의 선도시 접촉장소, 주변환경 및 범인성 요인, 가족상황 및 보호자 등 가족 관계, 성장과정(학력, 경력 등) 및 교우관계, 건강상태에 관해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예방위원의 교육내용을 보면 교양, 보호관찰법령, 보호관찰 현황, 지도실무(지도·감독 방법, 대면 접촉 기법, 소재확인 요령, 제재조치), 조사실무, 경과통보서 작성 등으로 15시간이 구성되어 있다.

역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단순훈방이 아닌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오영근, 2009: 18).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도유예 청소년 가운데 10명 중 1명이 재범을 하며 재범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단순히 지역사회에 방면할 것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별도의 처우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5> 선도유예 소년의 재범률

(단위: 명, %)

년도	선도유예 인원	죄 명 별 재 범 자 수						
		계	재범율	절도	폭력범	강도	강간	기타
2003	6,122	624	10.2%	290 (46.5)	176 (28.2)	13 (2.1)	2 (0.3)	143 (22.9)
2004	4,977	608	12.2%	294 (48.4)	176 (28.9)	3 (0.5)	3 (0.5)	132 (21.7)
2005	5,511	668	12.1%	307 (46.0)	174 (26.0)	14 (2.1)	3 (0.4)	170 (25.4)
2006	5,626	885	15.7%	394 (44.5)	221 (25.0)	18 (2.0)	19 (2.1)	233 (26.3)
2007	6,610	1,166	17.6%	529 (45.4)	296 (25.4)	19 (1.6)	16 (1.4)	306 (26.2)

주: ()안은 점유율임

자료: 대검찰청(2007).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일종의 형사제재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이 아닌 검사가 부과하여 위헌 문제가 있고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소년법은 범죄예방위원회나 선도교육에 관련한 단체나 시설에서 선도 등을 받게 하는 제4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개정소년법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데, 이는 소년에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범죄예방위원을 포함한 멘토의 활동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러나 경찰의 훈방 및 선도조건부 훈방에 관한 근거는 여전히 두지 않고 있

어¹⁶⁾ 경찰 단계에서 멘토를 활용한 공식적인 멘토링 활동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제49조의 제2항에서 결정전 조사제도¹⁷⁾를 신설하고 제17조의 제2항에서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에 대응하는 보호사건에서의 국선보호인제도를 신설하여 인권보장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개정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이 보다 다양화, 내실화 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7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고,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보호관찰의 부수처분이 아니라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제32조 제3, 4항은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으로 하여 대상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제33조 제4항은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간을 변경하여 규정하였다. 이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에 관한 그 동안의 문제점 지적을 개정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오영근, 2009: 20). 제32조 제1항 제8호는 1개월 이하의 소년원 송치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체험 활동 중심의 개방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단기 집중적 인성교육으로 비행에 대한 억제력을 향상시켜 재범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한영선·이영호, 2008: 11).

16) 검찰에서는 경찰의 훈방과 선도조건부 훈방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형사소송법상 사건의 종결권을 검사에게 인정하는 것과 모순되고, 경찰의 주장이 수사권독립 요구와 맥을 같이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특별법(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오영근, 2009: 19).

17)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분류심사관 등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제32조 제2항에는 대안교육·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수처분으로 규정하여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집중적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⁸⁾ 더불어 보호관찰 등에 관한 시행규칙(2009. 11. 27)에서는 멘토를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여 개정법의 취지와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의 제2항).¹⁹⁾ 그러나,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소년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소년의 보호관찰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6개월로 한정된 위촉기간의 문제와 특별한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개정소년법의 19세 미만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요약하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보호처분 요약표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9세 미만)	수탁자 혹은 집행기관
1호	보호자3)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¹⁾	10세 이상	보호자 민간시설, 개인 (자원보호자)4)

- 18) 제32조 제2항(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 내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19)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조항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과정을 통한 대안교육, 소년의 상담 및 교화와 관련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멘토를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라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9세 미만)	수탁자 혹은 집행기관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민간단체, 시설 범죄예방위원 의 보조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보호관찰소 범죄예방위원4)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2년 ²⁾	10세 이상	보호관찰소 범죄예방위원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¹⁾	10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¹⁾	10세 이상	의료보호시설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이 내	10세 이상	소년원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이 내	10세 이상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

주: 1) 6개월 연장가능. 2) 1년 연장가능. 3)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2조). 4) 자원보호자는 1호처분에 따른 단독활동이며 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임출처: 소년법(시행 2008. 6. 22)을 참고로 재구성함.

이와 함께 소년법원에서 행하는 보호처분의 현황은 <표 II-4>와 같다.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한다. 특히, 보호자 및 자원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에 해당하는 1호 처분의 경우 전체 보호처분의 1/4 정도에 해당하며, 1호 뿐 아니라 보호관찰의 경우 대상 청소년이 보호자

등 지지체계가 취약하다고 판단될 때 판사가 멘토링을 병과하도록 처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표 II-4>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계	보 호 처 분										불 처 분	심 리 불 개 시	검 찰 청 송 치	타 법 원 이 송	기타
		소계	1호 보호 자등 에 감호 위탁	1·2호 병합	1·3호 병합	2호 단기 보호 관찰	3호 보호 관찰	4호 보호 시설 등에 감호 위탁	5호 병원 · 요양 소에 위탁	6호 처분	7호 소년 원 송치					
2003	26,484 (100)	22,569 (85.2)	4,806 (18.1)	[7,383] (27.9)	[7,646] (28.9)	5 (0.0)	6 (0.0)	534 (2.0)	- (0.0)	1,107 (4.2)	1,082 (4.1)	1,224 (4.6)	2,448 (9.2)	208 (0.8)	30 (0.1)	5 (0.0)
2004	22,678 (100)	19,958 (88.0)	3,353 (14.8)	[6,634] (29.3)	[7,322] (32.3)	8 (0.0)	7 (0.0)	547 (2.4)	- (0.0)	1,027 (4.5)	1,060 (4.7)	1,106 (4.9)	1,431 (6.3)	115 (0.5)	62 (0.3)	6 (0.0)
2005	24,303 (100)	21,135 (87.0)	4,166 (17.1)	6,897 (28.4)	[7,470] (30.7)	9 (0.0)	9 (0.0)	577 (2.4)	5 (0.0)	1,053 (4.3)	949 (3.9)	1,228 (5.1)	1,758 (7.2)	129 (0.5)	47 (0.2)	6 (0.0)
2006	25,262 (100)	20,241 (80.1)	4,596 (18.2)	7,003 (27.7)	6,416 (25.4)	10 (0.0)	10 (0.0)	462 (1.8)	10 (0.0)	883 (3.5)	851 (3.4)	1,512 (6.0)	3,344 (13.2)	50 (0.2)	106 (0.4)	9 (0.0)
2007	35,514 (100)	26,874 (75.7)	6,536 (18.4)	10,391 (29.3)	7,639 (21.5)	34 (0.1)	9 (0.0)	478 (1.3)	27 (0.1)	957 (2.7)	803 (2.3)	2,056 (5.8)	5,957 (16.8)	67 (0.2)	546 (1.5)	14 (0.0)

주: 2호 및 3호 처분 []내는 타 처분과 병합된 인원수임

자료: 법원 행정처, 『사법연감』, 2003~2007.

(4) 소년법 내의 다기관 협력 관련 조항

개정소년법의 의미 중 하나는 비행예방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는데 있다. 즉, 개정소년법에는 비행예방정책(제67조 제2항)을 별도로 두고 첫째,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둘째, 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⁰⁾

지역사회는 ‘비행성의 사정과 심사·처우의 유형과 방식의 결정·처우서비스

20) 그러나 당초 소년법 개정위원회에서는 현행 사법처분과 복지처분 사이의 괴리가 커서 그 괴리를 메워줄 필요가 있고,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간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등을 근거로 소년법 제4장에 비행예방의 장을 신설하고 비행예방정책, 지원 및 비용의 보조, 지도·감독 등의 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개정안은 실현되지 못하였다(오영근, 2009: 22-23).

의 전달 및 집행'이라는 소년사법 전 과정에 관여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김은경 외, 2007b: 194, 김성언, 2009: 63),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치우서비스 인프라의 구축과 소년사법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마련이 기본전제가 된다. 예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는 소년사법과 사회복지로 지역사회 내에서 결합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며 공동체 사법(community justice)의 이념(Clear and Karp, 1998; Williams, 2005)을 구현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통합지원체계는 '사례의 발견·의뢰→선별→사정→상담·치료·지원→자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중심으로 다기관이 분업화된 역할과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사법체계 하에 놓여있는 범죄소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활용하여 치우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여 허브(hub)기능을 담당하는 각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의뢰하는 '발굴·의뢰기관'의 역할이 요구되며, 각 기관은 소년의 다차원적인 문제와 욕구를 분석하고 필요한 치우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지역 내 기관을 선정하여 연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호처분은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이 강하여 처벌적 요소에 치우(복지)적 요소가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보호처분이 부과된 소년범의 치우에는 다소 상이한 접근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예로, 보호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치우보다는 처벌과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년사법기관의 주도적인 개입이 요구된다는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 검찰, 보호관찰소, 소년원, 법원 등 소년사법기관이 허브기관이 되어 보호소년의 치우에 필요한 지역자원들과 연결망을 구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소년사법기관이 기존의 **CYS-net**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와 재활에 필요한 치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감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김성언, 2009: 65). 즉, 기존의 통합지원체계와 소년사법기관 중심의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예방과 재범방지의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합지원체계의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전제가 요구된다. 먼저, 지역사회 내에 활용가능한 자원이 있어야 하며 이들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합의와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소년법 내에 근거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자원과 소년사법체계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네트워킹 전략이 필요하다. 즉,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역할과 서비스 기준에 관한 표준화된 공식적인 규약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National Ireland Women's Aid Federation, 2004: 34-36). 멘토링의 경우 멘토를 확보하고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학, 민간단체 및 기관과, 소년사법기관, 정부, 그리고 각 지자체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간의 합의와 역할 구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멘토의 발굴과 양성, 교육·훈련 및 배치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위원(검찰 및 보호관찰소), 소년보호위원(소년원), 자원보호자(법원소년부)는 선도후견인 혹은 회복안내자²¹⁾와 그 역할 및 기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들 민간 자원봉사 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행 보호처분과 처우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존재하므로 개정소년법은 일부의 의미와 일부의 한계를 가진다. 즉, 제67조에서 ‘예방정책의 수립과 공공-민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나 이를 실현하고 집행하기 위한 구체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비행예방 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비행예방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민간 자원 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등 당초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당초 개정안 제69조(지원 및 비용의 보조) ‘법무부장관은 소년의 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시

21)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18조)에 의하면 청소년복지지원을 위탁받은 단체는 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소년 개인별로 회복안내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복안내자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조)의 청소년지도자나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소년원장 및 법원소년부로부터 추천받아 운영된다.

설 중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0조(지도·감독) ‘법무부장관은 제69조에 의해 선정된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의 조항이 삭제되어 개정법에서 언급한 정책과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이론적 기반

이른바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는 사회학습 이론과 사회적 지지이론, 그리고 비행의 원인을 일부 설명하는 사회유대이론과 차별접촉 및 하위문화이론으로 필요성과 근거가 일부 설명된다(김지선, 2002).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고위험요인과 비행의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소년의 경우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에 보다 주목하였다.

먼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과 Skinner의 조작적 조건형성 원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학습의 결과이다. 즉,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며 개인의 행동은 이러한 학습의 결과라는 것이다. 즉, 청소년이 역할모델인 멘토와의 상호작용과 행동 모방을 통해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여러 연구에서 의지할 수 사회적 유대, 의미 있는 사회적 접촉, 심리사회적 자산, 지지체계의 상호협조 등의 개념이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다. 요약하면 사회적 지지란 사람들간의 정서적 관심과 위로, 실질적인 도움, 이해 등을 교환하는 것으로써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받으면서 대화와 관계망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개인의 부적응을 예방하는 개입과 프로그램 설계 시 중요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심리적 만족을 유발하는 직접효과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 심리·정서적인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완충효과를 가질 수 있다. 결국 멘토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멘티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²²⁾ 단, 사회적 지지의 측정에서는 지각된 지지의 초점을 두고 지지 제공자 및 지지내용과 만족도를 의미하는 기능적 측면과 접촉빈도·밀도·안정성 및 동질성을 의미하는 구조적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Heller, Swindler, and Dusenbury, 1986).

사회유대이론에서 비행의 원인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영향력이라 본다. 즉,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유대가 약해지거나 끊어지면 비행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유대를 구성하는 요소는 애착(attachment), 헌신(commitment), 참여(involvement), 그리고 신념(belief)이며 이와 같은 요소들의 강화를 통해 청소년이 비행을 선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멘토링 관계를 통해 멘토와의 애착과 헌신을 경험하고 활동과 사회참여를 통해 비행행동을 하지 않는 개인적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즉, 사회유대이론에서 비행청소년은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유대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멘토링은 유대 요소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차별접촉이론은 청소년이 접촉하게 되는 비행집단 내지 비행친구와 접촉하는 빈도, 지속기간, 강도에 따른 차별적 접촉은 사회규범에 대한 비우호를 확대하여 비행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하위문화이론은 비행을 계층간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시켜 비행청소년은 그들만의 다른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동조하면서 범죄를 학습하거나 행위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가지게 된다고 본다. 즉, 비행에 대한 해결책은 하위문화 혹은 비행 집단 구성원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재사회화시키는 것이다. 멘토링

22) Wideman(1991)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지각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험(at-risk) 상황에 있는 청소년 및 비행청소년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지선, 2005:35 재인용).

관계를 통해 멘토로부터 사회규범에 대한 비우호적 정의를 축소시킬 수 있고 멘토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집단 내에서 형성해 온 가치관과 관심을 변화시켜 비행동기 유발을 억제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김지선, 2005: 37-8).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멘토링은 멘티 뿐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체계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개입의 지점이 될 수 있다. 즉, 멘티는 전체 체계의 일부이자 다른 체계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멘티와의 정서적 결연을 통한 멘티의 변화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멘티와 관련된 가족, 또래, 학교, 사회 등 연관된 체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반대로 환경의 변화를 통해 멘티의 변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따라서 생태체계학적 관점에 멘토링에 접근할 때는 멘토와 멘티의 일대일 관계를 넘어 멘티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 및 상황과 환경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단, 이러한 접근이 개별 멘토의 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멘토에 의한 포괄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전달체계 및 여건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가 된다.

다음으로 탄력성 혹은 적응유연성은 역경이나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되돌아오고 회복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탄력성은 위험요인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을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이라 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조차 최소한의 영향을 받으며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고위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적응과정을 원조하는 예방적 접근의 이론적 틀로 논의되는 개념이다(박현선, 2000).

탄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 옆에 조건없이 그들을 수용하는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유의미한 타자(significant others)가 있다는 것이며, 적절하고 건설적인 어른의 지도와 감독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탄력성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친화력 있는 인간관계의

경험은 탈비행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라는 점에서 멘토링은 비행의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다양한 보호요인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탄력성증진모델(Resilience Enhancing Model)에 따르면 멘토는 멘티의 스트레스원이나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멘티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다(Green and Cohen, 2005: 307).²³⁾

마지막으로 자극통제이론(host provocation theory)을 들 수 있다. 자극통제이론은 스트레스 병리론 및 사회통제가설이 조합된 이론으로, 개인적인 문제나 아동학대 및 행동적 문제와 같은 도전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위기 청소년(at-risk youth)이 약물, 알콜, 비행친구, 폭력적 매체물과 같은 반사회적 스트레스원에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비행행위는 그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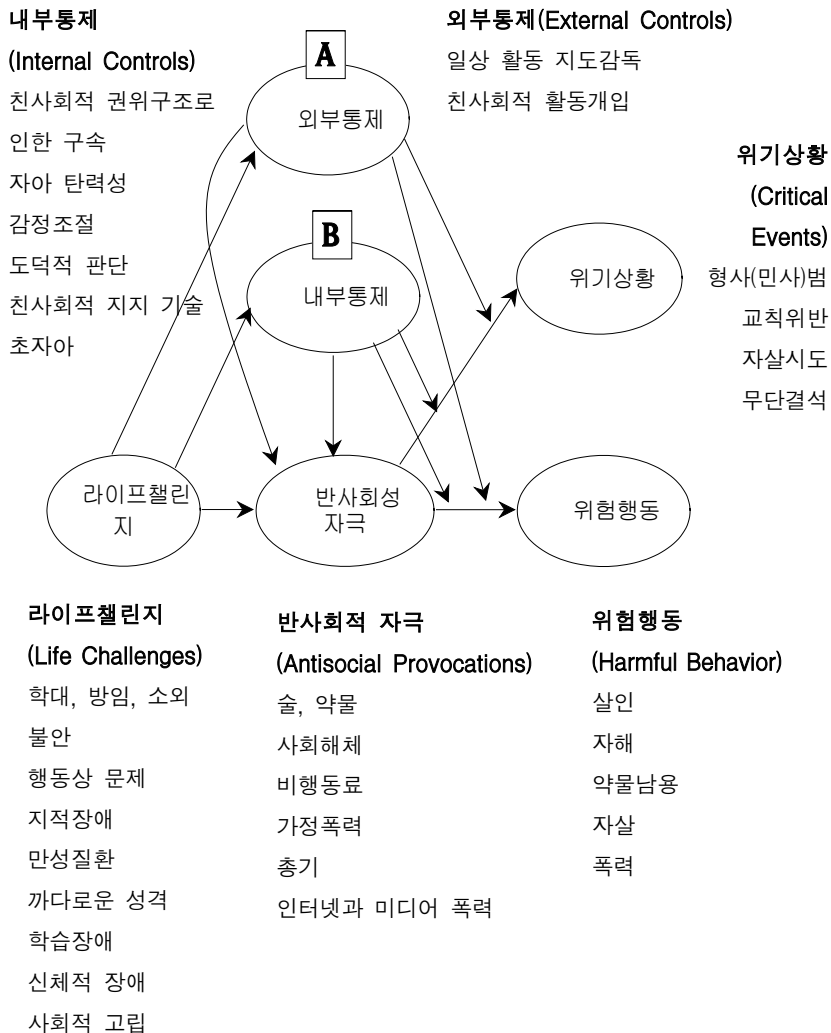
자극통제이론에서는 과도한 반사회적 자극에 노출된다는 것이 불충분한 사회통제의 일차적 증거라고 보는데 특히, 청소년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등의 내부적 통제와 부모 및 다른 사회화 기제(socialization agents)와 같은 외부적 통제가 불충분한 경우를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학대, 행동적 문제, 인지장애 등 다양한 개인적 요소와 약물과 알콜, 폭력 매체 등과 같은 환경적 자극에 대한 노출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비행의 유지와 중단에 미치는 영향이 그 동안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한다. 청소년은 학대, 행동적 문제, 인지 장애, 우울, 까다로운 기질 등과 같은 많은 생애 과제들(life challenges)을 경험할 수 있고 이때 부모의 지도감독, 친사회적 활동들과 같은 외부적인 사회통제를 통해 애착관계, 정서적 통제, 도덕적 판단 등 내부적 통제를 서서히 획득해 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23) 탄력성증진의 접근을 실천하는 멘토는 ① 멘티의 상실, 취약성, 미래를 인정해야 한다 ② 멘티의 스트레스 원을 확인해야 한다 ③ 멘티의 스트레스를 인식해야 한다 ④ 상황을 안정화시키거나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⑤ 변화를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⑥ 멘티의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켜야 한다 ⑦ 멘티의 자기변화에 협력해야 한다 ⑧ 멘티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⑨ 멘티의 결정적 사건에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⑩ 멘티의 역경 속에서 이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⑪ 멘티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Greene and Cohen, 2005: 367-373 참고).

년은 비행친구나 알콜 및 약물사용과 같은 비행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경찰에 체포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과 같은 낙인(stigma)경험은 결국 반사회적인 행동과 문제에 노출되고 범죄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청소년의 내적 통제와 같은 하나의 요소 혹은 애착 관계와 같은 단일 요인이 비행에 이르는 단일 통로(gateway)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림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애과정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내적 통제, 외적 통제 등이 결합하여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에 노출되도록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학대나 행동적 문제들은 어쩌면 지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내적통제와 외적통제 역시 언제나 작동할 수 있고 상습화(recidivism)를 예측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부모의 수퍼비전과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고 친사회적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정도 역시 낮은 경향을 보이며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의 기능적 문제 등 반사회적인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 즉, 범죄소년에게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모니터링이 제공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그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소년들의 낮은 외적통제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극통제이론에 따르면 멘토링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해 범죄의 상습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부모와 교사에 대한 수퍼비전을 통해 외적 통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애착, 자기 통제, 친사회적 가치의 증진을 통해 내적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친사회적 활동을 통해 비행친구들, 약물과 알콜, 폭력적인 매체 등에 대한 몰입을 감소하여 반사회적인 자극에 노출될 가능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rownfield and Sorenson, 1993; Blechman and Bopp, 2005: 454-457).



출처: Dubois et al.,(2005): 456.

[그림 II-5] 자극통제이론

4)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구성요소

(1) 인적요소

일반적으로 멘토링의 인적요소로 서비스 제공자이자 역할모델인 멘토, 직접적 수혜자인 멘티, 멘토링 관계를 지원하는 결연관리자와 슈퍼바이저, 그리고 멘토를 지원하는 멘토 펠로우를 들 수 있다

① 멘토

멘토(mentor)는 청소년과 결연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 및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된다. 이들은 멘티의 개별적·가족적·사회적으로 처한 상황과 특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멘토링 관계의 형성·유지를 위하여 개별·집단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멘토는 상담자, 조언자, 코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구체적인 기술과 행동 증진, 정보 및 지혜 제공, 호기심 자극 등을 유도하며 바람직한 성인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이혜연 외, 2005: 11). 현재 비행청소년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는 연령 및 기타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 별도로 제시된 바 없으며,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자발성·무보수성을 전제로 참여하는 개인은 누구나 가능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특성상 특별범죄예방위원(혹은 특별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이 가능한 자에 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⁴⁾ 무엇보다도 소년사법체계에 놓여있는 이들 청소년과 기꺼이 결연을 맺고 그들의 역할모델이 되어주기를 희망하는 이와 같은 성인을 발견하고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MENTOR, 2006: 5).²⁵⁾

24) 청소년이 희망하는 멘토의 연령은 자신보다 1~10세가 많은 경우라는 응답이 10명 7명에 달하며, 진로와 관련하여 멘토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것 같은 사람 및 선호하는 사람으로 대학생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정무성·남석훈, 2005). 또한 멘토의 성, 인종 및 멘토링 관계의 경험여부가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멘토의 나이가 21세 이상인 경우 만나는 횟수와 목표 달성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Hiatt, 2001). 미국의 경우 현재 활동 중인 멘토의 평균 연령은 34~54세의 중년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8~24세의 청년층이며 고학력자, 자녀가 있는 기혼자, 시간제 근로자의 참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멘토의 성별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ENTOR, 2006).

② 멘티

멘티(mentee)는 보호관찰 대상소년, 소년원 보호소년 뿐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지 않은 소년분류심사원, 대안교육센터 단계의 소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멘티는 소년사법체계 하에 있는 20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학교중도탈락, 보호관찰 대상소년, 학생, 보호소년, 위기·취약 청소년을 제도적으로 멘토링 대상에 모두 포함하고 있다(OJJDP, 2007). 멘토링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할 때 멘티는 멘토링 의도를 이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야 하나 비행청소년 멘토링에서 멘티는 자발성 보다는 필요성이 기본 전제가 된다. 즉, 일반 멘토링의 멘티는 도움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가운데 본인의 참여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나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경우 보호자 및 면회자가 부재하거나 지지체계가 빈약하여 일종의 적극적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다. 따라서, 멘티의 보호필요성을 반영하여 타 처우와 함께 제공된다는 것이 일반 멘토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③ 결연관리자 및 전담관리자

결연관리자(coordinator)는 민간단체, 대학, 기업 등 멘토링 운영 및 지원체로서 멘토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전담관리자는 프로그램의 기획에서부터 운영·관리·평가에 이르는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관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이 둘 간의 역할과 직무는 비슷한 측면이 많으나 전담관리자는 멘토들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비행청소년 멘토링에서 결연관리자와 전담관리자의 역할 모두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직무의 성격과 업무량을 감안할 때 이들의 역할은 분리되는 것이 바람

25)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 멘토의 참여동기(중복응답)는 청소년의 성공을 돕고 싶어서(82%),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76%), 다른 사람의 권유(50%),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43%), 종교적 신념(27%), 나도 어린 시절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22%)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MENTOR, 2006: 8).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일차적 성패는 좋은 멘토의 확보에 있다고 볼 때, 멘토의 참여동기 파악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직하다(김영희, 2006).

이와 함께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특성상 멘티가 처한 상황과 특성 및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멘토링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보호관찰관 등 담당자를 결연관리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결연관리자에게는 멘토, 멘티의 관리와 함께 멘티에 대한 출석과 제재를 포함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멘토, 멘티, 멘토펠로우, 슈퍼바이저, 그리고 외부 자원의 경계에서 이들을 연결하는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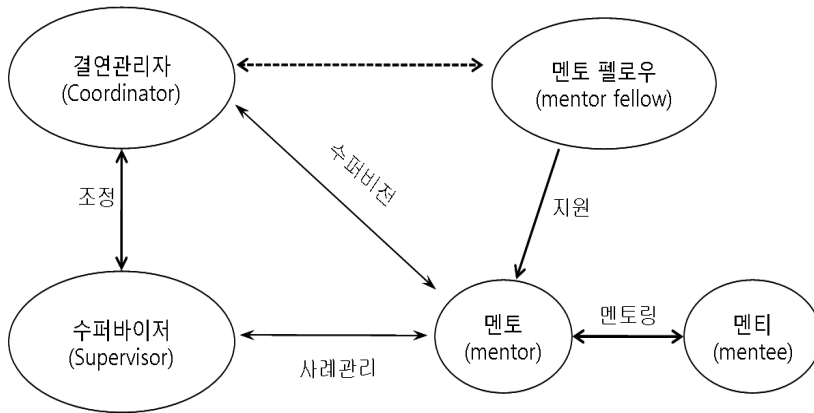
④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supervisor)는 멘토의 멘토라 할 수 있으며 초보 멘토 뿐 아니라 전문적인 멘토까지도 슈퍼바이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멘토는 멘토링 관계에서 전문가의 도움과 자문을 필요로 하며, 슈퍼바이저의 존재만으로 멘토가 자신감을 가지고 멘토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Ramani, Gruppen, and Kachur, 2006). 슈퍼비전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난도의 활동이므로 민간기관이라 할지라도 자원봉사자보다는 유급의 정규직원(전담 관리자 이상) 및 특별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조아미, 2009: 5).

⑤ 멘토펠로우

멘토펠로우(mento fellow)는 멘토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멘토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며 멘티의 부모 및 가족, 담임교사, 그리고 후원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멘토로 참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멘토 교육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결연을 통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멘토펠로우로 활동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멘토를 도와 진로 관련 자료를 찾거나 전문직업인을 만나거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멘토펠로우는 결연관리자와 직접 연결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연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멘토가 사안에 따라 활용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인적구성과 관계를 요약하여 도

식화 하면 <그림 II-6>과 같다.



[그림 II-6]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인적구성 모형

(2) 내용적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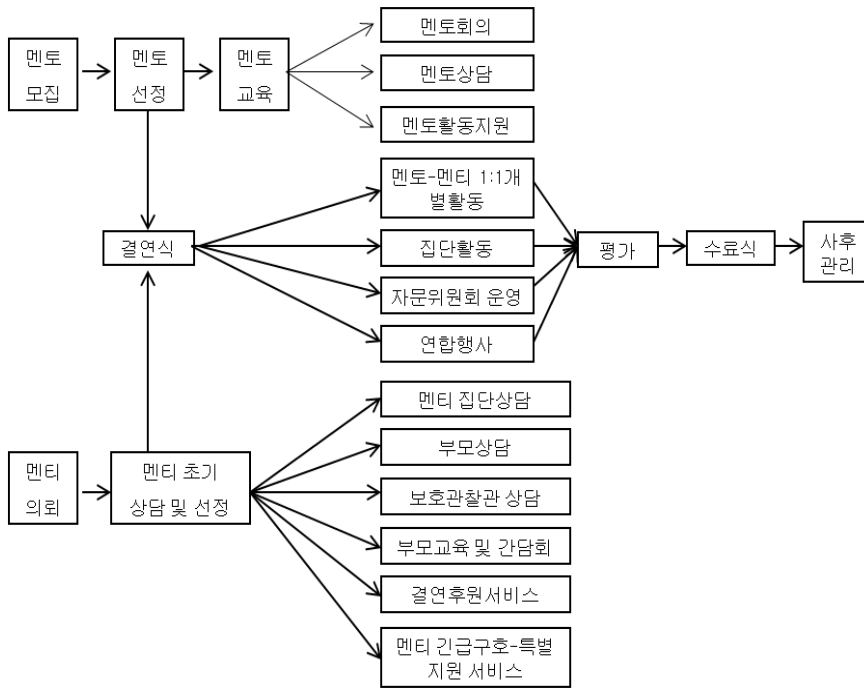
전통적인 멘토링은 일대일 방식이나 형식과 내용면에서 유연성과 포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멘토링 활동은 멘티와 멘토의 일대일 만남과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관계형성(rapport)에 용이하며 멘토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멘토의 자질이 성패가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화된 집단 활동을 통해 일대일 관계를 보완하고 멘토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며 형식보다는 멘티와 멘티의 지속적이면서도 충분한 교류 유지에 기여한다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Butcher and Hall, 1998; Tierney and Branch, 1992; 박현선, 2000). 특히, 일대일의 개별 활동에서도 면대면(face to face) 만남 뿐 아니라 메신저나 문자 등을 활용하는 E-멘토링은 멘토링 관계에서 친밀감을 높일 뿐 아니라 대면할 때와 효과에서 차이가 없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개별 활동시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방법이다(김예성·배정현, 2007; Buckingham, 2002; 조아미, 2009).²⁶⁾ 이 외 개별 활동에서는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 영화, 공연 등의 각

26)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멘토링 형태는 E멘토링+면대면 멘토링이 4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면대면(31.8%), E멘토링(22.0%) 순으로 나타났다(정무성·남석훈, 2005).

중 문화 활동이나 등산 및 스포츠 등의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진로·학습활동으로서 과제 및 학습에 도움을 주거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고 이력서 작성 및 직업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집단 활동은 멘티, 멘토가 2인 1조를 구성하여 다른 멘티, 멘토와 함께 하는 활동으로 집단의 지지와 역동을 통해 멘토링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집단 활동을 통해 멘티와 멘토는 다른 멘티, 멘토의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집단 활동에는 구조화된 놀이, 공동 체육활동, 집단캠프활동, 봉사활동, 사이코드라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사회성을 향상하고 사회재적응을 돕기 위한 맥락에서 구성되어야 한다(이혜연 외, 2005: 13). 이와 함께 특별한 경우 1명의 멘토가 여러 명의 청소년과 결연을 맺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최대 4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MENTPR, 2006: 4). 개별 활동과 집단 활동을 포함한 멘토링의 진행과정의 예시를 요약하여 도식화 한 것이 <그림 II-7>이다.

이와 함께 멘토에 대한 교육은 멘토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멘토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며, 멘토링 활동 전의 사전교육과 결연 이후 진행과정에서의 교육을 포함한다. 멘토 교육은 주관하는 기관이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멘토링과 멘토 자신에 대한 이해, 멘티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멘토의 기술 및 전략, 멘토링 실제 등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교육 방법은 강의, 시청각교육, 역할연기 등이 주로 활용된다. 특히, 사전교육에서는 멘토의 책임, 관계형성, 최소한의 상담기법과 보호소년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실제로 활동 가능한 멘토를 선발(screening)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조화된 교재 및 교육계획 하에 수행되어야 하나 현재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멘토 교육 및 운영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림 II-7] 멘토링 진행과정의 예

멘토 교육은 효과적인 멘토링 관계를 위한 세 가지 요소 즉, 지지, 도전, 멘티의 미래에 대한 비전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며, 멘토 역시 그들의 의문점과 문제를 표현하는 기회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수퍼비전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Daloz, 1986; Connor et al., 2000; Sloan and McMillan, 2003).

수퍼비전은 멘토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례회의를 포함하며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멘토링의 전제조건이 된다. 수퍼비전은 자문과 달리 정기적·구조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멘토는 수퍼비전 받은 내용을 실천에 반영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고 수퍼바이저는 이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수퍼비전 과정에서는 멘토를 지지하고 멘토를 통해 멘티를 격려하며 상담기술을 포함하여 멘토링 관계상의 어려움이 사례(case)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멘토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²⁷⁾

이상에서 논의한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구성요소를 정리한 것이 <표 II-6>이다.

<표 II-6>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구성요소

인적요소					내용적 요소			
멘토 mentor	멘티 mentee	결연관리자 전담관리자 coordinator	수퍼바이저 supervisor	멘토펠로우 mentor fellow	활동내용		운영내용	
					개별 활동	집단 활동	멘토 교육	수퍼 비전
자원 봉사자	범죄소년 우범소년 촉법소년	운영기관 담당자	보호소년 담당자, 내·외부 전문가	자원봉사자 부모 교사 후원자	멘토, 멘티의 일대일 활동	다른 팀과의 집단· 연합 활동	멘토 대상의 일련의 교육	사례 의 지도 감독

주: 이해연 외(2005: 10-15), 조아미(2009)를 참고로 재구성함.

2. 비행청소년 멘토링 및 다기관 협력사례

1) 국내 현황

① 민간단체 기반 멘토링 프로그램

국내의 구조화된 멘토링 프로그램은 1997년 서울시교육청 주관의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결연프로그램으로, 학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을 멘토로 결연하는 일종의 학교기반 멘토링(School-Based Mentoring)이라 하겠다(유성경 외, 1999). 이후 1998년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에서 서울동부지청과 공동주관으로 기소유예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평화멘터’라는 비행청소년 멘토링이 처음 시도되었고, 이를 계기로 99년 사단법인 한국청년연합회(KYC)²⁸⁾에서 보호관찰 대

27) 멘토 교육 및 수퍼비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세부보고서(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에서 기술하였다.

28) (사)좋은친구만들기운동(<http://goodfriend.kyc.or.kr/what/index.htm?tch=study>), 한국YMCA의 사각지대 10대를 위한 사회안전망 틈즈비전프로젝트 등이 있다

상소년을 멘티로, 직장인을 멘토로 하여 재범예방과 사회적응 원조를 목표로 하는 ‘나하고 친구하자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전국 11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김지선, 2002: 107-108).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멘토링은 복지재단 및 기업의 후원과 민간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의 형태와 대학기반의 멘토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첫째,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전문 상담가를 멘토로 위촉하여 지역 내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멘토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며 멘티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지역 내 자원 연결이 원스톱(one-stop)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멘토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므로 다수의 멘티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둘째, 일선 보호관찰소에서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멘토로 활용하는 형태로 이들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보험 등 안전장치가 없다는 문제와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 근거 즉, 소년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조항으로 인해 뜻이 있는 일반성인 누구나 멘토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의 협력 사업으로 멘토링과 멘토 및 코디네이터의 교육까지 병행하고 있어 멘토의 수급 및 양성과 실제적인 멘토링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범죄소년을 모두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지역단위 사업이라는데 한계가 있다.²⁹⁾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복지재단의 지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범죄소년 대상 프로그램 현황을 일부 예시로 제시한 것이 <표 II-7>이다.

(<http://teensvision.ymcakorea.org/main.php>).

29) 멘토는 대학생을 포함한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멘티는 시설보호 장애인과 청소년, 보호소년, 새터민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7> 지역사회 내 범죄소년 관련 프로그램 현황

대상	프로그램명 / 주요내용	대상(명)	진행기관
보호관찰 청소년	사례관리, 멘토링, 단체활동, 가족상담, 연계체계 구축(직업훈련/ 약물오남용 방지/성폭력 방지)	853	가양5·부천시덕유· 우만·제주·청주· 태화기독교·포항· 해운대복지관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청주KYC
"	멘토링, 부모교육, 자원봉사	각 기별 15명	대전종합사회복지관
"	텃밭에 꿈을 심는 아이들	63	삼정복지회관
"	사회적응력강화를 위한 임파워먼트	15	용암종합사회복지관
"	보호관찰 대상소년과 성인자원봉사자와의 결연을 통한 사회복귀지원	12	부천종합사회복지관
"	보호관찰 청소년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강화	18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소년원생	사회에서 격리된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적응 및 복귀지원을 위한 교정사회사업	20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 (성범죄)	비행재발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정사회사업 '참부모 되기 연습 교실'	-	와치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 (약물)	집단지도 프로그램	-	가흥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 청소년	지역주민에 의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활프로그램	-	송광종합사회복지관
"	사회적응 지지 프로그램	-	전북종합사회복지관
"	봉사캠프	-	한국복지재단
"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지도	-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 (성범죄)	사회적응 프로그램	-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 청소년	집단지도 프로그램	-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주: 삼성복지재단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서 보호관찰 대상소년 및 보호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현황을 검색하여 일부 제시함(검색일 2009년
9월 20일 기준).

이와 함께 복지재단 및 기업 주관의 E-멘토링 프로그램의 형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어린이재단의 ‘또띠’와 직원과 청소년의 온라인 멘토링을 운영하는 이랜드재단의 ‘이음’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멘토링 활동을 기반으로 하며 주 1회 이상의 웹사이트를 통한 활동을 실시하며 개인 이메일이나 메신저나 휴대폰, 전화가 아닌 공식적인 커뮤니티를 통한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여야 하며 별도의 코디네이터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³⁰⁾

이외에 기업재단의 후원으로 학교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는 초중등학교를 기반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5년간 시행된 바 있으며 보호관찰 중에 있는 한부모가정의 학생 청소년이 멘티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 사업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총 6개 광역시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멘티와 멘토 각 373명과 학교사회복지사 80명이 결연관리자로 참여하고 교사 및 학부모가 멘토펠로우(mentor fellow)로 참여하는 대단위 사업으로 멘토링을 기반으로 직·간접적인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성이 있다. 먼저, 직접서비스로는 멘토링, 분기별 학비를 포함한 장학금 지원, 월례 문화체험 등 체험활동, 자원봉사 캠프, 학기별 8~10회 정도의 집단 활동 등을 제공하며, 간접서비스로는 지역 내 자원연계, 교사연수 및 학부모교육 등 교육홍보, 멘토링 지침 보급, 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 등을 포함하여 대상 청소년의 대인관계 증진과 학교적응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³¹⁾

30) <http://www.tortee.org/>, http://www.elandwelfare.or.kr/business/business02_mento1.asp를 각각 참고할 수 있다. 또띠는 멘토에 대한 사전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하며, E멘토와 E멘티는 코디네이터의 승인없이 사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가지며 2009년 9월 현재 멘토는 1,249명, 멘티는 1,510명, 전체 글 수는 39,893명 정도이다.

31)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주관,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후원으로 2004부터 2008년까지 4개년 간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멘토링 사업(사업명: 꿈toU멘토링사업)이다. 학교사회복지사가 실무자(코디네이터), 지역 내 대학생이 멘토, 해당 초중등학교 학생을 멘티로 하여 학교를 기반으로 멘토링을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2009).

② 대학기반 멘토링 프로그램

대학기반의 멘토링³²⁾은 대학생과 지역 내 보호관찰소와의 개별적인 업무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특히, 학습지도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일부 보호관찰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검정고시 공부방’에서 멘토링과 튜터링(tutoring)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와, 대학생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여 선도활동을 실시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없고 실습 학점 및 봉사활동시간을 인정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간의 활동 및 다양한 활동 위주의 멘토링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기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간의 활동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촉 시 이러한 점에 대한 사전고지가 요구되며, 대학생의 특별보호관찰관 위촉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학기반의 멘토링은 저소득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적 및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고 대인관계 및 인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중앙일보 2009. 4. 28). 또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의 재범방지에도 효과가 있으며(아시아투데이 2009. 9. 14), 비행행동이 유의하게 감소되고 사회적 지지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하성민, 2001) 대학생을 멘토로 양성하여 교정멘토링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③ 다기관 협력사례

지금까지 보호관찰소와 소년보호기관의 다기관 협력사례에 관한 연구는

32) 대학기반의 멘토링은 비행청소년 멘토링 영역 외에 장애학생, 빈곤학생,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위탁가정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과 진로,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양대 사회봉사단의 멘토링 및 튜터링, 서울대의 학교-교육청-구청의 연계를 통한 학습지원사업(새싹멘토링사업, SNU멘토링사업), 건양대학교의 비행청소년 멘토링 사업, 34대 대학이 참여하는 송파구 멘토링봉사단, 경기대 교정보호학과와 비행청소년 멘토링 실습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김성언(2004)은 사회 내 처우를 위한 대표적인 기관인 보호관찰소의 경우 협력기관 간의 일대일 연계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다수의 협력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다기관 협력체계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JUMP와 같이 정부기관의 관리 하에 비행 청소년 멘토링을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500개 이상의 조직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체계적인 멘토링을 실시하는 BB/BS와 같은 민간기구도 없는 상황이다. 즉, 우리나라의 비행청소년 멘토링은 제도적 뒷받침이나 지원없이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와 지방검찰청 및 보호관찰소와의 개별적인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2008년부터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의 예산지원으로 3년 개년 걸쳐 ‘공공-민간협력의 멘토링 시범사업’이 시행중에 있다. 법무부 산하 6개 소년보호기관 및 보호관찰소와 3개의 민간단체 및 1개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며, 수용보호중인 보호소년까지 멘티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업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예산 및 운영 전반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대상자 수가 전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및 보호소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³⁾

소년법, 소년원법 개정 이후 비행예방을 목적으로 한 다기관 협력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교육청과 경찰청의 협력 사업인 ‘배움터 지킴이 시범사업’, 보호관찰소와 복지 및 모금단체 주관의 ‘청소년 보호관찰 지원사업’,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Wee project’, 그리고 법무부와 민간단체 협력사업인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³⁴⁾ 등을 들 수 있다.

33) 200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기획사업으로 보호관찰 대상소년 멘토링 사업이 3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멘티의 공격성 감소와 재범방지 효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권문일·윤웅장, 2007)

34) 이 사업은 법무부를 멘티기관, 민간단체와 대학을 멘토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총괄운영기관으로 하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지원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9년 사업을 대상으로 멘토링의 효과를 일부 분석하여 정책제언 도출에 활용하였다.

먼저 ‘배움터 지킴이 시범사업’은 전직 경찰관, 교사, 전문 상담가를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5년 전국 초·중·고 71개교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104개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주관으로, 지방교육청 및 경찰청의 협의 하에 시범운영 학교와 지킴이 봉사자를 선발하며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지킴이’1인당 월 60만원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 지킴이의 85%는 전직경찰 및 전직교사로 교내외 순회활동과 교내 안전사고 예방지도 및 귀가지도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학생범죄 건수는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년범죄 대비 학생범죄 구성비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교육부와 법무부 협력의 신규사업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와 교사와의 일대일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해당 멘토링에 참여한 보호관찰 대상학생의 재범률을 1.1%로 낮춘바 있어(교육과학기술부, 2007) 멘토링의 재범억제 효과가 일부 입증된 것이라 평가된다.

<표 II-8>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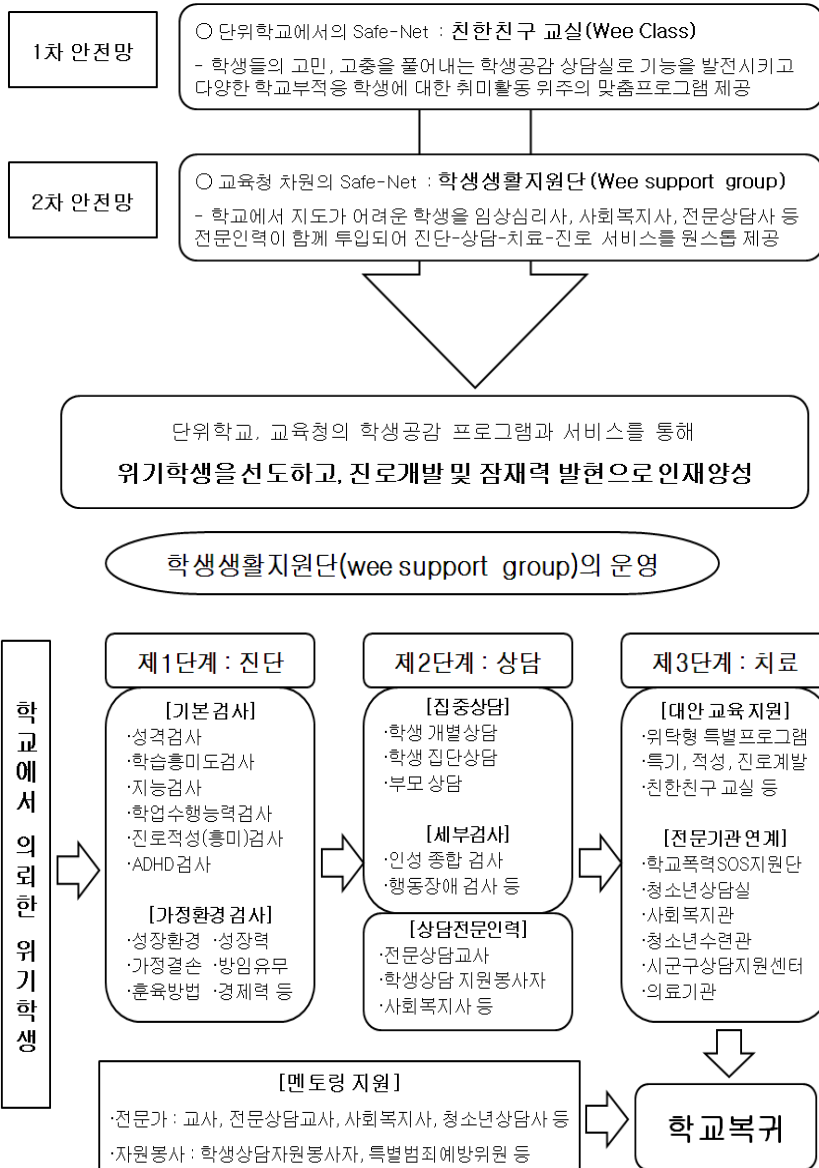
구분	전체범죄(A)	소년범죄		학생범죄	
		인원(B)	구성비(B/A)	인원(C)	구성비(C/B)
2003	2,441,267	104,158	4.3	68,549	65.8
2004	2,606,718	92,976	3.6	63,678	68.5
2005	2,384,613	86,014	3.6	57,980	67.4
2006	2,401,537	92,643	3.9	58,463	63.1
2007	2,548,010	116,135	4.6	69,472	59.8

주: 소년범죄는 19세미만, 학생범죄는 7세 이상 학생신분인 자에 의한 범죄임.
 자료: 대검찰청(2007).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급 학교단위에서 부적응 학생을 지원하는 ‘친한 친구교실(Wee Class)’,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생활지원단(Wee support group)’을 운영하여 위기학생 예방 및 선도를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사업 계획(Wee Project, 이하 위프로젝트)’을 발표하고 다기관 연계 및 멘토링을 주요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다.³⁵⁾ 위프로젝트는 학교폭력 및 비행을 포함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일반학생을 보조대상으로 하여,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2단계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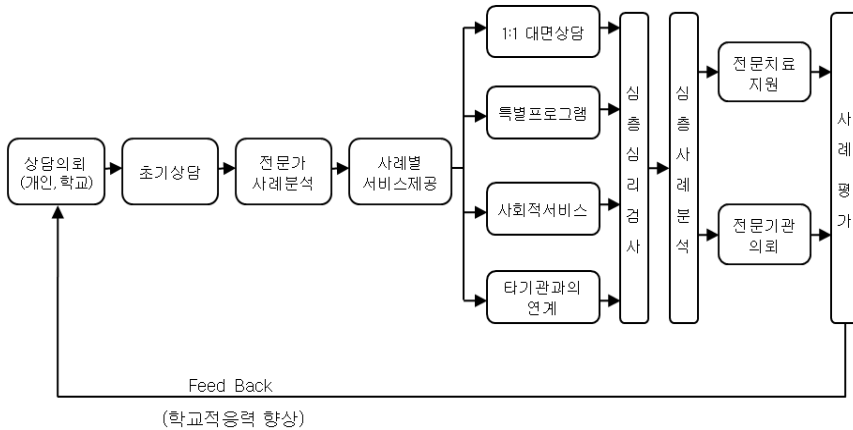
특히, 학생생활지원단은 단위학교에서 선도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들을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과의사 등 전문 인력이 한 그룹이 되어 진단·상담·치료를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s)로 제공하는 신개념의 위기학생 선도방법임을 표방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교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 인력과 교육청 주관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특별범죄예방위원이 멘토로 참여하여 대상 학생의 학교복귀를 지원하는 멘토링이 주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서 의뢰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의 범위를 벗어나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접근방법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학생 범죄의 재범예방과 선도를 위해 위프로젝트와 연계·협력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처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위프로젝트 및 위센터의 지원 흐름도는 아래 <그림 II-8>, <그림 II-9>와 같다.

35) 학교내 친한친구교실은 2010년 1,530개교, 2011년 2,030개교, 2012년 2,530개교로 매년 500개교씩 확대하여 2012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당 2,500만원(운영비 500만원 포함)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친근하게 다가가 상담할 수 있는 학생공감형 학생상담실로 정비하여 상담 및 대안교육 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 9. 24 참조.

[그림 II-8] 위프로젝트 구축도 및 위센터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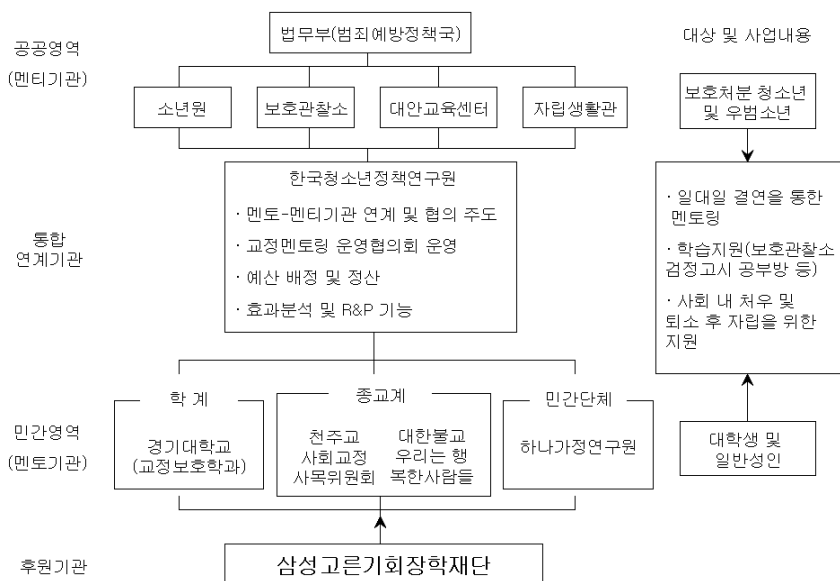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 2. 13 참조.

[그림 II-9] 위센터 지원 흐름도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2003년 8월부터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시범운영 한 바 있다. 소년범 386명의 재범추적 결과 06년 12월 현재 재범율은 3.9%로 같은 해 전체 소년범의 재범율 29.2%의 1/10 수준으로 나타나 소년범 수사시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멘토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재비행의 억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전국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재비행 고위험 소년범 69명과 민간 전문가의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결과 ‘멘토링 진행과정 및 멘토링 이후 6개월 간 재비행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멘토링이 경찰단계에서의 청소년 선도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경찰청, 2007).

‘청소년 보호관찰 지원사업’은 지역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민간기관이 관내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보호관찰 대상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포함한 개별 및 집단상담과 자원연계를 통해 재범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04년 기획사업으로 3개년 간 시행되었으며 보호관찰소와 사회복지기관의 연계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대상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 재범방지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청소년보호관찰전문위원회, 2007).

마지막으로, <그림 II-10>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은 법무부 산하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멘티와 대학생, 종교단체 및 민간단체 소속의 일반성인 멘토와의 일대일 결연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사회 내 처우의 일환으로 정서지원 및 학습지도와 퇴소 후 자립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에서 대학생은 ‘교정실습’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시간 중 수퍼비전이 제공되며, 일반성인은 소속 기관의 자원봉사자로 30시간 내외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이명숙, 2009: 106)



[그림 II-10]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개요

위의 사업들은 기존의 접근방법을 탈피하고 다기관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멘토링과 사례관리를 비행청소년 선도의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일부 기관간의 한시적 연계사업이라는 것과 시범사업의 특성상 대상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2) 국외 현황

국외 현황은 초기 멘토링 프로그램이 처음 개발된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뉴질랜드, 독일, 호주, 캐나다, 이태리 등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비행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멘토링 및 다기관 협력적 개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사례를 고찰하였다.

(1) 미국

① 소년사법에서의 멘토링 제도

미국의 비행청소년 멘토링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멘토링 연구와 프로그램 기획 및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멘토링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연방정부차원의 보조금 종류만 해도 25종에 이르며 고위험 청소년의 빈곤, 학교 중도탈락, 교육기회지원(educational opportunity outreach program), 홈리스 등 문제의 사안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 산하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이하, OJJDP)의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JUMP(Juvenile Mentoring Program)³⁶⁾는 비행의 고위험군 청소년과 소년사업체계에 연루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 대일 멘토링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974년 ‘소년사법과비행예방법’에 멘토링(part G)파트가 추가되었고 JUMP는 중도탈락과 비행, 갱 집단에의 가담을 감소하고 학업성취 향상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교육, 훈련, 조사, 예방, 다이버전, 처우 프로그램에 집행되며 특히, 학업지원, 중퇴예방, 리더십 개발, 멘토링과 같은 활동에 직접 지원이 이루어진다.³⁷⁾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및 지방수준의 멘토링 지원조직 및 실무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OJJDP는 1994년부터 9,200명 이상의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총 299개의

36) <http://ojjdp.ncjrs.org/jump>.

37) <http://ojjdp.ncjrs.org/funding/funding.html>

멘토링 프로그램의 재정을 지원해 왔으며, 피학대아동과 범죄소년, 이민자 자녀, 장애청소년, 부모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하고 있다. OJJDP가 추구하는 JUMP의 주요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위기청소년의 비행 및 폭력집단(gang) 가담 감소. 둘째, 청소년의 학업수행 개선.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의 학교 중퇴율의 감소이며 '94년 이래 2천 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2008년 한해에만 600억원이 투입되었다.³⁸⁾ 특히 청소년 멘토링 교부금(Juvenile Mentoring Grants)은 멘토링을 통한 직접 개입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멘토 양성 및 훈련과 수퍼비전 역량을 배양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OJJDP, 2008: 24).

특히, OJJDP는 미국 23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자원제공을 담당하는 MENTOR(National Mentoring Partnership)를 지원하며 MENTOR는 기금조성, 행사 조직, 워크숍과 회의 개최를 담당하고 주정부, 연방, 기업, 종교 부문등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한다.³⁹⁾ MENTOR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주정부들은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⁴⁰⁾ 멘토링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멘토링 기관과 조직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같은 정보와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OJJDP는 멘토링 실시 기관과 조직에 기술적 지원, 훈련 매뉴얼과 평가등을 제공하는 국립멘토링센터(National Mentoring Center)⁴¹⁾를 설립하여 프로그램 제공자와 연구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우편 리스트 서비스인 멘토링 교환 목록 서비스(Mentoring Exchange List Serve)도 제공하고 있다.

OJJDP가 지원하는 비행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MUSA(Mentoring USA)를 들 수 있다. MUSA는 1987년에 시작된 뉴욕 시에서 규모가 가장 큰 멘토링 프로그램이다.⁴²⁾ 이 조직은 외상적 경험이 있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

38) http://www.ncjrs.org/html/ojjdp/summary_comp_resp/chap3.html

39) <http://www.mentoring.org>

40) http://www.mentoring.org/mentors/national_mentoring_month/

41) <http://www.nwrel.org/mentoring>

42) <http://www.mentoringusa.org/>

그리고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일대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Project SOAR⁴³⁾는 범죄소년 등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멘토링과 학습지원을 병행하여 학업수행 개선을 통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가족 프로젝트(Children, Youth and Families At Risk(CYFAR) Project) 등 특별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명한 목표와 함께 멘토링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지역사회를 욕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고안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과 관련된 범죄소년 혹은 수용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가. Aftercare for Indiana through Mentoring(AIM)(인디애나의 멘토링을 통한 사후보호)로, AIM는 인디애나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2년 동안 실시된다.⁴⁴⁾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AmeriCorps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약 1,400명이 멘티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멘티가 자신의 생활양식, 행동 및 태도를 재평가하도록 지원하고 퇴소 이후의 거처, 교육, 직업 등의 계획 수립을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 실시 후 재범률이 60%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 AMACHI(부모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는 부모가 구금된 아동청소년을 위해 펜실베이니아의 지방 교회들이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⁴⁵⁾ 이 프로그램은 BBBSA와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2003년부터 2년간 517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바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결연관리자가 교도소를 방문하여 부모와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부모의 동의하에 멘토와 멘티의 결연이 이루어지며 멘토링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와 정서적 안정 도모

43) http://cals.arizona.edu/impacts/2003/5_6.html

44) <http://aim.spea.iupui.edu>

45) <http://www.proclamation.org/amachi.html>

이다.

예로, 펜실베이니아 앨러게이니(Allegheny) 피츠버그 리더십 재단(Pittsburgh Leadership Foundation)의 신앙에 기초한 멘토링 프로그램 Amachi Pittsburgh은 지역 내 협력자들은 높은 구금율, 빈곤율, 실업율, 범죄율을 지닌 지역 내 4-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OJJDP, 2008: 17). 이 프로그램은 35개의 위성조직과 15개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위성 멘토링 프로그램(satellite mentoring program)이며 청소년의 학업수행, 학교출석, 성적, 적절한 행동, 자신감, 사회기술, 갈등관리기술의 습득과 긍정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25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87개의 결연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멘토와 멘티의 가족을 지원하는 지원자(fellow) 30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OJJDP, 2008: 17).

다. Juvenile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s (JRA) Mentoring Program(청소년 재활국 멘토링 프로그램)은 시애틀 지역의 청소년 교정시설에서 퇴소 예정에 있는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이다. 청소년들은 최소한 출원 4~6개월 전부터 동성의 성인과 결연을 맺고 1년 이상 공식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진다. 결연관리자와 상담자가 멘토에 대한 초기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 이후 중범죄(felonies)의 34%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⁶⁾

라. Mentoring Children of Prisoners는 보건 및 인적 서비스부의 아동가족국(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부모가 구금된 가정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재소자 부모를 둔 10만 명 이상의 아동·청소년과 성인 멘토의 결연을 지원하고 있다.⁴⁷⁾

46) http://www.wsipp.wa.gov/rptfiles/JRA_mentor.pdf

47) http://www.acf.hhs.gov/programs/fbci/progs/fbci_mcp.html

마. VIP Mentoring(Volunteers in Prevention, Probation and Prisons, Inc., 범죄 예방과 보호관찰 및 교도소의 자원봉사자)⁴⁸⁾는 1969년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에 의한 일 대 일 멘토링으로 시작된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시와 같은 프로그램이다. 현재 자원봉사자의 상당수는 전문가들로 대체되었다.

바. Across Ages는 템플 대학교(Temple University)의 세대간 학습센터(Center for Intergenerational Learning)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며⁴⁹⁾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민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약물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community based)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그램은 9-13세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55세 이상의 지역 내 성인과 결연하여 멘토와 멘티 간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청소년 문제 예방과 세대 간의 화합, 나아가 사회의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56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연구에서 멘티들은 학업수행 개선과 비행행동 감소, 그리고 성인에 대한 이해와 학교 및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⁰⁾

② 멘토링과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의 결합 사례

최근 미국은 사법시스템에서 감독이 필요한 청소년 즉, ‘PINS(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 이하 PINS)’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조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멘토링을 기본적으로 함께 시행하고 있다. PINS는 부모가 부재하거나 부모 스스로 양육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교정이 어렵고(incorrigible), 다루기 어렵고(ungovernable), 부모와 법적 통제를 넘어서는 경 비행자(minor)들을 의미한다(New York State Senate, 1998). PINS의 프로그램 초기 중도 탈락률은 60% 이상에 이르나, 멘토링을 병과한 이후 중도탈락률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습득에 유의한

48) <http://vipmentoring.org/default1.htm>

49) <http://www.temple.edu/cil/Acrossageshome.htm>

50) <http://vinst.umdj.edu/sdfs/Abstract.asp?Code=AA>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을 보고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이송된 청소년들은 행동 및 인성장애를 동반하는 비율이 18~22% 정도이며, PINS는 평가나 처우를 위해 청소년 정신분석가에게 보내지는 사례 중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 이들은 일반 비행청소년과 비교할 때 가족의 역기능 정도가 심각하고 부모의 거부나 심각한 가족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징적으로 이들 중 70%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장애와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을 갖고 있고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Nurnberg, 1976; Kohn and Sugarman, 1978).

이와 같은 고위험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개입은 일반적으로 사회기술(social skill)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는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정신치료적 개입을 병행하여 대인관계와 갈등관리, 폭력예방, 의사소통, 위반으로 보이는 행동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를 병행하고 개별적인 학습지도와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Joffe et al., 1990; Coleman, Pfeiffer and Oakland, 1992; Hains and Hains, 1988; D'Andrea and Daniels, 1996; Wekerle and Wolfe, 1999; Clark, 1980; Cohen, Kulik and Kulik, 1982; Johnson, 1975; Powell et al., 1999). 그러나 이들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처음 3개월 이내에 높은 탈락률을 나타내며 청소년의 탈락률은 성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osenberg, Davidson, and Patch, 1972; Rahav, Nuttbrock, Rivera, and Ng-Mak, 1997; Stein, Hyde, and Monopolis, 1991; Pompei and Resnick, 1987). 법원에 이송된 청소년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50% 이상의 청소년이 6개월 이내에 개입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했으며, 65% 이상은 11개월 이내에 중도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Pompi and Resnick, 1987). 이는 고위험 청소년이 처우를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PINS의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론된 것이 집단상담과 멘토링이다. 집단상담을 병행한 경우 대상 청소년의 학교생활이 향상되었고 취업률이 증가했으며 폭력집단 가담,

체포, 폭력관련 상해는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의 74%가 동일한 문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학교 탈락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집단상담은 발달론적 관점에서 볼 때도 개별 상담에 비해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며 시간과 비용면에서도 효율성이 높다(Hritz and Gabow, 1997; Miano, Forrest and Gumaer, 1997; Kirchler, Palmonari, and Pombeni, 1993).

집단상담이 도래 지향성을 활용하는 것에 반해 멘토링은 성인의 역할모델을 통해 청소년의 발달론적 욕구를 동력화 한다는데 다소 차이가 있다(Smink, 1990; Dondero, 1997). 멘토링 관계의 유지와 효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나 멘토링은 지역 내 성인 자원봉사자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기능수행과 기술습득, 재비행 예방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Frecknall and Luks, 1992; Rajala, Townsend and Talyor, 1996; Roberts and Cotton, 1994; Rogers and Taylor, 1997; Royse, 1998; Slicker and Palmer, 1993).

Gur와 Miller(2004: 587)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학적 변인과 임상적 변인들을 활용한 조사결과,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 내 처우가 개시된 지 6개월 이후에는 멘토링 자체만으로도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순응하도록 하는 독립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부터 2년 사이에는 집단상담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다. 발달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PINS의 부모들은 안정적인 역할모델을 제공할 능력이 없고 청소년 역시 거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멘토는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제공하고 위기관리자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멘토는 멘티와 접촉하고, 가정을 방문하고, 무질서한 가정환경과 구조화된 지역사회 프로그램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역할은 청소년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순응하도록 하는 필수요건이다(Pompi and Resnick, 1987).

특히, 청소년 및 부모가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멘토링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Gur and Miller, 2004: 588). 약물을 오·남용하는 부모의 경우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없고 대인관계 기술을 포함한 사회

기술 습득에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가족응집성이 낮고 청소년이 부모를 수용하는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성인의 역할모델은 문제예방적 측면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다(Hadley, Holloway, and Mallinckrodt, 1993; Hoffman and Su, 1998). 다만,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멘토의 발굴이 가장 큰 관건이기는 하나 취약한 가정환경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멘토링은 학교와 지역 내에서 기능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위기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이다(Frecknall and Luks, 1992; Roberts and Cotton, 1994; Rogers and Taylor, 1997; Royse, 1998; Slicker and Palmer, 1993; Gur and Miller, 2004: 587).

이와 함께 미국에서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의 활성화에는 대학과 기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5년에 창설된 ‘전국 대학총장 사회봉사협의회(Campus Compact)’에서는 멘토링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대학생이 지역 내 초중등학교의 중도탈락 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로 활동하는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캠퍼스 파트너(CPIL)’ 프로젝트를 ’88년부터 ’93년까지 수행하였으며 이 사업에 약 110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러한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대학 간 협의체라는 멘토링 허브(hub)인 중심기구가 존재했고, 연방사회봉사법을 근거로 멘토에 대한 정부 장학지원, 학점인정, 기업의 장학후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법제화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이명숙, 2009: 108).

미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역시 위기 학생들을 위한 학교기반(school-based)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 기업, 교육단체, 신앙에 기초한 조직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편성하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멘토링을 제공하는 200여 개의 프로그램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4천9백7십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¹⁾

51) <http://www.ed.gov/news/pressreleases/2003/01/01302003a.html>

③ 법무부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 사무국(OJJDP)의 멘토링 활동 지원

OJJDP는 1994년 이해 약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비행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하였다(OJJDP, 2008: 24). OJJDP의 청소년 멘토링 교부금은 취약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지역 내 조직들이 멘토의 발굴, 훈련 및 감독을 수행하거나 전국적 혹은 지역 내 멘토링 조직화에 투입된다. OJJDP는 부모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Amachi) 프로그램 지원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멘토-멘티의 결연관계를 확대시킨다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연방 조정기구인 ‘연방멘토링위원회(Federal Mentoring Council)’의 설립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007년의 경우 10개의 교부금(grants)을 지급하였고 지급 범위는 10만 달러에서 13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멘티의 수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다양하다. 대상 청소년은 인디언 출신, 농촌지역, 소수민족, 지역 내 고위험 청소년들이다(OJJDP, 2007: 29). 2008년 회계연도(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에는 전국적으로 위기 청소년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개발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6,0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한 바 있다(OJJDP, 2008: 9).

2006년의 경우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는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MISIY(Mentoring Initiative for System-Involved Youth)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멘토링 전략을 개발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강화를 꾀하여 주도권을 발휘하고자 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에서의 새로운 멘토링 접근을 모색하거나 대학 및 우애조직을 활용하여 새로운 멘토를 발굴·충원하는 노력, 다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네 개의 지역사회에 총 16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예비 프로그램(pilot programs)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OJJDP, 2008).⁵²⁾

52) OJJDP는 지역 내 성인들이 범죄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의 멘토가 되어 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부처의 전국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Youth Ministries)와 공동으로 작업한다. NNYM은 종교조직과 지역사회 기관들이 보다 많은 멘토를 충원할 수 있는 각종 도구(Mentor Recruitment Kit)를 무료 제공하고, DVD, 단계별 충원 전략 소책자(step-by-step recruitment strategy booklet), 포스터 등이 포함

가. 오리건 주 포틀랜드의 소년소녀 자선협회 멘토 프로그램(The Boys & Girls Aid Society's Mentor Portland program)으로 보호시설에 있거나 부모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10-1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한다. 총 13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대일 멘토링과 팀 멘토링을 병행하며 MISIY 교부금을 활용하고 있다.

나. 버지니아 주 로어록 버지니아 멘터 결연을 위한 루터교도 가족부(Lutheran Family Services of Virginia's Mentor Match in Roanoke, VA)는 소년원 출원 후 보호시설에 있거나 소년사법체계에 놓여 있는 8-18세 청소년 20명에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일대일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 조직은 MISIY 교부금을 활용하여 2010년까지 지역 소년법원, 사회복지기관, 루터교도 가족부의 추천을 통해 140명의 멘티를 증원할 계획에 있다.

다. 시카고 아동청소년부(Chicago's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s)은 MISIY 기금을 이용하여 소년사법체계에 연루되어 있거나 연루될 위험성이 높은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멘토링(economic mentoring)을 제공한다. 멘토링의 목적은 청소년이 자신의 학교와 직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별화된 계획(individualized plan)을 개발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 지원과 진학 및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라.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의 멘토링 센터(Mentoring Center in Oakland, CA)는 자립지원시설(juvenile residential rehabilitation facility)에서 지역사회로 재진입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조직이다. 이 센터 역시 MISIY 기금을 활용하여 15-18세 청소년 240명을 대상으로 재범과 재체포 비율 감소를 목표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된다(OJJDP, 2007: 28; www.mentoryouth.com).

OJJDP는 멘토링 조직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MISIY 기금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태평양 연구·평가연구소(Pacific Institute for Reserach and Evaluation, PIRE)에 4년간 교부금을 지급하고 멘토링 조직들의 프로그램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2010년에 마무리될 예정에 있다. 이밖에도 보스턴 지역에 기초하고 있는 전 지구적 비영리단체인 교육개발센터(Education Development Center)에 멘토링 조직의 훈련과 기술지원을 위해 2년간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⁵³⁾

특히, OJJDP는 지역 내 성인이 학교 혹은 시설에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가 되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부처들의 전국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Youth Ministries, NNYM)와 협력하고 있다. NNYM은 신앙에 기초한 조직들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이 보다 많은 멘토를 충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서식, 교육자료 등 실제적인 도구들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OJJDP, 2007: 28).⁵⁴⁾

OJJDP는 전략적으로 종교를 매개체로 하는 신앙에 기초한 조직(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s)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멘토링 활동, 멘토 양성 및 교육,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예로, 플로리다 소년사법부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중간 및 고위험 범죄소

53) 교부금 수령기관들을 위한 첫 번째 집단 훈련은 2006년 12월 LA의 뉴올리언스(New Orleans)에서 개최되었고, 지역 훈련(regional training)과 계획수립 모임(planning meeting)은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2007년 5월에, 각 장소에 걸친 훈련(Cross-site training)은 2008년 9월 뉴올리언스에서 열린바 있다.

54) 2006년 회계연도 동안 NNYM은 멘토 충원 도구(Mentor Recruitment Kit)를 개발하여 무료 배포하였으며 DVD, 단계별 충원 전략 소책자(step-by-step recruitment strategy booklet), 포스터 등이 포함되어 있고 www.mentoryouth.com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하다. OJJDP와 NNYM은 전국 및 지역사회 봉사 협회(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와 파트너십을 맺고 2007년 2개의 전국적 훈련 행사를 주관한 바 있다. 첫 번째 행사는 2007년 2월 26일에서 2월 28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으며, 두 번째 행사는 테네시 주 내슈빌(Nashville)에서 동년 4월 11-13일 사이에 개최되었다. 두 번의 행사는 모두 지역사회 내 단체 및 조직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회원을 발굴하고 충원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7년 개최된 각각의 행사 역시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하였다(OJJDP, 2007: 28).

년을 대상으로 ‘신앙 및 공동체에 기초한 소년 처우 프로그램(Faith-and Community-Based Juvenile Justice Treatment Initiative)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성인 역할모델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 후 도덕성을 갖춘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내 종교단체 및 민간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변화를 위한 사고(Thinking for Change), 성격교육(Character Education), 가족 프로그램 강화(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OJJDP, 2008: 16-18).

④ 멘토링 운영실태 조사 주요 결과

MENTOR는 2005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 센서스 등을 참고할 때 약 1,760만 명의 청소년이 멘토링 관계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미국 내에서 공식적인 일대일 멘토링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은 2002년 2,500,381명에서 2005년 2,993,262명으로 19% 증가하여 약 300만 명의 성인이 청소년과 공식적인 일대일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멘토의 96%가 다른 사람들에게 멘토링을 권고했고 현재 청소년 대상 멘토링에 참여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미국인이 4,400만 명에 이르며 멘토링 관계의 평균 지속기간은 9개월, 전체의 38%는 최소 1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멘토들은 부모가 구금시설에 수감된 청소년, 장애 혹은 이민 청소년, 범죄소년과 같이 독특한 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청소년과 결연을 맺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NTOR, 2005).

MENTOR는 2002년 처음으로 미국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멘토링이 필요한 청소년의 14% 정도만이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조사에서는 멘토링 결함(mentoring gap)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해법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⁵⁵⁾

55) 2005년 조사는 영국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Synovate에 의해 Tele-Nation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Tele-Nation은 옴니버스 조사(omibus survey)로 다수의 고객이 조사비용을 부담하며, 조사의 목적을 위해 1,000명의 표본에 대한 두 번의 조사를 실시

가. 멘토 요인

먼저, <표 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멘토의 연령은 중년층(34~54세)과 청년층(18~24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46년에서 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의 멘토링 참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기 위해 참여하였으나 중년층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멘토링 참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II-9> 연령별 멘토 분포(2005년도)

구분	비율(%)
18-24세	31
25-34세	26
35-44세	33
45-54세	31
55-64세	27
65세 이상	22
베이비붐 세대	32

출처: MENTOR(2006: 2)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멘토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대학원 학력을 지닌 사람들 중 멘토 비율은 35%, 고졸이하는 26%로 나타났다. 고용상의 지위 역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퇴직 혹은 실업상태의 경우가 각각 23%, 22% 인데 반해 상용직 근로자는 32%, 임시직 근로자는 37%로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정도가 멘토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가 없는 성인(24%)보다 자녀가 있는 성인(35%)이 멘토로 더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조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여성 비율은 감소하는 대

하고 각 조사에서는 충분한 수의 멘토가 표본에 포함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pm 3\%$ 이다. 이 조사에서 멘토링은 성인과 10-18세 청소년 사이에 지난 12개월 사이에 형성되었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관계(relationship)로 정의하고 있다 (MENTOR, 2006: 13).

신 남성 비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의 경우 비백인(35%)이 백인(28%)에 비해 멘토가 될 가능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인종과 성차가 멘토링에 미치는 영향은 Volunteers Mentoring Youth(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2006)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나. 멘토링 운영

멘토링의 지속기간은 멘티의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는 주요한 지표이다. 이론적으로 멘토와 멘티는 최소 1년 이상 매달 4시간 이상 규칙적인 만남을 가질 때 멘토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Rhodes, 2002). 조사에 따르면 멘토링 관계의 유지기간은 평균 9개월이며 38%는 최소 12개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한 달 평균 13시간 이상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멘토링 관계의 유지가 어렵고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구조화된 프로그램과 충분한 교육을 지원 받는 공식적인 멘토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멘토 양성 및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MENTOR, 2006: 3). <표 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멘토는 지역사회, 신앙, 학교에 기반을 둔 멘토링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3년 사이에 신앙에 기초한 조직에서의 멘토 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0> 공식적인 멘토들과 연계된 조직 현황

구분	2002년(%)	2005년(%)
BBBS/Girl & Boy Scouts	15	21
학교	28	20
신앙에 기초한 조직	24	20
직장	15	14
방과 후 프로그램	-	9

출처: MENTOR(2006: 6)

일대일 관계 뿐 아니라 한 명의 멘토가 다수의 멘티를 멘토링 하는 집단 멘토링의 경우 멘토, 멘티 비율은 1:4, 팀 멘토링은 3:10 정도의 비율을 나타

내 전통적인 멘토링 관계와 함께 집단, 팀 멘토링 역시 적절히 활용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2002년 조사에서는 2명 이상의 청소년과 멘토링 관계를 맺고 있는 멘토는 69%, 1명을 멘토링 한다는 응답은 31%였다. 2005년 조사에서는 51%의 멘토가 2명 이상(more than one)의 청소년을 멘토링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식적인 멘토링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결연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MENTOR, 2006: 4).

멘토링은 점차 특별하고 고위험 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표 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년사법체계 및 퇴소 후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을 포함하여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성인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년사법체계에 놓여 있는 비행청소년과의 멘토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67%에 달하는데 반해 실제로는 16% 만이 결연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향을 이행으로 연결하는 데는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MENTOR, 2006: 5).

<표 II-11> 멘토 및 멘토 희망 인구 규모

구분	멘토관계가 형성되었음(%)	멘토링을 고려하고 있음(%)
특수교육	31	81
신체 장애	23	83
임신 혹은 자녀가 있음	17	74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 중	17	78
소년사법체계에 놓여 있는 멘티	16	67
부모가 군인	14	86
이민자 멘티	14	77
사후보호체계에 놓여 있는 멘티	11	81
위 항목 모두 비 해당	37	

출처: MENTOR(2006: 5)

2005년 조사 결과 멘토의 참여 동기(중복응답)는 청소년들이 성공하는 것을 돕고 싶어서(82%),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서(76%),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싶어서(43%), 종교적 이유(27%), 자신이 어렸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22%) 등으로 나타났다. 멘토링의 참여 경로(중복응답)를 보면 지인의 권유(50%), 참여하고 있는 조직에서의 참여(41%), 스스로 찾아서(35%), 자녀의 친구나 부모(10%), 교회 및 학교(6%), 광고(4%), 웹사이트 방문(2%) 등으로 나타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멘토의 권유와 추천이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MENTOR, 2006: 8).

멘토들의 애로사항으로는 멘티의 기대(14%), 관계형성의 어려움(8%), 멘토에 대한 지원 결여(7%), 부모 및 가족의 문제(4%), 윤리적 문제(4%) 등을 지적하였으며 멘토링 관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멘티와 더 많은 시간 보내기(41%), 물질적 지원 강화(35%), 전문성 함양(31%), 교육 훈련 강화(30%)를 지적하여 멘토의 자질과 멘티와의 시간 공유가 멘토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96%가 다른 사람에게 멘토링 참여를 권유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다. 멘토 욕구 및 장애요인

멘토링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멘토링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평균 4.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효과적 실무 요건(Elements of Effective Practice™)’에서 신뢰로운 멘토링 관계 형성에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최소 수준이다. 이와 같이 잠재적인 멘토를 능동적인 멘토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접성(proximity)과 지지(support)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MENTOR, 2006: 10). 즉, 멘토들은 자신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멘티를 만나기를 희망하며(83%),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83%), 훈련(73%), 고용주의 장려(48%), 자원봉사 시간 허용(70%), E-멘토링(33%) 등으로 나타났다. 멘토링 파트너십(Mentoring Partnerships)은 이와 같이 잠재적인 멘토의 스케줄과 흥미, 생활양식에 적합한 활용영역을 제시하고 지역 내에서 멘토가 충원되도록 돕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표 I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멘토링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이유로는 시간 부족(51%),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35%) 외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거나(25%),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23%),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몰라서(20%) 등으로 나타나 멘토링이 무엇이며, 어떤 능력이 요구되고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제공된다면 멘토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12> 멘토링 미참여 사유

구분	2002년 (미조사)	2005년(%)
시간이 없어서		51
다른 방식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서		35
어떻게 시작하는지 몰라서		25
요청받은 적이 없어서		23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몰라서		20
어떻게 멘토활동을 하는지 몰라서		19
흥미가 없어서		18
멘토들이 하는 일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		16
나쁜 기억이 있어서		5

출처: MENTOR(2006: 11)

미국 47개주로부터 약 1,000개의 멘토링 프로그램들에 대한 웹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aito and Sipe, 2006: 3-5). 회수율은 42.5%이며 응답한 프로그램의 62.9%는 일대일 결연, 7.5%만이 집단 혹은 팀 멘토링을 기반으로 하며, 29.6%는 일대일 결연과 집단/팀 결연을 혼합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와 멘티가 만나는 장소는 19.3%는 오직 학교에서만 만나는 형태이며, 19.3%는 지역사회에서 멘토와 멘티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형태, 13.7%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병행하는 형태, 21.8%는 특정 장소(소년원, 처우시설 등), 25.8%는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지역의 크기와 관련해서 보면 31.9%는 도시 지역,

24.4%는 농촌, 13.3%는 도시 근교 지역, 30.4%는 도시, 근교, 농촌 지역이 혼합된 형태이며, 프로그램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41.1%는 50명 이하의 청소년과 결연관계를 맺고 있었고(이중 약 절반은 결연을 맺고 있는 청소년 숫자가 25명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26-50명의 청소년과 결연을 맺고 있음), 47.2%는 결연을 맺고 있는 청소년 규모가 50-500명, 11.9%는 500명 이상의 청소년과 결연을 맺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운영진의 규모를 보면 2/3이 3명 이하의 스태프에 의해 운영되며, 구체적으로는 1명 이하의 스태프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34.7%, 32.4%는 1-3명, 25.9%는 4-10명, 7.0%는 11명 이상의 스태프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었다.

1년 예산 규모가 5만 달러 이하의 프로그램은 46.3%(5,000달러 이하의 비율은 20.9%, 5,001-15,000달러 7.1%, 15,001-30,000달러 8.4%, 30,001-50,000달러 9.9%), 50,000달러 초과 100,000달러 이하의 프로그램은 19.3%, 100,000달러 초과 200,000달러 이하의 프로그램은 34.4%(100,001-200,000달러가 13.0%, 200,001-500,000달러 14.8%, 500,000달러 초과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별 분포를 보면, 2/3(65.6%)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56.3%)이 학업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이었다. 멘토링 조직의 약 1/4(25.5%)은 사후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청소년,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녀(21.8%), 소년사법체계 내의 청소년(17.6%), 이밖에 특별한 문제와 욕구가 있는 청소년(장애청소년 17.6%, 임신 중이거나 미혼모인 청소년 13.3%, 청소년 구급시설에 수용 중인 청소년 10.6%)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조달 방법을 보면 <표 II-13>과 같이 정부의 교부금과 지역 내 재단의 보조금 및 개인의 기부금 등 재원의 출처가 다양하며,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민간 영역의 재원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⁵⁶⁾

56) 응답한 프로그램의 상당수(81.3%)가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활성화 된 대단위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멘토, 멘티의 안전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3> 멘토링의 주요 자원

(단위: %)

자금조달 원천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지방정부·지역의 자유경쟁 교부금	21.8	15.0	10.1	46.9
연방정부의 자유경쟁 교부금	18.7	10.4	6.3	35.4
지역의 재단 보조금	17.2	21.3	20.1	58.6
개인 기부금	15.8	16.4	22.6	54.8
기업 기부금과 보조금	9.6	24.9	25.2	59.7
표본수	418	366	318	

출처: Saito and Sipe(2006: 17)

이와 함께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기업, 정책입안가, 민간 멘토링 운영 조직 등 각 부분별 활동지침을 마련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표II-14>이다.

<표 II-14> 부문별 멘토링 활동 지침

구분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산출	멘토링 문화 강화	프로그램 질 보호	조사연구	운영구조 구축
개인	· 지역 내 멘토링 프로그램 알기. · Mentoring.org 를 통해 배우기 · 기부금 납부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생각하기 ·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 수준의 멘토링 후원하기	· 지역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알고 있는 청소년의 비공식적 멘토되기 · Mentoring.org 에서 가상공동체에 접속하여 멘토 체험하기	· 멘토로 활동하기 전에 운영지침(효과적 실무요소) 먼저 살펴보기	· 지방(주) 및 전국(연방) 수준의 멘토링 연구를 위해 공공자금 지원 옹호	· 정기적 수뇌부 회의 참여 · 지역내 주(州) 멘터링 파트너십(State Mentoring Partnership)의 업무 학습하기
기업	· 기업 내 멘토링 프로그램 조직, 또는	· 지역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하는 직원에게	· 자금지원 및 파트너 관계 맺기 전 효과적 실무 요소	· 정책 및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자금 투자	· 주 멘토링파트너십에 리더십과

구분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산출	멘토링 문화 강화	프로그램 질 보호	조사연구	운영구조 구축
	기존의 조직과 파트너 관계맺기 · 자금조달 및 현물 후원	시간외 수당 지급(근무시간 인정) · 생산품에 메시지를 부착하여 멘토링 홍보	고려하기 · 지역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위험관리 및 책임성과 관련한 전문성과 지식 제공	· 연구, 정책 위원회(Research and Policy Council) 활동 지원	· 자원을 제공하거나 조직이 없다면 만들기 위해 조력 · 멘토링 영역의 회의 스폰서 되기
정책 입안 가	· 멘토링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 제공 · 기존의 긍정적인 청소년 개발 및 예방 프로그램에 하나의 전략으로 멘토링 활용	· 멘토링 영역에서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근무 시간 인정하기 · 정부조직 및 관련기관에서 멘토링 참여 독려	· SafetyNet 배경조사 지침에 누구나 접근 허용 · 공공자금을 수령한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를 위한 표준평가 개발, 활용	· 연구, 정책 위원회(Research and Policy Council)가 제기한 정책 권고사항고 려 · 연방 및 주정부 기관이 멘토링에 관한 명확한 정책 연구 프로젝트 수행 보증하기	· 모든 주 멘토링 파트너십 발달 및 강화, 지원 · 멘토링 관련 연방 조정위원회(federal coordinating council) 설립지원
멘토 링 조직	· 멘토 자금조달을 위해 보다 기존의 멘토링 사례 및 연구 활용	· 지역 내 멘토가 Mentoring.org 에 접속하여 더 많은 지원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돕기	· 최신의 프로그램 실무 유지를 위해 교육훈련, 회의에 참여하고 멘티에 최고의 성과 제공 · 표준평가를 사용한 성과 측정	· 지방(주) 및 전국(연방) 수준에서 멘토링 연구에 공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옹호	· 멘토링 파트너십을 통해 자원과 지지 활용 · 정례적인 회의 참석

출처: MENTOR. 2006b. The National Agenda for Action: How YOU Can Help Close America's Mentoring Gap.

(2) 영국

영국에서 범죄소년 대상 멘토링은 소년사업의 스펙트럼 내에서 통합적 처우의 한 요소로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멘토링과 수용보호중인 청소년의 퇴소와 사회복귀를 돕는 재통합적 멘토링이 모두 존재한다. Local Government Association(LGA, 2006) 보고서에 따르면 폭력 등 일부 문제를 제외한 보호소년의 65%를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할 경우 연간 7천만 파운드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대안적 프로그램이 적재적소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멘토링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1998년 새로이 설립된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 YJB)는 육아사업계획(parenting schemes), 회복적 사법개입, 보석 보호관찰(bail supervision), 기타 지지프로젝트와 함께 멘토링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소년사법체계에서 멘토링은 ‘효과적인 소년사법 서비스의 한 특징’이자 ‘효과적인 실천의 핵심요소(Key Elements of Effective Practice)’로 묘사된다(YJB, undated: 2). 그러나,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며 청소년 대상 멘토링은 비행예방 효과에 앞서 자아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관찰된다.⁵⁷⁾

멘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학교 중도탈락 아동, 보석 중인 청소년, 약물사용 청소년, 사회 내 제재(community sentence)를 받고 있는 청소년, 구금 혹은 보호시설에서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청소년 및 집중보호관찰(Intensive Surveillance and Supervision Programme, ISSP) 대상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며, 멘토는 이들과 친구가 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성인 가운데 선발된다. 소년사법위원회(YJB)가 재정을 지원한 84개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평가한 한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 멘토링에서 멘티의 연령과 프로파일, 결

57) Dalston Youth Project에 따라 11-14세 청소년 대상 학교기반 프로젝트(school-based project)의 수행 결과 80명의 청소년 멘티 중 32명(40%)은 프로젝트 기간 내 혹은 종결 후 경고(caution)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는지의 여부와 멘티가 비행을 저지르지 혹은 저지르지 않을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Tarling et al., 2001: 61).

연 기간, 운영형태에는 매우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oberts et al., 2004: 15).

특히, 범죄소년의 재범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전략 중에는 신앙에 기초한 단체를 포함한 제3영역의 참여와 역할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2005년 11 월에는 지역 내 조직과 공동체의 협력을 통한 재범감소의 정부간 계획(cross Government plan)의 일환으로 Faith and VCS Alliance를 개시하였다. 전국적인 Faith Alliance Strategy Group에는 형사사법기관, 신앙에 기초한 단체,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DCLG) 내 Cohesion and Faith Unit의 대표들이 포함되며 재범 감소를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레스터셔(Leicestershire)의 Big Sister, Big Brother는 레스터셔 그로비 커뮤니티 대학 기반의 멘토링으로 대학생들이 지역 내 14-19세의 또래 아동·청소년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레스터셔의 청소년 및 지역사회 교육청(Youth and Community Education Service)에서 학교에 파견된 사회복지사에 의해 조직되었다. 처음에는 여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남아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친구집단을 형성하고 경험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멘토인 대학생은 14주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훈련 항목에는 집단괴롭힘, 섭식장애, 재정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이 포함되며 매주 교사 및 청소년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토론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멘티가 지역 내 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멘토가 먼저 이러한 기관에 방문하는 훈련이 제공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청소년은 또래와 쉽게 친해지고 그들의 조언을 통해 지역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이 프로젝트는 멘티 뿐 아니라 멘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자신감과 판단력 향상, 비밀보장, 성숙, 서비스 접근 역량 강화, 학교출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스터셔 카운티 소재 14개 대학 모두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⁵⁸⁾ 2003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Diana Princess

58) <http://www.yjb.gov.uk/en-gb/>

of Wales Memorial Award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3)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며 정부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가 지원하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전이서비스(Youth Transitions Services)’,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자(Turn Your Life Around, TYLA)’, ‘프로젝트 K(Project K)’등이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내 범죄예방단(Crime Prevention Unit)과 경찰은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멘토링 프로그램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개발부(Ministry of Youth Development, MYD) 역시 ‘젊은 뉴질랜드인의 도전(Young New Zealander's Challenge)’과 같은 멘토링 및 멘토링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단(Conservation Corps), 청소년 봉사단(Youth Service Corps)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개발부(MYD)는 멘토링 영역에서의 최적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멘토링 및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 of Mentoring and Young People)이라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Youth mentors build bridges, 2008). 2009년 2월에는 ‘아동 및 청소년과 그 가족 법령(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Bill)’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 법령은 소년법원이 멘토링(compulsory mentoring)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개입처분과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범죄소년에 대한 멘토링의 잠재적인 효과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Big Brother Big Sister(BBBS)는 뉴질랜드에서도 넬슨, 해밀턴, 크리스처치, 그레이마우스, 웨스트포트, 북 캔터베리, 호키티카, 하카타네, 네이피어, 테니버크, 타라나키 등지에 지부가 결성되어 있는데 지역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TYLA(Turn Your Life Around)

TYLA는 마운틴 로스킬 지역의 아본데일에서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Youth Development Programme)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오타라 지역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Turn their Lives Around)’ 멘토링을 기반으로 기술과 기회를 제공하여 성인 범죄자로 성장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는 학교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 홈페이지 주소: <http://www.tyla.co.nz> (실시연도: 1998년)
- 프로그램 토대: 오클랜드 주(지부: 아본데일 주 오타라)
- 대상: 10~16세 남녀 청소년(초점 대상: 비행위험이 높은 청소년)
- 멘토링 조건: 장기간, 조기 개입, 사회복지사의 지원(멘토 발굴 및 양성)
- 멘토링 구성: 일대일 멘토링과 함께 가족지지, 학습, 문화 프로그램, 스포츠, 경력/전이(careers/transition) 지원
- 처우의 접근 방법: 개별적, 집단적 접근 병행
- 멘토링 지속기간: 5년 미만 범위 내에서 주 1회 집중적으로 실시
- 장소: 학교 및 가정
- 멘토 표준 자격(Mentor Target Criteria): 없음
- 평가기준: 취업 및 진학의 성공적 진입 여부

나. 빅 버디(Big Buddy)

빅 버디 멘토링은 남자 청소년이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인 남자 모델을 경험해야 하나, 상당수의 청소년이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남성 역할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모자가정의 남자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단순한 철학과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부재한 남자 청소년을 멘토로 하여 소년이 ‘삼촌’이라 부를 수 있는 남성 멘토를 결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멘토는 최소 1년 동안 1주일에 2-3시간이상 7~12세의 소

년 즉, 리틀 버디(Little Buddy)와 시간을 함께 하는데 활동 내용은 공원에서 공을 차고, 낚시하고, 해변을 산책하거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만남이며 소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으므로 구조화된 활동 내용은 없고 규칙적인 전화를 보조로 활용한다. 특히, 멘토링 기간은 최소 1년에서 멘토, 멘티가 원할 경우 평생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멘토와 멘티는 결연 전에 멘토링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검증하고 진행본부가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 받게 된다. 활동이 시작되면 멘토는 멘티에게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델이 되어 주고 감독이나 행동관리 및 비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남성 멘토의 존재가 소년의 자존감과 존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학교생활 및 범죄와 약물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웹사이트: Big Buddy(<http://www.bigbuddy.org.nz>)
- 프로그램 토대: 웰링턴
- 대상 집단: 7-12세 남자 청소년(초점 대상: 모자가정의 남자 청소년)
- 멘토링 구성: 일대일 멘토링
- 멘토링 지속기간: 최소 1년부터 평생
- 장소와 빈도: 멘토와 멘티 사이에 사적으로 조정. 매주 만남
- 프로그램 개시연도: 1997년
- 멘터의 자원: 지역사회
- 멘터의 표준 자격: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 어른
- 측정과 평가: 외부 평가

다. PILLARS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구금시설에 수감된 5~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부모가 범죄자인 경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감옥에 갈 확률이 7배나 높고 이러한 범죄 사이클을 차단할 수 있다면 지역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다.⁵⁹⁾ 멘토는 지역 내 일반 성인이며 훈련을 통해 멘티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문을 넓히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웹사이트: <http://www.pillars.org.nz> (실시연도: 1996년)
- 프로그램 토대: 크라이스트처치
- 지부 및 다른 시행지역: 오클랜드
- 대상 집단: 5~18세 남녀 청소년(초점 대상: 보호자가 복역 중인 청소년)
- 멘토링 구조: 일대일 멘토링, 긴급지원
- 멘토링 구성: 멘티의 가족은 **PILLARS** 사회복지사와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며 상담을 받을 수도 있음
- 멘토링 지속기간: 1년 이상 지속적인 관계 장려
- 장소 및 빈도: 멘토와 멘티가 사적으로 조정하여 2주당 2~6시간 활동, 멘토는 매월 1회의 교육과 수퍼비전 이수
- 멘토 자원: 지역사회, 교회집단 / 18세 이상 / 전문자격 필요하지 않음 / 경찰의 신원조회는 의무사항
- 평가: 6개월 마다 자체 측정도구를 활용한 멘토링 관계 평가

라. Stars

STARS는 모든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개발 재단(Foundation for Youth Development)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통합된 5개의 영역(모험캠프, 지역사회 프로젝트, 지역사회 모험, 경력 엑스포, 또래 멘토링)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1년 동안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멘토는 상급생, 멘티는 9학년 학생, 교사는 집단 지도자로

59) PILLARS(<http://www.youthmentoring.org.nz>), <http://www.pillars.org.nz>

서 멘토 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재단이 허가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에 의해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Stars의 철학적 기초는 첫째, 개인적 지지를 통해 성취와 발달 둘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장기적인 경험 셋째, 개인적 기술과 능력 개발 넷째, 프로그램 효과성 보증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 등이다.⁶⁰⁾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프로그램의 목표는 9학년 학생들이 학습적·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기술 제공, 자신감과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경험 제공, 또래 및 상·하급생의 우정 만들기, 교실 밖 교사(전문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기회 제공, 학업, 건강,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노력의 이점 알기, 건강한 식품 및 운동의 이점과 또래 압력 및 약물남용의 위험 알리기, 학교와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이해 증가시키기 등이다.

- 웹사이트: Stars(<http://www.stars.org.nz>)(실시연도: 2000년)
- 프로그램의 토대: 오클랜드
- 지부 혹은 다른 시행 영역: 카이코헤, 마누카우, 해밀턴, 허트 벨리, 포리루아, 크라이스트처치
- 대상 집단: 13세 및 16~17세 남녀 학생
- 멘토링 구조: 훈련받은 상급생(멘토)이 9학년 학생(멘티)에게 일대일 멘토링 제공. 멘토와 하급생 멘티의 비율은 4:6 정도임
- 멘토링 구성: 학년이 시작될 때 모험 캠프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프로젝트, 미스터리 여행, 경력 엑스포, 멘토링
- 멘토링 지속기간: 1년
- 평가: 9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년 자기효능감 측정 및 질적 자료 수집, 상급생 및 교사 평가, 건강 및 생활양식 측정

(4) 독일

독일은 아동과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구금보다 교육과 교화에 초점을 맞

60) Stars helping students to make a safe transition into high school(<http://www.stars.org.nz>).

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년법과 같은 ‘청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에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청소년범죄자 및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소년교정시설에서도 처벌이 아닌 교육과 보호감독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2006년 구서독과 베를린에서 청소년형법에 의해 판결된 처벌내용 통계에서도 증명된다. 총 160,036건의 판결 가운데 82.8%에 달하는 처벌이 시설외조치(ambulante Maßnahmen)이며, 17.2%만이 시설조치였다(BMJ, 2009: 54). 청소년법원법이 명하는 시설외조치란 보호감호(Betreuungsweisungen), 사회트레이닝교육,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화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가해자-피해자-조정(Täter-Opfer-Ausgleich)과 노동감호(Arbeitsweisungen) 등을 포함한다.

독일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한데, 연방차원에서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및 산하기관이 수많은 민간기관과 함께 지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범죄소년 지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평가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 환류(feedback)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비행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 시행중인 프로젝트와 소년원에서 보호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거에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 중인 프로그램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보호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가. 폭력예방네트워크협회(Violence Prevention Network e.V.-VPN)⁶¹⁾

VPN은 오랜 시간동안 예방 및 교육 사업을 한 전문가들이 2005년 베를린에 설립한 공익협회로 인종·문화·종교적 선입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폭력범죄행위를 감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주요 대상은 이와 관련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VPN은 반폭력 운동 분야뿐만 아니라 극우주의, 폭력단 간 충돌, 폭력청소년문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나 협회 및 그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VPN의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증오와 폭력과의 이별(Verantwortung übernehmen - Abschied von Hass und Gewalt) 프로그램이 있으며, 구금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세 부분에 걸쳐 실시된다. 첫 번째 부분 트레이닝코스로 8명의 참가자를 한 단위로 하여 5개월 간 정치, 종교, 피해자 되기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출원 후 시작을 위한 준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부분은(Real-Life-Test)은 출원 후 1년 간 트레이너가 동반하여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며 청소년의 가족 및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재범의 근원적 요소를 차단하는데 목표를 둔다. 세 번째 부분은 소년원을 포함한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행사를 실시하며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비행청소년 선도 및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전문교육인력을 육성하여 지역 내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데 있으며 이 과정은 보통 15개월에 걸쳐 총 37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VPN의 지원은 관련 당사자나 기관이 활동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Training-on-the-Job’과 같은 컨셉 제공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인증서를 제공하는 일 년간의 명상교육을 제공하며 연방명상협회(Bundesverband für Meditation)의 교육방식에 준하여 내용이 구성된다. VPN은 국가조직을 비롯하여 국내와 국외 민간기관, 대학 및 개인과 협력하여 활동하며 비영리기관이므로 협력조직의 후원에 의해 운영되며, 연방부처와 여러 주의 법무부로부터의 보조금과 독일우체국 등 8개의 개인사업체가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

61) <http://www.violence-prevention-network.de>

고 있다.

나. 소년원 출원 후 지원 프로그램

독일 청소년의 실업률은 2007년 현재 12.7%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청소년 실업자에 대해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들이 학교교육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바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장차 순조롭지 못한 사회생활을 하게 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실업자들은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육체적·정신적 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Kronauer 외. 1993, Kieselbach 외. 2001). 한 조사에 따르면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의 대부분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 실업상태에 있거나, 합법/불법적인 마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여러 비행청소년그룹에 속해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 그 예이다. 독일 소년원(청소년구치소)에서 출원 후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센(Sachsen) 주에서는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작(NeuStart)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는 직업교육사업(Berufsbildungswerk)이라는 민간기관이 참여하여 출원 후 취업을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에 취업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둘째, Zeithain시의 청소년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소년의 50~60%가 교육과정에 참여하거나 근로를 하고 있으며, 정규교육과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사회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받도록 하는데 있다. 매년 48명의 청소년수감자들이 의무교육을 마치거나 더 나아가 실업학교 과정까지 수료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 12명에게는 일 년의 지역 내 직장실습기간이 제공되고, 10명에게는 용접공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15명 정도는 건축, 정원 등의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60명의 추가인원에게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기

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감된 청소년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인증된 기관 밖의 작업장에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수감 중 E-러닝(e-learning im Strafvollzug-e-LiS)⁶²⁾ 프로그램으로 e-LiS는 2002~2005년 북 독일지역의 Berlin, Brandenburg, Bremen, Hamburg, Mecklenburg-Vorpommern und Schleswig-Holstein교도소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EQUAL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범죄소년을 돕기 위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에 의해 함께 개발되었으며, e-LiS도 이 프로그램 중 하나로, 독일에서는 연방차원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바 있으며 유럽연합의 후원과 독일 연방경제노동부의 유럽사회기금으로 운영되었다. 4년 동안 총 32개의 세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문맹 청소년을 위한 쓰기과 읽기교육, 학교교육, 직업훈련, IT-교육, 작업요법 등이 있으며 브레멘대학을 포함한 13개의 민간사업체 및 민간단체와 협력 하에 진행되었다.

넷째,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교육 및 고용촉진구조의 파악과 극대화('Erfassung und Optimierung von Strukturen der Ausbildungs- und Beschäftigungsförderung für Unterstellte der Bewährungshilfe')⁶³⁾ 프로젝트로 2002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포츠담대학교(Universität Potsdam) 소속 가족·아동·청소년응용과학연구소(Institut für angewandte Familien-, Kindheits-und Jugendforschung-IFK e.V.)와 독일 보호관찰관 협력 단체(Arbeitsgemeinschaft Deutscher Bewährungshelferinnen und Bewährungshelfer- ADB e.V.)에 의해 공동으로 7개의 주에서 시행된 시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7개 주의 법무부, 베를린 사법부 소속의 사회서비스기관, 연방 교육 및 연구부, 유럽 사회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능력 촉진-특별지원이 요구되는 목적집단을 위한 직업자격취득(Kompetenzen fördern-Berufliche Qualifizierung für Zielgruppen mit besonderem Förderbedarf-BQF)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진행된 바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근로를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장애요소를 없애고 지역사회 안에 협력구조와 네트워크

62) <http://www.e-lis.de>

63) <http://www.good-practice.de>

크를 형성하여 그들이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는 분석, 정보, 현장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분석과정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교육 및 고용촉진기관 활동가의 과제 및 그들에 대한 기대와 한계를 파악하고 조정한다. 이때 참여 기관들 간의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제상황에 맞는 정보지원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개별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출감자를 위한 시장지향적 교육 및 고용융화 프로젝트(Marktorientierte Ausbildungs-und Beschäftigungsintegration für Straftatlassene-MABiS.NeT)⁶⁴⁾ MABiS.NeT는 Nordrhein-Westfalen주에서 실시된 프로젝트로 소년원에 수감된 적이 있는 범죄소년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재범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년원에서 적성에 맞고 유망한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며 출원 후 바로 근로하거나 추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근로포기를 방지하고 근로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원 청소년과 고용주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민간 교육 및 고용기관과 협력하여 수감자와 출감자의 직업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탄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내의 파트너를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Nordrhein-Westfalen주의 법무부와 연방경제·노동부 주체로 유럽사회기금의 지원 하에 2002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시행된 바 있으며 총 25개의 민간기관과 5개의 청소년교도소를 포함한 11개의 형무소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04년 12월 현재 총 4,027명(청년과 청소년)의 재소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80명이 출감 후 지속적으로 직업교육에 참여하거나 취업하였다. 청소년참여자의 43.8%가 석방 후 추가적인 직업교육(Folgeausbildung)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4) <http://www.mabis-net.de>

다섯째, 다리연결(BRÜCKENSTELLE)⁶⁵⁾ 프로젝트는 연방정부가 지역 내 아동·청소년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소년원에서 출원한 이주민청소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Hameln시의 다리연결(Brückenstelle) 프로그램은 1998년 10월 연방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BMFSFJ 80%, Niedersachsen주 내무·스포츠·통합부(Ministerium fuer Inneres, Sport und Integration) 8%, 그리고 Hameln-Holzminden 카리타스협회가 12%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한 바 있다. 시범사업 종결 후 Niedersachsen주가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2003년부터는 주에서 87,95%, Hameln-Holzminden 카리타스협회가 12,05%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Hameln시는 청소년교도소에 구금된 이주민 청소년 대부분이 학교를 그만 두거나 언어능력 내지 전문교육이 부족하여 결국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약물·마약 등의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고 폭력적이 되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다리연결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들에게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출원 후 지역사회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수감기간 동안 그리고 출원 후 청소년을 지원하고 조언하기, 청소년가족의 상담, 사례관리, 출원 계획 수립, 거주지 마련, 관공서 이용하기,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 및 직업교육기관에 관한 정보제공, 집단 치료, 기타 전문서비스 추천 및 의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복지사가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며 총 4단계로 구성되는데 먼저, 청소년에게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관계형성을 하여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얻도록 하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꾸준한 상담을 하며, 청소년이 본인을 필요로 할 경우 항상 연락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달성한 성과를 유지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더 필요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연결해 주게 된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멘토로서 청소년과 함께 미래를 구상하고, 문

65) <http://www.brueckenstelle.de>

제가 있을 경우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이면서도 개별화된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내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출원 후 청소년이 거주할 곳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연락가능한 사람을 확인하고, Hameln 청소년교도소와 연락한다.

이 프로젝트가 실시된 이후 3년 만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하면 참여 청소년의 31%가 석방 후 근로를 하거나 교육과정에 참여하였고, 14%의 청소년은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이수하였다. 그러나, 26%의 청소년과는 연락이 단절되었으며 재범률은 약 14% 수준으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섯째, 청소년권리의 집(Haus des Jugendrechts)⁶⁶⁾ 프로젝트는 1999년 Bad Cannstatt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 지금까지 연방가족·노인·청소년·여성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여기관은 경찰국, 청소년청의 청소년법원보조인, Stuttgart-Bad Cannstatt의 구(區)법원(Amtsgericht)등이다. 이 프로젝트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한 21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제재보다는 우선 개별적인 돌봄을 통해 이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보자는데 목적을 두는 협력사업이다. 참여기관의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사례회의를 열고 직접 대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던 소송절차가 확연히 단축되었고 협력활동의 질 또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단순히 제재를 넘어 개별 지원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및 복지기관, 그리고 학교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 프로젝트는 시행 초기부터 Mainz 사회교육학연구소의 학문적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은 갈등극복, 원인연구, 부모와의 상담과 지원, 사회교육학적인 전문적 도움, 분노조절, 사회생활능력 등을 주제로 하는 특강과 프로그램, 행사 등이다.

일곱째, KICK-프로젝트⁶⁷⁾는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범죄를 예방한다는 취

66) <http://www.stuttgart.de/item/show/253095>; <http://www.polizei-stuttgart.de>

67) <http://www.kick-projekt.de>

지에서 1991년 베를린 경찰과 베를린시의 청소년스포츠 단체인 Sportjugend Berlin에 의해 2년 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시범사업 이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범죄가 자주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역 중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분포율이 높고 여가활동장소가 부족한 곳으로 서서히 확장하여 2009년 현재 10 곳에 소재지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행 초에는 14~19세의 범죄 및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현재는 범죄예방차원에서 일반 청소년들도 사회교육적 방법을 동원한 스포츠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상담, 돌봄, 연결, 네트워크 등 4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상담’은 청소년이 사회복지사의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KICK의 교육전문가가 멘토로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만남과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배경과 고민을 털어 놓게 되고 앞으로의 돌봄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돌봄’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직장이나 교육(직업훈련)장소 물색, 관청 방문, 학교문제해결, 부모 문제해결 등 개별 돌봄과, 스포츠 활동, 특정 주제에 대한 공동작업, 사회문화적 청소년활동, 특정 대상자를 위한 모험여행 등 집단지도, 마지막으로 학교숙제돕기, 개별 여가활동 지도 등 개별 지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돌봄 기간은 청소년의 개인 상황과 다른 기관의 서비스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둔다.

다음으로 ‘연결’은 청소년을 돌보는 과정에서 이들을 직장이나 교육기관, 학교 심리상담 서비스기관, 청소년아르바이트제공기관, 스포츠단체, 기타 청소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연결시키는데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KICK은 특히 청소년을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스포츠단체와 연결하는데 큰 관심을 갖는데, 이러한 스포츠단체의 역할은 단순히 운동할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하나의 규범공동체 내지 가치공동체에 속하여 긍정적인 인격을 형성하는데 교육적으로 안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로 효과적인 상담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KICK은 많은 기관 내지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찰을 비롯하여 학교, 지역의 청소년 선도기관, 청소년선도위원회, 스포츠단체, 민간 청소년복지기관, 청소년여가기관, 청소년스포츠 공동협력단체, 종교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② 폭력범죄와 관련한 다기관협력프로그램

가. Kiez지역 폭력범죄예방 (Kiezorientierte Gewalt-und Kriminalitätsprävention) 프로젝트는 1996년 베를린시 폭력반대위원회에서 시작한 것으로 2009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Camino라는 베를린 지역 교육기관(Camino, Werkstatt für Fortbildung, Praxisbegleitung und Forschung in Berlin)에서 ‘Kiez’라 불리는 특정 구역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청소년이 자신의 지역사회 내에서 친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통제기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복스하게너 광장(Boxhagener Platz) 모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가장 먼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함께 일종의 상징을 개발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범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여학생 폭력반대모임이 조성되었다. 이 지역 학교에서는 폭력과 범죄 예방주관을 지정하여, 관용 교육, 자기방어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찰, 청소년법과, 판사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관련단체와 학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의 다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사에게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공격성에 대처하는 훈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나.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협력단체(Arbeitsgemeinschaft gegen Gewalt an Schulen-AGGAS)⁶⁸⁾는 1990년대 말 독일 북부 항구도시인 Lübeck에서 학교폭

68) <http://www.polizei.schleswig-holstein.de>

력이 심각해지자 1998년 3월부터 관할 경찰서 주관하에 초등학교,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⁶⁹⁾, 진흥학교(Förderschule)⁷⁰⁾ 등 세 학교에 AGGAS를 설립하였다. 즉,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세 명의 경찰관이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의 청소년복지 담당 부서와 학교, 교사, 학부모대표, 검사와 청소년법원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 협력단체의 구성 목적은 적은 범죄예방보다는 오히려 범죄 신고와 범인확인, 그리고 피해자보호 등 이른바 발생한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의 개발을 통해 학교 내 공포분위기를 없애고 안정을 조성하는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 체계의 개발에 있다.

다. 베를린 리킹-프로젝트(Berliner Leaking-Projekt)⁷¹⁾는 2002년 4월 Erfurt에서 총기난사로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후, 독일에서도 미국과 같은 총기사용범죄가 가능하다는 인식과 함께 그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새로이 만들어진 프로젝트이다. 영어로 ‘누설’의 의미를 지닌 Leaking은 범죄자가 본인의 범죄계획이나 범죄에 대한 상상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를린 리킹-프로젝트는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총기난사와 같은 심각한 폭력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6년 6월부터 독일 로토재단과 베를린교육·과학·연구에서 지원하여 베를린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베를린 내의 학교에서 리킹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러한 리킹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알아내고자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얼마나 자주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사례별로 조사를 통해 위험요소와 이유를 밝혀내고, 범죄 아이디어부터 계획과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프로젝트의 진행 방법은 우선 리킹-프로젝트 인터넷사이트에서 설문지를 다운로드 받아 교사들

69) 4년의 초등학교 졸업 후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가는 4~5년제 학교.

70)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 정규 학교과정을 마치기 힘든 학생을 위한 학교.

71) <http://www.leaking-projekt.de>

이 작성하여, 프로젝트 담당기관인 베를린 대학 연구소에 팩스를 보내고, 리킹을 경험한 사람들의 진술을 우편으로 보내도록 한다. 봉투 및 우표는 각 학교 프로젝트 담당자에게서 받을 수 있다. 교사, 부모, 학생 모두 이러한 리킹을 감지한 경우,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찰과 학교심리상담사가 협력하여 잠재하는 범죄학생을 파악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경찰, 학교, 학교심리상담사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라. ALSO-프로젝트(ALSO-Projekt-Alternatives Sofortprogramm)⁷²⁾는 일종의 여가훈련을 겸한 반폭력 프로그램으로, 1997년 4월부터 구동독 도시인 Magdeburg 경찰국의 청소년상담부서에서 시작하여 2009년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내의 축구장, 지역 실내체육관, 여가시설 등에서 무료로 운동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력예방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며 종목은 축구, 배구, 중량 경기, 춤, 요가, 치어리딩, 탁구, 배드민턴, 다트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된다.

특히, 1997년 이후 Magdeburg에서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세 곳의 실내체육관에서 약 40팀이 참가하는 운동경기가 펼쳐지는데, 1998년 시-ALSO-우승배 쟁탈전을 계기로, 1999년부터 주-ALSO-우승배 쟁탈전, 2001년부터는 연방-ALSO-우승배 쟁탈전, 2004년부터는 유로-ALSO-우승배 쟁탈전으로 크게 발전해왔다. 청소년들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도 30여개 학교나 민간 체육관 등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데 한 달 평균 4,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Bay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Thüringen 등 여러 주에서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마. 시설 외 집중동반(Ambulante Intensive Begleitung-AIB)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으로 눈에 띄는 비행을 저지르거나 범죄행위를 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환경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집

72) <http://www.also.magdeburg.de>

중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행청소년들이 생활시설에 수용되는 기간과 이용시설에서 도움 받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뉘른베르크,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마그데부르크와 함부르크 등 5개 시에서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최소 3개월의 집중적인 개별 멘토링을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사회 환경에 안정적으로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더 이상의 범법자, 약물중독자, 노숙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둔다.

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본다(Wir kümmern uns selbst): 이 프로그램은 베를린, 뒤셀도르프, 구벤, 하노버, 카셀, 하이덴하임, 미헨도르프 등 7개 시에서 2008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이며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의 갈등해소 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죄위험을 감소시키며 경찰과 사법기관의 조기 투입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⁷³⁾

사. 아동·청소년범죄예방지원소 (Arbeitsstelle Kinder-und Jugendkriminalitätsprävention)⁷⁴⁾는 BMFSFJ가 지원하고 독일청소년연구소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 지원소는 아동청소년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국내외의 새로운 프로그램, 활동 전략, 범죄예방작업유형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활동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연구·전문교육 그리고 교육과정 후의 보충교육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검증되고 혁신적인 방안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서비스의 질적 기준을 마련하고 다기관의 협력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재범이나 범죄강도가 높은 소위 ‘Monsterkids’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BMFSFJ로부터 위탁을 받아 폭력예방 전략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73) www.wir-kuemmern-uns-selbst.de

74) <http://www.dji.de/jugendkriminalitaet>

아. 하이델베르크 모델(Heidelberger Modell)⁷⁵⁾ 은 Baden-Württemberg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 제 29조에 근거하여 1980년 대 Heidelberg의 AGFJ-가족지원 재단(AGFJ Familienhilfe-Stiftung)이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경찰, 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10년 동안 실시한 이후 실시하지 않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범죄가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하이델베르크 모델에서 제공하는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사회교육적 가족지원(Sozialpädagogische Familienhilfe)을 들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범 죄소년의 가족이 자조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며,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실행하고 책임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지원형태, 지원범위 등에 대해 다기관의 전문가들이 계획 수립을 돕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조계획에 따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로, 공식적으로는 유치원, 학교, 직장, 관공서와 관계를 형성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이웃, 친척, 친구, 여러 단체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지원자가 가족과 함께 통합계획을 세워 관계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접촉대상자가 될 것인지, 지역 내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지원자(Familienhelfer)는 가족의 멘토로서 문제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결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가족지향적 학생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교육적 가족지원 프로그램에서 발전한 것이며 비행청소년이 사회와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역시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신뢰를 얻고 청소년의 능력과 욕구를 파악하며, 부모의 관심을 얻어내도록 한다. 이때

75) <http://www.heidelbergermodell.de>

부모, 청소년, 교사, AGFJ재단 등 관계자들이 서로 업무협약을 맺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교와 실습장(직업학교를 다닐 경우), 가족, 친구, 집단에서 사회적 접촉을 경험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종결 단계로 학교와 사회생활을 위해 부모와 교사가 함께 자조계획을 세우고, 지역 내에서 더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하이텔베르그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독일 전체에로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원자 교육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사회교육자, 심리학자, 교사, 전문 자원봉사자, 청소년의 가족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청소년 및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다양한 전문가간의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AGFJ재단에서는 1987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습을 포함하여 1년 동안 6단계별로 실시한다. 각 단계의 교육은 3~4일 동안 진행되며 6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종의 졸업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60유로의 행정비용과 210유로의 교육비를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③ 외국인 범죄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외국인 통합, 문화 간 대화(Integration von Ausländern, interkultureller Dialog)⁷⁶⁾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에서 특별히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현재까지 14개의 프로젝트가 외국인 아동, 청소년, 성인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으며 주 대상자는 외국인 아동과 청소년이며,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예방프로그램으로서 외국인 범죄를 감소하는데 그 목적이 두며, 도시 청소년을 위한 자격취득,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언어와 교육, 성인을 위한 언어와 교육, 부모를 위한 언어와 교육, 수용하는 사회와의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교류 등 총 5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76) <http://www.landesstiftung-bw.de>

이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언어와 교육부분에 속하는 Agabey Abla 프로젝트(Agabey Abla-Modellprojekt)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Agabey Abla란 터키어로 큰형/큰오빠-큰누나/큰언니를 뜻한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의 수도인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서 2003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터키출신의 대학생들이 총 9개 학교의 터키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로 활동하면서 역할모델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멘토로서 청소년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청소년과 부모, 그리고 교사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멘토는 학교에서 매주 2회, 1회당 두 시간 정도 멘티를 만나 학습지도를 실시하거나 개별 만남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월 네 시간 이상 함께 여가활동을 하고 지역 내 기관의 방문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독일 생활에 대한 적응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히,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이후 교육과 진학,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 정도가 높았고, 멘토는 독일어에 익숙하지 않은 멘티의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일의 문화와 교육제도에 대한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멘토링 이후 멘티로 참여한 청소년의 성격이 대부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으로 학교를 옮기는 경우도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호주

호주 청소년 멘토링 네트워크(Australia Youth Mentoring Network)는 청소년 멘토링 연구, 도구 및 자원제공을 위한 전국적인 허브기관으로, 질 높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장과 발달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협조, 지지, 안내 및 훈련의 토대를 제공하고 청소년 멘토링 조직 및 실천가들과 협력한다.⁷⁷⁾ 호주 내 멘토링 조직에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회사, 은행, 및 소매상인 체인점 등 기업의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멘토링과 관련한 전국 단위의 개방형 보조금

77) Youth Mentoring Network(<http://www.youthmentoring.org.au>)

(open grants)으로는 2002년 6월 설립된 비영리 조직인 IOOP 재단, 마타나 청소년 프로그램 재단 등의 보조금이 있으며, 이 외 소니 재단, 세인트 조지 재단, 치퍼덴호텔(Cheaperthanhotels) 등의 보조금이 있다. 이들은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기술 및 자원에의 접근 등을 지원한다. 각 재단은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25,000달러까지 지원하고 있다.⁷⁸⁾

소년사법체계 내의 대표적 멘토링 프로젝트인 화이트라이온 멘토링 프로그램(Whitelion Mentoring Program)과 내용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은 1999년부터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화이트라이온은 청소년을 소년사법 및 지역 내의 외부 보호 시스템(Out-of-Home Care Systems)과 연계하는 상당수의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⁷⁹⁾, 보호소년과 지역 내 아동 시설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화이트라이온의 철학은 청소년들에게 법적·사회복지적 전문가들과 맺는 관계 외에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 멘토링을 제공하면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틈새를 메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인 멘토에게도 유익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화이트라이온이 시행하고 있는 소년사법 관련 주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구금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Custodial Youth Justice Mentoring)으로, 파크빌 청소년 시설(Parkville Youth Residential Centre)과 멜버른 소년사법 센터(Melbourne Youth Justice Centre)에 수용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이다. 구금기간 동안 일대일 멘토링과 집단 활동을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복귀를 돕는다. 멘토와의 결연은 긍정적인 성인 역할 모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자신과 지역사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

78) 이 외 멘토링과 관련한 재정지원과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는 Australian Commonwealth Government Community Portal, Australian Research Council, FundAssist's Funding Database, GrantsLINK, GrantSearch, Our Community, Philanthropy Australia, Foundation for Young Australians^{http} 등이 있다 (<http://www.youthmentoring.org.au>).

79) Whitelion Programs: Mentoring(<http://www.whitelion.asn.au>)

고 이를 통해 타인과 지역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 기초한 소년 사법 멘토링(Community Based Youth Justice Mentoring)으로, 노샘 소년사법 멘토링(Northern Youth Justice Mentoring) 프로그램이 있으며 멜버른 노샘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14~21세의 청소년을 지원한다. 특히, 범죄행동의 위험성이 높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소년사법 명령(community based youth justice orders)이 부과되었거나 지역사회로의 복귀가 임박한 보호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일대일 멘토링과 집단 활동을 병행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셋째, Leaving Care Mentoring 프로그램은 보호소년 가운데 학대와 방임 경험에 있는 청소년을 집중 대상으로 하여 외부 시설(Out-of Home Care system)에서 보호하고 시설 퇴소 이후에도 멘토링을 제공한다. 특히, 16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퇴소 이전에 지역 내의 멘토와 결연을 통해 함께 퇴소 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빅토리아(Victoria)의 노스 웨스트 메트로폴리탄(North West Metropolitan), 바윈(Barwon), 깁슬랜드(Gippsland)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넷째, RAMP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자립생활관에 해당하는 주거형 보호시설(residential care)에서 생활하는 13~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다기관 협력을 통하여 멘토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계 워크숍(connection workshop), 캠프 등을 실시하여 멘토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2007년 6월 아동국(Office for Children)에서는 RAMP의 효과와 효율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인 비용절감 뿐 아니라 역량개발을 포함한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와 실제적인 전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Office for Childre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08: 3). 특히, 멘티의 80% 이상이 고위험 청소년이거나 인적 서비스부(DHS)에 의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며 거의 절반 이상이 알콜, 마약 혹은 다른 약물을 남용하고 있었고 3명 중 1명 이상이 소년사법과 연루된 적이

있으며 4명 중 1명은 6년 이상 수용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에 대한 질적 피드백은 멘토와 멘티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높은 출석률이 이러한 결과를 지지한다. 2006년과 2007년 결연의 목표치를 초과했으며, 대부분의 멘토링 결연관계는 주 1~2회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의무적으로 12개월의 기간이 유지되거나 이를 초과하고 있었다. 멘티들은 자신감과 자기이해 및 자존감이 향상되었고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의 발전을 보였으며 사회적 연계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인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책임감과 자기통제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6) 캐나다

캐나다 전역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Big Brothers Big Sisters of Canada(BBBSC)가 있다. BBBSC는 1,000개 이상의 캐나다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27,000명이 넘는 청소년들과 18세 이상 남녀 성인 자원봉사자들과의 일대일 결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35개의 지역 기관들을 확보하고 있다.⁸⁰⁾ Big Brother/Big Sister 기관들은 Mentoring Canada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Muttart 재단의 지원 하에 수행되며 일차적인 초점은 캐나다 지역사회에서의 멘토링 발의를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멘토링에 관심이 있는 모든 지역사회 조직, 기업 및 기타 기관들은 Big Brothers Big Sisters of Canada의 웹사이트로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Mentoring Canada의 임무는 멘토링 조직 및 다른 서비스 공급 조직에 온라인을 통해 가장 최신의 자원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Big Brothers Big Sisters Canada는 청소년 문제 및 멘토링 시행과 관련된 전국적인 전략 계획(National Strategic Plan)의 네 가지 우선 목표 즉, 첫째,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둘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셋째, 영향력을

80) Big Brother/Big Sister 기관들은 Big Brothers, Big Sisters, In-School Mentoring, Kids 'N' Kops, Digital Heroes, Big Bunch, Couples for Kids, Life Skills Mentoring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Big Brothers Big Sisters of Canada (<http://www.bigbrothersbigsisters.ca>)).

구축하고, 넷째,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전국적 조직망을 통해 멘토링의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기획을 위해 기꺼이 다른 조직들과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모든 수준에서 현장 활동 계획(*operational plans*)을 개발하고 철저한 관리와 서비스 모델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의 인식과 전국적 리더십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향력의 구축은 다기관 간의 파트너십, 협력, 전략적 제휴와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자원 개발은 지속적인 자원의 발굴과 조정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기

2008년의 경우 BBBSC 기관들은 캐나다 전역에서 27,077건의 멘토링 결연 관계를 성사시켰으며 이는 전년보다 2.8% 증가한 수치이다. 전국적으로 BBBSC 기관들은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조달에 있어 혁신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고 국가 인증 프로그램(*National Accreditation Program*)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과 질 관리를 꾀하고 있다(*Big Brothers Big Sisters of Canada, 2009: 4*).

일부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남자 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남성 멘토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미 캐나다 내 많은 지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장애가 있는 성인과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서로 결연하는 멘토링(*Big Brothers Big Sisters of Abbotsford, Mission, Ridge Meadows, B.C.*), 최근 캐나다로 이주한 13~18세 청소년이 캐나다 청소년과 소통하고 적응을 돕는 것에 목적을 두는 대화 클럽(*The Conversation Club*), 학교기반 멘토링으로 문화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인 좋은 길(*The Good Road*)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2008년 온타리오(*Ontario*) 주의 학교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대상 멘토링을 위해 자원봉사자 충원에만 15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BBBSC는 멘토링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와 멘토 발굴을 위해 기업 및 비

영리 기관과의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 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가정판 DVD에 학교기반 멘토링 광고를 삽입한다든지, Cogeco 케이블 솔루션 사(Cogeco Cable Solutions)를 통해 요금 청구서에 고객들로 하여금 멘토 참여를 장려한다든지, Cogeco, 쇼앤초이스 텔레비전(Shaw and Choice Television)의 무료 공익방송을 활용한 광고가 대표적이다(Big Brothers Big Sisters of Canada, 2009: 5). 또한, 온라인을 통한 기금모금 템플릿을 활용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단지(Bowl for Kids Sake)’ 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의 17%는 이와 같은 66개 기관의 온라인 모금을 통해 확보되었고, 2006년 이래 거의 1,410,679달러의 기금이 온라인 모금으로 확보되고 있다. 특히, BBBSC는 더 많은 아동·청소년을 멘토링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홍보와 다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② 지속가능한 조직 성장

BBBSC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예로, 온라인 훈련 과정을 위한 모듈 개발, 최상의 실무지침(best practices) 탑재, 아동 발달, 윤리, 성인-청소년 관계 형성 방법, 사례 연구, 멘토를 위한 특별 주제별 프로그램, 멘토 대상 테스트, 다양한 언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캐나다 전역에 걸쳐 지역 및 전국적인 지도자들이 학습하고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리더십 교육과 기회들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들은 멘토링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며, 각 조직들이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소통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는 노력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③ 영향력의 구축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파트너십, 협력체계, 제휴/동맹, 그리고 잠재적인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 개발을 강조한다. 멘토링을 포함한

각종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회원 기관들과 함께 연구결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멘토링은 중요한가?(Does Mentoring Matter?), 학습 환경에서 멘토링을 배우기(Studying Mentoring in the Learning Environment), 도시 환경에서의 멘토링 관계(Mentoring Relationships in an Urban Context), 청소년 멘토링 관계의 실패에 관한 연구(A Study of Youth Mentoring Relationships Failures) 등 요약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멘토링의 효과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립 멘토링 연구의제(National Mentoring Research Agenda, 2008-2018) 등 다수의 연구 발의가 이루어진바 있다. 이 가운데 ‘아동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성인 멘토링 효과에 대한 중단 분석: BBBSC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연구로, 성인 멘토와의 결연이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에 유의미한 개선을 유도하였는가에 대한 검증 연구이다. 이 연구는 2009년 8월 현재 캐나다 전역의 20개 BBBSC 기관으로부터 부모와 7~16세 자녀 950가족을 선발하여 효과적인 결연 관련 구성요소, 성장을 도모하는 멘토링 요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아동에게 가장 효과가 높은지, 효과적인 멘토링 예측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Big Brothers Big Sisters of Canada, 2009: 12).

④ 자원개발

기금 개발 활동은 2004년의 전국 전략 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2005년 전국 기금조성 전략 계획(National Fundraising Strategic Plan)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금조성 전략에는 연구 수행, 시스템 개선, 시스템 구입 등 개인 증여를 포함하며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증여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 7월에는 전국 사무소(National Office)와 각 기관 사이의 개발 정책(Development Policy) 협약이 체결된 바 있으며, 이 협약은 호혜적 기금개발 활동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Aboriginal Youth Strategy는 토착 청소년(Aboriginal youth)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청소년 의뢰 프로그램(youth referral

program)과 형사사법 영역에서 경력을 쌓고자 희망하는 토착 청소년에 대한 경찰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경찰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교와 경찰청, 그리고 지역의 연계를 통해 형사사법 영역에 관심있는 청소년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하게 일자리 채용(summer work placements)과 학점 부여 등 다학제적 학과 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뿐 아니라 경찰과 지역주민의 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 존경, 그리고 협력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증진하고 장기적 해법의 과정에서 경찰이 담당해야 할 과제 발굴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⁸¹⁾

(7) 이태리⁸²⁾

이태리는 사법절차 하에 놓여 있는 모든 청소년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행정당국과 법무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함을 소년법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년법(d.p.r. 448/1988)과 아동복지법(legge 216/1991; legge 285/1997)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청소년보호 사업에 대한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 소속 지방사무소에서 지역(regione)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소년사법센터(Centro per la Giustizia Minorile, CGM)가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협약과 계약의 형태로 관내 소년보호기관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소년사법센터는 지역 내 소년구치소, 소년교도소,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복지서비스사무소 등 소년보호기관과 가정공동체, 위탁가정과 같은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과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이태리 전역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예로, 로마지역 소년사법센터는 비행청소년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로마시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피에몬테지역 소년사법센터 역시 토리노시의 예산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81) Youth Justice: Certification of Distinction(<http://www.justice.gc.ca>)

82) 이명숙, 2009: 110~114를 요약한 것임.

특히, 법무부는 정부재정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지방정부와 적십자사와 같은 비영리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사회에 홍보하며 각 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담당한다. 또한, 산하기관인 소년구치소, 소년교도소, 소년복지사무소는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와 활용 등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소년보호기관의 다기관 협력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로마 근교에 위치한 Casal del Marmo 소년교도소 내에는 교도소, 소년사법센터, 지방행정기관, 청소년관련단체와 같은 제3의 기관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다기관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는 청소년선도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며 그 일환으로 소년교도소를 출원한 무의탁 외국인 청소년의 직업재활 프로젝트(LEGGERE, 이해하기)를 운영하고 있다. 동유럽등지에서 무단 입국한 청소년들의 경우 출원 후 안정적인 주거지와 합법적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기관 협력의 요구될 수밖에 없다.

둘째, 출원한 청소년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상점 및 공장 등 ‘청소년근로 연수업체’로 지정된 곳에서 6개월간 취업훈련을 받고 정부가 근로장학금(borse lavoro) 형태로 임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업종은 피자가게 등 요식업, 목공, 이미용 등으로 자영업에 용이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소년구치소를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출원하거나 사회내처우의 일종인 예비적 조치(준수명령, 가정거주명령, 가정공동체취탁명령 등)를 받고 출원하는 남자청소년과 초범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육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지역 교육청에서 4명의 청소년 지도사와 문화중개사가 파견되며, 주간교육센터 2개곳, 청소년수련시설 2개곳, 청소년쉼터 및 중간의 집 등의 시설과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토리노 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국규모의 은행인 SAN PAOLO 은행이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기관 협력 프로젝트안 안정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표 II-15>와 같이 소년법원, 검찰, 법무부 소년복지서비스사무소, 지방행정기관 간의 사안에 따른 업무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15> 다기관 협력 업무체결 현황

구분	형태	기관유형	기관명	대상	지원내용
1	협약	지방 행정기관	토리노시청	소년구치소 소년교도소출원자	직업재활연수, 학교교육지원, 시설입소, 위탁가정선정
2	협약	"	"	소년복지사무소 선도대상	시청산하 직업훈련센터의 교과교육 및 직업재활교육
3	운영 협약	"	"	무의탁외국인범죄 소년, 매춘, 인신매 매 피해자	정서적 지지, 개별교육지원
4	특별 협약	"	"	소년교도소 소년복지사무소 선도대상	직장연수(3개월)
5	협약	공공기관	토리노사회 보건소	무의탁외국인 범죄소년	건강체크(주1회, 방문)
6	특별 협약	"	토리노교통 공사	범죄소년	직업훈련, 직장연수지원
7	협약	사회단체	컨소시움	범죄소년	직업재활서비스
8	협약	"	Casa di Carita	소년교도소에서 구 금대체조치로 외부 작업에 통근하는 청 소년	직업재활 직장연수지원
9	특별 협약	"	C.O.N.I.	소년교도소 사회내처우대상	스포츠활동, 스포츠치료
10	협약	"	Legambiente	범죄소년	직업연수, 집단활동, 사회생 활훈련
11	계약	"	Esserci	"	사회성훈련, 초등교육, 개별 학습지도, 직업훈련 등
12	계약	"	Casa di Carita	"	"

주: 2003년 10월부터 2007년까지의 체결된 협약문을 제시함.

출처: 피에몬테지역 소년사법센터 협약문(2007. 3); 이명숙, 2009: 113-114 인용.

3) 요약 및 시사점

소년사법 영역에 멘토링의 이념과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국외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 내용은 청소년 비행의 양상, 청소년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식, 멘토링 운영을 위한 여건 및 전달체계의 구축 정도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사법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멘토링을 가장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및 제도적 여건이 발달해 있어 소년사법 영역 및 청소년의 사회화 관련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으며 멘토의 교육과 훈련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멘토링의 재범방지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 환류(feedback)를 통해 멘토링의 운영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영국·뉴질랜드·캐나다 등에서는 미국의 경험을 준거로 삼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소년사법 영역에서의 멘토링은 연방정부-지방정부-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협력체계 속에서 특히 연방정부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며 지방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와 자원, 자료들을 제공하는 실제적인 ‘조정(steering)’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비교적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은 그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모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재정 정도가 열악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도 성공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전국 및 지방 수준의 민간 멘토링 조직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미국 멘토링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는 멘토링이 단독으로 전개되기보다는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과 병과된다는 점이다. 즉, 멘토링은 그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 청소년이 다른 처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하는 보조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청소년의 위험과 욕구를 감안하여 특화된 멘토링 프로그램이 발달한 것도 차별화된 부분이라 하겠다. 재비행 청소년이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구금시설에 수용된 범죄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비행청소년 대상 멘토링, 부모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위기 청소년 대상 멘토링, 빈곤·실업·구금·범죄율이 높아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력이 약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대상 멘토링, 청소년 구금시설에서 만기퇴원하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적 차원의 멘토링 등 청소년의 문제와 욕구에 부응하는 다원화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멘토링의 운영 주체가 다원화된 특징을 보인다.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멘토링, 신앙에 기초한 멘토링 프로그램, 기업 및 단체에 기초한 프로그램, 대학 기반의 멘토링, 비영리단체의 멘토링 등이 있으며 연방정부에서는 교정멘토링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등에게 물적·정보 자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과 영국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역시 위기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집중보호관찰 대상 소년을 위한 멘토링, 구금시설로부터 사회로 복귀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후보호적 멘토링 등이 정부차원에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같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며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및 다른 처우 프로그램과 함께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미국과 유사하다.

뉴질랜드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멘토링을 기획하고 지역 수준에서의 멘토링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개발부, 법무부, 경찰, 청소년개발부 등 청소년 관련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후원

하는 것은 미국 및 영국과는 차별화된 측면이다. 그러나 표준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질 관리에 연방 및 중앙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라 하겠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은 독일에서는 외국인 범죄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이질적인 문화와 외모 등으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긴장과 갈등 정도가 높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우발적으로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멘토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호주 또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대상 멘토링 연구, 도구 및 자료 공유를 위한 전국적인 허브(hub)기관이 존재한다. 멘토링 네트워크는 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해 전국적인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내며 멘토링 운영지침은 물론 멘토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멘토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호주 내 멘토링 조직들은 연방 및 주정부는 물론 대규모 투자회사, 은행, 심지어 소매상점으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호주 역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주목하고 있으며, 비행가능성이 높은 위기청소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 구금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는 범죄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적 멘토링 등 소년사법체계 하에 있는 청소년에게 특화된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동질성 등으로 인해 소년사법 분야에서도 유사성이 관찰되며, 멘토링 역시 민간차원에서의 협의체를 통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도모하는 공식·비공식적 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를 동일하게 취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사법영역에서의 멘토링은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나, 일반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캐나다는 독자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발달하기보다는 미국에서 활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캐나다의 특성에 맞춰 토착화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캐나다 역시 전국적인 멘토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멘토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이 원활하게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의 멘토링은 운영과 내용에서 미국과 유사한 점이 상당부분 관찰된다.

멘토링은 유럽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영국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비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소년사법에 교육이념이 도입되었으며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개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년사법 영역에 접목되고 있다.

비행청소년 멘토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반 멘토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며, 중간적 산물로 청소년의 학업수행, 중도탈락 예방, 출석 및 성적향상, 사회기술 및 적절한 갈등관리 기술 함양, 그리고 긍정적 자아형성을 기대한다. 차이를 보이는 점은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멘토링의 조직화 방식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전환처우(diversio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행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처우 프로그램들이 본격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개정소년법에서 다기관 협력을 명시한 것도 2002년에 이르러서이다. 따라서, 소년사법 영역에서 멘토링을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저조한 상황이므로 주요국의 성공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제도적 운영 관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첫째,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운영 주체는 (중앙 혹은 지방)정부이다. 특히, 정부는 프로그램 기획과 재정지원을 담당하며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 별도의 부서를 두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민간단체에 멘토링 활동비와 멘토 교육비, 조사·연구비의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자료와 활동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실제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멘토링 운영상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할 뿐,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개별화된 프로그램들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운영주체는 정부, 실행주체는 민간이라는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멘티는 수용보호중인 청소년이 반드시 포함된다. 특히, 범죄경력과 관계없이 퇴소 3개월 이전부터 이들의 사회복귀와 적응을 돕기 위해 멘토링이 병과되며 출원 후 최대 1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멘토는 멘티와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며, 보호소년에게 멘토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종의 적극적 보호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멘토링은 훌륭한 사후보호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임시퇴원생들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보호관찰관의 업무량 폭주로 인해 효과적인 사후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소년원 만기퇴원생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교육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지도 못하고 있고 만기퇴원 후에는 아무런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차 재범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구금시설로부터 사회로 복귀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사후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멘토링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활동내용은 다양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멘토링 관계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발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비행청소년 멘토링은 전통적인 일대일의 관계 뿐 아니라 교육과 체험을 매개로 하는 집단 활동과 학습지원을 병행하기도 하며 바람직한 역할모델의 경험을 넘어, 멘티가 지역내 자원을 활용하거나 사회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복지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멘토링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일관되지 않으나, 멘티의 자존감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과 함께 포괄적인 처우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 함께 제공되고 있다. 즉, 멘토링의 재범감소 및 범죄예방 효과에는 다소 이견이 존재하나 멘토링은 범죄소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다른 프로

그럼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핵심적 요소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다섯째, 멘토의 조건보다는 참여의사가 있는 멘토의 ‘발굴’과 ‘양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멘토의 전문성과 자질, 연령과 성별,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학생, 경찰, 공무원, 일반 성인, 사업가, 일반 성인 등 지역의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로 누구나 참여하고 있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경험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발굴과 양성이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발굴은 멘토링이 멘티 뿐 아니라 멘토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상호적 효과를 토대로 한다.

여섯째, 교정멘토링의 활동내용은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JUMP하에 90개 이상의 각기 다른 교정멘토링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등 각기 다른 접근방법을 장려하고 있어 멘티의 특성과 사안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비행 청소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구금시설에 수용된 청소년, 만기퇴원을 앞둔 청소년,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등 다차원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일곱째, 미국의 경우 민간기관이 멘토링 운영을 위하여 JUMP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타 기관과의 협력’ 여부가 주요 사항으로 포함되고 있다. 즉, 취약위기 청소년의 문제는 한 기관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과 타 기관간의 연계가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학교의 참여와 협조를 매우 중요하며,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은 학교기반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여덟째, 미국의 JUMP, 전국 멘토링 협력회(The Mentoring Partnership), 이태리의 지역소년사법센터(CGM)과 같이 멘토링을 포함하는 다기관 연계를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존재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 업무와 소년복지 업무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양 부서의 통합과 공공, 민간의 실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지역자원협력과(가칭)’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내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이명숙, 2009: 121). 이러한 조직은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구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연결

과 조정을 담당하는 허브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허브기관은 멘토링 운영 지침, 각종 서식, 교육내용 및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민간기관에 제공하며 교육 및 홍보자료의 개발을 통해 지역 내 멘토의 발굴과 양성을 돕고 이 과정을 통해 멘토링의 질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아홉째, 멘토는 심리전문가, 경찰, 교사, 일반 성인, 대학생 등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멘티의 위험과 욕구 사정 결과, 경찰 및 법원단체의 여부, 초범·재범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멘토와 매칭이 이루어졌을 때 멘토링의 단독 효과가 높은 만큼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열 번째, 멘토링의 조직화에 필요한 지침(protocol)을 제공하거나 각종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주요국의 경우 전국적 차원의 멘토링의 이면에는 정보 네트워크가 있고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의견 수렴의 통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들이 한 곳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온라인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초기 작업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교정멘토링을 제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운영 주체는 다원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part G)과 같이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며 민간단체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원이 요구된다. 즉, 최소한의 활동비와 결연관리자의 급여가 그 예이며 향후에는 평가와 수퍼비전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

국내·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멘토링은 일반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가정 및 학교에서 역할모델을 갖지 못하는 고위험 아동·청소년의 보호요인 증진에 효과가 있는 예방적 전략임을 알 수 있다(채형일, 2001; 하성민, 2001;

권문일·윤웅장, 1997; Lee and Cramond, 1999; Aseltine et al., 2000; Rhodes et al., 2000; Karcher et al., 2003).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요 대상과 목적, 활동 내용 및 구조가 상이하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의 JUMP에서 지원하는 비행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과 메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OJJDP는 비행청소년 멘토링이 멘티의 동료관계 개선과 공격행동 및 비행 위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⁸³⁾ 이와 함께 비행청소년 멘토링은 지역사회 내 처우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6개월 이후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순응하는 멘토링의 단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ur and Miller, 2004: 587).

미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멘토링 운영에는 BB/BS(Big Brothers/Big Sisters)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가 기여한 바가 크다. BB/BS 멘토링 프로그램의 평가를 수행한 P/PV(Public/Private Ventures)는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를 반사회적 행동, 학업성취,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자아개념, 그리고 사회적·문화적인 기회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⁴⁾ 즉,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들은 통제집단 청소년에 비해 약물사용, 폭행 등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하고 타인과의 관계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BB/BS 프로그램이 개인적 발전과 관계형성에 초점을 두고 학업성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운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반의 활동이 학습과 관련한 태도와 학교적응, 그리고 성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

83) http://www.ncjrs.org/html/ojjdp/summary_comp_resp/chap3.html

84) P/PV는 청소년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 지역사회 활동의 효과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전국적 비영리조직으로, 1992년부터 2년간 BB/BS에 참여한 10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멘티의 상당수가 저소득 빈곤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비행청소년으로, 18개월 동안의 멘토링 이후 약물남용(-45.8%), 음주(-27.4%), 타인 구타(-31.7%)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각각 감소하였고 결석(-52.2%) 및 수업결손(-36.7%), 부모에 대한 거짓말(-36.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4.3%), 타인 신뢰(2.7%), 정서적 지지(2.3%)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비행청소년에 대한 공공-민간 협력의 교정멘토링 운영의 추진체가 되었다(Bilchik, 1997).

로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소년과 그 가족이 지역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활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보호처분의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이득(benefits)이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Wilson, 2000; 김지선, 2002: 103; OJJDP, 2007). 이와 함께 JUMP가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를 대상으로 한 주관적인 평가 결과 멘토링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서로에 대한 이해 정도는 멘토와 멘티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멘토와 멘티가 인지하는 멘토링의 효과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멘티 뿐 아니라 멘토에 대한 평가 역시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no et al., 1998).

2004년부터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보호관찰 지원사업’의 11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멘토링과 다기관 협력 네트워크가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한 프로그램의 경우 1년 동안 실시된 멘토링은 멘티의 자존감 향상, 긍정적인 대인관계 향상, 재비행 예방, 재범가능성 파악 및 사전 차단, 지역 내 자원 활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이 보호관찰소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의 타 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업에 대한 모금회의 지원이 종결 된 이후에도 보호관찰소는 지속적인 연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 차원에서의 만족도 역시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청소년보호관찰전문위원회, 2007: 61-91).

그러나 위와 같이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먼저, 비행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멘토와의 접촉빈도와 대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평균 월 3회 이상, 회당 4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만남을 기반으로, 전화 등 부가적인 접촉이 함께 이루어질 때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멘토가 교사 혹은 설교자(preacher)보다는 친구로 정의되며, 멘티의 행동과 특성 변화 보다는 멘티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범 예방이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할지라도 멘티의 직접적인 행동교정보다는 멘티와 멘토의 인간적인 관계형성(rapport)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멘티의 역량강화를 돕는 멘토링의 기본적인 개념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멘티, 멘토를 지원하는 사례관리자(case manager)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례관리자는 멘티의 부모나 멘티가 필요로 하는 자원과 상시 연결이 가능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멘토에 대한 관리감독(supervise)과 철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Bilchik, 1997). 즉, 교정멘토링은 멘토와 멘티의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결연관리자 및 자원을 포함한 지원체계가 공식적으로 갖추어질 때 재범 예방 및 실질적인 사회복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민간의 협력과 지역사회 중심의 처우서비스 연결망의 유무가 그 효과를 결정하는 관건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경우 재범율과 같은 공식적인 기록에 대한 평가가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멘토링의 투입(dosage)에 따른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멘토링의 결과물에 대한 보다 책임감 있는 과정으로 권장된다(Blechman and Bopp, 2005: 461).

범죄율에 대한 멘토링의 효과에 관한 실제적인 효과 역시 여러 연구에서 발견된다. 먼저 Cambridge-Somerville Youth Study(CSYS)은 1935년부터 저소득 우범지역의 12세 이하의 소년들을 포함시킨 후 나이, 가족 환경, 범죄 경력을 고려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멘토링 그룹에는 비멘토링 그룹과는 달리 사회복지사가 소년 및 소년의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 달에 두 번 정도 소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45년 멘토링이 종결된 이후 FBI의 범죄기록에 따르면 비멘토링 그룹의 청소년들은 알콜,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평균 35세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멘토링 그룹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outcomes)를 보이고 있다(McCord, 1992; Blechman and Bopp, 2005: 457-458).

O'Donnell과 그의 동료들(1979)은 행동문제와 학업수행의 문제가 있는 10세에서 17세의 청소년을 선발하여 실험집단에 335명, 통제집단에 218명을

배정한 후 그 지역의 비전문가를 훈련하여 실험집단의 경우 지역사회 기반의 2인 1조의 프로그램(buddy system)을 3년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 청소년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3년 동안 재범율이 통제집단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경미한(minor) 범법행위만을 보였으며 프로그램을 종결한 이후 1년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재범율은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내외에 가장 높았으나 관계망(networks)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비행과 재범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13명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18개월 동안 대학생과의 일대일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도감독 등 ‘관계(relationship)’를 기반으로 하는 처우는 소년사법 하의 다양한 처우들과 비교할 때 재범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Davidson, Render, Blakery et al., 1987; Blechman and Bopp, 2005: 457-458). 소년범에 대한 23개의 서로 다른 개입에 대한 443개의 평가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사후처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상습화에 있어 20% 내외의 감소를 보여 주며, 보다 구조적인 프로그램(예, skill-oriented)이 상담과 같은 덜 구조적인 프로그램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Lipsey, 1992; Blechman and Bopp, 2005: 498). 이와 함께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체계에도 개입할 수 있는 준전문가(paraprofessional)에 의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재범감소 및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mbo and Schmeidler, 2002; Blechman and Bopp, 2005: 460).

이와 함께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Roberts와 그의 동료들(2005: 11)은 멘토링의 평가에서 객관적인 행정적 기록보다는 자기보고식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형태의 평가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들은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40%만이 결연이 성공적이었고 행동수정과 읽고 쓰는 능력, 혹은 범 죄행동의 감소에 있어 유의한 개선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멘토링에서 기대하는 ‘낮은 비용’이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⁸⁵⁾ 그러나 청소년

85) 다이버전(JD), 기술훈련이 병행된 다이버전(skill training, ST), 멘토링이 병행된 다이버전(MEN)의 비용효과 분석을 비교한 결과 ST, MEN, JD 순으로 비용효과적이

한 명당 1천 6백 만원 이상의 절감은 있다는 주장도 있다.⁸⁶⁾

이와 함께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하는 멘토링은 반사회적 행동 및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으로 권장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Roberts et al., 2004: 513). 무엇보다도 멘토링 관계로 멘티의 비행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바 있으며(Tarling et al., 2001: 61), 심지어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거나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와 효과의 지속기간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다(Blechman et al., 2000; Boaz and Pawson, 2005; Aseltine et al., 2000; Herrera et al., 2007). 그러나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은 기존의 범죄예방위원회제도와 비교할 때 그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김지선, 2002: 129).

멘토링의 효과에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메타분석을 활용한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일부는 재범억제에 유의한 효과가 있으며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재범감소에 효과적인 멘토링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멘토링이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멘토와 멘티가 매주 1회 이상의 만남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우, 그리고 경찰단계와 같이 범죄경력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부 멘토링의 경우 강력한 재범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olan, et al., 2005; Jolliffe and Farrington, 2007; Rhodes, 2008: 37). 그러나 멘토링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멘티와 멘토의 연령 차이, 성별 크로스 매칭의 효과, 프로그램 하부구조의 특성과 같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소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김지선, 2002: 98).

며 ST는 MEN에 비하여 청소년 100명당 평균 3천3백 만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으며 재범율 역시 14%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내 재범률은 ST 37%, MEN 51%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기개입은 그만큼 비용효과가 크며 멘토링은 청소년 한 명당 1천 6백만원 이상의 이득이 있는 개입전략인 것을 알 수 있다(Blechman et al., 2000; Blechman and Bopp, 2005: 458-459).

86) www.whatworksforchildren.org.uk. (2003)

Ⅲ. 조사방법

1. 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2. 면담조사
3. 준실험조사

III. 조사방법

1. 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소년원(분류심사원 1곳 포함) 10개소, 대안교육센터 6개소 등 소년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 51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기관 연계와 관련한 기관의 특성 파악이 목적이므로 각 기관별 담당자 1인을 응답자로 하였다. 응답자 67명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내 소년과와 보호관찰과에서 조사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여 유의 선발하였으며 총 67부(100.0%)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기간은 2009년 5월 11일부터 30일(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메일을 통해 회수하였다.

2) 측정도구

소년원, 대안교육센터, 보호관찰소의 서비스 연계 구조와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영역은 연계관련 요인과 연계속성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서비스 연계 경험은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28$ 로 내적 일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연계망 분석의 측정도구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서비스 연계망 분석 측정도구

범주		변수
연계 요인	개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소년보호업무 경력, 전공, 소속기관, 직위) 월평균 사례수(1인당), 관련연수경험, 연계 중요성 인식, 연계 경험
	조직	월평균 사례수(기관), 자원봉사자 현황, 서비스 현황, 자율성, 관련연수 현황,

범주		변수
연계 속성	구조	연계 형태, 연계 정도, 연계 상호요청 빈도, 연계방향
	과정	외부자원 확보경로, 연계 장애요인, 연계과정, 멘토링 관련 현황(유무, 어려운 점, 효과, 필요성, 개선사항)

3) 분석방법

SPSS(1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교차,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네트워크 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NetMiner(3.1)를 사용하였다. 특히, 비행청소년 관련 기관의 서비스 연계망의 구조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계의 밀도(density), 중심성(centrality), 연결정도(degree), 근접성(closeness), 매개성(betweenness)을 분석하고, 연계망 내의 유사한 관계 패턴을 검토하기 위해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 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다기관 연계에 있어 소년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의 현황과 차이에 보다 주목하고자 응답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분석과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2. 면담조사

1) 전문가 집단면담(FGI)

면담조사는 전문가, 멘티, 멘토로 구분하여 각각 진행하였다. 전문가는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각 3명, 법무부 담당자 2명, 복지부 담당자 1명, 교수 1인 등 총 11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26일에 1차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2차면담은 개별면담 및 이메일 조사로 실시하였다. 면담 및 질문영역은 크게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이해, 활동, 관리와 지원, 전달체계, 제언으로 구분하였다(부록 참조).

2) 멘티 및 멘토 면담조사

멘티와 멘토는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 기관 3곳에서 팀(멘티·멘토 각 1인) 단위로 1차 추천을 받은 후 섭외 과정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자를 임의선발 하였으며 면담과정에서 멘티·멘토가 추천하는 팀을 추가로 포함하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였다. 2009년 7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10팀을 확보하였으며 이 가운데 멘티는 총 8명, 멘토는 총 9명 면담을 실시하였다. 질문영역은 동기, 관계, 활동, 성과, 제언으로 구분하였다(부록 3참조). 멘티, 멘토 면담 대상 및 현황을 제시한 것이 <표 III-2>이다.

<표 III-2> 면담대상(멘티, 멘토) 현황

	구분	성별	소속	비고	최종 면담여부
멘티	A	남	의정부보호관찰소	고1 재학	○
	B	남	"	"	○
	C	여	"	중2 재학	×
	D	여	"	검정고시	○
	E	여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	○
	F	여	"	"	○
	G	여	"	"	○
	H	여	"	"	×
	I	여	안양자립생활관	"	○
	J	여	수원보호관찰소	"	○
멘토	a	남	하나가정연구원	직장인	○
	b	여	"	"	○
	c	여	"	"	○
	d	여	"	주부	○
	e	여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	○
	f	여	"	"	○
	g	여	"	"	○
	h	여	"	"	×
	i	여	대한불교	"	○
	j	여	경기대학교	대학생	○

주: 멘티(A)와 멘토(a)는 순서대로 각각 결연관계임

3. 준실험조사

1) 조사개요

이 연구에서는 비동일통제집단비교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를 적용하여 교정멘토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멘티를 대상으로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⁸⁷⁾ 특히, 이 연구에서는 멘토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통제집단을 구할 수 문제로 인해 단일집단비교설계(One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를 활용하였다. 사전조사는 2009년 3월 현재 교정멘토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멘티, 멘토 가운데 측정에 동의한 각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멘티의 비교집단은 같은 시점에서 비행청소년 멘토링에 참여하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소년 및 보호소년을 무작위 표집하여 최종 45명에 대한 사전조사를 완료하였다. 사전조사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되었다.

사후조사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총 8일간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동안 회수된 설문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멘티 49명, 멘토 42명이며 멘티 통제집단은 총 32명으로 사전, 사후 조사가 모두 완료된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단, 보호관찰 대상소년과 보호소년의 경우 생활환경 등에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

2) 측정변인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멘티의 경우 측정영역은 자아존중감, 성공경험, 자신감, 활동내용, 만족도로 구분하였으며, 멘토는 자기유능감, 성공경험, 자신

87) 이러한 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애초에 동질적인 집단인가에 대한 설명이 약하며 예상하지 못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나 비행청소년과 같이 실험집단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이 윤리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 실천적 환경의 여건을 감안할 때 장점이 있으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원을 최대한 유사하게 임의배치하여 실험설계와 동일한 검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김영중, 1999: 116; 우수명, 2004: 113).

감, 사전 활동경험, 참여동기, 멘티의 특성 등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멘티의 소속기관 담당자로부터 멘토링 기간 동안의 재범여부, 진로·학업 관련 사항(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합격 등) 등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다. 멘티, 멘토의 사전사후 측정도구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표 III-3>이다.

<표 III-3> 멘티, 멘토 사전사후 측정도구

구분		주요변수	문항	출처
멘티	사전	자아존중감 성공경험 자신감 자율성 희망직업유무	1(1-6) 2(1-8) 3(1-7) 4 5	한국청소년패널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2009) " 김기현·김지연 외(2008)
	사후	활동내용 만족도	5(1-4) 6(1-4), 7, 8	
멘토	사전	자기유능감 성공경험 자신감 사전 활동경험 참여 동기	1(1-6) 2(1-8) 3(1-7) 4 5	박현선(1998)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2009) "
	사후	만족도 멘티 특성	4(1-4), 5, 6 7, 8, 9	

주: 1) 사후검사는 사전검사 항목을 모두 추가하며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멘티(성별, 나이), 멘토(성별, 나이, 학력, 활동경험)를 포함함. 2) 성공경험 항목은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서 멘토링 효과 평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3) 분석방법

SPSS(1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전체 기간을 감안하여 실험·통제집단의 사후결과 비교에는 ANCOVA 분석을 사용하였다. 즉, 멘티의 경우 실험-통제집단의 사후 점수 비교, 멘토는 사전-사후 점수 비교를 통해 효과를 측정하였다.

IV. 조사결과 분석

1. 비행청소년 관련기관의 서비스
네트워크 현황
2. 멘토링 운영방안
3.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분석
4. 소결

IV. 조사결과 분석

1. 비행청소년 관련기관의 서비스 네트워크 현황

1) 일반적 특성

응답자 67명 가운데 남성은 49명(73.1%), 여성은 18명(26.9%)이며, 경력은 5년 이상이 39명(58.2%)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전공은 기타가 32명(47.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행정학 12명(17.9%), 법학 10명(14.9%) 순이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수(명)	유효 퍼센트(%)	합계(명, %)
성별	남자	49	73.1	67(100.0)
	여자	18	26.9	
기관유형	소년원	10	14.9	67(100.0)
	대안교육센터	6	9.0	
	보호관찰소	51	76.1	
소년보호업무 경력	1년미만	1	1.5	67(100.0)
	1년이상 2년미만	10	14.9	
	2년이상 3년미만	4	6.0	
	3년이상 4년미만	10	14.9	
	4년이상 5년미만	3	4.5	
	5년이상	39	58.2	
전공	사회복지학	6	9.0	67(100.0)
	법학	10	14.9	
	심리학	3	4.5	
	행정학	12	17.9	
	사회학	2	3.0	
	기타	32	47.8	
	무응답	2	3.0	

한 달 평균 관리 사례수는 평균 약 633.8건 정도이며 기관유형별로 보면 소년원 약 255.8건, 대안교육센터 161건, 보호관찰소 622건 등으로 나타났다. 담당자 1인 관리건수 역시 기관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F=24.471$, $p<.001$), 보호관찰소(141.2)건, 대안교육센터(28.6건), 소년원(17.2건) 순으로 나타나 특히 보호관찰소의 경우 담당 사고계수가 많음으로 인해 담당자에 의한 깊이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표 IV-2).

<표 IV-2> 기관유형별 상담건수 평균비교

(단위: 명,건)

		N	평균	표준편차	F
기관 사례수	소년원	8	255.7500	221.70814	2.744
	대안교육센터	5	161.0000	192.10674	
	보호관찰소	51	725.6078	765.96230	
	합계	64	622.7656	718.35082	
개인 사례수	소년원	9	17.2222	12.53772	24.471***
	대안교육센터	5	28.6000	17.31473	
	보호관찰소	50	141.1600	62.91470	
	합계	64	114.9375	74.96007	

사례수를 유형화하여 살펴본 결과,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경우 100건 이상 500건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4명(50.0%), 17명(33.3%)으로 가장 많고 대안교육센터는 100명 이하가 3명(60.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소의 경우 기관특성상 월 평균 관리 건수가 1,300건 이상이라는 응답도 12명(2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사례수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선도와 원호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소년원, 대안교육센터, 보호관찰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를 살펴본 결과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평균 10.2개 정도이며, 기관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8.335$, $p<.01$). 소년원(10.9)과 보호관찰소(10.6)가 대안교육센터(5.3)에 비해 서비스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

<표 IV-3> 기관 유형별 제공되는 서비스 수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F
제공하는 서비스 수	소년원	10	10.9000	2.96086	8.335**
	대안교육센터	6	5.3333	2.33809	
	보호관찰소	51	10.6275	3.14300	
	합계	67	10.1940	3.38553	

**p<.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종류를 확인한 결과 <표 IV-4>와 같이 무응답 1명을 제외한 총 66명의 1인당 응답률이 10.333%로, 이는 한 기관 당 평균 10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예방위원 및 자원봉사자에 의한 비공식적 연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한 것으로, 장학금지원과 (약물, 성폭력 예방 등)교육이 각각 57명(8.4%)으로 가장 빈번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직업훈련이 31명(15.7%)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진로 및 학업지도가 26명(13.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서비스 가운데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하여 타 기관과의 연계가 꼭 필요한 서비스는 직업훈련(16.2%), 경제적 지원(11.7%), 취업알선(11.2%) 순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청소년의 자립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IV-4> 서비스 제공 현황 및 필요 서비스 (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응답수	반응백분율	응답수	반응백분율	응답수	반응백분율
숙소알선	42(6.2)	63.6	5(2.5)	7.6	11(5.6)	16.7
취업알선	49(7.2)	74.2	22(11.1)	33.3	22(11.2)	33.3
직업훈련	49(7.2)	74.2	31(15.7)	47.0	32(16.2)	48.5
복학지도	54(7.9)	81.8	19(9.6)	28.8	8(4.1)	12.1
장학금지원	57(8.4)	86.4	4(2.0)	6.1	6(3.0)	9.1

구분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응답수	반응백분율	응답수	반응백분율	응답수	반응백분율
경제적지원	52(7.6)	78.8	21(10.6)	31.8	23(11.7)	34.8
문신제거	46(6.7)	69.7	1(.5)	1.5	5(2.5)	7.6
집단상담	53(7.8)	80.3	15(7.6)	22.7	13(6.6)	19.7
심리검사	55(8.1)	83.3	9(4.5)	13.6	8(4.1)	12.1
교육	57(8.4)	86.4	25(12.6)	37.9	21(10.7)	31.8
타기관의회	35(5.1)	53.0	-	-	-	-
진로 학업지도	49(7.2)	74.2	26(13.1)	39.4	20(10.2)	30.3
공부방	20(2.9)	30.3	9(4.5)	13.6	10(5.1)	15.2
멘토링제공	44(6.5)	66.7	10(5.1)	15.2	14(7.1)	21.2
의료지원	20(2.9)	30.3	1(.5)	1.5	4(2.0)	6.1
계	682(100.0)	1033.3	198(100.0)	300.0	197(100.0)	298.5

멘토를 포함한 자원봉사자 규모를 살펴본 결과 총 67개 기관에서 평균 135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범죄예방위원이 평균 85명으로 가장 많고, 특별범죄예방위원(24명), 기타(21명), 멘토(5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기관 및 보호관찰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수는 최소 0명에서 최대 515명까지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표 IV-5).

〈표 IV-5〉 자원봉사자 현황

구분	특별위원	범죄예방위원	멘토링	기타	계
	67	67	67	67	67
평균	24.2090	85.9254	5.3284	21.6269	135.2537
평균의 표준오차	4.63120	12.58412	1.11816	6.50685	15.58721
최소값	.00	.00	.00	.00	.00
최대값	194.00	401.00	38.00	250.00	515.00

마지막으로, 기관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례의 관리계획과 개입에 있어 담당자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대안교육센터(1.83), 보호관찰소(2.43), 소년원(3.5) 순으로 나타났다(표 IV-6). 이러한 결과는 기관의 특

성을 고려할 때 예측가능 한 결과임과 동시에 대안교육센터의 경우 비행예방을 위한 자원연계에 있어 담당자의 의지와 재량이 상대적으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수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호관찰소 및 소년원은 업무지시 및 지침과 같은 보다 공식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기관별 사례의 관리계획과 개입 시 자율성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800, p<.001$).

<표 IV-6> 기관별 사례관리계획 및 개입의 자율성 정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비
소년원	10	3.50	2.013	12.814	2	6.407	5.800 ***
대안교육센터	6	1.83	0.408	53.844	64	.841	
보호관찰소	51	2.43	0.574	66.657	66		
계	67	2.53					

주1) 5점척도로 평균이 낮을수록 자율적임. *** $p<.001$

2) 멘토링 관련 현황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 51명 가운데 44명(86.3%)이 운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호관찰소의 경우 소년원과 비행예방센터에 비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7).

<표 IV-7> 멘토링 운영 경험

	있다	없다	(단위: 명, %) 전체
소년원	4(40.0)	6(60.0)	10(100.0)
대안교육센터	1(16.7)	5(83.3)	6(100.0)
보호관찰소	44(86.3)	7(13.7)	51(100.0)

$\chi^2=21.959, df=2, p<.001$

멘토링을 운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운영상의 장애요인을 2순위까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멘토의 이해부족’이라는 응답이 25명(2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멘토링이 부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과다'라는 응답이 21명(21.6%), '멘토의 책임감 부족' 15명(15.5%), '예산 지원 미흡' 13명(13.4%), '한시적 운영' 11명(11.3%), '조직내부의 이해부족' 5명(5.2%), '멘토의 수 부족' 4명(4.1%), '운영 지침의 부재' 3명(3.1명) 순으로 나타나 멘토의 질 관리와 공식적인 멘토링 운영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표 IV-8).

〈표 IV-8〉 멘토링 운영상 장애요인(중복응답)

N=49	응답(명, %)	사례 백분률(%)
조직내부의 이해부족	5(5.2)	10.2
업무과다	21(21.6)	42.9
멘토의 이해부족	25(25.8)	51.0
멘토의 책임감 부족	15(15.5)	30.6
운영 지침 부재	3(3.1)	6.1
한시적인 운영	11(11.3)	22.4
멘토 부족	4(4.1)	8.2
예산 지원 미흡	13(13.4)	26.5
계	97(100.0)	198.0

멘토링을 '운영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중립적 응답을 제외하면 심리·정서적인 안정은 '도움이 됨(매우 포함)'이라는 응답이 23명(34.3%)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자존감 향상 15명(22.4%), 다른 자원 연결 19명(28.4%), 역할모델 제공 18명(26.9%), 진로지도 33명(32.8%) 순으로 나타나 멘토링이 각 항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문제행동 감소의 경우 도움이 된다(매우 포함)와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13명(19.4%)으로 동일하였으며, 재비행 예방의 경우 도움이 된다(11.9%)보다 도움 되지 않는다(19.4%)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소년범 선도를 위해서는 멘토링 내용과 방식에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표 IV-9).

〈표 IV-9〉 멘토링 운영 효과

(단위: 명, %)

구분	매우도움	도움	보통	도움되지 않음	계
심리·정서 안정	1(1.5)	22(32.8)	23(34.3)	3(4.5)	49(73.1)
자존감 향상	0(0.0)	15(22.4)	30(44.8)	4(6.0)	49(73.1)
문제행동 감소	1(1.5)	12(17.9)	27(40.3)	9(13.4)	49(73.1)
재비행 예방	1(1.5)	7(10.4)	28(41.8)	13(19.4)	49(73.1)
다른 자원 연결	0(0.0)	19(28.4)	18(26.9)	12(17.9)	49(73.1)
역할모델 제공	0(0.0)	18(26.9)	27(40.3)	4(6.0)	49(73.1)
진로지도	0(0.0)	22(32.8)	23(34.3)	4(6.0)	49(73.1)

이와 함께 멘토링의 전반적 효과를 확인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보통’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호관찰소(3.2)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기관유형별 응답은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V-10).

〈표 IV-10〉 기관유형별 멘토링효과

	N	평균	표준편차	F
소년원	4	2.9643	.31677	.938
대안교육센터	1	2.8571	.	
보호관찰소	44	3.2403	.47408	
합계	49	3.2099	.46484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한 결과 <표 III-11>과 같이 소년원의 경우 필요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6명(60%), 대안교육센터 6명(100.0%), 보호관찰소 6명(11.8%)로 기관별 응답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의 경우 멘토링 경험율이 높은 것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가장 낮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멘토의 이해부족을 포함한 멘토 요인과, 멘토링이 부가적인 업무가 되고 있다는 운영상의 장애인요인에서 그 해답을

일부 찾을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기관장의 재량으로 운영될 경우 담당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년 범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멘토의 질 관리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IV-1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필요	계
소년원	0(0.0)	0(0.0)	4(40.0)	6(60.0)	0(0.0)	10(100.0)
대안교육센터	0(0.0)	0(0.0)	0(0.0)	6(100.0)	0(0.0)	6(100.0)
보호관찰소	2(3.9)	19(37.3)	24(47.1)	5(9.8)	1(2.0)	51(100.0)

$$\chi^2=7.677 \text{ df}=8 \text{ p}=.466$$

이와 함께 멘토링에 대한 필요성이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운영경험과는 관계없으며 응답자의 6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IV-12).

〈표 IV-12〉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여부에 따른 필요성 평가

		멘토링 유무(명, %)				전체(명, %)	
		있다		없다			
멘토링 필요성	필요하지 않다	2	4.1%	0	.0%	2	3.0%
	보통이다	18	36.7%	5	27.8%	23	34.3%
	필요하다	24	49.0%	12	66.7%	36	53.7%
	매우 필요하다	4	8.2%	1	5.6%	5	7.5%
	무응답	1	2.0%	0	.0%	1	1.5%
전체		49	100.0%	18	100.0%	67	100.0%

$$\chi^2=2.296, \text{ df}=4, \text{ p}>.05$$

멘토링이 비행 예방과 선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를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71점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안교육센터(5.0)가 소년원(3.5점)과 보호관찰소(3.6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IV-13). 이러한 결과는 멘토링이 고위험군에 비해 경미한

(minor) 경우 예방 및 선도효과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다($F=6.414$, $p<.01$).

<표 IV-13> 기관 유형별 멘토링 필요성 및 도움정도 평가

		N	평균	표준편차	F
멘토링 필요성	소년원	10	3.6000	.51640	.342
	대안교육센터	6	4.0000	.00000	
	보호관찰소	51	3.7451	1.03621	
	합계	67	3.7463	.92676	
멘토링이 도움된 정도	소년원	10	3.5000	.70711	6.414**
	대안교육센터	6	5.0000	2.00000	
	보호관찰소	51	3.6078	.77662	
	합계	67	3.7164	.99706	

** $p<.01$

마지막으로, 멘토링의 개선사항에 대한 1, 2순위 응답을 분석한 결과, ‘멘토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61명(46.9%)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35명(26.9%), 성폭력 사범 등을 제외하는 등 ‘멘티의 범죄 경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3명(2.3%), ‘멘토링 운영을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필요’하다는 2명(1.5%)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멘티와 멘토의 성별을 동일하게 매칭’해야 한다는 3명(4.6%), ‘업무성과에 반영’해야 한다는 2명(3.1%), 운영 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2명(3.1%)으로 나타나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멘토의 양성 및 교육을 통한 질 관리와 제도적 시행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표 IV-14).

<표 IV-14> 멘토링 운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중복응답)

N=65	응답(명, %)	사례 백분율(%)
업무성과에 반영	2(1.5)	3.1
업무지침에 의한 시행	1(.8)	1.5
멘티의 범죄경력 고려	12(9.2)	18.5

N=65	응답(명, %)	사례 백분율(%)
멘티와 멘토의 성별 고려	5(3.8)	7.7
운영 지원기관(민간단체)	12(9.2)	18.5
멘토의 질 관리	61(46.9)	93.8
지속적인 운영	35(26.9)	53.8
운영 지침에 따른 시행	2(1.5)	3.1
계	130(100.0)	200.0

3) 자원연계 및 협력 현황

(1) 연계 및 협력을 위한 기반

먼저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협조공문을 발송’한다는 응답이 소년원(72.7%), 대안교육센터(100.0%), 보호관찰소(81.6%)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교육센터의 경우 협조공문 외에 기존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보호관찰소는 업무협약(MOU)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을 잇고 있어 담당자의 재량 및 사적 인맥보다는 협조공문 및 업무협약과 같은 공식적 경로를 통해 지역 내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V-15).

<표 IV-15> 외부 인적·물적자원 확보 경로 (중복응답)

	소년원 N=11(100.0)	대안교육센터 N=7(100.0)	보호관찰소 N=49(100.0)
1)홈페이지	3(27.3)	3(42.9)	3(6.1)
2)신문, 방송매체	2(18.2)	2(82.6)	7(14.3)
3)협조공문	8(72.7)	7(100.0)	40(81.6)
4)업무협약	4(36.4)	4(57.1)	26(53.1)
5)개인인맥	7(63.6)	3(42.9)	14(28.6)
6)유관기관 소개	7(63.6)	5(71.4)	14(28.6)
7)기존 봉사자를 통해	8(72.7)	2(28.6)	14(28.6)

1) $\chi^2=11.760$, $df=2$, $p<.01$ 2) $\chi^2=1.614$, $df=2$ 3) $\chi^2=2.306$, $df=2$ 4) $\chi^2=1.072$, $df=2$ 5) $\chi^2=2.998$, $df=2$ 6) $\chi^2=8.796$, $df=2$, $p<.01$ 7) $\chi^2=6.478$, $df=2$, $p<.05$

다음으로, 지역 내 자원 활용 및 연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교육 및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 연수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I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관련 교육 및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경우가 응답자의 71.6%(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기관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와 관련된 교육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이상의 경력자임을 감안할 때 직무 교육 내용에 다소 변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IV-16> 기관유형별 교육여부

(단위: 명, %)

		소년원	대안교육센터	보호관찰소	계
교육 여부	있다	4(40.0)	3(50.0)	12(23.5)	19(28.4)
	없다	6(60.0)	3(50.0)	39(76.5)	48(71.6)
전체		10(100.0)	6(100.0)	51(100.0)	67(100.0)

$$\chi^2=2.636, df=2, p<.05$$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및 연계와 관련한 교육 및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19명을 대상으로 교육 횟수 및 시간을 분석한 결과 횟수는 최소 1회, 최대 10회, 평균 3회 정도, 총 (평균)교육시간은 28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속 기관에서의 관련 교육은 최소 1회, 최대 30회, 평균 4회 정도로 기관 간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단, 이는 1회당 교육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응답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표 IV-17).

<표 IV-17>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연계 관련 교육 횟수

(단위: 건, 시간)

	총 교육횟수	총 교육시간	현 기관의 교육 횟수(건)
유효표본	19	18	18
평균	3.0000	28.6667	4.2778
표준편차	3.19722	34.86276	7.02772

	총 교육횟수	총 교육시간	현 기관의 교육 횟수(건)
최소값	1.00	2.00	1.00
최대값	10.00	100.00	30.00

주1) 현 기관의 교육 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 평균을 의미함.

기관유형별로 현재까지의 교육 및 연수경험을 비교한 결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관련 교육 횟수는 소년원 종사자가 평균 3.7회로 가장 많았고, 보호관찰소(3.0회), 대안교육센터(2.0회) 순이었다. 교육 시간 역시 소년원이 43.5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관찰소(25.2시간), 대안교육센터(21.7시간) 순이었으나 교육 횟수 및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표 IV-18).

<표 IV-18> 기관유형별 교육 횟수 및 시간 비교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교육횟수	소년원	4	3.7500	4.27200	.235
	대안교육센터	3	2.0000	1.00000	
	보호관찰소	12	3.0000	3.33030	
	합계	19	3.0000	3.19722	
교육시간	소년원	4	43.5000	45.38355	.446
	대안교육센터	3	21.6667	24.94661	
	보호관찰소	11	25.1818	34.75289	
	합계	18	28.6667	34.86276	

마지막으로 자원 활용 및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66명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자원 활용 및 연계가 필요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93.9%(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유형별로 인식을 비교한 결과 <표 IV-19>와 같이 평균 4.3 정도로 나타나 자원의 활용과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19〉 기관유형별 타 기관 자원 연계 인식 비교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자원연계 필요성 인식	소년원	10	4.1000	.56765	1.295
	대안교육센터	6	4.1667	.40825	
	보호관찰소	51	4.3922	.60261	
	합계	67	4.3284	.58745	

(2) 연계 및 협력현황과 장애요인

먼저, 각 기관유형별로 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경험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평균 4.0 수준으로 ‘대체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 타 기관과의 협력 경험이 대체로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단, 대안교육센터의 경우 이러한 협력 경험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표 IV-20). 단,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센터의 경우 기관의 주요업무에 차이가 있어 업무관련성 및 효용성이 높은 기관과의 연계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IV-20〉 기관유형별 타 기관과 협력 경험

	기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타기관 협력경험	소년원	9	4.1111	.33333	.097
	대안교육센터	6	4.0000	1.09545	
	보호관찰소	51	4.1176	.58812	
	합계	66	4.1061	.61090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타 기관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례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평균 21%의 응답률을 보여 소년보호기관 및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는 범죄소년 10명 가운데 2명은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기관 1곳 당 평균 30여명의 비행청소년은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한 개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1).

〈표 IV-21〉 담당 사례 중 협력사례 비중

(단위: %, 개)

	협력사례비율	협력사례수
유효표본수	67	61
평균	21.8806	30.7049
표준편차	20.72367	39.23831
최소값	.00	.00
최대값	100.00	200.00

경·검찰 및 법원을 비롯하여 총 14개 유형의 외부 기관들과 어느 정도의 연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경찰의 경우 정보 및 의견교환이 26명(38.8%)으로 가장 많고, 검찰 및 법원, 그리고 타 소년보호기관 및 보호관찰소와는 사례회의를 포함하는 업무협의를 각각 21명(31.3%), 25명(37.3%), 16명(23.9%)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동사무소 및 구청과 병의원, 민간단체 및 대학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교 및 교육청과는 ‘정보 및 의견교환’이 18명(26.9%), 청소년단체는 ‘대상자 의뢰’ 및 ‘공동목표로 사업추진’이 각각 17명(2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쉼터를 포함한 자립지원기관과는 ‘대상자 의뢰’가 가장 빈번한 연계 내용임을 알 수 있다(표 IV-22).

〈표 IV-22〉 타 기관과의 연계 내용

구분	해당사항 없음	연락처나 목록이 있음	정보 및 의견교환	대상자 의뢰	업무협약	공동목표로 사업추진	무응답	계
경찰	9(13.4)	14(20.9)	26(38.8)	10(14.9)	2(3.0)	2(3.0)	4(6.0)	67(100.0)
검찰	5(7.5)	16(23.9)	12(17.9)	7(10.4)	21(31.3)	3(4.5)	3(4.5)	67(100.0)
법원	5(7.5)	15(22.4)	13(19.4)	4(6.0)	25(37.3)	3(4.5)	2(3.0)	67(100.0)
타 유사기관	1(1.5)	8(11.9)	15(22.4)	9(13.4)	16(23.9)	15(22.4)	3(4.5)	67(100.0)
학교·교육청	3(4.5)	4(6.0)	18(26.9)	16(23.9)	11(16.4)	12(17.9)	3(4.5)	67(100.0)
동사무소·구청	17(25.4)	11(16.4)	15(22.4)	6(9.0)	6(9.0)	3(4.5)	9(13.4)	67(100.0)

구분	해당사항 없음	연락처나 목록이 있음	정보 및 의견교환	대상자 의뢰	업무협의	공동목표로 사업추진	무응답	계
병의원	26(38.8)	10(14.9)	10(14.9)	6(9.0)	3(4.5)	1(1.5)	11(16.4)	67(100.0)
복지관	7(10.4)	8(11.9)	12(17.9)	14(20.9)	9(13.4)	13(19.4)	4(6.0)	67(100.0)
직업훈련기관	8(11.9)	9(13.4)	8(11.9)	20(29.9)	5(7.5)	8(11.9)	9(13.4)	67(100.0)
상담기관	4(6.0)	6(9.0)	15(22.4)	15(22.4)	12(17.9)	11(16.4)	4(6.0)	67(100.0)
청소년단체	2(3.0)	5(7.5)	11(16.4)	17(25.4)	11(16.4)	17(25.4)	4(6.0)	67(100.0)
민간단체	17(25.4)	13(19.4)	5(7.5)	5(7.5)	6(9.0)	5(7.5)	16(23.9)	67(100.0)
자립지원기관	9(13.4)	14(20.9)	9(13.4)	18(26.9)	8(11.9)	4(6.0)	5(7.5)	67(100.0)
대학교	17(25.4)	11(16.4)	12(17.9)	5(7.5)	5(7.5)	5(7.5)	12(17.9)	67(100.0)

주 : 1) 타 유사기관은 소년보호기관 및 보호관찰소를 의미함. 2) 민간단체는 종교단체를 포함함. 3) 자립지원기관에는 쉼터를 포함함. 4) 업무협의는 사례회의를 포함하며, 연계내용은 좌측으로 갈수록 낮은 수준의 단순연계, 우측으로 갈수록 좌측의 연계내용을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계를 의미함

기관유형별로 보면 소년원은 경찰을 제외한 모든 기관과 연계가 ‘잘 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많고, 대안교육센터는 경찰, 동사무소 및 구청, 병·의원, 직업훈련기관, 자립지원기관과의 연계가 ‘안 되는 편’이며 보호관찰소는 병의원, 민간단체, 대학교와의 연계는 ‘안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3).

〈표 IV-23〉 타 기관과의 연계 정도

(명, %)

	소년원 (N=10)		대안교육센터 (N=6)		보호관찰소 (N=51)	
	잘됨	안됨	잘됨	안됨	잘됨	안됨
1)경찰*	4(40.0)	6(60.0)	2(33.3)	3(50.0)	37(72.5)	13(25.5)
2)검찰	8(80.0)	2(20.0)	6(100.0)	0(0.0)	40(78.4)	10(19.6)
3)법원	10(100.0)	0(0.0)	6(100.0)	0(0.0)	39(76.5)	10(19.6)
4)타유사기관	10(0.0)	0(0.0)	6(100.0)	0(0.0)	47(92.2)	2(3.9)
5)학교·교육청	9(90.0)	1(10.0)	6(100.0)	0(0.0)	30(58.8)	20(39.2)
6)동사무소·구청	6(60.0)	4(40.0)	1(16.7)	4(66.7)	27(52.9)	23(45.1)
7)병의원***	9(90.0)	1(10.0)	1(16.7)	4(66.7)	14(27.5)	36(70.6)
8)복지관	8(80.0)	2(20.0)	3(50.0)	2(33.3)	38(74.5)	11(21.6)

	소년원 (N=10)		대안교육센터 (N=6)		보호관찰소 (N=51)	
	잘됨	안됨	잘됨	안됨	잘됨	안됨
9)직업훈련기관*	7(70.0)	3(30.0)	0(0.0)	5(83.3)	35(68.6)	14(27.5)
10)상담기관	8(80.0)	2(20.0)	4(66.7)	2(33.3)	40(78.4)	8(15.7)
11)청소년단체	7(70.0)	3(30.0)	6(100.0)	0(0.0)	40(78.4)	9(17.6)
12)민간단체**	10(100.0)	0(0.0)	3(50.0)	2(33.3)	17(33.3)	31(60.8)
13)자립지원기관*	9(90.0)	0(0.0)	2(33.3)	3(50.0)	30(58.8)	19(37.3)
14)대학교	6(60.0)	3(30.0)	5(83.3)	1(16.7)	18(35.3)	30(58.8)

1) $\chi^2=10.221^*$, 2) $\chi^2=1.805$, 3) $\chi^2=4.586$, 4) $\chi^2=1.335$, 5) $\chi^2=6.924$, 6) $\chi^2=6.470$
 7) $\chi^2=19.094^{***}$, 8) $\chi^2=3.352$, 9) $\chi^2=11.742^*$, 10) $\chi^2=2.008$, 11) $\chi^2=2.959$, 12) $\chi^2=16.697^{**}$, 13) $\chi^2=8.070^*$, 14) $\chi^2=7.129$, * $p<.05$, ** $p<.01$, *** $p<.001$

연계가 잘 안 되는 편이라고 응답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경·검찰, 법원은 관련기관의 협조부족이 7명(10.4%)으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타 유사기관은 지리적 거리 때문이라는 응답이 1명(1.5%), 학교·교육청은 타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관련기관의 협조부족,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6명(9.0%)으로 나타났다. 동사무소·구청의 경우 관련 없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 각각 9명(13.4%), 병의원과 청소년단체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 각각 9명(13.4%), 5명(7.5%)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관, 민간단체, 자립지원기관, 대학교 등의 민간기관의 경우 그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이 연계가 안 되는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이들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공유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표 IV-24).

<표 IV-24> 연계가 안 되는 이유

구분	업무협약 안됨	타기관 정보 부족	개인적 친분 부족	협조 부족	업무 과다	의무사 항 아님	지리적 거리	기관 부재	예산 미지원	관련 없음
1)경찰	2(3.0)	2(3.0)	1(1.5)	7(10.4)	1(1.5)	5(7.5)	0(0.0)	0(0.0)	0(0.0)	4(6.0)
2)검찰	1(1.5)	1(1.5)	0(0.0)	6(9.0)	1(1.5)	1(1.5)	0(0.0)	0(0.0)	0(0.0)	2(3.0)
3)법원	1(1.5)	2(3.0)	0(0.0)	5(7.5)	1(1.5)	0(0.0)	0(0.0)	0(0.0)	0(0.0)	1(1.5)
4)타유사기관	0(0.0)	0(0.0)	0(0.0)	0(0.0)	0(0.0)	0(0.0)	1(1.5)	0(0.0)	0(0.0)	0(0.0)
5)학교교육청	2(3.0)	6(9.0)	0(0.0)	6(9.0)	1(1.5)	6(9.0)	0(0.0)	0(0.0)	0(0.0)	0(0.0)

구분	업무협약 안됨	타기관 정보 부족	개인적 친분 부족	협조 부족	업무 과다	의무사 항 아님	지리적 거리	기관 부재	예산 미지원	관련 없음
6)동사무소·구청	2(3.0)	7(10.4)	0(0.0)	4(6.0)	0(0.0)	9(13.4)	0(0.0)	0(0.0)	0(0.0)	9(13.4)
7)병의원	3(4.5)	7(10.4)	1(1.5)	4(6.0)	0(0.0)	13(19.4)	0(0.0)	0(0.0)	3(4.5)	10(14.9)
8)복지관	0(0.0)	4(6.0)	0(0.0)	2(3.0)	1(1.5)	1(1.5)	0(0.0)	0(0.0)	1(1.5)	5(7.5)
9)직업훈련기관	3(4.5)	4(6.0)	0(0.0)	2(3.0)	0(0.0)	4(6.0)	0(0.0)	0(0.0)	1(1.5)	7(10.4)
10)상담기관	2(3.0)	3(4.5)	0(0.0)	4(6.0)	0(0.0)	1(1.5)	0(0.0)	0(0.0)	1(1.5)	1(1.5)
11)청소년단체	0(0.0)	3(4.5)	0(0.0)	3(4.5)	0(0.0)	5(7.5)	0(0.0)	0(0.0)	1(1.5)	0(0.0)
12)민간단체	4(6.0)	8(11.9)	0(0.0)	2(3.0)	1(1.5)	7(10.4)	0(0.0)	1(1.5)	1(1.5)	8(11.9)
13)자립지원기관	3(4.5)	6(9.0)	0(0.0)	2(3.0)	1(1.5)	2(3.0)	0(0.0)	2(3.0)	1(1.5)	4(6.0)
14)대학교	5(7.5)	9(13.4)	0(0.0)	4(6.0)	1(1.5)	3(4.5)	0(0.0)	0(0.0)	0(0.0)	11(16.4)

4) 다기관 협력체계 구조 및 특성

(1) 네트워크 중심성 및 구조적 등위성 분석⁸⁸⁾

중심성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연결정도중심성과 근접성, 매개성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IV-25>은 소년원, 대안교육센터, 보호관찰소를 중심기관으로 보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대상기관과 어느 정도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결정도중심성⁸⁹⁾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세 기관유형 중 사례 수신과 발신 모두 연결정도중심성이 가장 높은 기관은 보호관찰소이며, 동사무소·구청은 연결정도가 가장 낮은 기관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 유형 모두 대부분의 민간기관과 매우 낮은 수준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업훈련, 경제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88) 서비스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소년원, 대안교육센터, 보호관찰소와 타 기관간의 연결성을 자아중심적 연결망을 통해 분석하였고,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의 유형은 총 18개이다. 분석결과 네트워크 밀도는 0.248 수준으로 전체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밀도가 1임을 감안할 때 밀도 즉, 네트워크의 포괄성과 연결정도는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89) 중심성(centrality)은 한 행위자가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이다. 연결정도중심성은 최소 0에서 최대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행위자가 네트워크 상에서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신연결정도중심성(in-degree centrality)은 해당조직이 타조직으로부터 대상자 및 자원을 의뢰 혹은 지원받는 정도를 의미하고, 발신연결정도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은 타조직과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Wasserman, S. and Faust, 1994).

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25〉 서비스 네트워크의 연결정도중심성 지수

수신 연결정도중심성(In-degree)			발신 연결정도중심성(Out-degree)		
순위	기관	중심성값	순위	기관	중심성값
1	보호관찰소	0.882353	1	보호관찰소	0.882353
2	소년원	0.823529	2	소년원	0.764706
3	대안교육센터	0.411765	3	대안교육센터	0.705882
4	검찰	0.176471	4	검찰	0.176471
	기타연계기관	0.176471		경찰	0.176471
	청소년관련단체	0.176471		교육청	0.176471
	직업훈련기관	0.176471		청소년관련단체	0.176471
	상담기관	0.176471		사회복지관	0.176471
	사회복지관	0.176471		법원	0.176471
	병의원	0.176471		학교	0.176471
	법원	0.176471	5	기타연계기관	0.117647
	민간단체/종교단체	0.176471		직업훈련기관	0.117647
	대학교	0.176471		상담기관	0.117647
5	경찰	0.117647		병의원	0.117647
	교육청	0.117647		민간단체/종교단체	0.117647
	자립지원기관/쉼터	0.117647		대학교	0.117647
	동사무소/구청	0.117647		동사무소/구청	0.117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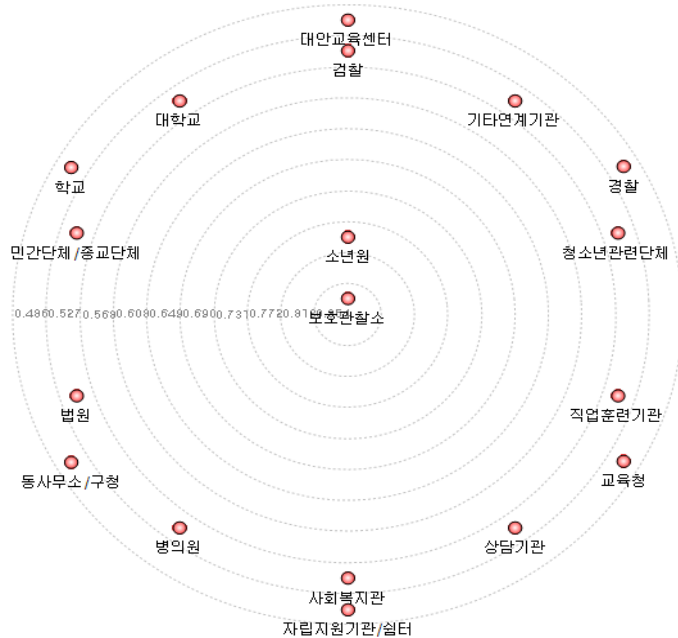
근접성은 연결중심성과 달리 직접적으로 연결된 점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내에서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점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중심성을 측정하므로 총체적인 관계와 전체적인 윤곽을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다(김용학, 2005). 먼저 수신근접중심성이 높은 기관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계 요구가 높은 기관을 의미하며 분석결과 1순위는 보호관찰소, 2순위는 소년원, 3순위는 민간/종교단체, 병의원, 법원, 사회복지관, 상담기관, 직업훈련기관, 청소년관련단체, 검찰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동사무소/구청, 자립지원기관/쉼터

터, 교육청, 경찰, 대안교육센터 등은 근접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 기관이 다른 기관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자 네트워크 내에서 일종의 ‘마당발’의 의미를 나타내는 발신근접중심성은 보호관찰소, 소년원, 대안교육센터 순으로 외부와 비교적 적극적인 연계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검찰, 경찰, 교육청, 청소년관련단체, 사회복지관, 학교, 법원 등이 동일한 순위를 나타내며 가장 낮은 기관은 직업훈련기관, 자립지원기관/쉼터, 상담기관, 병의원, 민간단체/종교단체, 대학교, 동사무소/구청 등이었다. <그림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은 네트워크의 원형 내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26> 서비스 네트워크의 근접 중심성 지수

수신 근접중심성			발신 근접중심성		
순위	기관	중심성값	순위	기관	중심성값
1	보호관찰소	0.894737	1	보호관찰소	0.894737
2	소년원	0.809524	2	소년원	0.739130
3	대학교	0.548387	3	대안교육센터	0.680000
	민간단체/종교단체	0.548387	4	법원	0.548387
	법원	0.548387		사회복지관	0.548387
	병의원	0.548387		청소년관련단체	0.548387
	사회복지관	0.548387		검찰	0.548387
	상담기관	0.548387		학교	0.548387
	직업훈련기관	0.548387		교육청	0.548387
	청소년관련단체	0.548387		경찰	0.548387
	기타연계기관	0.548387		대학교	0.515152
	검찰	0.548387	5	민간단체/종교단체	0.515152
	학교	0.515152		병의원	0.515152
4	동사무소/구청	0.515152		상담기관	0.515152
	자립지원기관/쉼터	0.515152		직업훈련기관	0.515152
	교육청	0.515152		기타연계기관	0.515152
	경찰	0.515152		동사무소/구청	0.515152
	대안교육센터	0.485714	6	자립지원기관/쉼터	0.485714



[그림 IV-1] 서비스 네트워크의 근접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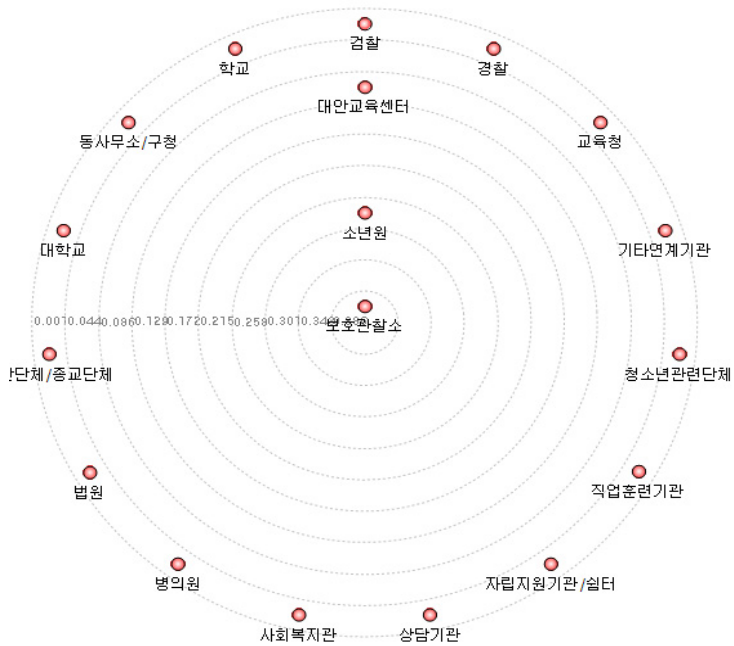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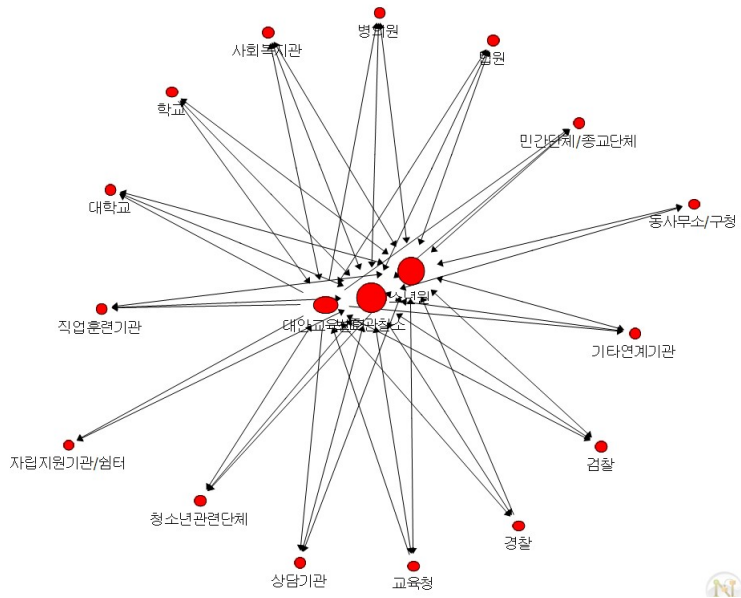
다음으로 소년원, 대안교육센터, 보호관찰소가 다기관과 어느 정도 가까이
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매개중심성⁹⁰⁾ 수치를 파악한 결과 보호관찰소가
소년원과 대안교육센터가 상대적으로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다.
매개중심성값이 가장 기관일수록 네트워크 상에서 매개자(mediator) 혹은 문
지기(gate keeper)로 활동하면서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가운데
검찰과 법원, 민간기관 중에서는 청소년관련단체와 사회복지관이 타 기관에
비해 자원 중개자(bro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나 그 정도는 매우 미

90)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최소 0에서 최대 1까지의 값을 가지며 네트워크에서 조직간 자원의 흐름 중간에 위치하여 중개자나 연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매개중심성값이 높은 행위자는 매개자로 활동하면서 다른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거시적인 네트워크를 계획하거나 조정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경로를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Wasserman, S. and Faust. 1994).

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소년원, 대안교육센터, 보호관찰소의 매개중심성 지수는 전체적으로 근접중심성 지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연계망 내에서 서비스나 자원을 의뢰하거나 의뢰 받는 연계망의 형성은 이루어져 있으나 다른 기관들을 매개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은 다른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필요로 하는 다른 자원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매개적 역할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검찰과 법원, 청소년 관련 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은 다기관간 연계의 적극적인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IV-27).

〈표 IV-27〉 서비스 네트워크의 매개중심성 지수

매개중심성		
순위	기관	중심성값
1	보호관찰소	0.429055
2	소년원	0.287373
3	대안교육센터	0.107101
4	검찰	0.008804
	청소년관련단체	0.008804
	사회복지관	0.008804
	법원	0.008804
5	교육청	0.007204
	학교	0.007204
6	경찰	0.005155
7	기타연계기관	0.002795
	직업훈련기관	0.002795
	상담기관	0.002795
	병의원	0.002795
	민간단체/종교단체	0.002795
	대학교	0.002795
8	동사무소/구청	0.001195



[그림 IV-2] 서비스 네트워크의 연계현황

구조적 등위성⁹¹⁾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기관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동일한 관계패턴을 가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구조적 등위의 기관들은 서로 직접적인 연결이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동패턴을 보이는 유사집단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유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김용학, 2005).

<그림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년원, 대안교육센터, 보호관찰소는 서비스의 주체적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등위성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학교, 사회복지관, 직업훈련기관, 병의원 등이 네트워크 내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는 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이들 기관은 대상 청소년을 의뢰하거나 의뢰받으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경찰, 검찰, 교육청, 상담기관, 동사무소, 청소년단체, 민간단체/종교단체, 쉼터, 대학교 등이 하나의 군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3] 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조적 등위성

- 91) 구조적 등위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하는 방법과 상관계수(correlatio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상관계수 방법을 이용한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통상 두 행위자간의 관계 패턴이 얼마만큼 유사한지에 관심이 있는 경우 상관계수 방법이 유용하며, 반면에 관계의 동일성 여부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한 방법이 유용하다(Wasserman & Faust, 1994).

(2) 기관유형별 중심성 및 구조적 등위성 분석

① 소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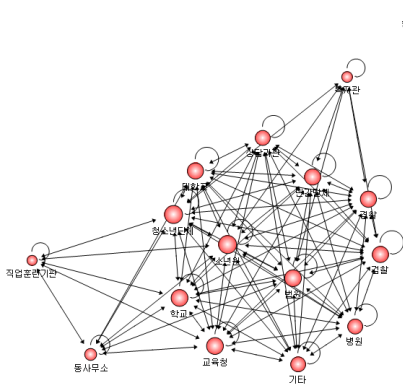
소년원이 의뢰를 받는 수신 연결정도(in-degree)의 밀도는 .692, 소년원이 타 기관에 의뢰하는 발신 연결정도(out-degree)의 밀도는 .275로 소년원은 연계를 의뢰하기보다는 의뢰를 받는 일종의 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년원이 소년법에 대한 처우를 위해 타 기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보다는 수용시설로서 소년원 자체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해석된다.

먼저, 소년원이 의뢰를 받는 기관 1순위는 청소년단체와 타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2순위는 학교와 교육청, 법원, 3순위는 대학, 민간단체, 검찰, 경찰 순이었다(표 IV-28). 이에 비해 소년원에서 연계를 요청하는 기관 1순위는 교육청, 2순위는 병원, 동사무소, 3순위는 직업훈련원, 타 소년원, 보호관찰소, 학교 등이었고 대학교, 쉼터, 청소년단체, 법원, 경찰 등은 연결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V-4, 그림 IV-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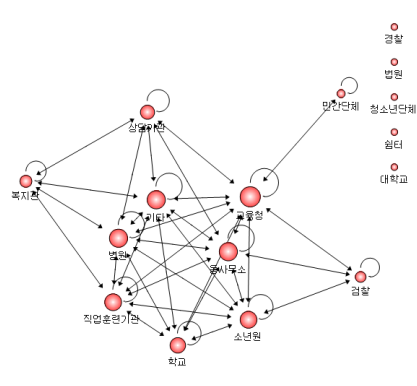
〈표 IV-28〉 소년원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

수신 연결정도			발신 연결정도		
순위	기관	중심성값	순위	기관	중심성값
1	청소년단체	0.933333	1	교육청	0.600000
	타소년원	0.933333	2	기타	0.533333
2	학교	0.866667		병원	0.533333
	교육청	0.866667	3	동사무소	0.533333
	법원	0.866667		직업훈련기관	0.466667
3	대학교	0.800000	4	타소년원	0.466667
	민간단체	0.800000		학교	0.400000
	검찰	0.800000	5	상담기관	0.333333
	경찰	0.800000	6	복지관	0.266667
4	기타	0.733333	7	검찰	0.200000
	상담기관	0.733333	8	민간단체	0.066667
	병원	0.733333	9	대학교	0.000000
5	동사무소	0.466667		쉼터	0.000000

수신 연결정도			발신 연결정도		
순위	기관	중심성값	순위	기관	중심성값
6	복지관	0.400000		청소년단체	0.000000
7	직업훈련기관	0.333333		법원	0.000000
8	쉼터	0.000000		경찰	0.000000



[그림 IV-4] 소년원 수신연결망
연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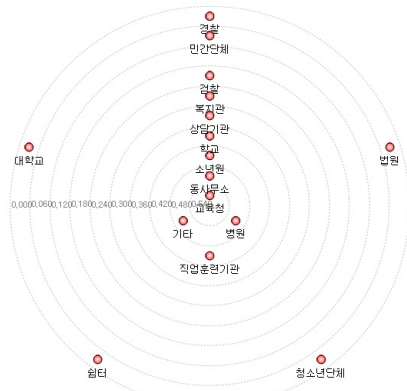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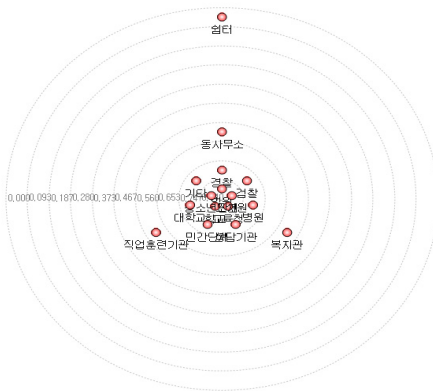


[그림 IV-5] 소년원 발신연결망
연결정도

소년원과 직간접적인 연계를 맺고 있는 기관과의 수신 근접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중심기관은 청소년단체와 타 소년원이 1순위, 2순위는 학교와 교육청, 법원 등이며 3순위는 대학교, 민간단체, 검찰, 경찰 등으로 나타났다(표 IV-29). 반면, 소년원이 서비스를 의뢰하는 발신 근접중심성의 중심기관은 1순위가 교육청, 2순위 병원, 동사무소, 3순위 직업훈련기관, 타 소년원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V-6, 그림 IV-7). 즉, 수신 근접중심성이 더 중심과 가까이 있어 중심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소년원과 연계된 네트워크에서 소년원은 외부에 서비스를 의뢰하기보다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 경우 주체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위상과 함께 소년범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내부의 자원 및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의뢰만 받을 뿐 효과적인 보호와 원호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⁹²⁾

<표 IV-29> 소년원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근접성 지수

수신 근접중심성			발신 근접중심성		
순위	기관	중심성값	순위	기관	중심성값
1	청소년단체	0.933333	1	교육청	0.606061
2	타소년원	0.933333	2	기타	0.555556
3	학교	0.871111	3	병원	0.555556
4	교육청	0.871111	4	동사무소	0.555556
	법원	0.871111		직업훈련기관	0.512821
	대학교	0.816667		타소년원	0.512821
	민간단체	0.816667		학교	0.476190
	검찰	0.816667		상담기관	0.444444
	경찰	0.816667		복지관	0.370370
	기타	0.768627		검찰	0.370370
	상담기관	0.768627	5	민간단체	0.333333
	병원	0.768627		대학교	0.000000
5	동사무소	0.622222		쉼터	0.000000
	복지관	0.593939		청소년단체	0.000000
	직업훈련기관	0.568116		법원	0.000000
	쉼터	0.000000		경찰	0.000000



[그림 IV-6] 소년원 수신연결망 근접성 [그림 IV-7] 소년원 발신연결망 근접성

92) 단, 현재 10개 소년원 가운데 교과교육을 통해 학교연계를 하고 있는 소년원은 3개로 학적회복, 성적통보, 졸업장발부, 학교생활기록부 발송 등의 업무를 학교 및 지역교육청과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7개소는 학교 등과 특별히 연계할 사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과 관련된 네트워크 내에서 소년원에 연계를 의뢰하는 수신 연결망을 매개하는 기관은 1순위가 청소년단체, 타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2순위가 학교, 교육청, 법원, 대학교, 민간단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매개중심성의 평균은 0.013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며, 소년원에서 연계를 의뢰하는 발신 연결망에서의 매개성도 평균 0.014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기관 중 매개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은 교육청, 동사무소, 병원, 직업훈련기관 타 소년원 등으로 나타나며 상담기관 및 사회복지관 등으로의 의뢰는 극소수로, 대학 및 민간단체나 청소년단체, 학교에 대한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표 IV-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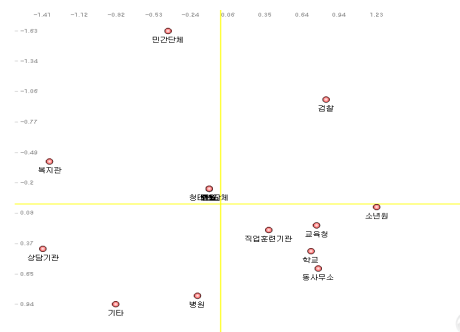
〈표 IV-30〉 소년원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매개성 지수

수신 매개성			발신 매개성		
순위	기관	중심성값	순위	기관	중심성값
1	청소년단체	0.045079	1	교육청	0.113304
	타소년원	0.045079	2	동사무소	0.027590
2	학교	0.027619	3	기타	0.022756
	교육청	0.027619		병원	0.022756
3	법원	0.022222	4	직업훈련기관	0.016089
4	대학교	0.009524	5	타소년원	0.015296
	민간단체	0.009524	6	상담기관	0.008874
	검찰	0.009524	7	복지관	0.001905
	경찰	0.009524	8	대학교	0.000000
5	동사무소	0.003810		쉼터	0.000000
6	기타	0.000000		민간단체	0.000000
	쉼터	0.000000		청소년단체	0.000000
	상담기관	0.000000		학교	0.000000
	직업훈련기관	0.000000		법원	0.000000
	복지관	0.000000		검찰	0.000000
	병원	0.000000		경찰	0.000000

소년원과 연계하는 기관들의 구조적 등위성을 확인한 결과 소년원이 의뢰는 받는 수신연결망 기관 중에서는 학교, 교육청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병원과 상담기관, 대학교가 같은 역할을 하며, 그밖에 직업훈련기관, 청소년 단체, 쉼터 등이 유사한 역할을, 법원과 검찰, 민간단체 등이 소년원과 관계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V-8). 소년원이 연계를 의뢰하는 발신연결망 기관 중에서는 직업훈련기관, 교육청, 학교, 동사무소 등이 상관계수가 높아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나타났고, 그밖에 민간단체, 복지관, 청소년기관 등이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소년원과 연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IV-9).



[그림 IV-8] 소년원 수신연결망의 구조적 등위성



[그림 IV-9] 소년원 발신연결망의 구조적 등위성

② 대안교육센터

대안교육센터가 의뢰를 받는 수신 연결연도(in-degree)의 밀도는 0.208, 대안교육센터가 타 기관에 의뢰하는 발신 연결정도(out-degree)의 밀도는 0.233로 연계를 시도하거나 혹은 의뢰를 받는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정도는 소년원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대안교육센터가 의뢰를 받는 수신 연결정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학교, 교육청, 타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2순위가 검찰, 복지관, 법원, 경찰, 3순위는 청소년 단체이며 그밖에 대학교, 쉼터, 민간단체/종교단체, 상담기관 등과는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연결망 내에 있는 기관들이 대안

교육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교육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대안교육센터에서 연계를 요청하는 기관 1순위는 청소년단체, 2순위는 병원, 동사무소, 민간단체, 복지관이며, 3순위는 상담기관, 경찰 등의 순이며 학교, 교육청, 동사무소 등과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IV-31).

〈표 IV-31〉 대안교육센터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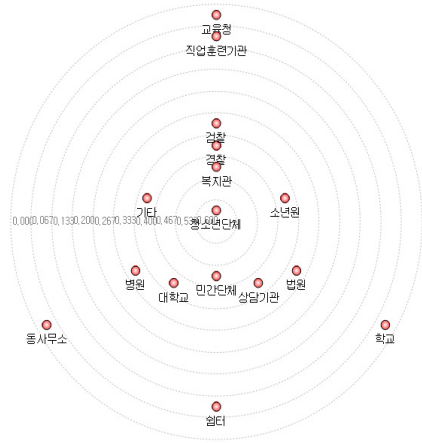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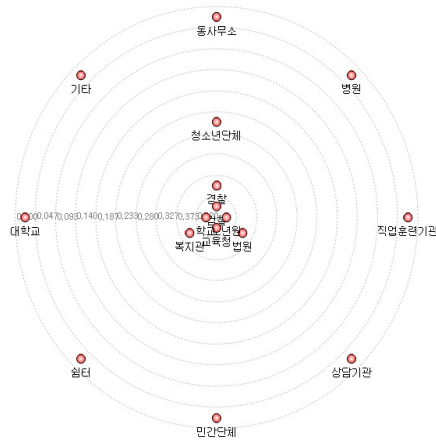
수신 연결정도			발신 연결정도		
순위	기관	중심성값	순위	기관	중심성값
1	학교	0.466667	1	청소년단체	0.666667
	교육청	0.466667	2	민간단체	0.466667
	소년원	0.466667	3	복지관	0.400000
	검찰	0.466667	4	상담기관	0.333333
2	복지관	0.400000		경찰	0.333333
	법원	0.400000	5	기타	0.266667
	경찰	0.400000		대학교	0.266667
3	청소년단체	0.266667		소년원	0.266667
4	기타	0.000000	6	병원	0.200000
	대학교	0.000000		법원	0.200000
	쉼터	0.000000		검찰	0.200000
	민간단체	0.000000	7	쉼터	0.066667
	상담기관	0.000000		직업훈련기관	0.066667
	직업훈련기관	0.000000	8	동사무소	0.000000
	병원	0.000000		학교	0.000000
	동사무소	0.000000		교육청	0.000000

대안교육센터와 직·간접적인 연계를 맺고 있는 기관과의 수신 근접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1순위는 학교와 교육청, 소년원, 검찰, 2순위는 복지관, 법원, 경찰, 3순위는 청소년단체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대학교, 쉼터, 민간단체, 상담기관, 직업훈련기관병원, 동사무소 등은 서비스 의뢰가 이루어지

지 않는 기관이어서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제외되어 있고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가 일부 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표 IV-32). 반면, 서비스를 의뢰하는 발신연결망 기관은 수신 연결망 기관에 비해 근접성이 높고 연결된 기관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안교육센터가 외부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신 연결망의 1순위는 청소년단체, 2순위는 민간단체/종교단체이며, 3순위는 복지관, 상담기관, 경찰, 4순위는 대학교, 소년원, 그리고 그밖에 병원, 법원, 검찰, 쉼터,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를 맺고 서비스를 의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청, 동사무소 등에 의뢰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2〉 대안교육센터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근접성 지수

수신 근접성			발신 근접성		
순위	기관	중심성값	순위	기관	중심성값
1	학교	0.466667	1	청소년단체	0.666667
	교육청	0.466667	2	민간단체	0.512821
	소년원	0.466667	3	복지관	0.476190
	검찰	0.466667	4	상담기관	0.444444
2	복지관	0.408333	4	경찰	0.444444
	법원	0.408333		기타	0.416667
	경찰	0.408333	5	대학교	0.416667
3	청소년단체	0.326667		소년원	0.416667
4	기타	0.000000	6	병원	0.392157
	대학교	0.000000		법원	0.392157
	쉼터	0.000000		검찰	0.392157
	민간단체	0.000000	7	쉼터	0.066667
	상담기관	0.000000		직업훈련기관	0.066667
	직업훈련기관	0.000000	8	동사무소	0.000000
	병원	0.000000		학교	0.000000
	동사무소	0.000000		교육청	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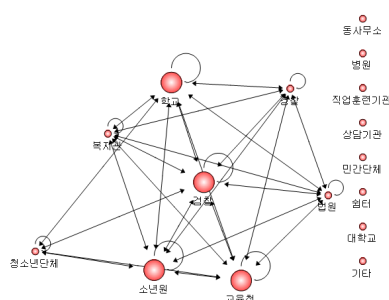
[그림 IV-10] 대안교육센터 수신연결망 [그림 IV-11] 대안교육센터 발신연결망
근접성 근접성

대안교육센터와 관련된 네트워크 내에서 대안교육센터에 사례나 서비스를 의뢰하는 수신 연결망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학교, 교육청, 청소년원, 보호관찰소, 검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 기관을 매개하는 정도는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타 기관 역시 매개자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매개중심성의 평균은 0.002로 매우 낮으며 대안교육센터에서 연계를 의뢰하는 발신연결망에서의 매개성도 평균 0.17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관 중 매개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은 1순위가 청소년단체이며 그 다음은 민간단체와 상담기관, 복지관, 타 청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경찰 등이 미미하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으로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표 IV-33, 그림 IV-10, 그림 IV-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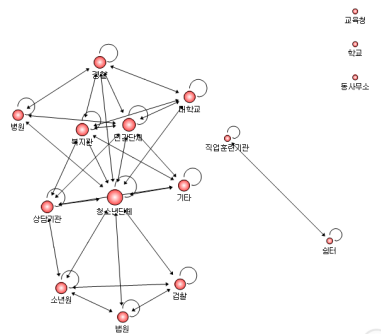
<표 IV-33> 대안교육센터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매개성 지수

수신 매개성			발신 매개성		
순위	기관	중심성값	순위	기관	중심성값
1	학교	0.007143	1	청소년단체	0.195238

수신 매개성			발신 매개성		
순위	기관	중심성값	순위	기관	중심성값
2	교육청	0.007143	2	민간단체	0.028571
	소년원	0.007143	3	상담기관	0.014286
	검찰	0.007143	4	복지관	0.012698
	기타	0.000000	5	소년원	0.009524
	대학교	0.000000	6	경찰	0.006349
	쉼터	0.000000	7	기타	0.000000
	민간단체	0.000000		대학교	0.000000
	청소년단체	0.000000		쉼터	0.000000
	상담기관	0.000000		직업훈련기관	0.000000
	직업훈련기관	0.000000		병원	0.000000
	복지관	0.000000		동사무소	0.000000
	병원	0.000000		학교	0.000000
	동사무소	0.000000		교육청	0.000000
	법원	0.000000		법원	0.000000
	경찰	0.000000		검찰	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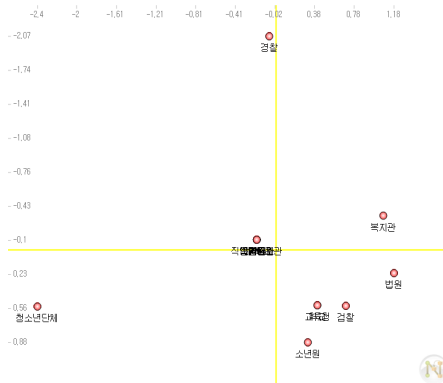
[그림 IV-12] 대안교육센터
수신연결망 매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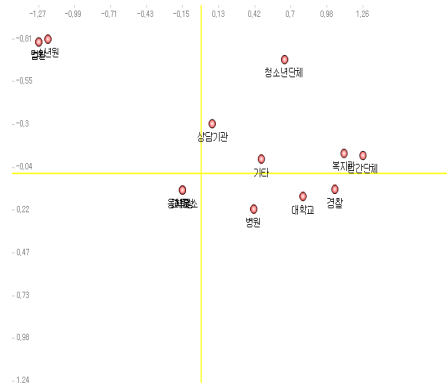
[그림 IV-13] 대안교육센터
발신연결망 매개성

대안교육센터와 연계하는 기관들의 구조적 등위성을 분석한 결과 대안교육센터가 사례 및 서비스의 의뢰를 받는 수신연결망 기관 중에서는 법원, 검찰, 교육청, 타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유사한 패턴 즉, 비슷한 역할을 하며, 직업훈련기관과 상담기관이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12). 대안교육센터가 연계를 의뢰하는 발신연결망 기관 중에서는 경찰, 병원, 대학교, 복지관, 민간단체/종교단체 등이 유사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단체와 상담기관이 유사하고, 법원과 검찰, 타 소년원과 보호관찰소가 유사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대안교육센터와 연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IV-13).



[그림 IV-14] 대안교육센터
수신연결망의 구조적 등위성



[그림 IV-15] 대안교육센터
발신연결망의 구조적 등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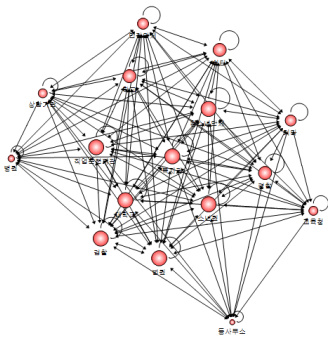
③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가 의뢰를 받는 수신 연결정도(in-degree)의 밀도는 0.908, 보호관찰소가 타 기관에 의뢰하는 발신 연결정도(out-degree)의 밀도는 1.0으로 보호관찰소는 네트워크 내의 타 기관들과 거의 완전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보호관찰소는 자원이나 사례를 주고받는 정도가 가장 활발하며 특정 기관이 연계에서 배제 혹은 누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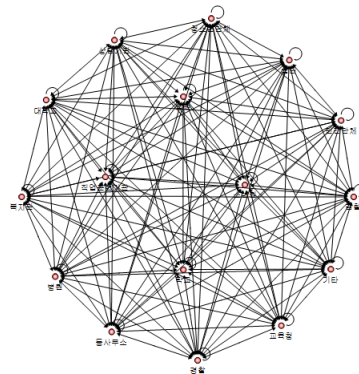
먼저 보호관찰소가 의뢰를 받는 기관 1순위는 대학교, 청소년단체, 직업훈련기관, 복지관, 소년원, 법원, 검찰이었고, 2순위는 쉼터, 학교, 경찰, 3순위는 민간단체, 상담기관, 교육청 등이었고, 그 다음이 병원, 동사무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보호관찰소에서 연계를 요청하는 기관은 순위 구분없이 같은 수준으로 사례 및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V-34, 그림 IV-16, 그림 IV-17).

〈표 IV-34〉 보호관찰소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지수

수신 연결정도			발신 연결정도		
순위	기관	중심성값	순위	기관	중심성값
1	대학교	1.000000	1	경찰	1.000000
	청소년단체	1.000000		검찰	1.000000
	직업훈련기관	1.000000		법원	1.000000
	복지관	1.000000		소년원	1.000000
	소년원	1.000000		교육청	1.000000
	법원	1.000000		학교	1.000000
	검찰	1.000000		동사무소	1.000000
2	쉼터	0.933333		병원	1.000000
	학교	0.933333		복지관	1.000000
	경찰	0.933333		직업훈련기관	1.000000
3	기타	0.866667		상담기관	1.000000
	민간단체	0.866667		청소년단체	1.000000
4	상담기관	0.800000		민간단체	1.000000
	교육청	0.800000		쉼터	1.000000
5	병원	0.733333		대학교	1.000000
6	동사무소	0.666667		기타	1.000000



[그림 IV-16] 보호관찰소 수신연결망
연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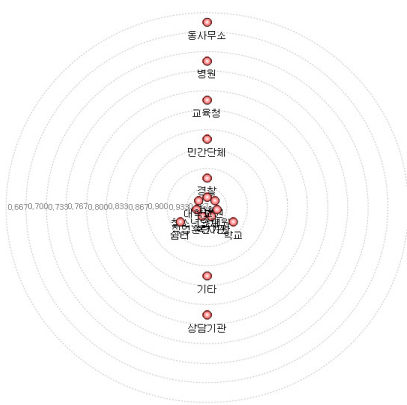


[그림 IV-17] 보호관찰소 발신연결망
연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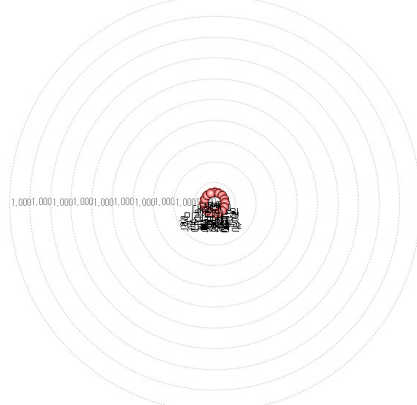
보호관찰소와 직·간접적인 연계를 맺고 있는 기관과의 근접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0.924의 높은 근접중심성을 보였으며, 수신 근접중심성은 청소년 단체와 타 소년원이 1순위, 2순위는 학교와 교육청, 법원 등이며 3순위는 대학교, 민간단체, 검찰, 경찰, 그밖에 상담기관, 병원,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직업훈련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신 연결망 기관은 1순위가 교육청, 2순위가 병원과 동사무소, 3순위가 직업훈련기관과 타 소년원이었고, 그밖에 학교와 상담기관 등에 사례 및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그림 IV-18, 그림 IV-19).

〈표 IV-35〉 보호관찰소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근접성 지수

수신 근접성			발신 근접성		
순위	기관	중심성값	순위	기관	중심성값
1	대학교	1.000000	1	경찰	1.000000
	청소년단체	1.000000		검찰	1.000000
	직업훈련기관	1.000000		법원	1.000000
	복지관	1.000000		소년원	1.000000
	소년원	1.000000		교육청	1.000000
	법원	1.000000		학교	1.000000
	검찰	1.000000		동사무소	1.000000
2	쉼터	0.937500		병원	1.000000
	학교	0.937500		복지관	1.000000
	경찰	0.937500		직업훈련기관	1.000000
3	기타	0.882353		상담기관	1.000000
	민간단체	0.882353		청소년단체	1.000000
4	상담기관	0.833333		민간단체	1.000000
	교육청	0.833333		쉼터	1.000000
5	병원	0.789474		대학교	1.000000
6	동사무소	0.750000		기타	1.000000



[그림 IV-18] 보호관찰소 수신연결망
근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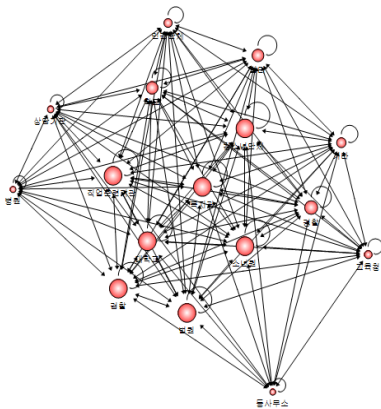
[그림 IV-19] 보호관찰소 발신연결망
근접성

보호관찰소에서 사례나 서비스를 의뢰받는 수신 연결망에서 미약하나마 대학교, 청소년단체, 직업훈련기관, 복지관, 소년원, 병원, 검찰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매개 역할을 하고 있고, 검찰, 상담, 학교, 민간단체, 교육청, 상담기관은 매개 역할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과 동사무소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매개중심성의 평균은 0.007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보호관찰소에서 의뢰하는 발신연결망에서의 매개중심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소에서 사례나 서비스를 의뢰할 때 어떤 기관도 매개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기관 대 기관의 직접 교류를 통해 자원이 연결되는 특성을 보여준다(표 IV-36, 그림 IV-20, 그림 IV-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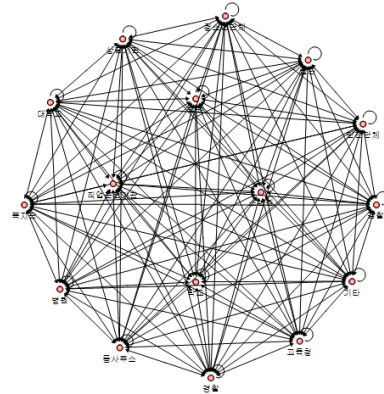
<표 IV-36> 보호관찰소의 서비스 네트워크 매개성 지수

수신 매개성			발신 매개성		
순위	기관	중심성값	순위	기관	중심성값
1	대학교	0.011074	1	경찰	0.000000
	청소년단체	0.011074		검찰	0.000000

수신 매개성			발신 매개성		
순위	기관	중심성값	순위	기관	중심성값
	직업훈련기관	0.011074		법원	0.000000
	복지관	0.011074		소년원	0.000000
	소년원	0.011074		교육청	0.000000
	법원	0.011074		학교	0.000000
	검찰	0.011074		동사무소	0.000000
2	경찰	0.006837		병원	0.000000
3	쉼터	0.005560		복지관	0.000000
	학교	0.005560		직업훈련기관	0.000000
4	기타	0.003829		상담기관	0.000000
5	민간단체	0.002684		청소년단체	0.000000
6	교육청	0.001905		민간단체	0.000000
7	상담기관	0.000866		쉼터	0.000000
8	병원	0.000000		대학교	0.000000
	동사무소	0.000000		기타	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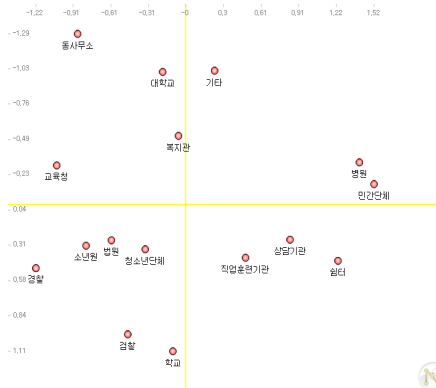
[그림 IV-20] 보호관찰소 수신연결망
매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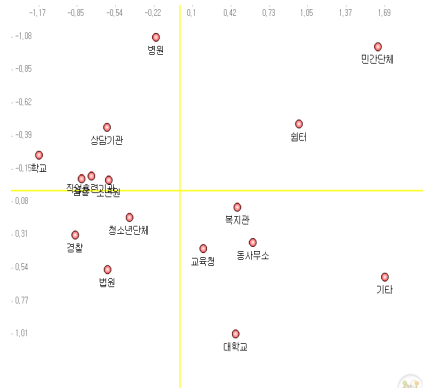
[그림 IV-21] 보호관찰소 발신연결망
매개성

보호관찰소가 사례를 의뢰하거나 자원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각 기관들과의 구조적 등위성을 분석한 결과 수신연결망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 청소년단체, 타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가 유사한 역할을 하며, 교육청, 대학교,

복지관, 동사무소가 구조적으로 유사한 위치에 있었다. 그밖에 상담기관과 직업훈련기관, 쉼터 등이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보호관찰소와 연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V-22). 발신연결망에서는 경찰, 법원, 타보호관찰소, 청소년단체 등이, 그리고 상담기관, 직업훈련기관, 학교 등이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그밖에 복지관과 동사무소, 교육청과 대학 등이 비슷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보호관찰소와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V-23).



[그림 IV-22] 보호관찰소 수신연결망의 구조적 등위성



[그림 IV-23] 보호관찰소 발신연결망의 구조적 등위성

(3) 다기관 연계의 특성

지난 6개월 간 연계 기관 간에 상호 의뢰한 횟수를 분석한 결과 사례 및 서비스의 상호 의뢰는 평균 83.5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소년원은 평균 133.3회로 가장 많고 보호관찰소(75.6회)와 대안교육센터(67.5회)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타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한 횟수는 평균 49.2회이며, 보호관찰소가 52.5회로 가장 많이 의뢰하였고 소년원 40.8회, 대안교육센터 35.3회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 기관으로부터 사례 및 서비스를 의뢰받은 횟수는 소년원이 평균 92.5회로 가장 많았고, 대안교육센터 32.2회, 보호관찰소 23.2회 순이었다. 따라서 소년원은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경우가 많고, 대안교육센터는 의뢰는 하는 것과 받는 것이 유

사한 수준이며, 보호관찰소는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기관유형에 따라 네트워크 특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IV-37).

〈표 IV-37〉 기관 유형별 서비스 의뢰 횟수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F
의뢰한 횟수	소년원	10	40.8000	59.98852	.431
	대안교육센터	6	35.3333	22.92306	
	보호관찰소	51	52.4510	53.52432	
	합계	67	49.1791	52.31835	
의뢰 받은 횟수	소년원	10	92.5000	196.34281	2.850
	대안교육센터	6	32.1667	14.42798	
	보호관찰소	51	23.1765	45.48305	
	합계	67	34.3284	86.30818	
총 의뢰	소년원	10	133.3000	197.16662	1.247
	대안교육센터	6	67.5000	33.85705	
	보호관찰소	51	75.6275	89.60602	
	합계	67	83.5075	109.16784	

다기관 연계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상시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율은 31.5%인데 비해, 사안별로 연계를 하는 비율은 6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대안교육센터는 상시적·사안별 연계가 비슷한 수준이며 소년원과 보호관찰소는 사안별로 연계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시적이지 않은 사안에 따른 연계는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표 IV-38).

〈표 IV-38〉 기관유형별 연계지속성(중복응답)

	소년원	대안교육센터	보호관찰소	전체
상시적	34(43.0)	26(48.1)	135(27.8)	195(31.5)
사안별	45(57.0)	28(51.9)	351(72.2)	424(68.5)
전체	79(100.0)	54(100.0)	486(76.2)	619(100.0)

연계의 방향을 살펴본 결과 각 기관이 양방향의 상호관계로 연계하는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고, 타 기관에 의뢰를 하는 연계방향을 가지는 경우가 42.5%, 그리고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연계방향은 9.1%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의 경우 양방향 연계보다는 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향이 다소 높고, 대안교육센터나 보호관찰소는 상대적으로 양방향의 연계가 더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표 IV-39).

〈표 IV-39〉 기관유형별 연계방향(중복응답)

방향	소년원	대안교육센터	보호관찰소	전체
상호	28(38.9)	22(55.0)	228(49.4)	278(48.4)
주기	34(47.2)	12(30.0)	198(42.8)	244(42.5)
받기	10(13.9)	6(15.0)	36(7.8)	52(9.1)
전체	72(100.0)	40(100.0)	462(100.0)	574(100.0)

연계를 맺고 있는 기관과의 친밀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해당 기관과 친밀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20.2%, 소원하다(매우 포함) 59.8%로 나타나 연계하는 기관과의 친밀성은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연계하는 타 기관과 친밀하게 느끼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계에는 다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회의 및 공식적·비공식적인 회합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표 IV-40).

〈표 IV-40〉 기관유형별 친밀성 정도(중복응답)

	소년원	대안교육센터	보호관찰소	전체
매우소원	18(22.5)	20(33.9)	105(21.7)	143(22.9)
소원	13(16.2)	22(37.3)	194(40.1)	229(36.8)
보통	23(28.7)	3(5.1)	99(20.4)	125(20.1)
긴밀	7(8.8)	5(8.5)	62(12.8)	74(11.9)
매우긴밀	19(23.8)	9(15.2)	24(5.0)	52(8.3)
전체	80(100.0)	59(100.0)	484(100.0)	623(100.0)

2. 멘토링 운영방안

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이해

전문가 대상 면담내용을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목적과 장점 및 단점, 그리고 일반 멘토링과 차이를 두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의미는 청소년의 범죄예방과 재비행 방지 뿐 아니라 멘티의 자존감 향상,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 대인관계 향상, 진로성숙도 향상, 사회통합 등으로 압축된다. 특히,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멘토링의 특성상 멘티의 비자발성으로 인해 초기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멘토 교육 시 이러한 비행청소년의 특성을 포함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소년원의 보호소년과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의 상황이 서로 다르므로 멘토링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즉, 소년원의 경우 멘토가 방문을 하면 멘티가 언제가 그 곳에 있으므로 접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반면,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에 흩어져있어 멘토와의 만남 자체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멘토링에 대한 이해가 없으므로 일종의 부가처분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반의 관계형성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a): “단기적인 목표, 범죄예방 재범방지라든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황: “역할모델로서 나도 형처럼 누나처럼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동기유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의식향상)

노: “이○○ 선생님과 조○○ 교수님이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멘티가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잖아요 따라서 멘토에게 특히 ‘모티베이션 인터뷰’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자발성을 유도할 것인지 그런 교육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비행청소년이 사실 조작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이 다른 멘토링과의 가장 큰 차이점

이고 역점을 두어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범죄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멘토교육)

장: “자신이 비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마음이 폐쇄적인 경향이 큼니다. 회피하는 경우도 많고요.. 소년원 같은 경우 수용시설에 있어서..(멘토링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데) 현대 보호관찰소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굳이 내가 왜 멘토를 또 만나야 하나... (보호관찰관과의 면담과 중복되는데) 해서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멘티의 폐쇄적 자세로 인한 관계형성의 어려움)

2) 멘토, 멘티 조건 및 운영방안

먼저, 멘토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현재와 같이 민간단체 중심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멘토를 모집·관리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멘토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즉,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가 주요한 참여요건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멘토의 전문성보다는 자발성, 사명감, 책임성이 고려된다면 희망하는 일반인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비행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 및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유경력자 등 준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멘토의 마음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며 멘토링과 멘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명감을 가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되 상담자의 자세와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b): “저희는 신앙으로 보상을 받는, 종교적인 색깔이 있어야 하고, 물론 멘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겠지만 멘토 스스로 신앙적 기반이 있어야 자신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격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교기반)

황: “아무래도 청소년이나 갈등 해소를 위해 상담기법을 충분히 갖춘

멘토였으면 합니다. 이들은 아무래도 일반 청소년과는 달리 충동적인 성향도 강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자기 방어적인 부분이 크다는 것이 가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대화 기술을 갖춘 멘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전공자 및 상담경험자)

원: “저희도 처음에는 외적조건이 좋은 사람 즉, 청소년학이나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람이 멘토링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진행해 오면서) 막상 결과를 보니 멘토의 나이나 경력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자세로 임하느냐가 좋은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적조건보다 마음자세)

다음으로 멘티의 자격요건으로는 위험(at-risk)과 욕구(need)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이혼 등으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와해되었거나 부모의 역할과 지도감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호소년의 경우 면회자가 없고 지지체계가 미흡한 경우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범 및 경미한(minor) 범죄소년만을 포함하는 등 멘티의 범죄경력을 고려하는 것은 멘토링의 효과를 논의하기 전에 차별적인 요소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멘토링이 보호처분의 일환이 아닌 자발성에 기초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멘티에게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멘토링의 과정과 효과를 감안하여 1년 이상 멘토링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멘티의 자발성과 변화 동기가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장: “가장 환경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극구 안하겠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발성)

김: “부모님이 아주 유아기에 사망하셨거나 이혼하셨거나, 그래서 부모역할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멘토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역할 부재자)

이(b): “예를 들면 일 년 이상 보호처분 받은 아이들이라던가... 최소

한 1년은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보호처분자)

노: “가족기능이 와해되었거나 부모역할이 역기능적이고 이러한 가족요인이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되는 아이들.. 초범이나 범죄유형과 같이 천편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심리사회학적인 평가를 해서 멘토링이 부적절한 예를 들면, 타인을 조작하는 성향이 있거나 변화동기가 극히 약한 대상은 멘티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인관계 기능이 부족하거나 애착형성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효과적이므로 적극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족기능 와해/ 변화 동기)

원: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거나 학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으로..” (불우한 가정환경)

조: “스스로 자립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성실함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멘토에게 짐만 될 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발성)

원: “자발적 참여가 우선입니다. 범죄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그것도 차별입니다. 보호소년이나 보호관찰중이거나 멘토링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자발성)

성공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다기관 간의 협력이 가능한 전달체계와 공식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통해 민간기관의 결연관리자가 공공기관(소년보호기관 및 보호관찰소)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원활한 소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준비단계에서 멘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멘토링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즉, 다기관의 참여를 기반으로 진로와 같은 멘티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자원이 동원되어야만 실제적인 재범예방과 재활이 가능하

는 것이다.

황: “다기관이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해당기관과의 충분한 소통 즉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공의 주요요인이 아닐까..” (정보공유와 소통체계구축)

원: “제도적으로 전달체계와 공식적인 전담 조직이 있고, 또 각 기관의 담당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성공요인이라고 봅니다” (협력을 위한 여건조성)

조: “멘티들 대부분이 장래 희망이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탐색이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장래 희망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진로탐색프로그램 연계)

이와 함께 멘토를 모집·관리하는 기관에서 멘토의 재교육과 수퍼비전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과 자원봉사 인증과 같은 인센티브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b): “결연만 해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지만 멘토 관리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재교육도 하고 한 달에 한번 보호관찰관을 모시고 (교육)하는 이유가 저희가 만나고 있는 멘티가 특성화되어 있는 만큼 멘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멘토관리와 재교육이 성공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관리와 교육)

원: “(활동비나 자원봉사 점수 인정 등)인센티브가 따라야 합니다.” (적절한 인센티브)

적절한 활동기간 및 빈도는 최소 1년 이상, 월 1회 ~ 2회의 만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멘티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에 노출

되어 있거나 멘토링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 1회 이상의 면대면 만남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월 1~2회의 면대면 만남과 함께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방문, 문자메시지 등 E-멘토링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b): “멘토와 멘티가 자주 만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저희는 멘토와 멘티가 각자의 생활에 크게 피해를 받지 않는 조건에서 월 1회 이상, 그리고 1년 이상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월1회 1년 이상)

노: “급성(acute)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면담이 필요합니다” (주 1회)

이(a): “멘토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활동 빈도는 많아야 합니다. 주 1회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주 1회)

장: “월 1회 정도의 만남을 갖더라도 요즘 청소년들 누구나 접하는 미니홈피, 싸이월드, 네이트온을 통해서 글 남기고 대화하고 네이트 온 같은 곳에서 길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E-멘토링)

3) 관리 및 지원

멘토링을 주관하는 민간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재비행 방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는 멘토링의 효과에 대한 ‘평가’보다 ‘실행’을 강조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특히, 범죄소년에 대한 복지 처우의 소관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 사이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어 이들 청소년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황: “우선 바람직한 것은 본부차원(법무부)에서 주는 것이 바람직한

데, 각 기관에도 인성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강사비라든지.. 비용을 합동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비용은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전담직원 인건비(는 예산지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 한계 / 예산지원)

장: “민간단체에 범죄예방자원을 돌려서 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죄예방기금 활용)

안: “지원규모는 실시하는 각 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멘토 교육비와 멘토링 활동비용은 최소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멘토 교육비와 활동비 지원)

노: “교정멘토링이 재비행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성이 검증되어 그 필요성이 강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지원을 얻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상 교정복지를 복지업무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법무부의 소관업무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는 범죄자처우를 위한 인건비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산편성 한계)

4) 전달체계

멘토링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전담기구 및 양성기관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법무부 내 혹은 산하에 멘토링 담당 부서나 기구를 두고 지역 내에서 멘토를 발굴하고 소년보호기관 및 보호관찰소에서 필요로 하는 민간자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멘토링 활동과 자원연계를 위하여 소년원 등 일선기관에 담당자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업무를 공식적인 업무로 지정하거나 법원의 판결 시 특별준수사항 등으로 공식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황, 장, 조: “국가나 관 주도의 공식적인 기구와 멘토 양성기관이 필요합니다” (정부주관의 멘토양성기관)

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계해서 사회보호 정책팀에서 총괄 운영하면...”(법무부·복지부 연계)

황: “지역사회 내에 있는 유능한 인사를 확보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인재발굴-멘토)

원: “법무부 내 혹은 산하에 총괄운영기관을 설치하고 보호관찰소, 소년원, 기타 보호시설에 담당자를 각각 선임하여 법무부의 정책과 민간기관의 연계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담팀과 담당자 지정)

황: “본부차원(법무부)에서 정규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것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공식적 업무로 인정)

조: “법원과 협조를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때 특별준수사항부분으로 넣어서, 예를 들면, “소년보호기관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넣어서 오면 그 학생은 의무적으로 멘토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 저희 쪽에서는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 처분활용)

장: “그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가서 만나보고 생활사라든지 학교생활성적, 생활기록부까지 다 첨부해서 종합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보는 자료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자료입니다.” (판결전 조사의뢰)

특히, 한 전문가는 교정멘토링 프로그램의 매뉴얼 및 평가 가이드의 부재로 인해 현재 활용 가능한 모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일선에서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이 운영되고 있으나 효과의 편차가 심하고 멘토링의 효과를 일반화해서 주장하기 어려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지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운영지침을 개발하고 차후 멘토링의 평가체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a): “이 사업의 단점을 논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전국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모두 다르고 매뉴얼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단점을 이야기 할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단점입니다. 매뉴얼이라던지 평가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 일단 (현재의 멘토링에서)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뉴얼 및 평가가이드라인 부족)

지금까지 언급된 전문가들의 FGI 및 이메일을 통한 추가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 <표 IV-41>이다.

<표 IV-41> 전문가 면담조사 결과 요약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 념
멘토링의 이해	멘토링 목적	심리적 해방감, 진로의식향상, 상대방에 대한 공감,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재비행방지,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 유대 시키는 교정효과, 학습능력향상, 사회통합, 멘티의 소속감 및 자존감 향상, 멘티의 사회성 향상
	일반멘토링과 차이점	비자발적인 멘티, 범죄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멘토교육, 적극적 시행, 멘티의 반사회성, 멘티의 폐쇄적 자세로 인한 관계형성의 어려움, 낙인이론의 가능성
참여 자 특성 및 운영 방안	멘토의 자격	종교적 배경, 자발성을 가지고 1년 이상 지속가능한 자, 상담전공자, 상담경험자, 고학력자, 유아기와 성인기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자, 상황대처 능력이 뛰어나 멀티기능을 갖춘 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자, 사회복지수강 이수자 배제, 멘티를 통해 멘토 스스로 책임감 형성, 외적조건보다 마음자세 중시, 자질을 갖춘 멘토의 일관적인 교육 마인드, 교도관 중 멘토링 지도자 교육 이수자
	멘티의 자격	자발성, 결손가정, 부모역할 무경험, 불우한 가정환경, 성범죄자 역시 대상에 편입, 가족기능와해 경험자, 변화 동기, 1년이상 보호관찰 대상소년
	결연(전담)관리 자역할	해당기관과 정보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소통체계 구축, 기관 담당자간 유기적 협력관계조성, 꾸준한 멘토관리와 재교육, 주변지 지지원 확보, 자질있는 멘토 구축, 참여전 멘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 진로탐색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개발, 멘티관리, 멘토링 진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 념
		행상태 파악, 지속적인 수퍼비전,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 멘토에게 인센티브 확대
	기간, 방법	주 1회 최소 6개월이상, 월2회 1년이상, 월1회이상 온라인,오프라인 활용
관리 와 지원	민간기관지원	예산편성의 한계, 민간단체의 추가지원방안 마련가능 재정지원 및 멘토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담직원 상주
	재정지원규모	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전담직원의 인건비 등 예산지원, 멘토링 기관 신설, 최소 멘토 교육비와 멘토링 활동비용 지원
전달 체계	정부 역할	관주도의 공식기구설립, 시설담당자의 법무부와 민간기관 연계역할 담당, 국가차원의 멘토 양성기관 설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보건복지가족부 연계를 통한 사회보호정책팀의 총괄 운영, 멘토링 관련규정 제정, 제도적 뒷받침
	다기관 연계	지역사회의 유능인사 확보 및 인재 발굴, 멘토링의 효과성 입증 후 필요성에 대한 법무부 설득, CYS-Net과 연계체계 마련
	담당자 의 직무 강화 방안	공식적인 업무지정, 법원의 처분 활용, 판결전 조사의뢰 연구를 통한 효과성 검증, 업무성과 반영, 예산 및 제도적 지원, 특 별준수사항으로 멘토링 참여 추가, 멘토링 시행과 관련한 지침 작 성, 사회복지사 및 전문 상담가 채용
	사정, 평가	매뉴얼 및 평가가이드의 구축,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 마련

3.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분석

1) 멘토 및 멘티 면담조사 분석

(1) 개인적 배경

먼저 인터뷰에 참여한 멘티들은 재범으로 인해 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았고 부모의 이혼 및 조손가정 등 가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가정 내에서 건전한 역할모델을 찾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행의 종류는 무면허운전, 절도, 집단폭행 등 다양하였고 학생인 경우 잦은 지각과 결석과 같은 근태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도 보였다.

“개는 지금 폭행으로 있는데 물론 가정사가 안 좋더라구요. (멘티)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언니만 데리고 일본을 간 거예요, 아버지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사는데 아버지는 나가서 사는 거예요” (이혼가정·조손가정:멘토C:3)

“○○같은 경우 부모님이 3학년 때 이혼하시고 뭐 아버지한테 자라다 할머니한테 자라다 엄마한테 가면서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애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혼가정:멘토F:5)

“처음에 학교를 안가고 그런 것도 ‘안가도 되요 그 학교는 그런 것도 다 이해해주는 학교라서 그냥 출석만 하고 오면 되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아예 가지도 않아요” (жат은 지각과 결석:멘토H:4)

“○○는 분노가 되게 많은 아이였어요, 옆에 애가 마음에 안 들면 개를 거기서 때릴 수는 없잖아요, 방바닥을 쳐가지고 (주먹진 손등을 보이며) 가면 여기가 부어있기도 하고” (분노조절의 어려움:멘토F:4)

(2) 참여동기와 기대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들 대부분이 보호관찰관이나 소년원의 교사에 의한 권유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고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는 멘토링이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부가처분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초기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멘티 모집 단계에서 멘토링에 대한 개요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 단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관찰관이) 그냥 너한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며칠 뒤에 보호관찰소 가는 날에 만났죠.” (보호관찰선생님소개:멘티B)

“보호관찰소에서 의무적으로(해야한다고 해서)” (보호관찰소차원의 의무적 참여:멘티C)

“처음에 좀 갑작스러웠어요. 갑자기 멘토링 같은 것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는데 교복입고 다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얼떨결에 나갔는데 웬 아줌마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싶은 맘 없는데... 뭐하는 거야? 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줬어요. 1년간 상담 받는 거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소년원선생님의 상담권유: 멘티E:1)

반면, 멘토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이나 방송매체를 포함하여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참여보다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활동에 동참했거나 지인의 추천 및 권유 등 비공식적인 경로로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대학생의 경우 학교의 실습과목(3학점)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저는 성당에 사회복지분과가 있어요, 거기서 소년원에 간식을 지원했는데 간식을 지원하다보니까 수녀님이 멘토 사업하니까 관여해보라고 했어요.” (지인권유:G:1)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 수업을 듣고 싶었서.. 저번 학기 때 2학년이었는데 3학년 1학기 이론 수업을 먼저 들었어요. 이론을 먼저하고 이번에 실습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학교실습과목이수:멘토:I:1)

이와 같이 다소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멘티들은 멘토링의 내용이나 멘토에 대한 특별한 요구나 기대사항이 없이 멘토와의 만남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멘토들은 종교적 사명을 실천하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관계적 측면에서 멘티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그 과정에

서 멘티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즉, 재범을 막거나 비행행동을 감소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인간 대 인간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가지고, 멘티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멘토링 본연의 의미에 가치를 두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부 멘토들은 관계가 형성되면 성장과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재범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차단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막상 만나고 나니까, 제 딸이 사춘기를 좀 어렵게 겪었었는데 그 시기 아이들에 대해 조금 많이 알게 되었고, 사춘기 아이들, 불안정한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기 아이들에 대한 관심:멘토A:2)

“사실 처음엔 청소년이라고 해서 중·고등학생 중에 만날 수 알았는데 저한테는 정말 큰 장점(키와 덩치가 예상 외로 너무 큰 20세의 남자 멘티였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일단 만나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멘티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는 것에 대한 만족감:멘토B:2)

“멘티에게 기대했던 점은 저로 인해서 뭔가가 크게 개선되고 삶을 만족해하고 뭐 그런 것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써 만나면서 언니동생으로 의지가 되고, 애가 또 필요한 것, 지금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씩.. 필요한 것 주변에서 도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애들이 많잖아요. 큰 것을 해주고 싶다가보다 작은 것을 공유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으로..” (인간대인간차원의 만남:멘토I:1)

(3) 초기단계의 어려움

멘토링 관계 초기에 멘티들은 ‘낯선’ 멘토와의 관계에 어색하면서 서먹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초기에는 멘토와의 나이 차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불

만이나 만족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멘토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해야 하는 것에 부담감을 갖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멘티는 기성세대에 대한 선입견과 멘토링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멘토링 초기단계에서 멘토와의 관계형성 자체가 쉽지 않은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멘토 역시 비행청소년에 대한 약간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두려움이 있었고 거부적인 멘티의 태도에 멘토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과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와 같은 심리적인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더구나 나이차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낯설음, 많은 나이차이로 인한 불편함:멘티A)

“세대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 좀 무뚝뚝할 것 같다.. 나를 이해 못해 줄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죠” (기성세대에 대한 선입견:멘티D)

“처음에 왜 저희가 뽑혔는지.. 이런 애들이 뽑힌 거 같아요. 면회 잘 안 오거나 뭐지? 가난한 애들.. 그래서 “우리가 왜 해야 하는데” 그랬어요. 다같이...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때요, 선생님들은 다 나가 계시고... 우리끼리 “이거 왜 하는 건데? 우리가 왜 상담 받아? 우리 정신 이상한 애야? 왜 상담 받아?” 기분이 나쁜 거예요.” (프로그램자체에 대한 거부감:멘티E:1)

“처음에는 (비행청소년은) 나와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되고, 사실 절도, 폭행하면 몸을 사리게 되고 가까이 안하게 되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입견:멘토C:9)

보호관찰 중에 있는 멘티의 경우 학교 및 학원, 보호관찰 등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멘토와의 시간약속을 잡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였고, 보호소년 역

시 자격증 준비 등으로 멘토링에 할애하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는 멘티들이 초반에 멘토링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즐거운 활동으로 여기기보다는 일종의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 여겨진다.

반면, 멘토들은 멘토링 초반에 면대면 만남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는 멘티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소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냥 선생님이랑 저랑 시간 안 맞고요, 만날 때도 딱히 정하기가 힘들고... 저가 그때는 학교 다닐 때고 학원도 다니고 학원 끝나면 저녁이고 주말에는 또 놀아야 하잖아요. 주말에 시험 있을 때도 많았고... 그리고 또 주말에 학원 안 나갈 때는 알바까지 했어요. (시간맞추기 힘들:멘티B:1)

“처음에는 그냥 거리감을 두고 한 번 두 번 만났는데 거의 한 시간을 기다리게도 하고 자느라고 안 나오기도 하구요, 제가 집 근처에 가서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면 자느라고 안 나와요, 제가 자꾸 바람을 맞으니까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서 가정 방문 쪽으로 했는데 문밖에서 기다려도 자느라고 한 시간씩 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멘티가 시간약속을 지키을 없음:멘토B:4)

멘토에게 호감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한 멘티는 자신의 과거 비행행동에 대해 멘토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멘토가 그 내용을 계속 모르기를 바란다 하였다. 또한 만약 멘토가 알게 될까봐 약간의 부담을 가지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멘토는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있는 멘티에게 이성관계와 같이 다소 민감한 사안에 대해 멘티의 감정은 수용해 주면서 행동은 어떤 식으로 수정해 주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멘토의 반응과 바람직한 대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모든 멘토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만큼 멘토

교육 및 수퍼비전 시간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Q. 보호관찰 받은 행동을 왜 멘토가 아는 것이 싫은가요?) “그냥 싫어요.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웬지 저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싫고, 그리고 웬지 서먹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괜찮더라도 전 서먹해지고 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잃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멘토와 보호관찰받은 행동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멘티G:4)

“(멘티가 여자인데)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 말라고 잘라 말하기도 어렵고, 멘티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우려도 되고, 조언을 잘 해주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조언에 대한 어려움:멘토A:3)

(4) 관계형성

멘토링의 초반 관계형성의 어려움과는 달리 멘토링 활동이 진행되면서 멘티는 때로는 친구 같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가족 같은 멘토의 모습에 편안함과 신뢰감을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라는 초기의 호칭이 자연스럽게 ‘언니’, ‘엄마’, ‘이모’ 등으로 바뀌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멘토와 공통 관심사를 찾게 되고 이를 통해 친밀감과 자기개발을 보이기도 하였다. 멘토 역시 변화된 호칭이 멘티와의 어색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초기의 어색함과 ‘탐색’의 시기가 지나고 나자 비로소 멘티들은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하였고 멘토들은 멘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멘티의 비행행동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와 현재에 대해 수용(acceptance)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선생님이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얘기 같은 거 할 때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잘 얘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친근함:멘

토A:1)

“어쩔 때는 친엄마보다 잘해줄 때도 있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해줬는데 멘토 엄마는 되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친엄마가 미처 못 챙겨줄 때 멘토 엄마가 챙겨주고 그러니까.” (엄마같은 세심한 배려:멘티D:1)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냥 아빠 같고...” (아빠같은 편안함:멘토C:2)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저를 “이모” 라고 부르더라구요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뽀뽀하게 느껴졌는데.. 아줌마 같기도 하고.. 이모같기도 하고.. 어느 날 이모라고 부르더라구요, 참 좋았어요.” (호칭에 대한 친근함멘토A:6)

“서로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남자친구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만나서 뭐할지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멘토)언니도 저랑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저도 언니랑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공통점이 몇 개 있었어요.” (공통주제형성:멘티G:2)

“제가 나중에 느낀 것은.. 그 아이는 처음에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면에 가지고 있던 분노가 투사해서 (친구를)때렸다는 생각이 든거예요.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부모도 없고, 힘 써줄 사람이 없다보니까 주범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을 2년이나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다시는 그렇게 행동을 할 아이도 아니라고 생각되요. 그리고 불우한 편이고.. 누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감대형성:멘토A:9)

멘토링 과정에서 멘토는 멘티의 진로고민이나 이성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

해 노력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멘토의 불우한 어린 시절 등 멘토의 적절한 자기개방과 멘티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멘토를 보면서 멘티는 마음의 문을 열고 멘토에게 먼저 연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멘토는 멘티가 처해있는 가정 및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고 보호소년의 경우 가족과 멘티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가족과 멘티 사이의 오해를 풀고 가족이 멘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면서 신뢰로운 멘토링 관계가 구축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는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멘티의) 마음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진심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경청:멘토C:2)

“그냥 제 상황을 얘기해줬어요. 저도 보통인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상황, 제가 겪었던 사회생활, 뭐 그런 걸.. (개방하고).. 지금 (멘티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가 보는 멘티의 모습이 어떨지도 이야기하고..” (멘토의 적극적인 자기공개:멘토H:3)

“저는 제가 먼저 연락하고, 제가 날짜를 잡아요.” (먼저연락함:멘티C:4)

“동생이 사고가 났어요. 면회를 왔었어요. 그 다음 날이 멘토링 하는 날이었어요. 면회 때 울고 그 날 하루 종일 울고 아침에도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멍하니 있고 그런 정도였어요. 동생이 혼수상태라고 하니까. 그런데 멘토링 가니까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하고.. (멘토가 물어보시고) 처음으로 털어놓고 그때부터 마음이... 동생 때문에 참았던 것이 한 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집안의 어려움을 털어놓음:멘티E:3)

(5) 내용 및 구조

먼저,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의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멘티는 자신과 같이 힘든 시기를 경험해 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멘토링 초기에는 나이차가 많지 않은 멘토를 원했던 것과는 달리 멘토링이 진행되면서 멘티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맞춰주는 멘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멘토는 멘티와의 대화와 상담을 무리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상담자적인 자질과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멘토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멘티는 멘토의 사랑, 포용과 공감하는 자세, 개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한 반면 멘토는 마음가짐과 태도와 함께 성 상담을 포함하여 멘티의 반응과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다.

“(제 멘토와는) 세대차이가 많이 심하긴 한데..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같이 알아가고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유머도 있으시고.. (웃음) 센스쟁이예요.” (이해, 유머:멘티D:2)

“멘티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안주더라도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될 것 같아요. 공감대를 느끼고 만약에 학교를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공부만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좋은 가정 꾸미고 그렇게 해서 딱 평탄하게 살아왔어요. 계속. 고생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민도 안 해봤고. 그런 사람하고는 멘토 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되니까. 저는 어렵게 살았거나 공부 못했거나 고민 많았던 사람이 아무래도 그렇구나,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나도 지금 이렇게 되었잖니 이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어려운 환경에 노출된 경험자:멘티F:4)

“상담은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해야 되고, 봉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성상담도 그렇고... 요즘 애들은 정말 당돌해요.

공원 같은데서 남자애들한테 “일찍 들어가라” 그러면 개네들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아줌마 요즘 아저씨가 안 안아줘? 내가 한번 안 아줄까?” 순수하게 자식 같은 마음에서 일찍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당사자가 더 당황 하는 것 같아요. 정상담이든 상담이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이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전문성 (성)상담교육이수자:멘토C:10)

“똑똑하거나 학력이 좋거나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런 자격은 안 중요하고 자신이 그런 아이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멘티를 생각하는 마음:멘토H:3)

반면, 멘티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멘토의 경우 불우한 가정환경 및 개인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 또는 중·고등학생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20세 이하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멘티의 범행내용과 관련해서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므로 성 범죄자 등 특정범죄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약간의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의 경우 배제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었다.

“(웃음)멘토 엄마를 높게 보는 것? 존중해줄 수 있는 아이면 좋겠죠. 19살? (까지는 누구나 멘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멘티 나이제한으로 멘토에 대한 존중감 확보:멘티D:2)

“저는 조금 놀랐던 것이 20살이 넘는 멘티도 있더라고요.. 만약 제가 20살이 넘는 멘티가 배정되면 못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20살이 넘으면 삶의 스타일이 있고 분명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말 그대로 멘티는 틴에이저가 좋을 않을까요? ”(중고등학생으로 나이제한:멘토A:10)

“어차피 거기(소년원) 들어왔는데.. 과거는 과거고, 지금 우리가 그

아이한테 멘토로 다가갔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 과거에 어떤 짓을 했건.. (상관없어요) 물론 배경은 있어야겠지만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한 배경요소 없음:멘토G:7)

이와 함께 결연식, 멘토 교육 및 슈퍼비전, 야외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면서 멘토에 대한 교육과 슈퍼비전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멘토링의 총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 1년 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한 멘티의 경우 기간 없이 계속 연락하여야 한다는 등 멘토링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멘티는 부정적인 처음의 태도와는 달리 멘토와 관계형성이 되고 멘토링이 진행되면서 기간을 정해 놓고 만나기보다 멘토와 멘티가 합의만 되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슈퍼비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멘토링을 하면서 문제점이 보이기도 하고 똑같은 것을 답습한다는 생각도 들고 진행이 된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슈퍼비전 받고 나서 조금씩 고쳐가고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더라구요.” (슈퍼비전:멘토A:11)

“1년 정도는 만나야 될 것 같고 한 달에 두 번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1년만남, 한달에 2회:멘토E:7)

“그냥 오래했으면 좋겠어요. 종결기간 저는 그런 것이 좀 싫어요. 하면 계속 연락하는 거지, 언제까지 “6개월까지 연락을 해라.” 그런 것이 무슨 멘토예요. 6개월까지 연락하다가 나중에 연락도 안하고 그런 것은 싫어요.” (제한없는 멘토링기간:멘티F:6)

(6) 건의사항

멘토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멘토와 멘티의 매칭, 세부 활동, 결연관리

자의 역할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분석하였다. 먼저, 매칭은 가능한 동성으로 하는 것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기 쉽다는 동성 선호 경향을 보였으며 멘티는 성별보다는 자신을 잘 이해주고 세대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보였다. 반면, 멘토는 동성의 멘티를 희망하면서도 ‘엄마’의 역할이 필요한 아이라면 성별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과 멘티의 욕구를 고려하여 멘토를 매칭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이는 너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멘토가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저희하고 세대차이도 나고 하면... (불편할 것 같아요)” (비슷한나이:멘티G:2)

“나는 멘티가 여학생이라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같은 멘토가 필요하다면 남자멘티지만.. (괜찮아요).” (동성, 멘티의 가족사항고려:멘토A:13)

멘토 간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활동과 내실 있는 멘토 교육 및 수퍼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경제교육’ 등 멘티들의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멘토와 멘티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결연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활동경비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고 멘티가 출원 혹은 이사를 가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멘토링이 제공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연식이 한 번 있었고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끼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체집단프로그램제안:멘토C:14)

“작년에는 저희가 간식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작년에는

2000원 범위 내에서 (간식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2000원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멘토를 그만둔 분도 있어요. 그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간식비 등 경제적지원확대:멘토 F:8)

“월례회를 하기는 하는데 9시 반에 모여서 12까지 있는데 그걸 교육 시간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중 평일에 시간을 내서 3~4시간 모이기 힘든건데 뭔가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구조화된 멘토교육프로그램마련:멘토A:12)

“우리가 멘토링이 끝난 다음에 이걸 정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애네들이 각자 집으로 가잖아요, 대전으로도 가고 광주로도 가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따라 갈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서 그러면 우리를 만나고 싶으면 우리를 만나도 되고 그쪽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연계가 안 되면 단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후관리체계마련:멘토F:10)

(7) 성장 및 변화

멘티는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심리정서적인 변화와 함께 진로에 대한 성숙도도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는 등의 생각이 깊어지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멘토를 통해 말하는 방법과 같은 대인관계기술을 조금씩 습득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멘토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합격한 경우도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변화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깊어진 것 같아요. (Q. 어떤 부분?)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에도, 지금 주위에서 나를 보고 있다 그런 게 아니구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나한테 좋은 것이다. 뭐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생각이 깊어짐:멘티A:2)

“멘토에게 대학가고 싶은데 집안 사정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언니도 스무살 되기 전에 많은 것이 두려웠다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대학을 꼭 20살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형편이 안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꾸준히 돈을 모아서 4·5년 후에 그때라도 갈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줬어요.” (진로준비에 구체적으로 도움받음:멘티F:3)

멘토 역시 멘토링을 해 오면서 멘티와 더불어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힘든 상황에 있는 멘티를 보면서 오히려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었고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대화를 비롯하여 대인관계에서의 태도에서도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멘토는 멘티를 보면서 자신의 자녀를 더욱 이해할 수 있었고 멘티에게 그 또래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 오히려 배우고 자녀와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 멘토링이 상호지지적인 활동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보다 더 어렵게 (청소년기를)보내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저도 좀 긍정적이지는 않았는데 멘티를 보면서 좀 더 긍정적이 된 거 같고요,” (삶에 대해 긍정적 태도로 변화:멘티H:4)

“제가 멘티에게 물어요, ‘집에 애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나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러면 멘티가 자기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오늘 집에 갔는데요, 개가 퉁퉁대고 들어오면 그냥 뭐라고 하지 마세요, 문을 콧 닫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자기가 기분이 풀리면 나올 꺼예요,” 멘티가 경험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상호지지:멘토F:2)

이와 함께 멘토가 역할모델이 되면서 멘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상당부분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멘토링을 해 오면서 자신의 과거와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자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멘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과 실제로 예전과 같은 문제행동이 감소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른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는 구나.’ 라고 생각 했는데, 이것 (멘토링) 받고 나서 (어른들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은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껴졌어요. 솔직히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 하는 거 힘든 거잖아요. 더군다나 처음 만나서 말하기도 힘들 텐데.. 내가 맡은 임무니까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기성세대에 대한 시각변화:멘티A:3)

“그러니까 지금은 무면허 아닌데요. 그때 안 걸렸으면 ‘아 요번에 안 걸렸으니까 다음에도 안 걸렸겠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걸린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반성:멘티A:4)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믿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사건에 대해 많이 반성하게 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런 것이 있었어요.”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반성:멘티D:3)

“소년원에 계시는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출원한 ○○를 얼마전에 만나러 가신 거예요. 지금 호프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 예전에 왔던 길을 다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

비행가능성감소:멘토F:9)

“(Q.멘토링을 하면 그런 행동들을 안 하게 되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안하게 된 것 같아요. 멘토링 하고 있고.. 보호관찰 받게 된 그 행동을 또 하면.. 언니(멘토)가 그걸 알게 될 거 아니예요.. 그게 싫어서” (문제행동감소:멘티G:3)

멘토는 멘티를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으며, 멘토링에 참여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비행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에서 벗어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나감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멘티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보호관찰을 받는 애들이나 소년원에 있는 애들이나 되게 막 큰 범죄를 저질렀거나 인성적으로 빠뜨려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꿈을 가진 아이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지 원래 이 아이의 인성은 착하고.. 그런 것 같아요.” (비행청소년에 대한 시각전환:멘토I:2)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IV-42>와 같다.

<표 IV-42> 멘토 및 멘티 면담조사 결과 요약

상위 범주	범 주	개 념
개인 적 배경	불우한 가정환경	(멘티)이혼가정, 조손가정, 부모없이 절에서 자람, 역할모델 부재)
	비행행동	(멘티)무면허운전, 집단폭행
	학교 부적응	(멘티)잦은 지각과 결석, 공부에 관심없음
	성격특성	(멘티)활발함, 밝음, 외로움을 타는 성격, 분노조절의 어려움
참여	외부동기	(멘티)보호관찰관 소개, 보호관찰소 차원의 의무적 참여, 소년원교

상위 범주	범 주	개 념
동기 와 기대 사항		사의 권유, 스님(지인)권유 (멘토)연구원 의뢰, 지인 권유, 분류심사원 봉사 후 참여, 학교실습과 목이수
	내부동기	(멘토)청소년기 아이들에 대한 관심, 사회봉사참여의 기회
	기대사항	(멘토)종교적 사명, 사회적 관심증대, 멘티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는 것에 대한 만족감, 멘티에게 도움주기, 멘티와 세웠던 목표이루기, 관심을 통한 멘티의 변화, 인간 대 인간 차원의 만남
초기 어 려 움	거리감/불 편함	(멘티)낮설음, 많은 나이차이로 인한 불편함, 기성세대에 대한 선입 견, 적은나이차로 인한 불편함, 프로그램참여자체에 대한 거부감, 개인사생활 공개에 대한 불편함
		(멘토)비행청소년에 대한 선입견, 멘티의 비자발적 참여로 인한 부 담스러운 만남, 멘티가 마음을 쉽게 열지 않음
	물리적 어려움	(멘티)시간 맞추기 힘들, 자격증준비로 멘토링 참여의 시간적 여유 가 없음
		(멘토)멘티가 시간약속을 지키지 않음
	두려움 대화의 어려움	(멘티)멘토가 과거 비행행동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멘티)소년원 환경 문제로 멘토와 원활한 대화의 어려움
		(멘토)조언에 대한 어려움, 반응 없는 멘티
관계 형성	친근함/ 편안함	(멘티)편안함, 세심하게 챙겨줌, 친구같은 관계, 친언니 같음, 엄마 같은 편안함, 아빠같이 편안함, 엄마 같은 세심한 배려, 호칭에 대한 친근함
		(멘토)호칭에 대한 친근함(이모, 엄마, 언니)
	공감대 형성	(멘티)공감대형성, 공통주제형성, 이야기가 잘 통함
		(멘토)공감대형성
	멘토의 노력	(멘티)지속적인조언, 사전에 멘티의 관심사파악,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줌
		(멘토)경청, 멘티에 대한 책임감, 멘티의 환경에 대한 이해, 멘티에게 힘실어주기, 멘토의 적극적인 자기공개, 적극적인 멘토, 학습한 상담 기법 및 프로그램 활용
	멘티의 자기개방	(멘티)먼저 연락함, 집안의 어려움을 털어놓음,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많은 이야기 나눔 (멘토)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아짐
프로 그램 내용 및 구조	멘토요건	(멘티)배려, 이해, 어려운 환경에 노출된 경험자,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멘토)상담교육이수자, 기본적인 대화기술 및 공감하는 자세, 사랑 을 바탕으로 열린 마음, 멘티를 생각하는 마음, 포용할 수 있는 자세, 책임감, 사명감
	멘티요건	(멘티)자발성, 나이

상위 범주	범 주	개 념
		(멘토)중고등학생으로 제한, 불우한 가정환경 및 개인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 긍정적 자세, 특별한 배제요소 없음
	지원	결연식, 수퍼비전, 야외 프로그램
	체계	월 1회 만남, 월 2회 만남, 1년간 관계지속, 멘토의 보호관찰수강명령 기간동안 진행, 제한없는 멘토링 기간, 공지사항 등이 원활하게 전달 되지 못하는 체계 불만
건의 사항	매칭시 고려사항	(멘티)적절한 연령차, 비슷한 성격, 동성 (멘토)거리 고려, 멘티의 가족사항 고려, 동성, 매칭에 대한 멘티의 욕구조사 사전 실시
	프로그램 사항	(멘티)전체 집단프로그램 제안, 놀이식 프로그램 편성 (멘토)집단프로그램 제안, 멘티대상 경제교육프로그램추가, 구조화된 멘토교육프로그램, 수퍼비전시 멘토간 의견교환시간 연장
	연구원 및 기관의 역할	(멘토)유급전담직원의 상주, 간식비 등 활동경비지원, 근거리의 교육장소마련, 멘토링 매뉴얼 마련, 사후관리체계구축, 멘토링을 지원할 수 있는 재단마련, 다양한 배경을 가진 멘토인력 확보
		(멘티)생각이 깊어짐, 자신감증대
성장 및 변화	심리정서	(멘토)마음의 여유가 생김, 개인성격의 긍정적 변화, 삶에 대해 긍정적 태도로 변화, 자기성찰의 기회
	진로 및 학업	(멘티)진로준비에 구체적으로 도움 받음, 진로의식강화, 학교출석률이 높아짐, 검정고시 시도 혹은 합격
	사회적 지지/ 관계	(멘티)대인관계기술을 익힘, 힘이 됨, 지지자로 인한 든든함 (멘토)사회에 대한 관심증대, 대인관계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깨달음, 상호지지
	기성세대(청소년)에 대한 시각	(멘티)기성세대의 책임감에 대한 시각변화, 기존사고방식의 전환 (멘토)청소년의 예측불가한 행동을 이해하게 됨,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선입견 변화
	비행행동	(멘티)문제행동자제,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반성, 문제행동감소, 비행행동은 본인의 통찰, 비행행동 감소, 재비행가능성 감소, 관심영역이 비행에서 진로 등으로 전환
		(멘토)비행청소년에 대한 시각전환

2) 실험조사 분석 결과

(1) 멘티에게 미친 영향

분석결과 참여한 실험집단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는 측정변

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ANCOVA를 활용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하게 유지되었다. 자존감($F=4.243$, $p<.05$), 자신감($F=4.109$, $p<.05$), 성공경험($F=23.010$, $p<.001$)은 멘토링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유의한 수준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표 IV-43, 표 IV-44, 표 IV-45). 반면, 자율성은 멘토링에 참여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에 사후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6).

〈표 IV-43〉 사후 자존감 점수 비교

소스	제Ⅲ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평균
수정모형	2.096 ^a	2	1.048	2.130	실험3.6667
절편	162.628	1	162.628	330.598 ^{***}	통제3.4004
자존감(전)	.000	1	.000	.000	
집단	2.087	1	2.087	4.243 [*]	
오류	60.014	122	.492		
합계	1595.694	125			
수정합계	62.110	124			

a. $R^2 = .034$ (수정된 $R^2 = .164$)

〈표 IV-44〉 사후 자신감 점수 비교

소스	제Ⅲ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평균
수정모형	6.320 ^a	2	3.160	11.189 ^{***}	실험2.9583
절편	158.036	1	158.036	559.610 ^{***}	통제2.7866
자신감(전)	5.448	1	5.448	19.291 ^{***}	
집단	1.160	1	1.160	4.109 [*]	
오류	34.453	122	.282		
합계	1057.918	125			
수정합계	40.773	124			

a. $R^2 = .023$ (수정된 $R^2 = .007$)

〈표 IV-45〉 사후 성공경험 점수 비교

소스	제Ⅲ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평균
수정모형	13.104 ^a	2	6.552	29.378 ^{***}	실험3.3802
절편	204.536	1	204.536	917.073 ^{***}	통제2.9968

소스	제Ⅲ유형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평균
성공(전)	8.757	1	8.757	39.262***	
집단	5.132	1	5.132	23.010***	
오류	27.210	122	.223		
합계	1275.906	125			
수정합계	40.314	124			

a. $R^2 = .325$ (수정된 $R^2 = .314$)

<표 IV-46> 사후 자율성 점수 비교

소스	제Ⅲ유형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평균
수정모형	.315 ^a	2	.157	.268	실험3.0979
절편	136.922	1	136.922	233.071***	통제3.0922
자율성(전)	.314	1	.314	.534	
집단	.004	1	.004	.007	
오류	71.671	122	.587		
합계	1268.900	125			
수정합계	71.986	124			

a. $R^2 = .004$ (수정된 $R^2 = .012$)

다음으로, 멘토링에 참여한 실험집단 청소년을 소년원의 보호소년과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자존감, 자신감, 성공경험의 사후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이 약간 부분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7).

<표 IV-47> 소년원, 보호관찰 청소년 사후점수 비교

구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성장*	소년원	13	3.3413	.51022	47	-.090
	보호관찰소	36	3.3575	.56773		

p=.431

주: 사후 자존감, 성공경험, 자신감 점수를 합하여 평균을 비교함

면담 빈도에 따른 멘티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2주일에 1회 빈도로 멘토와 일대일 만남을 가졌다는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주 1회, 월 1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면담 빈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멘티들은 2주에 1회 빈도로 일대일 만남을 가졌을 때 멘토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48).⁹³⁾

〈표 IV-48〉 면담 빈도와 멘티 만족도 비교

구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비
만남 빈도	주1회	1	4.2500		10.977***
	2주1회	14	4.9464	.14473	
	월1회	4	4.0625	.74652	
합계		19	4.7237	.50618	

***p<.001

주: 사후 자존감, 성공경험, 자신감 점수를 합하여 평균을 비교함

멘티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에 만족하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6명(2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다양한 활동 경험’이 4명(16.0%), ‘인간관계 경험’이 3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멘토와 친해져서, 진로에 도움을 받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1명이었다. 멘토링에 불만족하는 점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은 멘토와 자주 만나지 못해서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멘토와의 관계와 멘토링 내용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멘티들은 상담을 필요로 하며 멘토와의 대화를 ‘상담’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멘토와의 상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멘토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자 교육이 멘토교육과 수퍼비전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표 IV-49).

93) 이와 함께 소년원 멘티와 보호관찰중인 멘티의 멘토링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만족한다’는 수준이었으며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49〉 멘티의 멘토링 만족·불만족이유

만족이유	빈도, %	불만족	빈도, %
상담	6(33.3)	재미없음	1(5.6)
구체적인 도움	1(5.6)	자주 못 만나서	4(16.0)
친해져서	1(5.6)	만족함	13(72.2)
인간관계	3(16.7)		
진로에 도움	1(5.6)		
다양한 경험	4(22.2)		
기타	2(11.1)		
합계	18(100.0)	합계	18(100.0)

멘토를 대상으로 7개월 동안의 멘토링을 해 온 현재 자신의 멘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한 멘토 33명 중 15명(45.5%)이 자신의 멘티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자립가능성이 엿보이는 단계’라고 응답하여 멘토링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집중개입이 필요하다’가 10명(30.3%),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가 8명(24.2%)으로 나타나 보다 장기적인 멘토링 관계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표 IV-50).

〈표 IV-50〉 멘티의 현재 상황

현재상황	빈도, %
개입단계(집중개입이 필요)	10(30.3)
안정화단계(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변화를 보임)	8(24.2)
자립단계(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자립가능성이 보임)	15(45.5)
합계	33(100.0)

주: 멘토의 응답결과임

아래 <표 IV-51>은 멘토링에 만족하는 이유, 도움이 된 점, 그리고 멘토링에 참여하고 싶은지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정리한 것이다.

<표 IV-51> 멘토링에 대한 멘티 의견

만족스러운 이유(ID)
· 문제가 있을 때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얘기들을 해주신다(026) · 엄마 같은 정, 힘들 때 고민 있을 때 힘이 되고 편안하다(027, 028, 036, 037) · 착하시고 저를 많이 생각해주심(028) · 재미있다(030) · 면회 오는 사람이 없는데 한 달에 2번씩 꼭 와주셔서(031) · 같이 얘기할 수 있고, 프로그램 할 때(032) · 부모님 대신 상담해주고 어려움을 도와줘서,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상담하는 시간이 즐거워서(033, 039, 042) · 이야기 잘 들어주고 정말 나를 아끼는 모습(034) · 공부도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니까(048)
멘토링이 도움이 된 점(ID)
· 힘들 때 얘기를 나누고 위로가 됨(026, 027) / 이야기를 나누는 것 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친구와 나누지 못하는 얘기도 할 수 있어서(028) / 만나면 좋은 말씀과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셔서 도움이 됨(029) · 아무 이유없이 잘 대해주셔서(030), 마음이 편해서(042) · 상담하고 나서 내가 변해서(032) / 고민상담(035, 036, 048) / 학습지도 (048) · 어른을 좋아하게 되어서(040) / 부족한 사랑을 채워줘서(037, 125)
멘토링에 참여·불참하고 싶은 이유(ID)
* 멘토링에 또 참여하고 싶은 이유 ·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027) / 내가 긍정적으로 변해서(028) · 재미있어서(026, 030)) / 좋은 말을 재미있게 잘 해주셔서(029) ·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싶어서(033) / 멘토가 좋아서(036) · 나에게 힘이 많이 되어서(037) /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041) * 멘토링에 불참하고 싶은 이유 · 또 보호관찰로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042) · 멘토링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만나도 되니까(048)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에 참여한 멘티 총 97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결연 이후의 재범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2명이 재범하여 재범률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⁹⁴⁾ 이는 전체 소년범의 재범률이 20%를 넘고 있

94) 멘토의 보고와 함께 비행 멘토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및 소년

고, 사실상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선도유예 소년의 재범율을 역시 17%(보건복지가족부, 2008: 320)에 달하는 것과 매우 비교할 때 매우 획기적인 결과라 하겠다. 특히, 전체 소년범 가운데 1~3개월 이내의 재범률은 19%, 반사회적 특성이 높은 경우 재범률은 60%로 나타나(경찰청, 2007) 단기간 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과 비교할 때 7개월 동안의 멘토링 기간에서 재범률이 2% 수준에 불과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에서 재비행 고위험군 소년범 69명과 전문가의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 시범사업에서 멘토링 이후 6개월간 재비행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결과(경찰청, 2007)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단, 현재까지 상당수의 멘티가 멘토링 진행과정에 있고 멘티 선정이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멘토링 종결 이후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객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멘토링의 재범억제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2) 멘토에게 미친 영향

먼저, 비행청소년 멘토링에 참여한 성인과 대학생 멘토를 대상으로 참여동기에 응답한 응답자는 총 43명으로 성인이 3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성인의 경우 자아실현(30.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를 제외하면 실천경험을 쌓기 위해서(17.9%), 종교적 이유와 사회참여(10.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은 자아실현, 학점취득⁹⁵⁾, 실천경험을 쌓기 위해서가 각각 1명이었다(표 IV-52).

〈표 IV-52〉 멘토의 참여동기

	멘토링 참여동기_멘토								전체
	자아 실현	학점 취득	새로운 관계 형성	지인의 권유	종교 이유	사회 참여	실천 경험	기타	
성인	12 (30.8)	0 (0.0)	2 (5.1)	2 (5.1)	4 (10.3)	4 (10.3)	7 (17.9)	8 (20.5)	39 (100.0)

원, 자립생활관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임.

95) 본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우 ‘교정실습(3학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임.

	멘토링 참여동기_멘토								전체
	자아 실현	학점 취득	새로운 관계 형성	지인의 권유	종교 이유	사회 참여	실천 경험	기타	
대학생	1 (33.3)	1 (33.3)	0 (0.0)	0 (0.0)	0 (0.0)	0 (0.0)	1 (33.3)	0 (0.0)	3 (100.0)
계	13 (31.0)	1 (2.4)	2 (4.8)	2 (4.8)	4 (9.5)	4 (9.5)	8 (19.0)	8 (19.0)	42 (100.0)

$$\chi^2 = 8.148, df=7, p=.320$$

다음으로 멘토의 성공경험, 자신감, 효능감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간에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공경험은 사후점수가 약간 높았고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은 사후 점수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부 멘토 및 결연관리자와 추가면담을 실시한 결과, 멘토들은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막상 멘토링 과정이 진행되며 보람을 느낀 반면 변화와 기복이 많은 멘티를 대상으로 자신이 과연 ‘좋은’ 멘토로서 끝까지 잘 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토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멘토의 소진(burn out)을 막기 어렵고 멘토링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멘토교육과 슈퍼비전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겠다.

〈표 IV-53〉 멘토의 사전사후 점수 비교

구분	time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성공경험	사전	43	3.4302	.30289	74	-.072
	사후	43	3.4356	.34955		
자신감	사전	43	3.0465	.34675	74	.838
	사후	43	2.9740	.40635		
효능감	사전	43	3.2519	.32606	74	.366
	사후	43	3.2222	.38112		

$$\chi^2 = 1.745, df=5, p=.883$$

멘토링에 만족하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먼저 응답자 30

명 가운데 불만족한다는 2명(6.7%)이었으며 나머지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멘티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자체라는 응답이 10명(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자아실현이 5명(18.5%)으로 뒤를 이었다. 즉, 상당수의 멘토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멘토로 활동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멘티의 성장을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은 새로운 관계형성, 자부심, 나에 대한 이해에 각각 1명씩 응답하였다(표 IV-54).

<표 IV-54> 멘토의 멘토링 만족이유(1순위)

	만족하는 이유								전체
	자아 실현	새로운 관계형성	종교 신념	실천 경험	자부심	나의 이해	멘티 성장	불만족	
성인	5 18.5	4 14.8	2 7.4	1 3.7	1 3.7	2 7.4	10 37.0	2 7.4	27 100.0
대학생	0 .0	1 33.3	0 .0	0 .0	1 33.3	1 33.3	0 .0	0 .0	3 100.0
계	5 16.7	5 16.7	2 6.7	1 3.3	2 6.7	3 10.0	10 33.3	2 6.7	30 100.0

$$\chi^2 = 8.148, df=7, p=.320$$

반면, 멘토링에 불만족하는 점을 확인한 결과 총 26명의 응답자 가운데 의욕이 상실되었다는 응답자가 9명(34.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를 제외하면 경제적인 부담 4명(15.4%), 교육에 대한 부담과 개인사유라는 응답이 각각 3명(11.5%)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멘티와 거주지가 멀어서 만나는데 힘이 든다’를 포함하여 총 6명이었다(표 IV-55).

<표 IV-55> 멘토의 멘토링 불만족 이유

	불만족 이유						전체
	의욕 감소	교육 부담	경제적 부담	개인 사유	비전 감소	기타	
성인	8 33.3	3 12.5	4 16.7	3 12.5	1 4.2	5 20.8	24 100.0
대학생	1 50.0	0 .0	0 .0	0 .0	0 .0	1 50.0	2 100.0
전체	9 34.6	3 11.5	4 15.4	3 11.5	1 3.8	6 23.1	26 100.0

$$\chi^2 = 1.745, df=5, p=.883$$

멘토링에 대한 멘토의 의견 가운데 ‘나의 활동에 만족·불만족 하는 이유’, 와 ‘멘티와의 관계에서 만족·불만족하는 이유’, ‘멘토로 활동하고 싶은 이유’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한 것이 <표 IV-56>이다.

<표 IV-56> 멘토링에 대한 멘토 의견

나의 활동에 만족·불만족하는 이유(ID)
* 만족하는 이유 · 멘티의 마음을 안정시켜주어서(092) / 고민을 들어주는 상대자가 되어줘서 (096) · 인생선배로서 나눔을 공유해서(093) · 멘티가 기뻐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느낄 때 곁에 있어줄 수 있어서 행동하고 나에게도 에너지가 되어서(095) · 멘티와의 관계가 나아지고 있고 멘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97) · 멘티와 연락하기 힘들어도 가까워지려고 스스로 노력했다는 점에서 만족 ·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접하게 된 기회가 되어서(099) · 꿈과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어서(105) / 자신감과 보람을 느껴서(106, 120) · 책임감과 진실함, 멘티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원을 끌어내 주려고 노력해서 (110) · 자기만족이고 사회공헌이 일조 한 것 같아서(112) · 서로 성장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느껴져서(123)

* 불만족하는 이유

- 멘티가 거부하는 느낌이 들어서(094) / 자주 못 만나고 활동 부족(100, 107)
-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아서(109)
- 상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답답해서(115)
- 멘티와 라포 형성이 어려워져(117, 122)

멘티와의 관계에 만족·불만족하는 이유(ID)

* 만족하는 이유

- 멘티가 안정되고 모범적으로 생활해서(092)
- 멘티가 만남에 적극적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서(093)
- 서로 마음을 주고 받고 비전과 사랑을 공유해서(095)
- 서로에 대한 신뢰와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므로(096),
- 서로 이야기를 들어 주는 관계(101),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고 지속적으로 만나서(103)
- 연락을 자주 하고 만나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서(097)
- 멘티와 라포형성이 잘 되었고 진행이 순조로워서(109)
- 내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아서(123)

* 불만족하는 이유

- 멘티가 잘 만나주지 않아서(099, 117) / 멘티가 말이 거의 없고 아직 어색한 것 같아서(115) /

멘토로 활동하고 싶은 이유(ID)

* 멘토링에 멘토로서 또 참여하고 싶은 이유

- 멘티를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서, 멘티의 변화와 성장을 보고싶어(092, 120)
- 나누는 인생,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093, 103, 113)
- 지금은 (멘토 역할이)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공부를 더 해서)다음에 더 잘 해 보고 싶다(098, 100, 106, 115, 122, 123)
- 누군가에게 도되어서(037) /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041)
- 종교적 사명감(1123) / 내 자식 같아서(118)

* 멘토링에 불참하고 싶은 이유

- 또 보호관찰로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042)
 - 멘토링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만나도 되니까(048)
-

4. 소결

1) 요약

이 연구는 멘토링이 처우와 함께 제공될 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뿐 아니라 재범예방과 사회복귀라는 처우의 목표 달성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개정소년법을 비롯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의 비행청소년 정책이 예방중심의 개입전략과 사회 내 처우를 지향하고 있고, 멘토링이 교정 처우의 핵심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비행청소년 선도에 있어 멘토링의 효과에 주목하고 정책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개정소년법에서는 비행소년의 산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제67조2)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협조체계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연계하는 사회단체에게 지원되는 보조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일선 보호관찰소 및 소년보호기관의 다기관 협조체계 구축 현황에 대한 분석과 장애요인에 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전국 51개 보호관찰소 및 16개 소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멘토링 운영 현황을 포함한 다기관 서비스 연계 실태 및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보호관찰소 및 소년보호기관은 직업훈련, 진로 및 학업지도, 경제적 지원과 취업알선 등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가 높고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6개월간 타 기관에 사례나 자원을 의뢰한 정도는 보호관찰소가 52.5회, 소년원 40.8회, 대안교육센터 35.3회 순으로 나타났다. 상시적인 다기관 협조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응답률은 31.5% 수준이었다. 특히, 연계를 맺고 있는 기관들과 친밀한 정도를 질문한 결과 친밀하다는 20.2%에 불과하였으며 소원하다(매우 포함)는 59.8%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소와 소년보호기관의 경우 필요로 하는 지역 내 자원과 서비스가 매번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협력기관과의 회의, 공

동사업 및 공식적·비공식적 회합의 기회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기관 협력과 멘토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높은 반면 기관 및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일대일의 간헐적인 연계가 주를 이루며, 각 기관이 지역 내 다기관의 연계를 조정하거나 매개하는 등 자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주체가 되기보다는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거나 비상시적인 단편적 연계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관찰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연계하고는 있으나 상당수가 민간단체 및 대학을 협력이 요구되는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 자원에 대한 이해와 연계를 위한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멘토의 이해 및 책임감 등 멘토의 질 문제와 함께 해당 업무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운영상의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대안교육센터, 보호관찰소는 민간기관과 매우 낮은 수준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업훈련, 경제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높는데 반해 실제 연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등위성을 통해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기관들과 동일한 관계패턴을 가지는가를 살펴본 결과 세 기관 모두 비슷한 행동패턴을 가지는 유사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보호관찰소는 연계를 시도하거나 의뢰 받는 정도가 가장 빈번하고 협력하는 기관 역시 가장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자원의 매개자(mediator)의 역할 수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호관찰소와 소년보호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협조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허브(hub)기관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년원이 가장 많은 의뢰를 받는 곳은 타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청소년단체로 나타났고 가장 의뢰를 많이 요청하는 곳은 교육청이었으나 연결정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즉, 소년원은 소년범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활용하기 보다는 자체적인 교육과 지도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안교육센터는 세 기관 가운데 학교, 교

육청으로부터 가장 의뢰를 많이 받으나 학교, 교육청에 다시 사례를 의뢰하는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청은 대안교육센터와 관련된 네트워크 내에서 사례나 자원을 매개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파악되었으며, 대안교육센터는 다소 경미한 학생 비행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단면접(FGI)과 멘토 및 멘티를 대상으로 별도의 면담을 실시하여 멘토링의 운영방안 및 성공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티의 비자발성으로 인해 초기 관계형성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더불어 비행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멘토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멘토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우선 고려하여 선발하되 별도의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멘티는 위험(risk)과 욕구(need)에 대한 사정을 통해 고위험 고욕구의 경우 멘토링만 제공되기 보다는 다른 처분과 기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다기관을 참여를 기반으로 진로와 같은 멘티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지역 내 자원이 동원되어야만 실제적으로 재범예방과 재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성공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공식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며, 멘토의 모집·관리·재교육·수퍼비전을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과 자원봉사 인증 등 인센티브, 운영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멘토들은 멘티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인간 대 인간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멘티 선정 문제, 매칭, 집단 활동에 대한 의견에는 다소 이견이 존재하였으며, 멘토 교육과 수퍼비전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연관리자와 수퍼바이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멘티들은 관계형성의 초기에는 멘토링에 대한 이해가 없어 거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멘토를 ‘언니’, ‘엄마’, ‘이모’등으로 호칭이 변경되고 결국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1년 이상 장기간의

멘토링을 희망하는 멘티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멘토링을 통해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정도가 감소되거나 자신의 지난 행위를 반성하는 통찰(insight)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멘토링에 참여한 청소년의 재범률은 2%에 불과하였으며, 총 97명의 멘티 가운데 학업 중단 청소년 중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이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멘티 선정시 검정고시 준비생을 유의표집하지는 않았으나 멘토링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 대상 청소년의 검정고시 합격률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멘티의 경우 검정고시 공부방을 통해 멘토링과 학습지도가 함께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멘토링의 간접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라 하겠다. 그러나, 멘토에 참여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존감, 자신감, 성공경험에 있어 유의한 수준의 향상을 보여주었으며 2주일에 1회 정도의 일대일 만남을 가졌을 경우 멘토링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멘토는 7개월간의 멘토링 이후 멘티의 성장과 변화에 만족감을 느낀 반면 성공경험, 자신감, 자기효능감의 긍정적인 변화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링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년 미만의 단기간 동안 변화를 측정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멘토에 대한 교육과 수퍼비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멘토의 소진(burn out)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결론

(1) 다기관 협력을 위한 허브(hub)로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보호관찰소 및 소년보호기관이 지역사회를 발굴하고 확보·연계·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나, 범부처간 협력 및 공공과 민간의 협조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예, 범죄예방정책국) 내에 이와 같은 역할과 업무를 전담하는 허브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전담 부서는 소년법 제

67조2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실제적으로 담당하며, 소년보호기관(소년과)과 보호관찰소(보호관찰과)가 멘티의 문제와 욕구에 따른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자원연계 및 활용과 관련한 담당자 교육·연수,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지원자원부 산하의 자원지도 개발 및 보급, 공공-민간 협의체 운영, 자원연계 방법과 지침, 멘토링 기금 확보노력, 협조체계 및 공동사업의 운영과 평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난도의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되며 각 기관의 이해를 조정하여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주체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요국의 경우 법무부 내에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미국 OJJDP내의 JUMP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전담기관은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차원에서 멘토링의 운영과 효과에 대한 홍보 및 평가를 담당하고 범부처 차원의 참여와 다기관의 협력과 조정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담부서와 협력하는 관민협의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가칭)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협의회와 같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와 공동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민 협의체는 전담부서에서 관리·운영하며, 지역 내 자원 발굴과 멘토링 운영지침 및 멘토 활동지침 개발, 멘토 모집 및 양성, 멘티 선정 기준 마련,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협의하고 추진한다. 이와 같은 협의체는 멘토링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의 의견과 욕구를 수렴하고 조정하기에 용이하며, 전국 단위의 멘토링 서비스 구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멘토링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에는 미국·영국·캐나다 등의 BBBS와 같은 전국적 조직망을 갖는 민간 차원의 멘토링 조직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전국적 조직망은 자원과 정보 공유에 효과적이며 멘티에 대한 지속적

인 멘토링이 가능한 기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 및 민간 차원의 기금과 후원금의 효과적인 배분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용이하다. 따라서, 관민협의체는 다기관을 참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질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다기관 협력 및 멘토링 관련 업무가 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일선 소년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의 자원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타 기관과의 일대일 연계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다수의 협력기관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방사형의 협력체계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원호’ 외에 다기관의 협력과 조정, 회의, 공동사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멘토링을 포함한 다기관 연계 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며,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부가적인 업무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담당자 개인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자원 연계의 수준과 내용은 천차만별이며 담당자가 바뀔 경우 기존의 연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다기관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소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소년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가 지역 내 자원의 발굴과 조정과 매개 역할에 보다 적극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와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기관 평가지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담당자에 대한 공식적이며 정기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보호관찰소 및 소년보호기관은 자원의 조정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멘토링 운영에서 보호관찰소와 소년보호기관은 멘티 기관으로서 대상 멘티를 선정하고 멘토를 특별범죄예방위원 혹은 특별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에 한정되고 있다. 멘토교육, 멘토링 활동,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은 민간 기관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 예산 및 운영상의 한계로 인해 멘토링 대상은 극히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소년원의 경우 소년보호협회를 통해 현물·현금 등의 자원을 제공 받는 정도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자원

연계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즉, 보호관찰소와 소년보호기관이 서비스의 수혜자인 동시에 제공자가 되어야 하며 지역 내 자원의 중복과 배제를 조정할 수 있을 때 실제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특히, 협력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범죄예방기금 및 각 기관의 자체 예산 가운데 일부를 멘토링을 포함한 다기관 협력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현재 자체 예산 가운데 사업비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예산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재범예방 및 사회복귀를 위해 멘토링을 보호처분과 병행하여야 한다.

주요국의 경우 멘토링은 보호처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부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강력한 재범억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소년사법체계 내의 청소년은 부모, 가족, 교사 등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인 역할모델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멘토링은 재범예방과 함께 청소년의 발달적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처우’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판결 시 대상 청소년의 위험과 욕구 정도를 고려하여 멘토링을 병과한다면 재범예방과 사회복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결연 과정에서 멘토 선정 시 대상 청소년의 문제와 욕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치료, 원호 등 다른 처우와의 병과 여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6) 협력체계는 대상 청소년의 문제 및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고 협력의 주체는 일선 보호관찰소 및 소년보호기관이 되어야 한다.

다기관간의 협력 사업은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의 존재 유무 및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기관 협력의 실질적인 주체는 법무부가 아닌 일선 보호관찰소와 소년보호기관이 되어야 하며, 협력기관과 내용은 지역의 여건과 대상 청소년의 욕구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타 기관과 사안에 따라 간헐적인 일대일 연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조정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사례회의 및 공동사업과 같은 높은 수준의 연

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협약 등의 공식적 연계와 사안에 따른 지역 내 다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장려하고 이행 정도를 기관평가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자원 발굴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일선 기관 조사대상자는 타 기관과의 연계 시 개인적인 인맥과 같은 비공식적 경로보다는 공문, 업무협약(MOU)과 같은 공식적 경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매체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기존 봉사자를 통한 자원봉사자 섭외와 같은 비공식적 자원 발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사실상 대국민 홍보는 부처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나, 지역 내 자원을 모집하고 이용하는 주체는 일선 기관인 만큼 공문, 업무협약, 매체, 홈페이지, 홍보물 및 현수막, 기존 봉사자 활용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자원 확보 노력은 다기관 연계를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기관평가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며 담당자 교육과 연수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8) 소년사법체계 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요구된다.

자원보호자, (특별)범죄예방위원, 특별소년보호위원 등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공통점은 바로 멘토의 역할을 요구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보호자는 법원(1호 처분), 범죄예방위원과 특별소년보호위원은 법무부에서 별도로 위촉하고 있고 관리 역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보호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내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에서 모집, 1차 심사 및 위촉과 관리를 맡고 있고, 범죄예방위원의 경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에서 현황 파악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내에서도 일반 범죄예방위원과 특별범죄예방위원의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멘토의 상당수는 보호관찰소를 통해 특별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소년원의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는 경우 특별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되지 않고 개별적인 봉사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멘토링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에게는 부가업무로 인식되어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멘토링 활동이 처우의 일환으로 집계, 평가되 못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소년사법체계 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활동 내용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9) 멘토의 발굴보다 양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주요국의 경우 자질을 갖춘 유능한 멘토를 발굴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 내 대학생, 전문가, 일반 성인을 멘토로 양성시키는데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멘토링은 멘티의 상황과 욕구를 감안할 때 다양한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멘토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무보수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일정 정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활동에 대한 관리와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멘토 양성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멘토의 질 관리는 멘토링의 안정적인 운영과 멘토링 효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멘토링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소년사법체계 내의 자원 확보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10) 멘토링 운영지침, 멘토 활동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기관 협력적 개입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비행청소년 멘토링은 소년사법체계 하의 멘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멘토링은 공식적이어야 하며 멘티에게 구체적인 실무 지침(protocol)이 반드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기관 협력의 방법과 내용, 단계에 대한 지침과 멘토링 활동

의 실제를 다룬 활동지침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멘토링 운영지침 및 멘토 활동지침을 공유·보급할 수 있는 열린 장(場)이 필요하다.

V.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방안

1. 전담부서 및 전달체계 구축
2. 운영단계의 체계화
3. 목표 및 내용의 구체화

V.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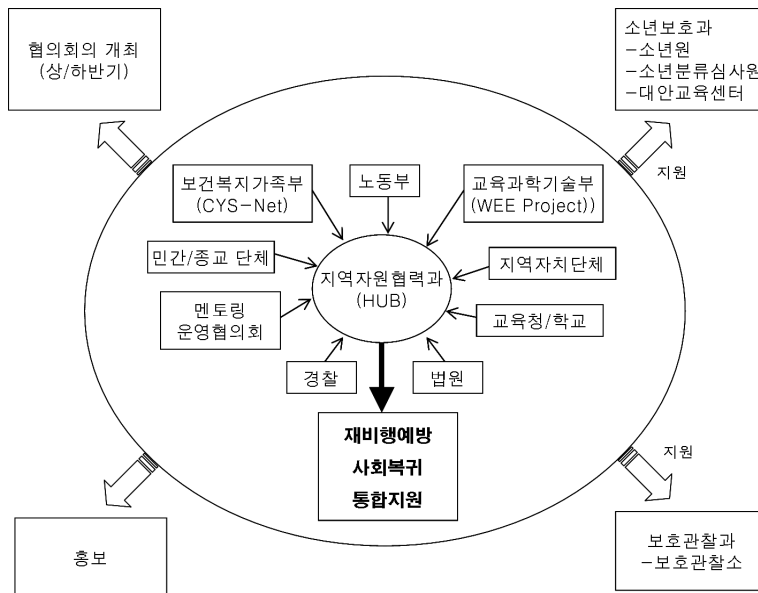
1. 전담부서 및 전달체계 구축

1) 전담부서의 역할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내에 (가칭)지역자원협력과와 같은 멘토링 전담부서의 설치가 요구된다. 전담부서는 멘토링 운영과 자원연계를 위한 허브기관으로서 범부처간의 협력 및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소년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가 대상 청소년의 문제와 욕구에 따른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제적인 처우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와 의 협약을 통해 소년사법체계 하에 있는 청소년이 포괄적, 지속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대상자의뢰 시점과 지원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며, 학생 비행청소년의 선도 및 학교 중도탈락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법원, 경찰, 지자체와의 협약과 다기관 협력 회의를 주관하고 멘토모집과 자원 발굴을 위한 홍보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자원연계 및 활용과 관련한 담당자의 교육·연수, 자원지도 개발 및 보급, 관·학·민 협의체 운영, 멘토링 운영지침 및 멘토 활동지침 개발, 협조체계와 공동사업의 운영과 평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즉, 전담기관은 멘토링의 운영과 효과에 대한 홍보 및 평가를 담당하고 범부처 차원의 참여와 다기관의 협력과 조정을 담당하여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통합지원의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전담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도식화하면 <그림 V-1>과 같다.



[그림 V-1] 전담부서의 기능과 역할

2) 전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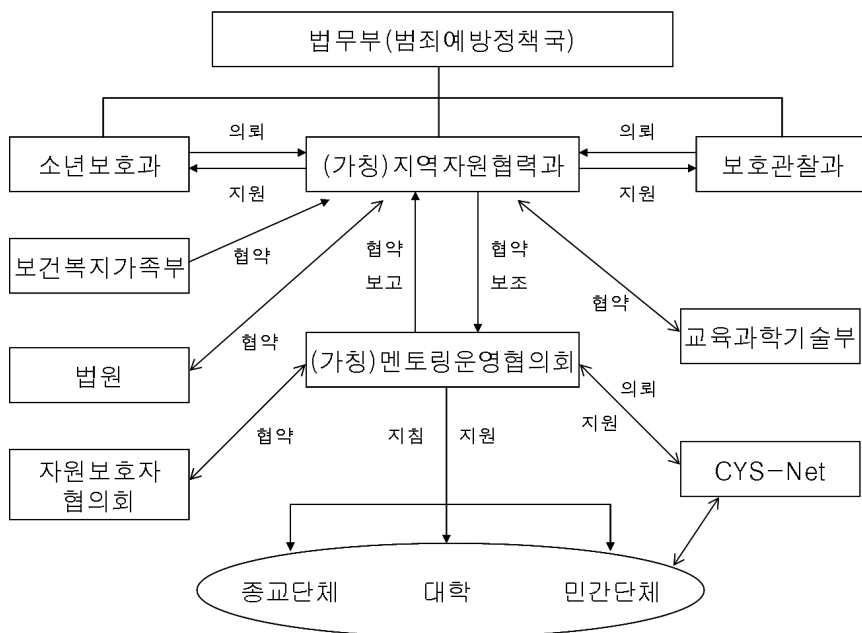
소년법 제67조2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함께 실질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내 전담부서를 두고 산하에 관·학·민 협의체인 (가칭) 멘토링 운영협의회를 두어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종교단체, 대학, 민간단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특히, 전담부서는 협의회에 예산을 포함한 실제적인 지원을, 협의회는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민간단체는 멘토링 운영기관으로서 협의회로부터 운영지침과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전국적인 멘토링 현황 파악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의 질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담부서는 갱생보호공단 뿐 아니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포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복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처분과 병행하여 다양한 처우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갱생보호공

단의 경우 재사회화 교육과 숙식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 비행 청소년에 대한 실제적인 재비행 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청의 Wee class, Wee project 등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달체계 내의 핵심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특히, 소년법원의 판사는 심리 및 처분 과정에서 청소년의 보호자를 포함한 지지체계가 취약한 경우 멘토링을 병과 처분한다면 각 단계에 따라 멘토링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즉, 1호 처분의 경우 법원에서 위촉하는 자원보호자 뿐 아니라 (가칭)멘토링운영협의회를 통해 멘토를 위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원보호자 협의회와 연계하여 기존 자원보호자에 대한 멘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4, 5호 보호관찰 처분 시 멘토링을 병과 처분한다면 일선 보호관찰소에서 대상 청소년에 대해 멘토링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멘토는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신분으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담당자는 업무의 일환으로 멘티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멘토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전달체계에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포함한다. 이는 민간 차원의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전국적인 현황 파악 및 서로간의 정보 공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운영지침과 멘토 활동지침을 포함한 공식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전달체계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V-2>와 같다.



[그림 V-2] 비행청소년 멘토링 전달체계

3) 평가체계 개선

현재 일선 기관의 멘토링 관련 업무는 성과 및 기관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경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원호, 학교복귀, 검정고시 합격생 수 등을 집계하여 성과로 파악하고 있고, 소년원의 경우 상담 및 면회 건수 등을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이라는 전산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연계 사업 및 다기관 협력적 개입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성과 및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⁹⁶⁾ 특히, 일회적이고 한시적인 낮은 수준의 연계 건수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시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일선 기관이 대

96) 단, TEAMS는 소년원에 입원한 보호소년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담임교사와의 상담내용, 면회일시 및 면화자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따라서, 일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의 여부를 포함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으나 멘토링 역시 보호소년에게 제공되는 처우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 청소년의 재범예방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지역 내 자원의 매개와 중개,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보호관찰소에서는 자율적으로 지역 내 대학생과 성인 자원봉사자를 인력으로 활용한 ‘검정고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부방 운영에는 대상자 관리 뿐 아니라 튜터링(tutoring)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관리, 예산 확보를 위한 자원 연계 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는 지역 내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검정고시 공부방 및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업이며 기관장의 재량으로 실시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관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한다면 일선 기관의 다기관 협조체계 구축 노력이 한층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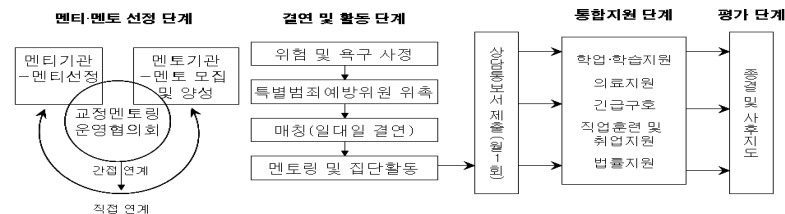
4) 예산지원과 지도감독

다기관 협력 사업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일선 보호관찰소 및 소년원은 협력 사업에서 수혜자의 위치에 있을 뿐 별도의 예산과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주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실정이다. 소년법 제67조 제2항이 단지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협조체계의 구축을 통한 실제적인 비행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상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즉, 범죄예방기금을 포함하여 일선 기관에서 다기관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일선 기관에서 이와 같은 다기관 협조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운영단계의 체계화

1) 멘토링 운영단계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운영 과정에는 일련의 단계가 요구되는 만큼 운영단계를 보다 체계화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적인 재범예방 및 사회복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 청소년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욕구 맞춤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다기관 협력적 개입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림 V-3]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운영단계

먼저, <그림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멘토, 멘티의 선정단계에서는 멘토 기관 즉, 멘토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기관과 보호관찰소 등의 멘티기관이 직접 연계를 하거나 운영협의회가 멘토 기관을 섭외하여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 결연 및 활동 단계에서는 멘티 선정 및 부가 처우를 병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험과 욕구의 면밀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멘토를 특별범죄예방위원, 혹은 특별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공식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sanction)이 요구된다. 멘토 기관에 소속된 결연관리자(coordinator)는 보호관찰관 등 일선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여 멘티의 욕구를 고려한 일대일 결연을 추진하고 멘토링과 집단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멘토는 매 활동 시 활동일지를 멘토 기관에 제출하며, 월 1회 ‘상담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호관찰소 등에 제출하여 대상 청소년에 대한 개입 현황을 점검받도록 한다. 상담통보서에는 멘티에게 요구되는 지원이 무엇인가를 기재하여

보호관찰관 등 담당자가 학업·학습, 의료, 긴급구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한다. 멘토링의 기간이 종결된 후에는 재범가능성 및 문제와 욕구의 정도에 따라 타 기관에의 의뢰 여부와 지속적인 멘토링 여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운영단계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V-3>과 같다.

2) 멘티 선정 및 관리과정

일반적으로 멘토링은 관계기반의 활동이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소년사법체계 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의 경우 멘티의 자발성보다는 당위성에 오히려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멘토링이 다른 처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행청소년 멘토링은 민간단체 주도의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멘티에 비해 멘토가 현저히 부족함으로 인해 소수의 멘티를 선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대부분 담당자의 추천과 권유로 멘티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멘티의 자발성과 부모의 동의와 함께 멘티의 위험(risk)과 욕구(need)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위험과 욕구가 높은 경우 1차적으로 멘토링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단, 고위험인 경우 멘토링과 함께 다른 부가 처우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욕구의 경우 통합적 지원을 통해 실제적인 사회복귀와 재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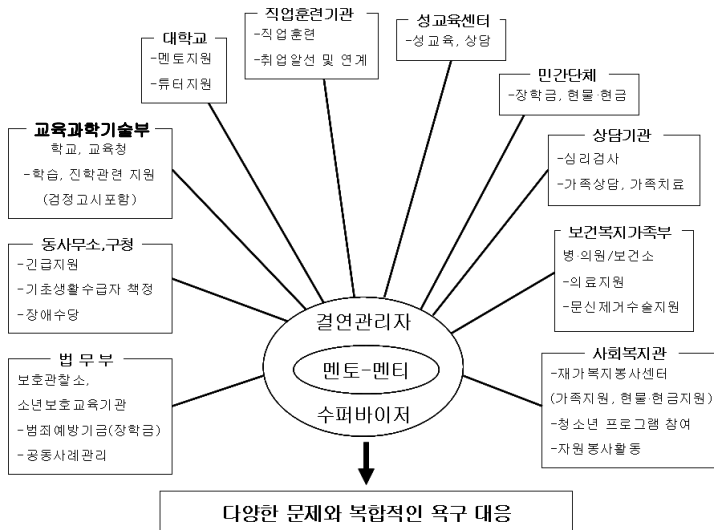
멘티의 선정과정에서는 멘토링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설명과 함께 담당자의 추천서를 받고, 멘토링 활동 에티켓을 포함한 멘티에 대한 사전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멘토링의 초기 관계형성의 상당부분이 멘토에게 책임이 있긴 하나, 멘티의 적극성과 노력은 멘토링 관계와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밀보장을 제한받는 상황에 대한 사전 고지가 요구된다. 즉, 재비행과 관련되거나 자살, 자해, 가출, 폭력 등 멘티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멘토 단독이 아닌 보호관찰관 등 담당자가 지체 없이 개입할 수 있도록 멘토링 운영 전반에 있어 관련자의 역할 구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3) 운영기관의 역할

멘토링을 운영하는 민간단체는 멘토를 모집, 교육, 관리하고 집단 활동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멘티 선정과 관리 업무와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결연관리자는 멘토링 활동일지와 상담통보서를 취합·관리하며, 활동일지에 대한 수퍼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담통보서는 해당 보호관찰소 등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즉, 운영기관은 일선 보호관찰소와 소년보호기관에서 다양한 처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담부서와 운영협의회는 이와 같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운영기관 및 결연관리자의 자원 연계와 관련한 역할을 도식화하면 <그림 V-4>와 같다.



[그림 V-4] 운영기관 결연관리자의 역할

3. 목표 및 내용의 구체화

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모형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돕는데 있으며 행동과 태도의 교화는 멘토링의 중간적 산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비행청소년은 다양한 문제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멘토링 사업은 활동 내용과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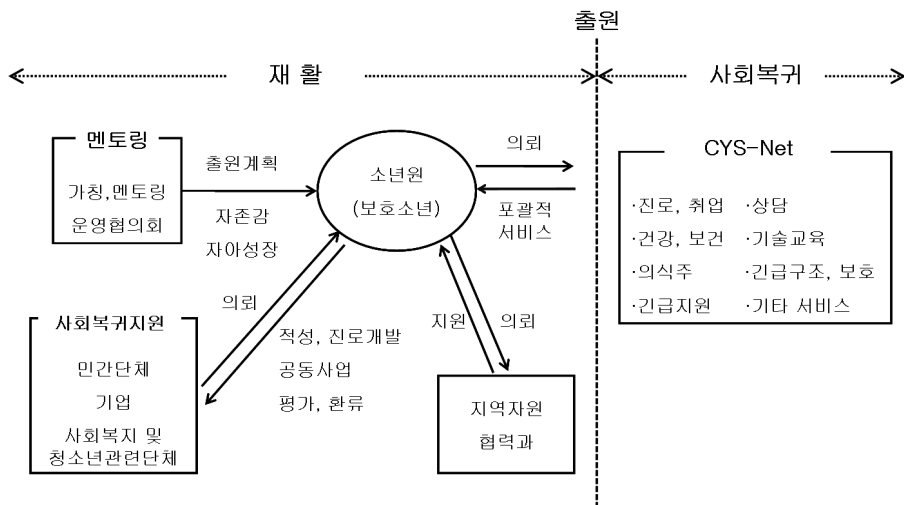
<그림 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로, 멘토링의 내용적 구성요소를 면대면 만남 뿐 아니라 스포츠, 미술, 문화, 여가활동과 부모교육, 학습지도 가운데 무엇으로 구성할지, 중간적 성과는 자존감, 정서적 안정, 진학, 검정고시 합격, 재범률,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여부 등 무엇으로 볼 수 있을지, 최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등 과정과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멘티 체계조건	구성 요소	활동내용	즉각적 성과	중간적 성과	최종적 성과
범죄소년은 지지집단이 필요하다	활동	스크리닝	멘토 선별	자존감 정서적 안정감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 원으로 성장
범죄소년은 학습의 기회가 필요하다		부모교육	사업인지		
범죄소년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계약	양육태도 지도		
범죄소년 지원체계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면대면만남	관계 책임성		
범죄소년에 대한 낙인을 감소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종결	직접적 소통		
	학습	튜터링	긍정적 관계 경험	진로 설정 미래관 형성	민·관 협력 범죄 소년 안전망 확보
	규칙	멘티교육	검정고시 공부방	사회 복귀	
		개별만남	개별학습지원		
		집단만남	관계 규칙 인지		
	조직화 (체계 화)	부처 간 협의	다양한 관계 및 활동 경험	지원망 구축	
		민·관네트워크	지원체계 일원화		
		운영지침 개발	다양한 지원체계 발굴		
	관심/참 여	멘토양성	프로그램 질관리	위기청소년 년에 대한 관심 고취	
		활동사례집	자치체계 형성		
		홍보활동	과정 및 성과 공유		
			관심과 참여유도		

[그림 V-5] 비행청소년 멘토링 모형의 예

2) 기관유형별 멘토링 운영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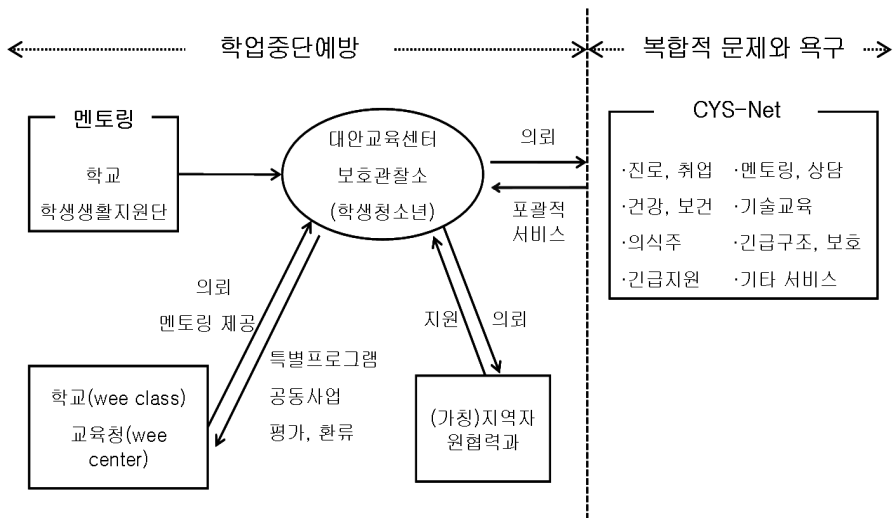
소년원, 대안교육센터 등 소년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는 운영 체계 뿐 아니라 대상 청소년의 상황에 차이가 있으므로 멘토링의 운영시 이러한 기관별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년원의 경우 <그림 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원(임시퇴원, 만기퇴원 포함) 이전과 이후의 개입에 차이를 두도록 한다. 즉,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전담기관(가칭, 지역자원협력과)과 협의회(가칭, 멘토링 운영협의회)의 지원 하에 멘토링을 실시하고 퇴원 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실질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대상 청소년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 의뢰와 협력적 개입을 실시한다. 만기퇴원 후에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와 연계하여 실제적인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와 욕구에 따라 포괄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멘토는 이 과정에서 멘티가 지역 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소년원생의 경우 90% 이상이 출원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임시퇴원자임을 감안할 때 출원과 동시에 보호관찰과 연계하여 멘토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요구된다.



[그림 V-6] 소년원의 멘토링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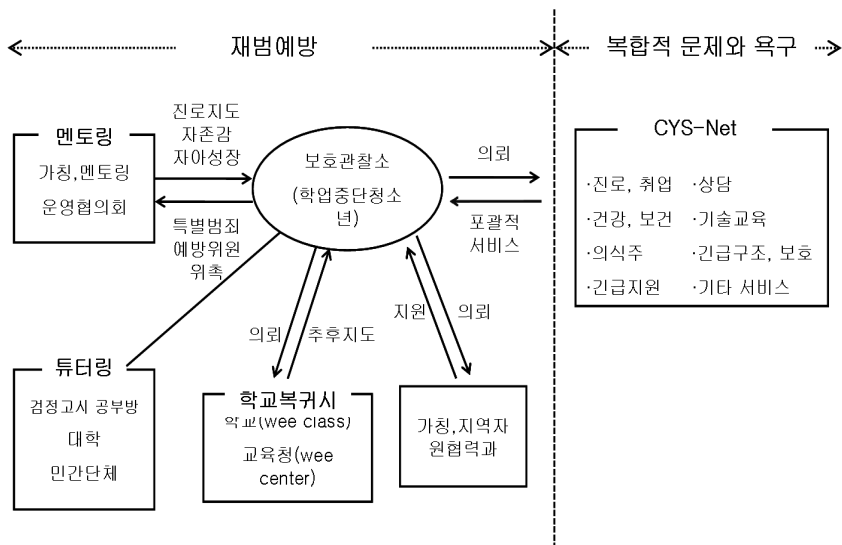
대안교육센터와 보호관찰소는 학생 청소년의 비행 선도와 재범 예방을 도모하며 일선 학교 및 교육청과의 연계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현재 청소년 비행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친한친구 교실(Wee Class)과 교육청 단위의 학생생활지원단(Wee support group)과 연계하고, 보호관찰 청소년과 교사의 일대일 멘토링 결연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V-7).

학생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은 학교를 기반(school-based)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만큼, 대안교육센터와 보호관찰소는 교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인력과 교육청 파견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는 학교 내 친한친구 교실 및 교육청의 학생생활지원단을 통해 멘토링을 운영하는 것이 학업중단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멘토링을 통해 대상 청소년의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인 재범예방 효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7] 대안교육센터, 보호관찰소의 멘토링 운영체계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즉, 대상 청소년이 학교로 복귀한 경우에는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내 대학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튜터링과 멘토링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가칭)멘토링 운영협의체의 자원을 받을 수 있으며 멘토는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특히, 멘토가 월 1회 작성·제출하는 상담통보서를 통해 복지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에 의뢰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대상자 의뢰 및 자원연계가 보호관찰관의 주요 직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V-8).



[그림 V-8] 보호관찰소(학업중단)의 멘토링 운영체계

참 고 문 헌

<국내자료>

- 경찰청(2007). 경찰청 브리핑 보도자료(2007. 2. 21).
- 경찰청(2008). 2008 경찰백서. 서울: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 교육과학기술부(2007). 보도자료(2007. 2. 26).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_____ (2005). 청소년동반자매뉴얼.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권문일·윤웅장(2007). 청소년보호관찰지원사업의 성과와 활성화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 자료집: 9-24.
- 김기현·김지연(2008).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성언(2004). 사회내 처우 연결망 구축 및 자원 동원화 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언(2009).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적 실천방안. 2008년 춘계형사정책세미나 개정소년법과 소년사법.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순규·이재경(2007).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4(5), pp. 75-98.
- 김영중(1999).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영희(2006).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성·배정현(2007). 청소년e-멘토링 프로그램에 관한연구 : 또띠 e-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변화를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2), pp. 133-158.
- 김은경·이동원(2003). 일탈 및 범죄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재범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은경·김지선·이승현·김성언·원혜옥·이호중·평화여성회갈등해결센터(2007)b.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1): 제Ⅱ부 대안의 모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2009).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2008년 춘계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개정소년법과 소년사법.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16-176.
- 김일수(2009). 한국 보호관찰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호관찰도입 20주년기념 국제세

- 미나 세계속의 보호관찰 그 성과와 과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주일(2004). 독일의 청소년보호 활동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8(1), pp.105-127.
- 김지선(2002).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에 관한 연구: 미국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연(2009). 비행청소년 관련기관의 서비스 네트워크 현황.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현선(2000).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멘터(mentor)와 멘티(mentee)에게 미친 상호적 발달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1(1), pp.147-172.
- 방진희(2004).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사회복지실천, 4(1), pp.113-142.
- 배현옥(2005). 한국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대한 멘토링 효과 분석.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_____ (2008). 2009년도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지침.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2009). 2009고른기회배움터사업운영안내. 서울: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신윤희·안수현·안주림·양고운·오숙경(2007). 청소년의 운동과 식습관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7(5), pp.703-714.
- 신현정·유형근·조용선(2007). 전문계 고등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진로 멘토링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2), pp.189-206.
- 우수명(2004). TP사회복지조사. 서울: 인간과복지.
- 유성경·이소래(1999). 비행예방을 위한 청소년 멘토링프로그램.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명숙(2008). 범죄예방정책연구. 서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이명우·신효정·김태선·송은미·김소라·이윤아(2005). 경찰 다이버전 체제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혜연·조아미·박현선(2005). 특별지원청소년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운영지침서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명희(2006). 청각장애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 연구: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무성·남석훈(2005).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선호와 참여의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2), 26-50.
- 조아미(20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지침 개발.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지침 개발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채형일(2000).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일(2008).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교사간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1), pp.47-67.
- 하성민(2001).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동주(2007). 멘토링을 활용한 비행예방집단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비행경험이 있는 중학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영선·이영호(2008). 개정소년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8호)처분을 중심으로. 대한범죄학회 발표자료(2008. 1. 27).
- 한정우(2002).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YC좋은친구만들기운동(2006). 십대와 친구하기(청소년 멘토링 가이드북). 서울: 시금치.
- 서울신문. 2009년 2월 11일자.

<영미권 자료>

- Aseltine, R. H., Jr., Dupre, M. and Lamlein, P.(2000). Mentoring as a drug prevention strategy: An Evaluation of across ages.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1(1), pp.11-20.
- Bilchik, Shay(1997). Mentoring-a proven delinquency prevention strategy. *Juvenile justice bulletin*. OJJDP.
- Blechman, E. A., Maurice, A., Buecker, B., and Helberg, C.(2000). Can mentoring or skill training reduce recidivism? Observational study with propensity analysis. *Prevention Science*, 1: pp.139-155.
- Boaz, A., and Pawson, R.(2005). The perilous road from evidence to policy: Five journeys compared. *Journal of Social Policy*, 34: pp.175-194.
- Buckingham, G.A.(2002). An evaluation of face-to fact mentoring vs. electronic

- mentoring. Doctoral Dissertation in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Butcher, D. A. and Hall, E.(1998). University students learn by helping at-risk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Work in Education*, 20(3): pp.199-202.
- Committee on the Judiciary(2007). *Mentoring and community-based solutions to delinquency and youth violence in philadelphia*. the Supt. of Docs. U. S. G.P.O.
- Cooper, E. F.(2006). *Mentoring Program fun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dedicated to disadvantaged youth: Issue and activitie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Connor, M.P., Bynoe, A.G., Redfern, N., Pokora, J., and Clarke, J.(2000). Developing senior doctors as mentors: A form of continuing professeional development: Report of an initiative to develop a network of senior doctors as mentors 1994-99. *Medical Education*, 34: pp.747-753.
- Crowe, T.(20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Burlington, MA: Butterworth-Heinemann.
- CSAP(2000). *Mentoring initiatives : An overview of youth mentoring*.(2000). CSAP.
- Daloz, L.A.(1986). *Effective Teaching and Mentorship: Realizing the transformational power of adult learning experience*, San Francisco: Jossey-Bass.
- Dondero, G. M.(1997). Mentors: Beacons of hope. *Adolescence*, 32(128): pp.881-886.
- Dubois, D. L., Holloway, B. E., Valentine, J. C., and Cooper, H.(2002). Effectiveness of mentor programs for youth: a meta analy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0(2), pp.157-99.
- Dubois, D. L., and Karcher, Michael J.(2005). *Handbook of Youth Mentoring*. SAGE.
- Frecknall, P., and Luks, A.(1992). "An evaluation of parental assessment of the Big Brothers/Big Sisters program in New York City." *Adolescence*, 27(107): pp.715-718.
- Green, R. R., and H. L. Cohen.(2005). Social work with older adults and their famil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8: 59-75.
- Gur, Merav and Miller, Lisa.(2004). Mentoring Improves Acceptance of a Community Intervention For Court-Referred Male 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PIN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1(6): pp.573-591.
- Heller, K., Swindler, R. W., and Dusenbury, L.(1986). Component social support process: comment and integration. *Journal of Counsel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66-470.

- Herrera, C., Grossman, J. B., Kauh, T. J., Feldman, A. F., and McMaken, J.(2007). Making a difference in schools: The big brothers big sisters school-based mentoring impact study. Philadelphia, PA: Public/Private Ventures.
- Hess, D.(2000). Juvenile Justice. Belmont, CA: Wadsworth.
- Hiatt, M.D.(2001). The influence of volunteer attitude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mentoring outcomes. Doctoral Dissertation in University of Virginia.
- Jolliffe, D., and Farington, D. P.(2007). A rapid evidenc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mentoring on re-offending: A summary. Cambridge University: Home Office Online Report 11/07.
- Karcher, M. L., Fitzgerald, L. F., and Rhodes, J. E.(2003). The effect of developmental mentoring on connected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School Community Journal*, 22(2), pp.35-50.
- Lee, J., and Cramond, B.(1999). The positive effects of mentoring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1): pp.172-178.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2006). Slash child prison population by two thirds — LGA Press release no. 090/06 accessed from www.lga.gov.uk 07/082006.
- Louisiana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dvisory Board(2007). *Annual Report 2007*. Louisiana: Louisiana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dvisory Board.
- Mackenzie, D. L.(2005). The importance of using scientific evidence to make decision about correctional programming. *Criminology & Public Policy* 4(2): 249-257.
- MENTOR.(2006). The National Agenda for Action: How YOU Can help Close America's Mentoring Gap.
- New York State Senate Annual Report(1998). www.senate.state.nv.us.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2007). *Support for Mentoring Initiative*(2007).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OJJDP. 2007. 2006-2007 Annual Report: How OJJDP is Servign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 _____. 2008. 2008 Annual Report: How OJJDP is Servign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 Ramani, Gruppen and Kachur(2006). Twelve tips for developing effective mentors. *Medical Teacher* 28(5): pp.404-408.

- Rhodes, J.(2004). *Stand by m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hodes, J. E., grossman, J. B., and Resch, N. R.(2000). Agents of Change: Pathways through Which Mentoring Relationships Influence Adolescents' Academic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1(6), pp.1162-1671.
- Rhodes, Jean E.(2008). Improving Youth Mentoring Interventions Through Research-based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 pp.35-42.
- Roberts, A. and Cotton, L.(1994). Note on assessing a mentor program. *Psychological Reports*, 75: pp.1369-1370.
- Roberts, H et al. 2004. Mentoring to reduce antisocial behaviour in childhood. *British Medical Journal* 328: pp512-514.
- Rogers, A. M., and Taylor, A. S.(1997). Intergenerational mentoring: A viable strategy for meeting the needs of vulnerable youth.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28(1-2): pp.125-140.
- Royse, D.(1998). Mentoring high-risk minority youth: Evaluation of the brothers project. *Adolescence*, 33(129): pp.145-158.
- Schwartz, Ira M., Peter Jones and David Schwartz.(2009). Juvenile probation in the United States. 보호관찰도입 20주년기념 국제세미나 세계속의 보호관찰 그 성과와 과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Siegel, Larry J., Wrandon, Brandon C., and Senna, Joseph J.(2003).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 Washington D.C.: Thomson Wadsworth.
- Sloan, R.E.G. and McMillan, J.(2003). Developing mentoring skills for general practitioners using a simulated docotr. *Medical Education*, 37: pp.1044-1045.
- Slicker, E. K., and Palmer, D. J.(1993). Mentoring at-risk high school students: Evaluation of a school-based program. *The School Counselor*, 40: pp.327-334.
- Tarling et al(2001) Dalston Youth Project Part II (11-14), An Evaluation, Home Office Research Study 232: London, Home.
- Thompson, W. E., and Bynum, J. E.(2009). *Juvenile Delinquency: A Sociological Approach*. Boston: Allyn & Bacon.
- Tierney, P. J. and Branch, Y. A.(1992). *College students as mentors for at-risk youth-a study of six campus partners in learning program*. Public/Private Ventures.
- Tolan, P., Henry, D., Shoeny, M., & Bass, A.(2005). What we know about what mentoring can and might do for youth crime. Presented at The Fifth Annual Jerry Lee Crime Prevention Symposium: Systematic Evidence on What Works in Crime

- and Justice: Raising Questions and Presenting Findings, May 3, 2005.
- Wasserman, S. and Katherine Faust(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and Application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son, John J.(2000). *Juvenile mentoring program: a progress review*,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Youth Justice Board (undated) Mentoring (Key Elements of Effective Practice) London, Youth Justice Board 24 Issue 170.
- Youth Justice Board(2003). Evaluation of Youth Inclusion Programme.(2003). Youth Justice Board. Zhang, S. X. and Zhang, L.(2005).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Los Angeles County repeat offender prevention program. Its implecation and evaluation. *Criminology & Public* 4(2): pp.205-236.

<독일자료>

- Bundeskriminalamt (Ed.). 2004. *Kriminalprävention in Deutschland. Länder-Bund-Projektsammlung*. München: Luchterhand.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BMJ). 2009. *Das Jugendkriminalrecht vor neuen Herausforderungen?* Jenaer Symposium 9.-11. September 2008. Mönchengladbach: Forum Verlag.
- Bundesregierung (Ed.). 2008. *Lebenslagen in Deutschland. Der 3. Armuts- und Reichtumsbericht der Bundesregierung*.
- Kieselbach, Th., Beelmann, G. & Traiser, U. 2001. *Jugendarbeitslosigkeit und das Risiko sozialer Exklusion*. Leverkusen: Leske + Budrich.
- Kronauer, M., Vogel, B. & Gerlach, F. 1993. *Im Schatten der Arbeitsgesellschaft: Arbeitslose und die Dynamik sozialer Ausgrenzung*. Frankfurt/M.: Campus.
- Konsortium Bildungsberichterstattung im Auftrag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Forschung (Eds.) 2006. *Bildung in Deutschland. Ein indikatorengestützter Bericht mit einer Analyse zu Bildung und Migration*. Bielefeld.
- Landeskommission Berlin gegen Gewalt (Ed.) 2007. *Gewalt von Jungen, männlichen Jugendlichen und jungen Männern mit Migrationshintergrund in Berlin. Bericht und Empfehlungen einer von der Landeskommission Berlin gegen Gewalt*

eingesetzten Arbeitsgruppe. Berliner Forum Gewaltprävention Nr. 28, 8. Jg..

Robert Koch Institut (Ed.) 2008. Kinder- und Jugendgesundheitssurvey (KiGGS) 2003-2006: Kinder und Jugendliche mit Migrationshintergrund in Deutschland. Berlin.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http://ojjdp.ncjrs.org/funding/funding.html>(2009.7)

Juvenile Mentoring Programs(2000).
http://www.ncjrs.org/html/ojjdp/summary_comp_resp/chap3.html(2009.7)

National Mentoring Partnership. <http://www.mentoring.org>(2009.7)

National Mentoring Month.
http://www.mentoring.org/mentors/national_mentoring_month/(2009.7)

National Mentoring Center. <http://www.nwrel.org/mentoring>(2009.7)

Mentoring USA. <http://www.mentoringusa.org/>(2009.7)

Project SOAR: Mentoring At-Risk Youth and Families(2003).
http://cals.arizona.edu/impacts/2003/5_6.html(2009.7)

Aftercare for Indiana through Mentoring. <http://aim.spea.iupui.edu>(2009.7)

Amachi Mentoring Program. <http://www.proclamation.org/amachi.html>(2009.7)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2002). Preliminary Findings for the Juvenile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s Mentoring Program.
http://www.wsipp.wa.gov/rptfiles/JRA_mentor.pdf(2009.7)

Mentoring Children of Prisoners.
http://www.acf.hhs.gov/programs/fbci/progs/fbci_mcp.html(2009.7)

Volunteers in Prevention, Probation and Prisons, Inc.
<http://vipmentoring.org/default1.htm>(2009.7)

The Youth Justice Board. <http://www.yjb.gov.uk/en-gb/>(2009.7)

Ambulante Intensive Begleitung(이동하는 집중 동반). www.soziale-praxis.de.(2009.7)

Wir kümmern uns selbst(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본다).
www.wir-kuemmern-uns-selbst.de(2009.7)

Arbeitsstelle Kinder- und Jugendkriminalitätsprävention(아동·청소년범죄예방작업장).
<http://www.dji.de/cgi-bin/projekte/output.php?projekt=479>(2009.7)

부 록

1. 비행청소년 관련기관 서비스
네트워크 현황 조사
2. 면담조사(전문가) 질문내용
3. 면담조사(멘티,멘토) 질문내용
4.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효과 측정도구
5. 전문가 의견 요약

비행청소년 관련기관 서비스 네트워크 현황 조사

ID

--	--	--	--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비행 청소년 선도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전국소년보호기관, 보호관찰소의 자원 연계 및 협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응답은 "비행청소년 대상 멘토링 운영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방안" 도출을 위하여 의미 있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33조'에 의해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어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설문 응답자는 청소년을 담당·관리하시는 실무자입니다.

※ 작성하신 설문지는 이메일(okness@nypi.re.kr)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소년과(이영호 사무관) : 02-2100-3351

보호관찰과(송중일 사무관) : 02-2100-348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정책연구실(김지연 박사) : 02-2188-8868



성 별	___1. 남자 ___2. 여자	소년보호 업무 경력	()년 ()개월
기관유형	___1. 소년원 ___2. 비행예방센터 ___3. 보호관찰소		
전 공	1. 사회복지학 2. 법학 3. 심리학 4. 행정학 5. 사회학 6. 기타()		
직 위	()		

1. 귀하의 기관에서 한 달 평균 상담(관리)하는 사례는 얼마나 되십니까?

총 ()건 정도 / 담당자 1인당 ()건 정도

2. 귀하의 기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얼마나 됩니까? (없으면 각각 “0”으로 표기)

특별범죄예방위원()명 + 범죄예방위원()명 + 멘토링 ()명 + 기타()
= 총()명

3. 귀하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떤 경로로 확보하십니까?

___①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___②신문, 방송매체 ___③협조 공문 발송
___④업무협약(MOU) ___⑤개인적 인맥(정보) ___⑥유관기관의 소개
___⑦기존 자원봉사자를 통해 ___⑧해당없음 ___⑨기타()

4. 귀하의 기관에서 대상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아래에서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범죄예방위원 등 자원봉사자 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

___①숙소알선 ___②취업알선 ___③직업훈련
___④복학지도 ___⑤장학금 지원 ___⑥경제적 지원
___⑦문신제거 ___⑧집단상담 ___⑨심리검사
___⑩교육(악물, 성폭력 등) ___⑪타 기관 의뢰 ___⑫진로, 학업지도
___⑬공부방(검정고시 준비)운영 ___⑭멘토링 프로그램 ___⑮의료적 지원
※ 기타()

4-1. 위에서 제시한 서비스 가운데 귀하가 담당하고 계신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각 순위에 위의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2. 위에서 제시한 서비스 가운데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하여 타 기관과의 연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각 순위에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5. 귀하의 조직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조직에서 나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담당하는 사례의 관리계획과 개입이 자유롭다					
3. 나의 담당업무에 대해서 세세한 간섭이 없다					
4. 업무의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5.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스스로 정한다					

6. 귀하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교육(혹은 연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____①있다 (6-1번으로 가세요)

____②없다 (7번으로 가세요)

6-1. 몇 회 참여하였습니까? 총 _____회 / 총 _____시간 정도

7. 귀하의 기관에서는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협력(연계)과 관련한 교육(혹은 연수)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____①있다 (1년에 _____ 번 정도)

____②없다

8. 귀하가 담당하고 계신 청소년의 선도 및 사회복귀를 위해 타 기관의 자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2-----	3-----	4-----	5-----

9. 귀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타 기관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____①있다 (9-1번으로 가세요)

____②없다 (10번으로 가세요)

9-1. 타 기관과의 협력 관계에서의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해당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10.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과 어느 정도의 연계를 맺고 있습니까?
(해당란에 모두 V 표시)

기관유형	연락처나 목록이 있음	정보 및 의견교환	대상자 의뢰	업무협의 (사례회의 포함)	공동목표로 사업 추진	해당 사항 없음
경찰						
검찰						
법원						
타 소년보호기관 보호관찰소						
학교/교육청						
동사무소/구청						
병,의원						
지역사회복지관						
직업훈련기관						
상담기관						
청소년관련단체						
민간단체(종교단체 포함)						
자립지원기관(쉼터 포함)						
대학교						
기타()						

11. 귀하가 담당하고 계신 사례 가운데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례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_____ % / 대략 _____ 명 (없으면 “0”으로 표기)

12. 다음의 기관들과 연계 여부를 표시하고, ‘연계가 안 되는 편’에 표기한 경우 보기에서 이유를 골라 기입하십시오.

기관유형	잘 되는 편	안 되는 편	안 되는 이유	= 보기
경찰				①업무협약 안됨
검찰				②타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법원				③개인적 친분 부족
타 소년보호기관 및 보호관찰소				④관련기관의 협조 부족
학교/교육청				⑤업무과다로 시간 부족 (인력부족)
동사무소/구청				⑥의무 사항이 아님
병,의원				⑦지리적 거리 때문
지역사회복지관				⑧기관 부재
직업훈련기관				⑨관련이 없음
상담기관				⑩예산지원이 안되어서
청소년관련단체				⑪기타()
민간단체(종교단체 포함)				
자립지원기관(쉼터 포함)				
대학교				
기타()				

13. 타 기관 및 조직과의 연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당란에 V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범죄소년의 문제는 복합적이므로 여러 기관과 연계가 필요하다					
2. 타 기관과의 연계는 범죄소년 선도 효과를 향상시킨다					
3. 타 기관과의 연계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4.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5. 연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6.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7. 연계를 통해 재범률을 감소시켰다					
8. 연계를 통해 업무 전반에 도움을 받았다					

※ 연계형태에서 화살표는 인적·물적·정보자원의 흐름을 의미함

기관 유형	기관명	의뢰 정도	의뢰 받은 횟수	연계 형태	연계 지속성	친분맥락	연계정도	연계서비스
응답 내용	연계가 잘 되는 순, 최대 3개까지	의뢰 한 횟수	의뢰 받은 횟수	①A↔B ②A→B ③A←B	①상시적 ②사안별	①업무협약(MOU) ②공식적 절차(공문) ③담당자 개인의 노력 ④연계기관에서 요청 ⑤기타	①매우간밀 ②간밀 ③보통 ④소원 (疏遠) ⑤매우소원	①정보교환 ②대상자 의뢰 ③업무협의, 조정 ④공동목표로 사업 ⑤기타
경찰								
검찰								
법원								
타 소년원 및 보호 관찰소								
교육청								
학교								
동사무 소, 구청								
병, 의원								
사회 복지관								
직업훈 련기관								

기관 유형	기관명	의뢰 정도	의뢰 받은 횟수	연계 형태	연계 지속성	친분맥락	연계정도	연계서비스
상담기 관								
청소년 관련단 체								
민간단 체, 종교단 체								
자립지 원기관 쉼터								
대학교								
기타 연계기 관								

*** 빠진 문항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면담조사(전문가) 질문내용

※ 전문가 면접은 아래 질문을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각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정리해 오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이해

- 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장점과 단점은?
- 2) 비행청소년 멘토링이 일반 멘토링과 차이를 두어야 할 점은?
- 3) 비행청소년 멘토링에서 특히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2. 비행청소년 멘토링 활동

- 1) 멘토의 모집 방법과 자격기준은?
- 2) 멘티의 선정기준은?
- 3) 멘토의 자질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 4) 권장하는 멘토링 활동거리는?
- 5) 멘토링 활동빈도와 기간은?

3. 관리와 지원

- 1) 멘토 양성 및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 2) 재정 지원규모와 전담직원의 역할과 직무(멘토 교육 및 관리)는?

4. 전달체계

- 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는?
- 2) 지역사회중심의 민관 협력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 3) 멘토링이 소년보호기관 및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고유직무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은?

부록 3. 면담조사(멘티,멘토) 질문내용

1. 동기

- 1) 처음 멘토링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2)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멘토(멘토: 멘티)와 자신에게 기대했던 점이 있다면?
- 3) 멘토링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인가요?

2. 관계

- 1) 현재 멘토(멘티)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친밀하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친하지 않다(0점), 매우 친하다(10점)을 기준으로 할 때)
- 2) 위와 같은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멘토와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 4) 멘토링이 성인이나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멘토: 비행청소년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3. 활동전반

- 1) 멘토의 자격기준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2) 멘티는 어떤 청소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 3) 적절한 멘토링 활동기간과 빈도는?
- 4) 결연관리자가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5) 멘토링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4. 성과

- 1) 멘토링이 비행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2) 멘토링이 진로를 정하거나 앞으로의 장래계획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3) 멘토링 관계가 전반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5. 제언

- 1) 다른 친구에게 멘토링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 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개선했으면 하고 바라는 점은?

부록 4.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효과 측정도구

멘토링 활동 평가 (멘티사전)

성 별	____ ① 남 ____ ② 여	나 이	만 세
-----	-------------------	-----	-----

1.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1	2	3	4	5
7)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사람들이 나를 몹시 비난하게 될 것이다	1	2	3	4	5
8)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	1	2	3	4	5

2.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뭔가를 완수했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	1	2	4	5
2) 내가 한 일에 대해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았다	1	2	4	5
3)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아졌다	1	2	4	5
4) 공부나 일을 하고 칭찬을 받았다	1	2	4	5
5) 새로운 것을 배워 기분이 좋아졌다	1	2	4	5
6) 친구를 잘 설득하여 기분이 좋았다	1	2	4	5
7) 친구들간의 문제를 잘 해결하여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다	1	2	4	5
8) 어떤 일을 하고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	1	2	4	5

3.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	1	2	4	5
2)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다	1	2	4	5
3) 나는 나의 재능을 믿는다	1	2	4	5
4)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4	5
5)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1	2	4	5
6) 나는 무엇이든 쉽게 배우는 편이다	1	2	4	5
7)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해 보고 싶다	1	2	4	5

4. 장래 희망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____ ① 없다.

____ ② 있다(구체적으로: _____)

5. 아래 행동들을 읽고 얼마나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매우 드물 게	드물 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우리 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우리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나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내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를 미리 생각한다	1	2	3	4	5
6)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원치 않는 결과도 살펴본다	1	2	3	4	5
7) 나는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한다	1	2	3	4	5
8)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1	2	3	4	5
9) 나는 행동의 결과가 현재보다는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1	2	3	4	5
10) 나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 계획을 수정한다	1	2	3	4	5

6. 멘토 이름 : _____

멘토링 활동 평가 (멘티사후)

성 별	____① 남 ____② 여	나 이	만 세
------------	-----------------	------------	-----------

1.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1	2	3	4	5
7)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사람들이 나를 몹시 비난하게 될 것이다	1	2	3	4	5
8)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	1	2	3	4	5

2.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원가를 완수했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	1	2	4	5
2) 내가 한 일에 대해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았다	1	2	4	5
3) 열심히 원가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아졌다	1	2	4	5
4) 공부나 일을 하고 칭찬을 받았다	1	2	4	5
5) 새로운 것을 배워 기분이 좋아졌다	1	2	4	5
6) 친구를 잘 설득하여 기분이 좋았다	1	2	4	5
7) 친구들간의 문제를 잘 해결하여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다	1	2	4	5
8) 어떤 일을 하고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	1	2	4	5

3.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	1	2	4	5
2)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다	1	2	4	5
3) 나는 나의 재능을 믿는다	1	2	4	5
4)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4	5
5)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1	2	4	5
6) 나는 무엇이든 쉽게 배우는 편이다	1	2	4	5
7)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해 보고 싶다	1	2	4	5

4. 장래 희망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____ ① 없다.

____ ② 있다(구체적으로: _____)

5. 아래 행동들을 읽고 얼마나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매우 드물 게	드물 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우리 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우리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나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내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를 미리 생각한다	1	2	3	4	5
6)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원치 않는 결과도 살펴본다	1	2	3	4	5
7) 나는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한다	1	2	3	4	5
8)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1	2	3	4	5
9) 나는 행동의 결과가 현재보다는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1	2	3	4	5
10) 나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 계획을 수정한다	1	2	3	4	5

6. 멘토링을 하면서 **경험한 활동에 모두 ○표**하시고, 가장 도움이 된 활동 순으로 순위를 써 주십시오.

	순위 (1, 2, 3, 4)
____ 1) 상담	
____ 2) 학습지도	
____ 3) 체험활동	
____ 4) 기타 (내용: _____)	

7.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하고, 밑줄한 칸에 이유를 써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멘토링 활동 경험에 만족한다	1	2	3	4	5
2) 멘토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멘토의 어떤 점에 가장 만족스러웠습니까? _____	1	2	3	4	5
3) 멘토링이 도움이 되었다 어떤 점(혹은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_____	1	2	3	4	5
4) 멘토링 활동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 (참여, 혹은 불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1	2	3	4	5

8. 멘토링 활동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에 ○표해 주십시오. (1개만 응답)

- ___ 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 ___ ②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 ___ ③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 ___ ④ 인간관계 자체에 만족해서
- ___ ⑤ 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아서
- ___ ⑥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 ___ ⑦ 기타 _____
- ___ ⑧ 만족하지 않는다.

9. 멘토링 활동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에 ○표해 주십시오. (1개만 응답)

- ___ ① 도움이 되지 않아서
- ___ ② 재미가 없어서
- ___ ③ 귀찮아서
- ___ ④ 자주 만나지 못해서
- ___ ⑤ 기타 _____
- ___ ⑥ 만족한다.

10. 멘토링 활동을 마치고 나서 느낀 점이 있다면(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멘토링 활동 평가 (멘토사전)

성 별	___① 남 ___② 여	나 이	만 세
------------	---------------	------------	-----------

1.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체로 나 자신의 능력에 만족한다.	1	2	3	4
2)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	1	2	3	4
3) 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2	3	4
4)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	1	2	3	4
6)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	1	2	3	4

2.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뭔가를 완수했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	1	2	4	5
2) 내가 한 일에 대해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았다	1	2	4	5
3)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아졌다	1	2	4	5
4) 공부나 일을 하고 칭찬을 받았다	1	2	4	5
5) 새로운 것을 배워 기분이 좋아졌다	1	2	4	5
6) 친구를 잘 설득하여 기분이 좋았다	1	2	4	5
7) 친구들간의 문제를 잘 해결하여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다	1	2	4	5
8) 어떤 일을 하고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	1	2	4	5

3.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	1	2	4	5
2)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다	1	2	4	5
3) 나는 나의 재능을 믿는다	1	2	4	5
4)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1	2	4	5
6) 나는 무엇이든 쉽게 배우는 편이다	1	2	4	5
7)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해 보고 싶다	1	2	4	5

4. 이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에 참여해보셨습니까?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____ ① 있다. (총 _____개월, _____회 정도 만남) ____ ② 없다.

5. 멘토링에 참여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 ____ ① 자원봉사를 통한 자아실현
 ____ ② 학점 취득
 ____ ③ 새로운 관계형성
 ____ ④ 지인의 권유
 ____ ⑤ 종교적 이유
 ____ ⑥ 사회참여의 기회
 ____ ⑦ 실천경험(경력)을 얻고자
 ____ ⑧ 기타 _____

6. 귀하의 학력은 어떠합니까?

- ____ ① 고교종퇴 이하
 ____ ② 고졸
 ____ ③ 대학재학 (전공: _____)
 ____ ④ 대졸이상 (대학전공: _____ 대학원 전공(해당자): _____)

*** 감사합니다 ***

멘토링 활동 평가 (멘토사후)

성 별	____① 남 ____② 여	나 이	만 세
------------	-----------------	------------	----------------

1.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체로 나 자신의 능력에 만족한다.	1	2	3	4
2)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	1	2	3	4
3) 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2	3	4
4)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	1	2	3	4
6)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	1	2	3	4

2.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원가를 완수했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	1	2	4	5
2) 내가 한 일에 대해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았다	1	2	4	5
3) 열심히 원가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아졌다	1	2	4	5
4) 공부나 일을 하고 칭찬을 받았다	1	2	4	5
5) 새로운 것을 배워 기분이 좋아졌다	1	2	4	5
6) 친구를 잘 설득하여 기분이 좋았다	1	2	4	5
7) 친구들간의 문제를 잘 해결하여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다	1	2	4	5
8) 어떤 일을 하고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	1	2	4	5

3.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	1	2	4	5
2)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다	1	2	4	5
3) 나는 나의 재능을 믿는다	1	2	4	5
4)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1	2	4	5
6) 나는 무엇이든 쉽게 배우는 편이다	1	2	4	5
7)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해 보고 싶다	1	2	4	5

4.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하고 밑줄한 칸에 이유를 써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멘토링 활동 경험에 만족한다	1	2	3	4	5
2) 멘토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멘토의 어떤 점에 가장 만족스러웠습니까? _____ _____	1	2	3	4	5
3) 멘토링이 도움이 되었다 어떤 점(혹은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_____	1	2	3	4	5
4) 멘토링 활동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 (참여, 혹은 불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_____	1	2	3	4	5

5. 멘토링 활동에 만족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만 1, 2로 기재)

- ___ ① 자아실현
- ___ ② 학점취득
- ___ ③ 새로운 관계형성
- ___ ④ 종교적 신념과 맞아서
- ___ ⑤ 실천경험(경력)을 쌓을 수 있어서
- ___ ⑥ 자원봉사 자체에 자부심을 느껴서
- ___ ⑦ 멘티를 만나는 과정에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
- ___ ⑧ 멘티의 성장에 도움을 주어서
- ___ ⑨ 다양한 네트워크를 알게 되어서
- ___ ⑩ 기타 _____
- ___ ⑪ 만족하지 않는다.

6. 불만족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만 응답, 숫자로(예, 1, 2) 기재)

- ___ ① 멘티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의욕이 떨어졌다.
- ___ ② 수퍼비전 모임이나 활동일지 작성이 부담스러웠다.
- ___ ③ 멘토링 활동시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 ___ ④ 개인적인 일로 매너리즘에 빠진다.
- ___ ⑤ 멘토링 비전에 대한 확신이 줄었다.
- ___ ⑥ 기타 _____
- ___ ⑦ 만족한다.

7. 현재 멘티의 상황은 어떠한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개입단계: 집중 개입이 필요한 단계
- ___ ② 안정화 단계: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변화를 보이는 단계
- ___ ③ 자립 단계: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자립 가능성이 엿보이는 단계

8. 위와 같이 응답하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9. 현재 멘티에게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중
복응답가능)

- ___ ① 일자리 등 경제적 정보 및 지원
- ___ ② 개인 상담 등 심리, 정서적 지원
- ___ ③ 거주지 등 생활 주거 환경 지원
- ___ ④ 학업 등 교육 관련 정보 및 연계 지원
- ___ ⑤ 의료적 지원
- ___ ⑥ 법률적 지원
- ___ ⑦ 기타 _____

*** 감사합니다 ***

부록 5. 전문가 의견 요약

법무부 : 황○○, 노○○ 사무관 / 보호관찰소 : 조○○, 장○○, 김○○
복지부 : 이○○ 사무관 / 학계 : 조○○ 교수
민간기관(장, 실무자) : 이○○, 원○○, 박○○, 안○○ 총 11명 응답

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이해

1)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장점

황○○

- 수용시설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외부인과의 접촉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생활교정의 효과가 있음(시설수용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출구)
-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희망하기 때문에 생활 우수 학생에게 멘토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유지 시키는 교정의 효과가 있음
- 교사가 아닌 대학생이 주도하는 멘티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적인 프로그램(초상화 그려주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에 멘티가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호응함
- 학습전문가는 아니지만 개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1:1학습 지도가 기초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됨

노○○

- 청소년 비행(범죄)의 원인으로 가족기능의 와해 또는 부모역할의 부재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멘토링은 이러한 결핍을 가장 순기능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

- 비행청소년 멘토링은 보호소년이라는 특수한 대상을 포함하는 멘토링으로서 그에 적합한 멘토를 양성하여 교육, 관리하고 공공-민간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전문성 개발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

음

- 보호소년의 성인범죄로의 전이현상을 예방할 수 있음
-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지원하여 불우한 환경과 심리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능을 가짐

이○○

- 멘토, 결연자, 교정담당자 등 한명의 멘티에게 여러 관계자가 멘티 한명에게 집중하여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멘티에게 위기적 상황(가정, 학업,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빠르게 개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

조○○

- 비행청소년 멘토링은 멘티들의 재비행을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됨

김○○

- 사람(가족)을 통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애정결핍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인한 긍정적 교육효과를 우선하여 기대할 수 있음
- 소속 기관 관리자로부터 멘티에 대한 인성관련 자료 및 사전 정보공유를 통한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멘토, 멘티 상호간의 관계형성을 촉진할 수 있음
- 멘토링 활동을 통해 멘티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과 소속감으로 자존감을 향상함

안○○

-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가능(범죄예방효과 기대)
- 청소년의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도울 수 있다(취업, 진로, 검정고시 등)
- 멘토를 통해서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성과 관계를 배우는 계기

2)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단점

황○○

- 비행청소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멘토 확보에 어려움

노○○

·비행청소년 멘토링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고 개념정립이 공고하지 않아(효과성에 대한 결과와 모델개발 부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이 부족한 실태임

이○○

·비행청소년 멘토링은 회복적 선도가 필요한 멘티에게 효과적. 교정멘토링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이고 단기적인 것임

원○○

·사명감과 기술을 함양한 멘토를 양성 및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

이○○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특성상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중적이지 못하고 프로그램의 노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제한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멘티가 적어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조○○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진정한 목적은 재비행방지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멘티의 개인문제 뿐만 아니라 멘티의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 주위환경에 대한 문제해결도 필요함. 하지만 멘토의 역량으로는 주위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함

안○○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움. 법무부 보호국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함

박○○

·지속성이 약한 멘토

3)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차이점

황○○

·멘티인 비행청소년을 교육·관리하는 공무원과의 유기적 협조관계 필요

노○○

- 대상자의 비자발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정동기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이 초반부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음
- 범죄(비행) 청소년의 특성(우울에 의한 비행, ADHD, 행동장애, 충동조절 문제) 등을 고려한 멘토링이 필요

이○○

-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간의 상호작용을 해야하는데, 비행청소년 멘토링은 다소 강제적임. 멘토링은 예방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함

원○○

- 보호소년의 선도와 지원에 대한 사명감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하여 지속적인 전문적 훈련이 요구됨

이○○

- 멘티가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연 맺은 멘토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며 결연에 있어 멘티에게 도움이 되는 멘토의 발굴과 멘티의 욕구 파악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함

조○○

- 멘티의 반사회성
-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가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많음

장○○

- 개인의 특성에 더 신경을 써야 됨

김○○

- 멘티가 멘토를 속이거나 약속을 어길 때 질책 지양(원인을 파악)

안○○

-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 청소년과 더불어 그 가족까지 파악하고 가족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고민
- 청소년들의 주변을 아는 것, 만나는 친구들, 청소년이 주로 하는 일 등

4)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초점사항

황○○

- 자질있는 멘토의 확보
- 자발적인 멘티의 참가, 멘토의 지속적인 수퍼비전, 멘토사업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

노○○

- 멘티 요인: 멘토링에 효과가 있을 만한 대상자로 선별
- 멘토링 내용 요인: 멘티의 특성과 위험요인(보호요인)등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 필요
- 멘토 요인: 멘티의 역기능적인 부모역할과 가족역동을 일정부분 대신하여 비행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선별
- 멘토와 멘티의 매칭 문제 고려(성별, 나이, 전문성 등)

이사무관

- 재범방지과 범죄예방에 초점을 둠
- 라포형성, 자존감, 자신감, 재범방지, 범죄예방,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

- 개인적으로 앞에 거론한 다른 멘토링과의 차이점으로 멘티가 결연의 의지가 없기에 멘토링 결연을 위한 멘티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멘토, 멘티 서로가 1년간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멘토와 멘티의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연식 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를 결연자가 확실히 알고 난 후에 결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조○○

- 멘티의 대부분은 작게는 가정에서 소외당하거나 크게는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경우가 많음. 그래서 이들을 사회에 참여할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멘티의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하면서 장래에 대한 꿈을 발견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지해 주었을 때 가장 성공적인 멘티의 교정을 볼 수 있었음. 따라서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통해 장래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초점

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함

장○○

·멘티의 가정환경에 초점

김○○

·멘티가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안○○

·인내를 가진 관심과 사랑

·멘티의 구체적 필요를 알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 지속적인 관계 가능

박○○

·교육을 통한 멘토의 자질 향상, 전문성 갖추기

2. 비행청소년 멘토링 활동

1) 멘토의 자격기준

황○○

·모집방법: 멘토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1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자를 공개모집

·자격기준: 상담관련과목 이수자, 대학원생 등

노○○

·교정영역에 대한 관심과 열정

·최소한의 상담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

·멘티의 역기능적인 부모역할과 가족역동을 일정부분 멘토링으로 보완하여, 비행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애착형성이 안정적이고 친밀감이 있는 자

이○○

·비행청소년 멘토링은 교도관 중에서 멘토링 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자도 적합하다고 생각함. 교도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일정한 소양을 갖춘 사람을 상대로 멘토링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멘토는 멀티 멘토가 되어야 하며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원○○

- 1단계: 보호소년의 지원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고 멘토링 및 상담에 경향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모집함
- 2단계: 정규 멘토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결연(인턴과정-6개월)
- 3단계: 결연하여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 가운데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를 정멘토로 배치

이○○

- 우리기관의 경우 모집방법은 천주교 서울대 교구 후보 공지와 홈페이지 홍보, 소년 교정시설에서 봉사하는 기관 봉사자,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천주교 신자
- 자격기준은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멘토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대학교 4학년 이상의 나이(25세 이상)

조○○

- 모집방법: 교정관련 단체에서 희망하는 자
- 자격기준: 멘토 자격 관련 교육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그것을 이수한 자

장○○

- 엄격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이행완료한 사람을 선별

김○○

- 교정학, 교육학 및 사회복지 교육 이수자 자격 부여
- 멘토 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 후 자격증 부여하고 멘토 활동. 향후 멘토 급수를 부여

안○○

-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권유(상담이나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 우선)
- 각 기관의 자원들을 이용하고 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박○○

- 불자이며 불심이 중요

·멘티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멘토로 인한 공감대 형성

2) 멘티의 자격기준

황○○

·멘토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 초범우선

노○○

·가족기능이 와해되었거나 부모역할이 역기능적이고, 이러한 가족요인이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는 자

·초범, 범죄유형 등 천편일률적인 기준보다 심리사회학적 평가를 통하여 멘토링에 부적절한 자는 배제하고 반대로 적절한 자를 적극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예를 들어, 대인관계 기능이 부족한 자나 애착형성이 불안정적인 자에게 효과적이므로 적극 선정하고, 타인을 조작(manipulation)하는 성향이 있거나 변화 동기가 극도로 약한 대상은 멘토로 적당하지 않음

이○○

·아동청소년대상의 성범죄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고 범죄의 유형과 경력을 구분한 순수집단형 구성

·멘티는 위기 및 비행소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실시 되어야 함

원○○

·멘티 관리기관에서 통일된 규정을 가지고 선정

·고려사항: 약10-12개월 정도의 보호관찰 대상, 가정 및 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하여 범죄한 보호소년, 학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보호소년, 멘토와의 거주지 거리가 가까운 경우를 우선선발

이○○

·서울보호관찰소: 1.3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가정환경, 학업 등으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14세~20세)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1년 이상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청소년 중 면회

를 오지 않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조○○

·어느 정도는 자발성과 자립의지를 가지고 있고 성실함을 보이는 멘티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함

김○○

·편부모 자녀 중 특히 모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애정결핍 등의 결손 대상을 우선 선발, 성범죄 경력자 배제

안○○

·자발적 참여가 우선. 청소년들의 범죄를 구분한다면 그것도 차별임. (보호관찰을 받는 아이들이나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중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멘토링 사전 설명도 필요함)

3) 멘토의 자질 강화방안

황○○

·정기적인 사례발표회, 수퍼비전 등 지속적인 교육

노○○

·무엇보다 멘토링의 목적과 의미를 잘 인식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열정이 있는 자

·멘티 사례관리 경험이 있거나, 그러한 교육(사례중심을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이수하고, 적절한 수퍼바이저의 지도를 통해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함

이○○

·멘토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멘토링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양한 기법과 분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원○○

·분명한 사명감과 동기를 가진 멘토를 선발(사명감과 책임성을 가지는 동기가 개개인 및 관리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

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예로, 멘토링의 가치와 보람, 종교적 신념, 자격 및 기술 습득의 기회 제공, 경제적인 도움 등

- 지속적인 교육과 수퍼비전

- 멘토에게 추가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

- 멘토의 자질은 멘티에게 얼마만큼 필요한 멘토가 되어주는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며 경력, 학력 등에 관계없이 맡고 있는 멘티에게 가장 필요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수퍼비전을 통해 자신의 멘티를 알아가고 만남의 방법과 멘토링 과정을 중요시 하여야 함. 우리 기관에서 준비한 멘토교육 상담, 청소년 범죄, 자원봉사 등을 충실히 하고 정기적인 멘토의 재교육을 한다면 멘토의 자질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 책임성 강화 역시 수퍼비전을 통해 멘토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멘티에 대한 책임성은 스스로 세울 수 있음

조○○

- 멘토의 경험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유도

장○○

- 자격에 관련한 교육시간 증가

김○○

- 수퍼비전 강화, 멘토링 활동평가서를 주 1회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감독 받드시 필요

안○○

- 사전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월 1회 수퍼비전 및 일일 활동보고서를 통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필요

- 멘토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필요 - 대화법, 현실요법, 관계 형성에 관계되는 프로그램 등

4) 멘토링 활동거리(물리적 거리 및 주요 활동 내용)

황○○

·멘티와 접근이 용이한 지역사회 중심활동(대중교통 1시간 이내)

이○○

·소시오드라마, 맞춤형 멘토링 등 멘토링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함.

이○○

·멘토와 멘티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멘티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프로그램이라면 좋을 것(미술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음식만들기 등)

조○○

·자연체험학습, 부모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 부모 동반 올바른 가족관계 형성 등

김○○

·체육 프로그램 등 멘토와 멘티 상호 이해의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

5) 멘토링 활동 빈도

황○○

·주1회, 6개월~1년 이상

노○○

·급성(acute) 위험요인에 노출된 대상자는 주 1회 이상 면담

·안정적(stable)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는 주 2회 가능

이○○

·멘토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활동 빈도가 높아야 함. 면대면 만남은 매주1회 이상은 되어야 함.

원○○

·월 1-2회 면담 멘토링과 주 1회 이상의 전화 또는 이메일, 홈페이지방문, 문자

등활용

이○○

·온라인, 문자, 대면 등등 다양한 방법 중 최소 월 1회 이상 대면, 1년 이상 멘토링 진행

조○○

·10일에 한번 정도가 적당.

·비행청소년 멘토링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므로 조를 짜서 멘토링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1년에 1명이 아니라 3개월씩 멘티를 바꾸어가며 2년 동안 2명을 담당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장○○

·한 달에 2회

김○○

·주 1회(2시간), 1년 이상

안○○

·1년 이상, 주 1회가 가장 이상적이나 주 2회도 좋다고 봄. 주2회일 경우는 주1회 문자정도는 주고받기

박○○

·월2회, 1년 이상

3. 관리와 지원

1)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황○○

·재정적 지원 및 멘토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필요

노○○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경우, 재비행 방지에 대한 구체적 효과성이 검증되어 그 필요성이 강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지원을 얻기 어려운 실태임

이○○

·멘토 양성을 위해서는 민간기관에 지원이 이루어져야하고 중앙과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이 따라야 함.

원○○

·효율적인 멘토 관리를 위해 전담직원이 상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멘토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1개 기관에 1-2명(멘토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경우 행정 직원 1명, 수퍼바이저는 외부인력 초빙, 40명 이상의 경우 관리자, 행정직원 각 1명, 수퍼바이저는 관리자가 겸임하거나 외부 인력 초빙)
·기존 민간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설립비용 없이 추진이 가능함

김○○

·멘토 발굴 및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의 국가적 지원이 요망됨
·성숙된 사회 지향을 위한 첫걸음으로 사회 인적자원인 교육학 및 사회복지사 전공퇴직자에게 봉사활동의 계기를 마련, 범국가적 차원에서 직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화

안○○

·필요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단체인지를 확인한 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2) 재정지원 및 전담직원의 역할

황○○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전담직원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전담직원은 멘토-멘티 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 사후지도 등
이사무관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실에서 멘토양성을 하는데, 아동청소년실중에 아동청소년자립과에서는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멘토로서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

여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음(6,384백만원 매칭5:5)

- 참고로 아동청소년안전과에서는 멘토, 코디를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폭력 예방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4시간의 일반과정과 18시간의 심화과정을 나누어 운영. 교육이수자는 240명이 되는데, 대상자는 상담지원센터의 멘토. 교육이수 후에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 및 학교 폭력피해학생 집단상담지도(예산4천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음

원○○

- 전담직원의 역할- 멘토의 교육, 관리, 프로그램 개발, 멘티 관리,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업무

조○○

- 재정 지원규모는 통과, 전담직원은 멘토의 멘토링 진행상태 파악 및 체크

김○○

-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발달은 범죄의 공포화 및 저연령화로 이어지고 빈부 격차의 가속화로 서민층 경제는 바닥을 치며 생계형 범죄자가 날로 증가하는 급변하는 사회속의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
- 예산지원: 서민층 자녀를 우선한 재정지원 필요(연간 50억, 보건복지가족부)
- 기관신설: 광역시 등 수도권 내 멘토링 센터를 신설, 관리자(소장) 및 전담직원 등 배치
- 교육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상시 멘토교육, 필요 시 현장파견 지도, 사후 활동서 제출(지도사례는 지침서 개발 등 철저한 누적 관리)

안○○

- 지원규모는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멘토 교육비와 멘토링 활동비용은 지원이 있으면 함

4. 전달체계

1) 효과적 전달체계

황○○

·관 주도의 공식 기구의 필요

노○○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사업법상 ‘교정복지’를 보건복지부의 복지업무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교정복지를 법무부의 소관업무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는 범죄자처우를 위한 인건비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가능성을 희박한 상태임

이○○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위해서는 보지부의 CYS-Net를 활용하여야 함. 멘토링이 원스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정비되고 운용되어야 함

원○○

·법무부 산하에 총괄운영기관을 설치하고 보호관찰소, 소년원, 기타 보호시설에 담당자를 선임하여 법무부의 정책과 민간기관의 연계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민간기관에 ‘가칭, 보호소년 멘토링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함

·자원보호자제도의 확대시행

조○○, 장○○

·국가에서 멘토양성기관을 만들어야 함

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보건복지부와 연계로 사회보호정책팀에서 총괄 운영할 수 있음

2) 다기관 협력방안

황○○

·지역사회 유능한 인사의 확보 및 인재 발굴

·멘토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

·관의 멘토링 효과성에 대한 이해 및 협력적 관계 유지

노○○

·우선 비행청소년 멘토링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그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법무부와 합의가 필요함

이○○

·민·관 협력은 자율성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

원○○

·법무부 산하에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여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함

조○○

·해당 기관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산점 부여

장○○

·지역사회에 비행청소년 멘토링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 시행

안○○

·각 기관의 특성과 장점을 이해하는 교육 기회 필요(소년원, 보호관찰소, 멘티의 학교 및 가정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3) 멘토링의 제도적 운영 방안

황○○

·비행청소년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양적 연구로 효과성 검증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공감

·업무성과 반영

노○○

·현재, 멘토링은 보호관찰소의 수많은 교정프로그램(취업 및 복학 알선, 직업훈련, 숙소알선, 검정고시 준비, 다양한 치료 수강 프로그램, 보호자 교육, 보호관찰 상담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자원봉사자 결연, 자원상담자에 의한 상담, 정신보건센터와의 전문적 진단 및 치료, 기타 다양한 사회 자원과의 연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대상자 원호’ 업무에 포함될 뿐이고, 단위업무로서의 멘토링은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고유 업

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멘토링이라는
단위업무가 독자적인 단일 고유 업무로 인정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음
이○○

·소년보호기관이나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멘토링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
며 보호처분 전 단계의 비행청소년을 제도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임
원○○

· 멘토링을 담당자의 업무로 인정하고 업무성과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조○○

·법원에 협조를 얻어 특별준수사항으로 멘토링을 병과하여야 함
김○○

·멘토링을 고유 업무로 인정하고 실적에도 반영하여야 함
안○○

·각 기관에서 필요성을 검토한 후 담당인력으로 배치, 부서신설

·멘토링에 대한 직원 교육 필요

·사회복지사 및 전문 상담가 채용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가나다순

노일석 서울보호관찰소 사무관

박현선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송중일 법무부 보호관찰과 사무관

황계연 서울소년원 과장

◆ 집 필 진 ◆

남현주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이인숙 부산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감 수 ◆

이순래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영호 법무부 소년과 사무관

◆ 윤 문 ◆

이현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
- 09-R02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김영애·조선하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김성언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송병국·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혜연·이용교·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김영인
- 09-R10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설수영·원형중·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 최인재·김봉환·황매향·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임지연·김정주·김신영·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천정웅·신승배·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 · 김진호 · 임성택 · 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 · 임영식 · 문호영 · 김남정 · 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 · 김동일 · 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 · 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 · 윤옥경 · 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 · 오해섭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 · 박은혜 · 이상훈 · 최은영 · 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 · 조홍식 · 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 · 정대영 · 황순영 · 김영미 · 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 · 박현옥 · 이경숙 · 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 · 김원경 · 고정욱 · 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 · 이근매 · 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 · 김나라 · 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김남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교력 영역 / 조아미 · 김정희 · 설현수 · 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윤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윤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윤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이·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아인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보고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인 쇄 2009년 12월 22일

발 행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786-2999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연구기획팀)

ISBN 978-89-7816-810-6

ISBN 978-89-7816-809-0 (세트)

